

서울시복지재단 2010-

2010 서울시 복지패널 2차 본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연구진

연구책임 : 김지영 (서울시복지재단 정책개발실 조사연구팀장)

공동연구 : 이유정 (서울시복지재단 정책개발실 연구원)

김소연 (서울시복지재단 정책개발실 연구원)

공동연구진

강철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김교성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자문위원

유조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정기 용인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최명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최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동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목 차

I.	서론	3
	1. 서울시복지패널 소개	3
	1) 조사목적	3
	2) 조사연혁	3
	3) 서울시 복지패널의 특성	5
	2. 조사개요	6
	1) 표본추출	6
	2) 조사표의 구성 및 조사 기준시점	7
	3)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8
	4) 자료처리	10
	5) 2차 본조사 표본특성	12
	6) 가중치	15
	3. 2차 조사 참여 가구와 비참여 가구 특성 비교	23
II.	가구용 설문 응답 결과	29
	1. 가구 일반 특성 및 분석변수 선정	29
	1) 가구규모	29
	2) 연령비	30

3) 가구원 특성에 의한 가구형태	31
4) 소득수준별 가구구분	32
5)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2
6) 분석변수 선정	34
2. 소득	35
3. 소비와 저축	52
4. 자산과 부채	58
5. 최근 가족상황의 변화	60
6. 건강보험	61
7. 국민기초생활보장	63
8. 주거	68
9. 노인부양	74
10. 미취학 아동	78
11. 자녀교육	80
12. 장애 및 재활	84
13. 복지서비스 수요	110

Ⅲ. 가구원용 설문 응답 결과 143

1. 조사대상 가구원 일반사항	143
1) 조사대상 가구원의 일반적 특성	143
2) 분석변수 선정	145
2. 경제활동	145

3. 사회보험	166
4. 건강·의료	172
5. 사회참여	176
6. 주관적 채도 및 복지정책의견	184
7. 노년준비	190

**〈부록〉 서울시 복지패널 1차 부가조사
심층분석보고서 197**

I. 연구개관(김지영)	199
II. 저소득층 나눔행동에 관한 연구(강철희)	210
III. 서울시 저소득 가구의 빈곤이행의 실태와 특성(김교성)	261

— 표 목 차 —

<표 I-1>	2차 본조사 가구용 설문지의 구성	8
<표 I-2>	2차 조사 가구원용 설문지의 구성	12
<표 I-3>	2차년도 조사완료 가구 및 가구원수	13
<표 I-4>	2차 본조사 지역별 응답률	14
<표 I-5>	개인가중치의 특성	20
<표 I-6>	2010년 9월 주민등록 인구현황(연령 및 성별)	20
<표 I-7>	2010년 9월 주민등록 인구현황(총인구수 및 세대수)	22
<표 I-8>	가구규모(가구원 수) 분포	23
<표 I-9>	일반가구,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장애인인가구 비율	24
<표 I-10>	가구주 특성	24
<표 I-11>	가구 총 소득	25
<표 II-1>	가구규모별 가구원 연령분포	29
<표 II-2>	연령비별 가구 특성	31
<표 II-3>	가구원 특성에 의한 가구형태	31
<표 II-4>	중위소득 기준 가구구분	32
<표 II-5>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	32
<표 II-6>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3
<표 II-7>	가구 월평균 소득(B1)	36
<표 II-8>	가구 총 소득(B1)	39
<표 II-9>	소득유형별 총 소득(B1)	39
<표 II-10>	월평균 근로소득(B1-1)	41
<표 II-11>	월평균 금융소득(B2-1)	42
<표 II-12>	월평균 부동산소득(B3-1)	43
<표 II-13>	월평균 사적이전소득(B4)	44
<표 II-14>	월평균 공적이전소득(B5)	46
<표 II-15>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 및 지원금액(B5-1)	47

<표 II-16> 사회보험(B6-1)	48
<표 II-17> 사회보험 소득 이외의 공적으로 받은 이전 소득(B6)	49
<표 II-18> 개인연금(B7-3)	50
<표 II-19> 기타 소득(B9)	51
<표 II-20> 월평균 총 가계지출(C1)	52
<표 II-21> 월평균 가계 지출(C1)	55
<표 II-22> 항목별 가계지출(C1)	55
<표 II-23> 저축(C3)	57
<표 II-24> 부채(D7)	58
<표 II-25> 월평균 내고 있는 부채 이자(D8)	59
<표 II-26> 일자리를 그만두거나 사업상 큰 손해를 본 경험(F1-1)	61
<표 II-27> 건강보험 가입 여부 및 종류 (H1)	62
<표 II-28> 지난 1년 동안 건강보험료 미납 경험 (H2)	63
<표 II-29> 지난 1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여부(I1)	64
<표 II-30> 지난 1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한 이유(I1-1)	65
<표 II-31> 지난 1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선정 경험 여부(I1-2)	66
<표 II-32>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형태(I1-2-1)	67
<표 II-33>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대상에서 벗어나더라도 계속 받고 싶은 지원(I1-2-4)	68
<표 II-34> 주택종류(J1-2)	69
<표 II-35> 입주형태(J1-1)	70
<표 II-36> 장기전세주택(SHift) 인지 여부(J8)	71
<표 II-37> 장기전세주택(SHift) 신청 의향(J9)	71
<표 II-38> 장기전세주택(SHIFT) 신청하려는 이유(J9-1)	72
<표 II-39> 장기전세주택(SHIFT) 신청하지 않으려는 이유(J9-2)	73
<표 II-40> 노인(만65세 이상)가구원수 (K1)	74
<표 II-41> 노인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 (K10, 복수응답)	75
<표 II-42> 노인복지서비스 - 필요도 (K11) 노인가구원이 있는 가구 전체	77
<표 II-43> 만6세 이하 가구원수 (L1)	78

<표 II-44> 자녀보육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L8, 복수응답)	79
<표 II-45> 자녀보육관련 서비스 필요도 (L9-1) - 만6세 이하 가구원이 있는 가구 전체	80
<표 II-46> 만7세-만18세 가구원수 (M1)	81
<표 II-47> 자녀교육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M9, 복수응답)	82
<표 II-48> 자녀교육 관련서비스 필요도 (M10) - 만7세-만18세 가구원이 있는 가구 전체	83
<표 II-49> 자녀교육 관련서비스 - 필요도 (M10) 가구형태에 의한 가구 구분	83
<표 II-50> 장애 가구원(N1)	84
<표 II-51> 주된 장애 유형(N4, 복수응답)	85
<표 II-52> 주된 장애 등급(N5, 복수응답)	86
<표 II-53> 주된 장애 등록 여부(N6, 복수응답)	87
<표 II-54> 주된 장애 미등록 이유(N7, 복수응답)	88
<표 II-55> 장애 가구원을 돌보기 위해 외출이나 취미생활 등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다(N8-1)	89
<표 II-56> 장애 가구원을 돌보다 나의 건강이 나빠졌다(N8-2)	90
<표 II-57> 장애인을 돌보는 것이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된다(N8-3)	91
<표 II-58> 장애인에게 들어가는 추가적 비용이 부담된다(N8-4)	92
<표 II-59> 장애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N10, 복수응답)	93
<표 II-60> 장애수당(장애아부양수당) - 필요정도(N11-1)	94
<표 II-61> 교육비 지원 - 필요정도(N11-2)	95
<표 II-62> 의료비지원 - 필요정도(N11-3)	96
<표 II-63> 각종 세금면제 / 요금할인 - 필요정도(N11-4)	97
<표 II-64>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 필요정도(N11-5)	98
<표 II-65>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 필요정도(N11-6)	99
<표 II-66> 직업재활 및 훈련 - 필요정도(N11-7)	100
<표 II-67> 재활시설 및 그룹홈 - 필요정도(N11-8)	101
<표 II-68> 방문간호, 가정간호 - 필요정도(N11-9)	102
<표 II-69> 가정봉사원 - 필요정도(N11-10)	103

<표 II-70> 재활병원 - 필요정도(N11-11) 104

<표 II-71> 주간, 단기보호시설 - 필요정도(N11-12) 105

<표 II-72> 장애인 택시/셔틀 - 필요정도(N11-13) 106

<표 II-73> 장애인심부름센터 - 필요정도(N11-14) 107

<표 II-74> 장애인체육관 - 필요정도(N11-15) 108

<표 II-75> 자립생활센터 - 필요정도(N11-16) 109

<표 II-76> 기타 - 필요정도(N11-17) 110

<표 II-77>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복지서비스 관련 이용 경험
 (O2, 복수응답) 111

<표 II-78> 생계비 지원 - 필요정도(O3-1) 112

<표 II-79> 교육비지원 - 필요정도(O3-2) 113

<표 II-80> 취업지원 - 필요정도(O3-3) 115

<표 II-81> 주거비지원 - 필요정도(O3-4) 116

<표 II-82> 영구 임대주택 - 필요정도(O3-5) 117

<표 II-83> 공공(국민)임대주택 - 필요정도(O3-6) 118

<표 II-84> 전세자금(융자)지원(저소득·근로자·서민) - 필요정도(O3-7) ... 119

<표 II-85> 저소득층 월세지원 - 필요정도(O3-8) 120

<표 II-86>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근로자·서민) - 필요정도(O3-9) 121

<표 II-87> 의료비지원(해산 및 장제비 포함) - 필요정도(O3-10) 122

<표 II-88> 상담서비스 - 필요정도(O3-11) 123

<표 II-89>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 필요정도(O3-12) 124

<표 II-90> 물품지원 - 필요정도(O3-13) 125

<표 II-91> 가정봉사지원 - 필요정도(O3-14) 126

<표 II-92> 식사배달 - 필요정도(O3-15) 127

<표 II-93> 일자리/창업 관련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O6) 128

<표 II-94> 구직 알선 - 필요정도(O7-1) 129

<표 II-95> 구직 세일즈 - 필요정도(O7-2) 130

<표 II-96> 직업훈련 - 필요정도(O7-3) 131

<표 II-97> 직업적응훈련 - 필요정도(O7-4) 132

<표 II-98> 자활공동체 - 필요정도(O7-5) 133

<표 II-99>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 필요정도(O7-6)	134
<표 II-100> 인턴형 자활근로 - 필요정도(O7-7)	135
<표 II-101>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 필요정도(O7-8)	136
<표 II-102>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 필요정도(O7-9)	137
<표 II-103> 창업지원 - 필요정도(O7-10)	139
<표 II-104> 지역봉사 - 필요정도(O7-12)	140
<표 III-1> 응답자 분포표	144
<표 III-2> 지난 1주일간 한 일(A1)	146
<표 III-3> 평균 근로기간(A8)	149
<표 III-4> 월평균 소득(A16)	151
<표 III-5> 종사상 지위(A11)	153
<표 III-6> 고용형태(A11-1)	154
<표 III-7> 사회보험 가입여부(A18)	156
<표 III-8> 국민연금/특수직 연금 가입여부(A18-1)	156
<표 III-9> 건강보험 가입여부(A18-2)	157
<표 III-10> 고용보험 가입여부(A18-3)	158
<표 III-11> 산재보험 가입여부(A18-4)	160
<표 III-12> 사회보험 : 국민연금/특수직연금 지역 가입 실태(A18-1-2) ..	161
<표 III-13> 건강보험 지역 가입 실태(A18-2-2)	162
<표 III-14> 부가급여 및 복리후생 제공 실태(A19-1)	163
<표 III-15> 부가급여 및 복리후생 수급 실태(A19-2, 복수응답)	165
<표 III-16> 공적연금 가입 여부(B1)	166
<표 III-17> 공적연금 가입 실태(B1)	167
<표 III-18> 사회보험 수급경험(B5)	169
<표 III-19> 사회보험 수급실태(B5)	171
<표 III-20> 사회보험 종류별 수급액 (6-4, 복수응답)	172
<표 III-21> 건강상태 (E1)	173
<표 III-22> 지난 1년간 입원경험 (E8-2)	175
<표 III-23> 지난 1년간 입원한 이유 (E8-3)	175
<표 III-24> 봉사활동 경험 유무 (H5)	177

<표 III-25>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H5-1)	177
<표 III-26> 봉사활동 참여 분야 (H7)	178
<표 III-27> 정기적 봉사활동 참여 분야 (H8)	179
<표 III-28> 자원봉사 활동 참여 횟수 및 1회 평균 활동 시간 (H9)	180
<표 III-29> 기부 경험 유무 (H11)	181
<표 III-30> 기부 하지 않는 이유 (H11-1)	181
<표 III-31> 기부 참여 분야 (H13)	182
<표 III-32> 정기적 기부 참여 분야 (H14)	183
<표 III-33> 지난 1년간 기부액 (H15)	183
<표 III-34> 주관적 태도 및 복지정책 관련 의견(I6)	185
<표 III-35> 주관적 태도 : 정부는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I6-18)	186
<표 III-36> 주관적 태도 : 어린이 보육부담은 전적으로 각 가정이 책임져야 한다(I6-14)	187
<표 III-37> 노후 준비 실태(J1 매우 열심히 준비한다+ 준비한다)	191
<표 III-38> 과거 노후 준비 실태(J2, 매우 열심히 준비했다+ 준비했다)	192
<표 III-39>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한 대책 (J3,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194

그림목차

[그림 I-1] 서울시 복지패널조사 연구 연도별 진행상황	5
[그림 I-2] 서울시 복지패널조사 자료 처리 과정	10

제1장



서론

I. 서론

1. 서울시복지패널 소개

1) 조사목적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의 복지수준을 측정하고 연도별로 분야별 복지수준의 변화를 추적하여 서울시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2008년부터 서울시 복지패널조사를 실시해왔다. 동일한 가구 및 개인들을 대상으로 종단적으로 조사하는 패널조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민의 삶의 변화양태를 보여줌으로써, 횡단적인 현황조사나 실태조사에서 파악할 수 없는 시민의 삶의 역동성과 시대적 변화에 따른 복지실태와 복지욕구의 변화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서울시복지패널조사의 목적은 첫째, 서울시 거주 가구의 복지수준을 측정하고 연도별 복지수준의 변화를 추적하고, 둘째, 복지취약계층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여 복지서비스 수요를 추정하고, 셋째, 기존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도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고, 넷째, 이상의 조사 및 측정을 통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과 아울러 다섯째, 사회복지 연구자에게는 통계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계량적 자료를 토대로 한 사회복지연구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시복지패널 조사에서는 소득, 소비, 저축, 부채, 자산, 생활여건, 건강, 주거, 노인부양, 자녀교육, 장애 및 재활, 복지서비스 등 기존의 복지관련 조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온 영역들 외에도, 문화생활 및 사회참여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문항들과 복지정책관련 의견을 묻는 문항들을 포함시켜 서울시민의 삶의 모습과 복지욕구를 포괄적으로 담아내려고 하고 있다.

2) 조사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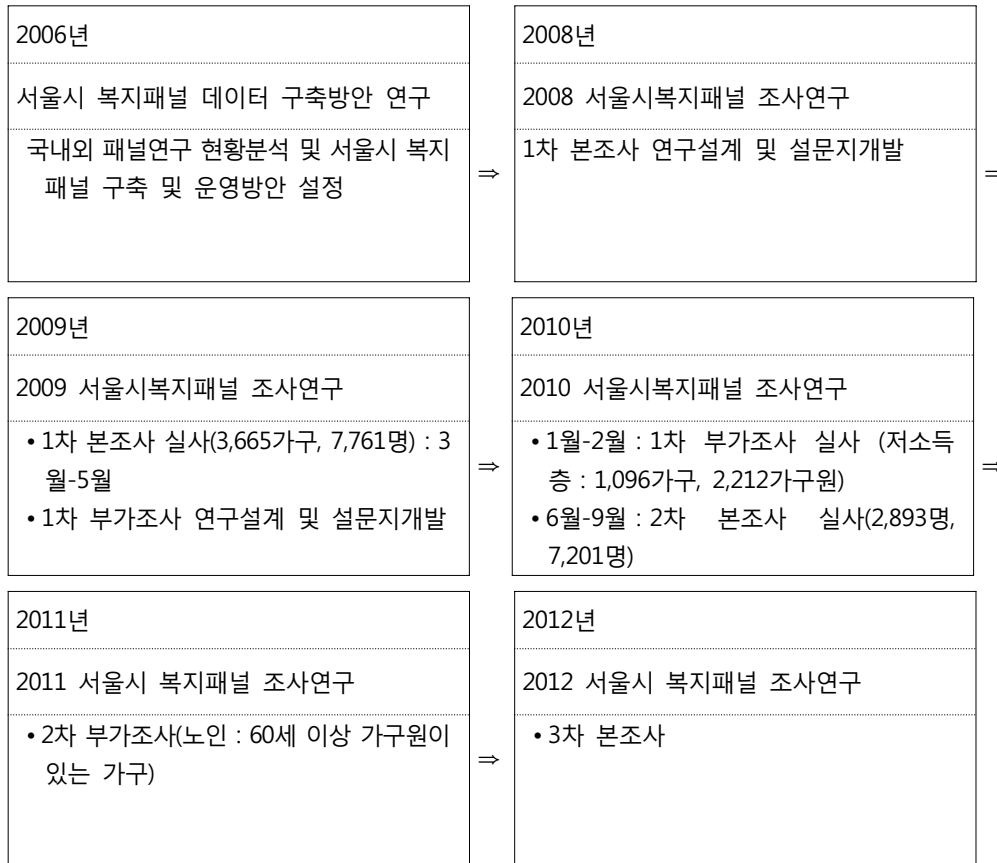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서울시민의 복지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객관적인 시계열 자료의 구축을 위한 패널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6년에 서울시 복지패널 조사연구의 기본방향을 담은 「서울시복지패널 데이터 구축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외 패널데이터의 현황을 분석하고 서울시의 상황에 적합한 패널데이터의 구축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복지패널 조사는 패널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본조사와 사회복지정책과 현안과 관련하여 집중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한 특정집단을 선정하여 조사하는 부가조사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조사는 1차 본조사가 실시된 2008년을 기준으로 매 짝수 해에 실시되고, 부가조사는 본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홀수 해에 실시된다.

제1차 본조사인 2008 본조사는 3,665가구의 7,76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008년에는 1차 본조사를 위한 연구 설계와 설문지개발이 완료되었고, 2009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1차 본조사 실사가 실시되었다. 제1차 부가조사인 2009 부가조사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 보다 심화된 경제양극화에 따라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신빈곤층,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빈곤계층의 현황을 조망해보기 위하여,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1,096가구, 2,212 가구원이 참여하였다.

올 2010년에 실시된 2차 본조사에는 1차 본조사를 통해 구축된 패널가구 및 가구원 중 서울, 경기지역 내의 거주지가 파악된 3,304가구의 7,021명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 최종적으로 조사에 응답한 가구 및 가구원은 2,893가구의 6,204명이었다.

내년 2011년에 실시될 2차 부가조사는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서울시의 노인복지정책의 수립에 기여하고, 노인복지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패널가구 중 60세 이상의 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그림 1-1] 서울시 복지패널조사 연구 연도별 진행상황

3) 서울시복지패널의 특성

1968년에 미국에서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가 시작된 이래, 세계 여러 나라에서 종단적인 자료에 기초한 장기적인 정책 수립과 연구를 위해 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시아 최초의 가구패널조사인 대우패널이 1993년에 시작된 이래로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등의 패널조사가 진행되어 왔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교육고용패널,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화연구패널,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 등의 다양한 패널연구가 시작되면서 패널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차상위·빈곤패널 및 자활패널과 서울대학교의 복지패널이 통합한 한국복지패널이 2006년에 시작되면서,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패널연구 또한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시복지패널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영역에 대한 종단적인 조사연구라는 점에서 다른 복지패널조사들과 동일하나 전국단위 패널이 아닌 서울시 거주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단위 패널이라는 점에서 다른 패널조사들과 구분된다.

서울시는 인구 1,000만으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의 도시일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The Global Cities Index 2010(Foreign Policy, 2010)에서 세계 10위로 자리 잡을 만큼 빠르게 국제화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서울시복지패널은 이러한 서울시의 위상과 역동성을 보다 더 잘 담아내기 위해, 전국단위의 패널과는 분리된 서울시 자체 패널을 구성하였다.

이 밖에도 장기전세주택(SHIFT)과 같은 서울시 고유의 정책에 대한 문항을 포함시키는 등 조사내용에서 있어서도 서울의 특성을 보다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시켰다. 또한 결과 분석에 있어서도 서울시민의 특성을 좀더 잘 부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소득수준에 따른 가구 구분을 중위소득 50% 이하의 빈곤가구, 50-150%의 중산층가구, 150% 이상의 고소득가구로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고소득가구가 많이 존재하는 서울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2. 조사개요

1) 표본추출

2010 서울시복지패널의 조사 모집단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대상가구 중 2008

년 12월 현재 서울시 소재 가구이다. 표본은 층화 2단 집락추출(stratified two-stage cluster sampling)을 통해 추출하였는데, 1차 추출단위(primary sampling unit)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90% 일반조사구에서 추출된 조사구이고, 2차 추출단위(secondary sampling unit)는 추출된 조사구 내의 가구이다.

1차 추출단위인 표본 조사구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ystematic sampling)에 의해 추출하였다. 표본이 목표 모집단을 효율적으로 대표할 수 있도록 1차 추출 단계에서는 주택규모와 학력분포, 연령분포 등 세 가지 사회경제적 지표를 분류지표로 활용하였다. 1차 분류지표는 아파트와 아파트 이외의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영업용, 기타 등의 주택형태에 기초한 주택규모로, 아파트를 기준으로 할 때 20평 이하의 아파트의 비율이 사용되었다. 2차 분류지표로는 시민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체변인(proxy)으로 선정된 거주자의 학력분포로, 대졸 이상 인구비율이 사용되었다. 3차 분류지표인 연령분포는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서비스 수요와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선택된 지표인데 6세 이하 아동 비율과 60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사용되었다.

2차 추출단위인 가구는 추출된 조사구에서 계통추출(systematic sampling) 방법을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조사구에 포함된 가구의 수를 조사구 당 표본가구수인 5가구로 나눈 수만큼의 간격으로 조사구 리스트에서 표본가구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최종 대상가구가 추출되었다.

2) 조사표의 구성 및 조사 기준시점

서울시복지패널 조사표는 가구용 설문지와 가구원용 설문지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용 설문지는 가구원 일반사항과 가구주에 대한 질문, 그리고 가구 전체에 해당되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표 I-1 참조). 가구원용 설문지는 가구원 개개인의 생활 및 의견을 묻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표 I-2 참조).

조사기준시점은 가구용 설문지의 소득, 소비와 저축, 최근 가족상황의 변화, 건강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가구용 설문지의 사회보험은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

일까지의 1년이고, 가구원용 설문지 중 경제활동은 200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그 밖의 항목들은 조사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다(표 I-2, 표 I-3 참조).

3)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서울시복지패널의 실사는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2010년 6월 2주부터 2010년 9월 2주까지 실시되었다. 조사는 컴퓨터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이하 CAPI)로 실시되었다. CAPI는 면접원이 조사 대상 가구로 선정된 가구를 방문하여,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조화된 설문에 따라 응답한 내용을 컴퓨터에 저장하여 활용하는 형태로, 문항간, 응답자간 응답의 일치성의 현장 확인과 실시간 조사 관리를 용이하게 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에 유리한 조사방법이다.

가구 조사는, 전체 가구와 가구원 개개인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응답자가 응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가구 조사가 완료된 후 가구원 조사를 실시하였다. 가구주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면서 해당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나 사실상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을 조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표 I-1> 2차 본조사 가구용 설문지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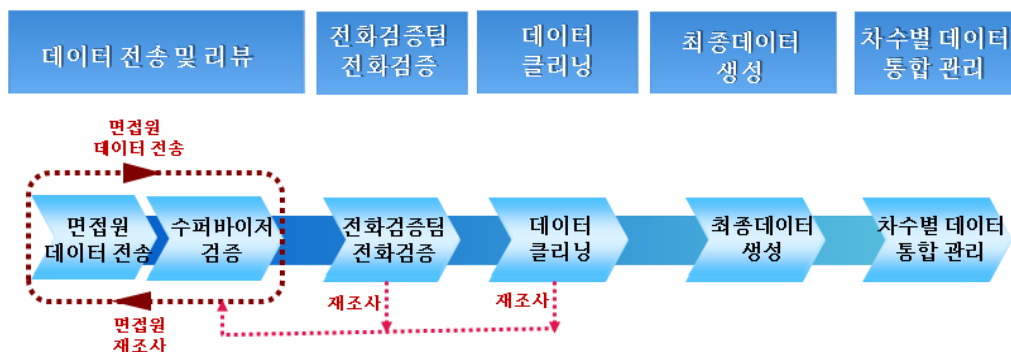
구분	세부 내용	조사 기준시점
A. 가구원 일반사항	- 신규, 분가 가구원 - 성, 연령, 학력, 혼인상태, 종교 - 가구주와의 관계	조사당시 시점 기준
B. 소득	- 근로소득 -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 사적이전 및 공적이전소득 - 개인연금 및 기타소득	2009.1.1.-2009.12.31

구분	세부 내용	조사 기준시점
C. 소비와 저축	- 월평균 가계지출 - 저축	2009.1.1.-2009.12.31
D. 자산과 부채	- 자산(건물/임야/토지, 금융, 기타 자산) - 부채	조사당시 시점 기준
E. 가구경제 인식	- 가구경제 인식	
F. 최근 가족상황의 변화	- 최근 가족상황의 변화	2009.1.1.-2009.12.31
G. 생활여건	- 생활여건	
H. 건강보험	- 건강보험 가입 종류 - 건강보험료 미납 경험	2009.1.1.-2009.12.31
I.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경험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및 수급형태	2009.1.1.-2009.12.31
J. 주거	- 주택종류 - 입주형태 - 주거시설 - 장기전세주택(SHIFT)	조사당시 시점 기준
K. 노인 부양 (부양자녀용)	- 어르신의 건강상태 및 앓고 있는 질병 - 노인복지관련 서비스 이용경험	조사당시 시점 기준
L. 미취학 아동_보육	- 미취학 아동 보육 - 미취학 아동 보육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	조사당시 시점 기준
M. 자녀교육 (초, 중, 고 연령대)	- 자녀교육(공교육 및 사교육) - 자녀 교육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	조사당시 시점 기준
N. 장애 및 재활	- 장애 종류 및 등급 - 장애관련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조사당시 시점 기준
O. 복지서비스 수요	- 생활비 관련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 일자리/창업 관련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조사당시 시점 기준

가구원 조사는, 조사대상 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가구원 개인을 면접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나, 조사표 표지에 명시된 대리응답사유(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3급 이상)에 해당하는 가구원의 경우는 해당 가구원에 대해 잘 아는 가구원이 대리응답 가능하도록 하였다. 뇌병변장애,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2급, 사망 등의 미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구원의 경우는 조사표의 표지만 작성하고 해당 사유를 명기하는 것으로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였다.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정의하였고,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정의하였다. 장애인은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장애등급 및 유형에 따라 지정된 조사대상자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4) 자료처리



[그림 1-2] 서울시 복지패널조사 자료 처리 과정

수집된 자료는 [그림 1-2]와 같은 과정을 거쳐 처리되었다. 자료처리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블레이즈(Blaise) 프로그램과 IRP(Intelligent Review Program)이다.

일차적으로 CAPI에 사용된 블레이즈 프로그램을 통해 논리적 에러가 검증이 된다. 블레이즈 프로그램을 통한 논리적 에러 검증은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첫째, 문항 자동 이동 단계이다. 조사대상에 따라 응답받아야 하는 설문지 유형별로 응답

순서가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각 문항의 응답값에 따라 문항이동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면접원에 의한 문항이동 에러를 방지한다. 둘째, 설문 응답값에 대한 에러 확인 단계이다. 설문 문항의 응답값에 대해 에러창(Hard-Check)과 확인창(Soft-Check)을 띄움으로써 설문 응답값에 대한 에러를 확인한다. 셋째, 문항 간 교차확인 단계이다. 조사대상자의 응답내용이 일관성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문항을 교차하여 확인한다.

다음은 IRP를 활용한 검증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과정을 거친다. 먼저 담당 수퍼바이저와 보조 수퍼바이저가 전체 가구의 5%에 대해 전체 문항을 출력하여 검토한 후, 설문지 상의 오류나 누락 부분을 표시하여 해당 면접원에게 통보한다. 주요 문항은 모든 가구의 자료를 출력하여 리뷰한다. 리뷰대상 문항은 가구원 정보, 주거상태, 근로소득, 금융 및 부동산소득, 이전소득, 보호대상가구 여부, 사회보험, 가구 부채 및 이자, 가구 소비, 노인/아동/학령기 자녀 등이다. 리뷰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나 누락 부분은 해당 면접원에게 통보하여, 해당가구에 면접원이 방문하거나 수퍼바이저가 전화를 하여 수정 및 보충을 하여 작업을 완료한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리뷰가 완료되면, 전화검증팀에서 면접원별 완료부수의 30%에 대해 전화검증을 실시하고, 검증결과 문제가 발견된 설문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 에러 데이터에 대해서는 폐기여부를 결정한다. 전화검증이 끝난 데이터는 SPSS 형태로 전환하여 종이 설문 형태로 데이터 구조를 변환한 후, 오픈 문항을 코딩한다.

코딩이 끝나면 데이터 클리닝 과정에 들어간다. 데이터 클리닝 프로그램(SWPS CLEAN)을 이용하여 추가에러를 검증하고, SPSS의 Syntax 기능을 이용하여 에러 사항에 대한 추가 확인작업을 진행한다. 클리닝된 데이터를 기초로 최종데이터가 생성되면 이상값(outlier)을 확인하여 처리한 후, 필요한 형태로 데이터를 출력한다. 클리닝이 완료된 최종 데이터는 SWPS Union을 이용하여 차수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한다.

5) 2차 본조사 표본특성

2차 본조사 대상 가구는 1차 본조사에서 조사되었던 원가구 3,665가구와 이 가구들에서 분가해나온 분가가구 44가구를 합한 총3,709가구였다. 이 중 이사, 입원,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해 원표본가구 385가구와 분가가구 20가구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2차 본조사 대상 가구는 총 3,304가구였다. 이 중 최종 조사완료 가구는 원가구 중 2,877가구와 분가가구 중 16가구를 합한 총2,893가구로 표본유지율은 78.0%였다.

2차 본조사 대상 가구원은 원가구의 가구원 7,172명과 분가가구의 가구원 29명을 합친 7,201명이었고, 이 중 최종 조사완료 가구원은 원가구 중 6,279명과 분가가구 중 25명을 합친 6,304명으로 표본유지율은 87.5%였다(표 I-3 참조).

<표 I-2> 2차 조사 가구원용 설문지의 구성

구분	세부 내용	
A. 경제활동	- 경제활동 상황 - 산업 및 직업 - 종사상 지위, 고용형태, 사업체 종류 등 - 희망하는 일자리	2009. 12. 31 기준
B. 사회보험	- 공적연금 가입여부 - 국민연금 납부 및 미납 경험 - 사회보험 수급 경험	2009.1.1.-2009.12.31
C. 직업훈련 경험 및 취득 자격증	- 직업훈련 경험 - 취득 자격증	조사당시 시점 기준
D. 배우자와의 관계	- 배우자와의 관계 - 부부가 함께한 활동	조사당시 시점 기준

구분	세부 내용	
E. 건강 의료	- 건강상태 및 앓고 있는 질병 - 외래진료 및 입원 경험 - 건강검진	조사당시 시점 기준
F. 정신 건강	- 우울증 - 스트레스	조사당시 시점 기준
G. 문화생활, 여가활동, 정보화	- 문화생활 경험 - 여가활동	조사당시 시점 기준
H. 사회참여, 평생학습, 자원 봉사 및 기부활동	- 사회참여 - 평생학습/자기계발 - 자원봉사 및 기부활동 - 시설/기관/단체에 대한 신뢰 정도	조사당시 시점 기준
I. 주관적 태도 및 복지정책관련 의견	- 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 - 복지정책 관련 의견 - 차별적 대우를 받은 경험	조사당시 시점 기준
J. 노후생활	- 노년 준비 실태	조사당시 시점 기준

<표 1-3> 2차년도 조사완료 가구 및 가구원수

구분	가구				가구원		
	패널가구*	2차 본조사 대상가구	2차 본조사 완료가구	표본 유지율	2차 본조사 대상가구원	2차 본조사 완료가구원	표본 유지율
원가구	3,665	3,280	2,877	78.7	7,172	6,279	87.5
분가가구	44	24	16	36.4	29	25	86.2
전체	3,709	3,304	2,893	78.0	7,201	6,304	87.5

* 패널가구는 1차 조사에서 조사되었던 원가구와 원가구에서 분가해 나온 분가가구 전체를 의미함.

지역별 응답율을 서울시내 25개구별로 살펴보았을 때, 조사 성공가구의 수가 가장 많은 구는 관악구(157가구)였고, 서울이외 지역을 제외하고 가장 적은 구는 용산구(81가구)였다. 구별 응답률 분포는 최고 98.4%(금천구)에서 최저 74.0%(종로구)까지 분포했다.

<표 1-4> 2차 본조사 지역별 응답률

(단위 : 가구, 명 %)

	2차 조사 성공 가구			2차 조사 성공 가구원		
	조사 대상 가구	조사 성공 가구	가구 응답율	조사 대상 가구원	조사 성공 가구원	가구원 응답율
합계	3,304	2,893	87.6	7,201	6,304	87.5
종로구	123	91	74.0	216	164	75.9
중구	97	86	88.7	220	203	92.3
용산구	92	81	88.0	170	156	91.8
성동구	114	104	91.2	250	212	84.8
광진구	108	91	84.3	216	186	86.1
동대문구	106	100	94.3	251	206	82.1
중랑구	128	107	83.6	249	227	91.2
성북구	149	120	80.5	286	262	91.6
강북구	118	102	86.4	223	197	88.3
도봉구	122	102	83.6	238	216	90.8
노원구	165	153	92.7	368	339	92.1
은평구	135	115	85.2	302	275	91.1
서대문구	107	88	82.2	246	174	70.7
마포구	114	98	86.0	231	206	89.2
양천구	131	118	90.1	321	260	81.0
강서구	147	135	91.8	337	266	78.9
구로구	118	110	93.2	272	236	86.8
금천구	126	124	98.4	321	305	95.0
영등포구	138	127	92.0	318	306	96.2
동작구	127	119	93.7	309	255	82.5
관악구	171	157	91.8	390	353	90.5
서초구	136	125	91.9	311	286	92.0
강남구	156	122	78.2	324	313	96.6
송파구	180	152	84.4	417	356	85.4
강동구	140	120	85.7	309	266	86.1
서울 이외 지역	56	46	82.1	106	79	74.5

6) 가중치

① 1차년도 가중치

통계조사에서 가중치를 적용하는 이유는 첫째, 표본설계특성에 따라 존재하는 불균등한 표본단위의 추출확률을 조정하고 둘째, 표본단위의 무응답을 보정하고 셋째, 모집단의 알려진 특성을 일치시키기 위해 보정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표본조사 자료를 분석할 때 활용되는 가중치는 크게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계산하여 이용된다.

첫째, 기본 가중치 부여단계이다. 기본 가중치는 표본설계 특성을 나타내는 가중치를 의미한다. 표본추출단위의 추출확률에 대한 역수로 가중치를 계산하는데 표본추출방법이 다단계추출인 경우 각 단계별 추출단위의 추출확률을 계산하여 최종 표본추출단위의 추출확률을 계산하여 역수로 가중치를 계산한다.

$$W_{hjk}^{(1)} = \frac{M_h N_{hk}}{m_h n_{hk}}$$

여기서 $W_{hjk}^{(1)}$ 는 h 번째 구의 k 번째 조사구 내의 j 번째 가구의 가중치이고, M_h 는 h 번째 구의 조사구 수(h =종로, 중구, 용산 등 모두 25개 구), N_{hk} : h 번째 구의 k 번째 조사구 내의 모집단 가구 수, m_h 는 h 번째 구의 추출된 표본 조사구 수, n_{hk} 는 h 번째 구의 k 번째 조사구 내의 추출된 표본 가구 수이다.

둘째, 무응답 보정단계이다. 이는 최초 표본단위가 단위무응답인 경우 무응답 표본단위를 보정하기 위한 가중치로 최초 목표 표본 크기를 유효 표본크기로 나누어 조정한다. 최초 표본단위를 대체표본으로 교체(substitution)하는 경우 무응답 보정은 필요하지 않지만 항목 무응답은 대체(imputation)하여 추정한다.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W_{hjk}^{(2)} = \frac{n_{hk}}{R_{hk}}$$

여기서 W_{hjk} 는 h 번째 구의 k 번째 조사구 내의 j 번째 가구의 가중치이고, n_{hk} 는 h 번째 구의 k 번째 조사구 내의 추출된 표본 가구 수, R_{hk} 는 h 번째 구의 k 번째 조사구 내의 추출된 조사완료 가구수이다.

셋째, 사후층화 보정한 최종 가중치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최종가중치는 조사가 실시된 후 무응답을 조정하고 최종가중치의 합이 최근 정보와 같아지도록 조정하여 사용하는데, 조사시점의 모집단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보정한다.

$$W_{hjk} = W_{hjk}^{(1)} \cdot W_{hjk}^{(2)} \cdot \frac{N_{hl}}{\sum_{k=1}^{m_k} \sum_{j=1}^{n_{hk}} W_{hjk}^{(1)} \cdot W_{hjk}^{(2)}}$$

여기서 W_{hjk} 는 h 번째 구의 k 번째 조사구 내의 j 번째 가구의 가중치이고, N_{hl} 은 h 번째 구의 l 번째 모집단 사후층의 총 가구 수인데, 여기서 l 은 각 층에서 층화 보정 하는 사후층으로 분할한 셀 번호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가구원을 보정한다면 종로구의 19세 이하남자는 $l=1$ 이고 종로구의 19세 이하 여자는 $l=2$ 으로 $l=1, \dots, 350$ 이다.

기본가중값과 무응답 조정값은 동일 조사구 내의 가구들은 모두 동일한 값을 가지지만, 층화보정치를 구할 때는 동일 조사구 내의 각 가구가 속하는 셀이 서로 다르므로 동일 조사구라 할지라도 최종가중치 설정 단계에서는 서로 다른 가중치를 갖게 된다.

② 2차년도 가중치

패널자료는 종단면분석(longitudinal analysis)과 횡단면분석(cross-sectional analysis)에 모두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므로 두 가중치를 각각 부여해야 하고, 분석단위가 개인과 가구이므로 총 4개의 가중치를 작성해야 한다. 종단면 자료를 고려하는 경우 횡단면 자료에서 발생하지 않는 사항을 고려해야 하고, 표본탈락 역시 고려해야 한다.

2차 본조사 자료의 가중치는 Duncan(1995) 방법을 고려하여 작성하였다. 이 방법은 동등개인가중치 부여방법으로 개인가중치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가구가중치를 구하는 방법이다. 1차 본조사에서의 가중치는 가구가중치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인가중치를 구하기 때문에, 1차 본조사 가중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역순으로 계산을 해야 한다.

가. 중단면 가중치의 계산

1차 본조사 자료에서 2차 본조사에 응답했는지 여부에 대한 변수를 생성한다(2차 응답자 : 1, 응답거부자 : 0). 여기서 응답자 특성을 반영하는 보조변수(auxiliary variable)를 이용하여 로지스틱 모형(logistic model)을 설정한다. 2차 본조사 자료에서는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역, 거주평수, 일반/아파트 가구 여부 등을 사용하였다.

다음과 같은 모형을 설정하여 응답확률 $\hat{\pi}(\mathbf{x})$ 을 추정한다.

$$\pi(\mathbf{x}) = \frac{e^{\beta_0 + \beta_1 x_1 + \dots + \beta_q x_q}}{1 + e^{\beta_0 + \beta_1 x_1 + \dots + \beta_q x_q}}$$

여기서 $\pi(\mathbf{x}) = E(Y | x_1, \dots, x_q)$ 이고 Y 는 2차 패널에 응답했는지 여부이다. x_1, \dots, x_q 는 q 개의 보조변수들이다.

응답확률이 추정되면 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최초의 중단면 개인가중값을 얻는다.

$$W_{hkj}^{(2')} = W_{hkj}^{(1)} \times \frac{1}{\hat{\pi}_{hkj}(\mathbf{x}_{hkj})}$$

여기서 $\hat{\pi}_{hkj}(\mathbf{x}_{hkj})$ 은 h 번째 구의 k 번째 가구의 j 번째 가구원의 응답확률이고, $W_{hkj}^{(1)}$ 는 1차 패널자료에서의 h 번째 구(층)의 k 번째 가구의 j 번째 가구원의 최종

개인가중치, $W_{hjk}^{(2)}$ 는 2차 패널자료에서의 h 번째 구의 k 번째 가구의 j 번째 가구원의 최종 개인가중치이다.

2차 본조사에 신규로 포함된 경우는, 1차 본조사에 가구는 응답했으나 해당가구원은 응답하지 않았다가 2차 본조사에서 응답하게 된 경우와, 가구 자체가 2차 본조사에 새로 응답하여 해당가구원도 새로 응답하게 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동일 가구에서 가중치의 최소값을 가중치로 가지게 되고 후자의 경우는 전체 중에서 가중치의 최소값을 가중치로 가지게 된다.

최초의 종단면 개인가중치를 이용하여 사후층화조정방법으로 통해 최종 종단면 개인가중치를 산출한다. 여기서 사후층화에 이용한 자료는 2010년 9월 주민등록 인구현황에서 성별과 연령을 이용하였다(표 I-5 참조).

$$W_{hlj}^{(2)} = W_{hlj}^{(2')} \cdot \frac{N_{hl}}{\sum_{i=1}^{n_{hl}} W_{hli}^{(2')}}$$

여기서 $W_{hk}^{(2)}$ 는 2차 패널자료에서의 h 번째 구의 k 번째 가구의 최종 가구가중치, N_{hl} 은 h 번째 구의 l 번째 모집단 사후층의 인구수, n_{hl} 은 h 번째 구의 표본 가구 수이고, l 은 각 층에서 층화 보정 하는 사후층으로 분할한 셀 번호를 의미한다.

가구 가중치의 경우는 각 가구별 개인가중치의 평균을 최초의 종단면 가구가중치로 작성한다. 이를 2010년 9월 주민등록 인구현황의 세대수(표 I-6 참조)를 이용하여 사후보정하여 최종 종단면 가구가중치를 얻는다.

$$W_{hk}^{(2')} = \frac{1}{n_{hk}} \sum_{j=1}^{n_{hk}} W_{hjk}^{(2)}$$

여기서 $W_{hk}^{(2)}$ 는 2차 패널자료에서의 h 번째 구의 k 번째 가구의 최종 가구가중치, n_{hk} 은 h 번째 구의 k 번째 가구 내의 응답한 가구원 수, $W_{hjk}^{(2)}$ 는 2차 패널자료에서의 h 번째 구의 k 번째 가구의 j 번째 가구원의 최종 개인가중치이다.

$$W_{hk}^{(2)} = W_{hk}^{(2')} \cdot \frac{N_h'}{\sum_{v=1}^{n_h} W_{hv}^{(2')}}$$

여기서 $W_{hk}^{(2)}$ 는 2차 패널자료에서의 h 번째 구의 k 번째 가구의 최종 가구가중치, N_h' 은 2010년 주민등록 인구현황에서의 h 번째 구의 세대 수, n_h 는 h 번째 구의 표본 가구 수이다.

나. 횡단면 가중치의 계산

횡단면 가중치와 종단면 가중치의 산출방식은 유사하다. 차이점이 있다면 2차 본조사 자료에 1차 본조사와 연속해서 응답했는지 2차 본조사에서 새로 응답했는지 여부에 대한 변수를 생성한다는 점이다(2차 연속 응답자 : 1, 2차 새로운 응답자 : 0). 횡단면 가중치도 응답자 특성을 반영하는 보조변수를 이용하여 로지스틱 모형을 설정해야 한다. 2차 본조사 자료에서는 종단면 가중값과 동일하게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역, 거주평수, 일반/아파트 가구 여부 등을 사용하였다.

로지스틱 모형을 설정하여 응답확률을 추정하고 응답확률이 추정되면 종단면 가중치와 동일하게 1차 패널의 개인가중치에 응답확률의 역수를 곱하여 최초 개인가중치를 얻는다.

횡단면 가중치와 종단면 가중치 산출에서 다른 점은, 2차 본조사에 새로 응답한 경우에 1차 본조사 가중치가 없고 이를 반영하는데 응답확률의 역수를 곱하기 전에 실시한다. 종단면 가중치의 경우는 1차 본조사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2차 본조사에 새로 응답한 경우 응답확률을 계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확률을 곱한 최초의 개인가중치를 가구 최소값 또는 전체 최소값으로 대체했다. 횡단면 가중치의 경우는 2차에 새로 응답한 경우도 응답확률이 추정되기 때문에 1차 자료의 개인가중치를 가구 최소값 또는 전체 최소값으로 대체한 후에 응답확률의 역수를 각각 곱하여 최초의 개인가중값을 계산한다.

이후의 과정은 종단면 가중치와 동일한 방식으로 최종 개인가중치와 최종 가구 가중치를 구한다.

<표 1-5> 개인가중치의 특성

조사차수	변수	표본수	합계	평균값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1차년도	P08WT_I	7,761	7,761	1.000	0.662	8.778	0.079
2차년도	P10WT_P1	6,304	6,304	1.000	0.508	6.553	0.041
	P10WT_P2	6,304	6,304	1.000	0.504	5.773	0.031

<표 1-6> 2010년 9월 주민등록 인구현황(연령 및 성별)

구	성별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합계
합 계	계	667,405	1,595,323	1,859,019	1,719,252	1,448,055	872,861	580,015	8,741,930
	남	351,852	795,038	944,419	857,097	698,870	422,495	228,841	4,298,612
	여	315,553	800,285	914,600	862,155	749,185	450,366	351,174	4,443,318
종로구	남	5,810	13,414	13,877	14,481	11,839	7,635	5,387	72,443
	여	5,024	12,857	13,247	14,377	11,867	8,540	7,701	73,613
중구	남	3,737	10,058	12,228	11,508	9,681	6,171	3,886	57,269
	여	3,360	9,525	11,080	10,191	9,576	6,882	6,065	56,679
용산구	남	6,763	17,430	23,220	20,020	15,644	10,288	7,080	100,445
	여	6,134	18,269	22,923	19,470	16,916	11,937	10,850	106,499
성동구	남	9,474	23,972	30,154	27,166	20,767	12,759	7,299	131,591
	여	8,500	23,394	28,681	24,663	21,300	14,225	11,150	131,913
광진구	남	12,844	31,931	35,173	31,651	24,866	13,969	7,412	157,846
	여	11,780	33,602	33,991	31,947	26,267	14,564	10,921	163,072
동대문구	남	11,169	30,161	33,529	29,911	25,748	17,053	9,932	157,503
	여	10,082	28,135	30,271	28,128	26,947	18,511	14,185	156,259
중랑구	남	14,641	33,337	37,866	37,370	31,645	18,379	9,341	182,579
	여	13,588	32,670	34,989	36,670	32,409	19,379	14,407	184,112
성북구	남	15,005	36,660	44,982	39,678	31,821	20,709	12,183	201,038
	여	13,479	36,476	43,273	38,805	34,336	23,187	18,274	207,830

구	성별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합계
강 북 구	남	10,903	25,215	31,318	28,247	23,847	16,818	9,665	146,013
	여	10,129	24,053	28,868	27,896	26,424	19,571	13,431	150,372
도 봉 구	남	13,486	27,526	29,463	30,997	27,375	15,625	9,187	153,659
	여	12,158	26,476	29,303	32,840	28,523	16,174	13,698	159,172
노 원 구	남	25,207	42,520	49,498	54,079	40,967	20,862	12,948	246,081
	여	22,183	41,778	51,398	57,349	43,114	24,271	22,560	262,653
은 평 구	남	16,067	33,451	43,519	39,662	32,311	21,258	12,580	198,848
	여	14,826	33,441	42,203	40,033	35,431	23,763	18,091	207,788
서대문구	남	10,477	24,959	28,879	26,730	20,920	13,864	9,452	135,281
	여	9,639	25,349	27,937	26,769	22,840	16,675	14,035	143,244
마 포 구	남	10,989	29,023	40,578	31,293	22,878	15,002	9,658	159,421
	여	10,178	32,346	40,056	30,269	25,583	17,900	14,327	170,659
양 천 구	남	22,219	35,341	37,881	47,630	35,506	17,559	8,501	204,637
	여	19,609	34,708	39,696	49,702	35,226	17,068	15,047	211,056
강 서 구	남	19,768	43,926	54,321	46,186	39,758	22,338	11,000	237,297
	여	18,123	43,985	52,819	47,700	43,579	22,737	19,138	248,081
구 로 구	남	12,889	32,171	43,699	34,406	29,514	18,949	8,845	180,473
	여	11,546	31,243	39,852	32,574	31,775	18,757	12,989	178,736
금 천 구	남	8,455	19,538	22,752	22,396	18,035	10,868	5,253	107,297
	여	7,549	17,553	19,932	20,919	18,050	11,045	7,895	102,943
영등포구	계	12,274	30,137	40,976	34,164	28,292	17,811	9,936	173,590
	남	10,768	29,779	37,969	31,607	29,650	18,589	14,344	172,706
동 작 구	여	12,049	33,551	39,940	30,494	25,360	17,563	9,866	168,823
	남	10,996	33,899	37,590	30,348	29,302	19,480	14,369	175,984
관 악 구	여	14,299	52,675	61,117	39,538	32,236	23,252	11,323	234,440
	남	12,885	51,421	49,551	37,143	36,824	24,825	15,825	228,474
서 초 구	여	15,557	31,718	37,480	35,231	28,221	17,558	8,497	174,262
	남	14,090	35,018	41,254	37,569	31,686	17,710	12,304	189,631
강 남 구	여	24,272	43,311	47,966	46,601	37,242	21,207	9,688	230,287
	남	20,494	50,922	53,175	52,662	41,277	21,476	15,558	255,564
송 파 구	여	24,711	53,064	60,444	56,910	47,758	25,747	11,646	280,280
	남	22,582	55,842	62,837	59,688	51,452	24,819	19,318	296,538
강 동 구	여	18,787	39,949	43,559	40,748	36,639	19,251	8,276	207,209
	남	15,851	37,544	41,705	42,836	38,831	18,281	14,692	209,740

<표 1-7> 2010년 9월 주민등록 인구현황(총인구수 및 세대수)

	총인구수	세대수	세대당 인구	남자 인구수	여자 인구수
종로구	166,451	73,803	2.26	83,093	83,358
중구	129,203	58,286	2.22	65,042	64,161
용산구	237,793	107,200	2.22	116,315	121,478
성동구	306,100	126,163	2.43	153,327	152,773
광진구	371,691	155,735	2.39	184,026	187,665
동대문구	360,629	153,252	2.35	181,519	179,110
중랑구	423,592	171,676	2.47	212,121	211,471
성북구	478,388	194,198	2.46	236,826	241,562
강북구	341,342	137,993	2.47	169,372	171,970
도봉구	365,433	137,696	2.65	180,951	184,482
노원구	607,491	224,385	2.71	297,408	310,083
은평구	476,016	189,153	2.52	234,466	241,550
서대문구	322,147	135,026	2.39	157,714	164,433
마포구	384,716	165,664	2.32	187,494	197,222
양천구	496,829	180,503	2.75	247,217	249,612
강서구	569,979	221,238	2.58	281,072	288,907
구로구	420,910	167,373	2.51	212,531	208,379
금천구	242,738	100,255	2.42	124,006	118,732
영등포구	401,924	166,932	2.41	202,385	199,539
동작구	398,581	164,054	2.43	196,556	202,025
관악구	526,641	242,432	2.17	267,347	259,294
서초구	427,982	166,551	2.57	207,358	220,624
강남구	562,417	228,966	2.46	270,498	291,919
송파구	680,338	259,835	2.62	333,694	346,644
강동구	487,225	185,847	2.62	244,077	243,148

3. 2차 조사 참여 가구와 비참여 가구 특성 비교

1차 본조사와 2차 본조사 사이에 체계적인 탈락이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패널원가구 중 2차 조사에 참여한 가구와 참여하지 않은 가구의 개괄적인 특성을 비교하였다.

먼저 가구규모(가구원 수)에 따른 탈락률을 보면,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었으나 단독가구(1인 가구)의 탈락률이 약간 높았다. 이는 단독가구의 주거 이동을 포함한 생활상의 변화가 나타나기가 쉽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1-8> 가구규모(가구원 수) 분포

단위 : 가구수(%)

	패널원가구(1차 본조사 참여)		2차 본조사 미참여 가구		2차 본조사 탈락률(%)
	사례수 (가구)	비율	사례수 (가구)	비율	
■ 전 체 ■	3,665	(100.0)	788	(100.0)	21.5
1명	626	(17.1)	151	(19.2)	24.1
2명	921	(25.1)	194	(24.6)	21.1
3명	794	(21.7)	175	(22.2)	22.0
4명	982	(26.8)	203	(25.8)	20.7
5명 이상	342	(9.3)	65	(8.2)	19.0

다음으로 가족 구성원의 특징에 따른 가구유형을 비교해보면, 일반가구의 탈락률이 노인가구나 장애인가구에 비해 높아서, 일반가구의 주거이동이나 응답거부율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1-9> 일반가구,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장애노인가구 비율

단위 : 가구수(%)

	패널원가구(1차 본조사 참여)		2차 본조사 미참여 가구		2차 본조사 탈락률(%)
	사례수(가구)	비율	사례수(가구)	비율	
▣ 전 체 ▣	3,665	(100.0)	788	(100.0)	21.5
일반가구	2,788	(76.1)	650	(82.5)	23.3
노인가구	495	(13.5)	78	(9.9)	15.8
장애인 가구	296	(8.1)	42	(5.3)	14.2
장애노인 가구	86	(2.3)	18	(2.3)	20.9

다음으로 가구주의 특성을 비교해보면, 탈락률의 성별 차이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연령이 낮고 고학력일수록 탈락률이 높아졌다.

<표 1-10> 가구주 특성

단위 : 가구수(%)

	1차 조사 전체가구		2차 본조사 미참여 가구		2차 본조사 탈락률(%)
	사례수(가구)	비율	사례수(가구)	비율	
▣ 전 체 ▣	3,665	(100.0)	788	(100.0)	
성별					
남성	2,748	(75.0)	588	(74.6)	21.4
여성	917	(25.0)	200	(25.4)	21.8
연령					
18-29세	201	(5.5)	75	(9.5)	37.3
30대	691	(18.9)	167	(21.2)	24.2
40대	815	(22.2)	187	(23.7)	22.9
50대	676	(18.4)	137	(17.4)	20.3
60-64세	291	(7.9)	66	(8.4)	22.7
65세 이상	991	(27.0)	156	(19.8)	15.7
학력					
초등졸 이하	599	(16.3)	100	(12.7)	16.7
중학교	361	(9.8)	58	(7.4)	16.1
고등학교	1,043	(28.5)	222	(28.2)	21.3
전문대학	213	(5.8)	46	(5.8)	21.6
4년제 대학	1,210	(33.0)	294	(37.3)	24.3
대학원 석사 이상	239	(6.5)	68	(8.6)	28.5

다음으로 가구 총소득을 비교해보면, 1차 조사 전체가구의 가구 총소득의 중앙값은 220만원이고 평균은 288만원이었고, 2차 본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의 중앙값은 221만원이고 평균은 301.2만원으로, 2차 본조사 미참여 가구의 총소득의 평균이 2차 본조사 참여 가구의 총소득의 평균보다도 높았다. 1차 본조사와 2차 본조사 사이의 소득 증가를 고려한다면, 2차 본조사 미참여 가구의 소득수준은 2차 본조사 참여 가구의 소득수준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중위소득 기준으로 구분해볼 때, 중위소득 151% 이상의 고소득가구에서 2차 본조사 참여 가구의 총소득의 평균이 2차 본조사 미참여 가구보다 더 낮아서, 고소득 가구들의 탈락률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1-11> 가구 총 소득

단위 : 만원

	1차 조사 전체가구 (2008년 기준)			2차 본조사 미참여 가구 (2008년 기준)			2차 본조사 참여 가구 (2009년 기준)		
	중앙값	평균	편차	중앙값	평균	편차	중앙값	평균	편차
■ 전 체 ■	220.0	287.8	288.9	221.0	301.2	333.7	209.0	275.5	242.6
중위소득 50% 이하	60.0	61.1	31.1	60.5	60.6	34.3	60.0	60.1	27.6
중위소득 51-150% 이하	201.0	215.4	62.5	204.0	216.7	61.9	200.0	207.1	61.8
중위소득 151% 이상	500.0	575.5	358.9	500.0	605.6	453.3	500.0	540.5	255.1

※ 총소득 : 경상소득 + 비경상소득(기타소득)

제 2장



가구용 설문 응답 결과

II. 가구용 설문 응답 결과

1. 가구 일반특성 및 분석변수 선정

1) 가구규모

응답가구 중 16.3%에 해당하는 471가구는 가구원수가 1명인 단독가구였고,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가장 비율이 높은 가구형태는 4인 가구로 전체가구의 28.2%에 해당하는 817가구였다. 만18세 미만 아동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전체가구의 37.0%에 해당하는 1,069가구였다. 노인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38.6%에 해당하는 1,117가구였고, 이 중 268가구(전체 응답가구의 9.2%)는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인 독거노인가구였다.

<표 II-1> 가구규모별 가구원 연령분포

단위 : 가구수(%)

항 목	전체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전체가구	2,893(100.0)	471(16.3)	716(24.7)	597(20.6)	817(28.2)	292(10.1)
아동가구원* 수						
0명	1,824(100.0)	471(25.8)	694(38.0)	343(18.8)	274(15.0)	42(2.3)
1명	454(100.0)	0(0.0)	22(4.8)	237(52.2)	135(29.7)	60(13.2)
2명	525(100.0)	0(0.0)	0(0.0)	17(3.2)	406(77.3)	102(19.4)
3명	81(100.0)	0(0.0)	0(0.0)	0(0.0)	2(2.5)	79(97.5)
4명	6(100.0)	0(0.0)	0(0.0)	0(0.0)	0(0.0)	6(100.0)
5명 이상	3(100.0)	0(0.0)	0(0.0)	0(0.0)	0(0.0)	3(100.0)

항 목	전체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만18세 -64세 가구원 수						
0명	529(100.0)	268(50.7)	250(47.3)	10(1.9)	1(0.2)	0(0.0)
1명	549(100.0)	203(37.0)	225(41.0)	105(19.1)	15(2.7)	1(0.2)
2명	1,109(100.0)	0(0.0)	241(21.7)	295(26.6)	439(39.6)	134(12.1)
3명	406(100.0)	0(0.0)	0(0.0)	187(46.1)	148(36.5)	1(17.5)
4명	277(100.0)	0(0.0)	0(0.0)	0(0.0)	214(77.3)	63(22.7)
5명 이상	23(100.0)	0(0.0)	0(0.0)	0(0.0)	0(0.0)	23(100.0)
노인가구원** 수						
0명	1,776(100.0)	203(11.4)	258(14.5)	428(24.1)	724(40.8)	163(9.2)
1명	727(100.0)	268(36.9)	213(29.3)	79(10.9)	67(9.2)	100(13.8)
2명	381(100.0)	0(0.0)	245(64.3)	85(22.3)	23(6.0)	28(7.3)
3명	9(100.0)	0(0.0)	0(0.0)	5(55.6)	3(33.3)	1(11.1)

* 아동가구원 : 만18세 미만 가구원

** 노인가구원 : 만65세 이상 가구원

응답대상가구의 가구원수의 평균은 2.95명으로 『2009 서울서베이』에서 조사된 2009년 서울시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인 2.89명과 유사하였다.

2) 연령비

성인가구원이 있는 가구 2,364가구를 대상으로 연령비 기준으로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인가구원수 대비 아동가구원수가 100%를 초과한 가구는 4.4%였고, 성인가구원수 대비 노인가구원수 100% 초과가구는 3.9%였으며, 노인 및 아동가구원수 대비 성인가구원수 100% 초과가구는 11.0%였다.

<표 II-2> 연령비별 가구 특성

단위 : 가구수(%)

구분	아동가구원 대비 성인가구원 비율	노인가구원 대비 성인가구원 비율	노인 및 아동가구원 대비 성인가구원 비율
100% 이하 가구	2,261(95.6)	2,272(96.1)	2,103(89.0)
100% 초과 가구	103(4.4)	92(3.9)	261(11.0)

[Base : 성인가구원이 있는 2,364가구]

3) 가구원 특성에 의한 가구형태

전체가구 중 가구원의 특성에 의해 집중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의 비율을 단독가구, 한부모가구, 노인가구, 장애인가구로 나누어 살펴보면, 단독가구가 전체가구의 16.3%, 한부모가구가 전체가구의 3.1%, 노인가구가 17.9%, 장애인가구가 13.3%였다. 노인가구의 상당수가 단독가구임을 고려해볼 때,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가구형태는 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라고 볼 수 있다.

<표 II-3> 가구원 특성에 의한 가구형태

단위 : 가구수(%)

단독가구	한부모 가구	노인가구 (만65세 이상 가구원으로만 구성)	장애인가구 (장애인가구원이 있는 가구)	장애노인가구 (장애인가구원이 있는 노인가구)
471(16.3)	91(3.1)	428(14.8)	296(10.2)	90(3.1)

[Base : : 전체가구]

4) 소득수준별 가구구분

전체가구의 소득수준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위소득 51-150% 이하에 속하는 중산층 가구가 42.3%(1,225 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소득 151% 이상이 고소득 가구는 31.9%(922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인 빈곤 가구는 25.8%(746 가구)로 나타났다.

<표 II-4> 중위소득 기준 가구구분

단위 : 가구수(%)

전체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150% 이하	중위소득 151% 이상
2,893(100.0)	746(25.8)	1,225(42.3)	922(31.9)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는 7.8%(226 가구)로 「2009년 서울지표1」에서 나타난 서울시 수급가구 비율 2.9%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표 II-5>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

단위 : 가구수(%)

전체	수급가구	비수급가구
2,893(100.0)	226(7.8)	2,667(92.2)

5)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전체 응답가구의 가구주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가구주가 25.2%였고, 연령은 65세

1) 서울시복지정책과에서 발표한 2009년 서울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121,931가구이고, 2009년 서울시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나타난 서울시 전체세대수는 4,116,660가구임.

이상이 31.0%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등 고등교육 이수자가 43.6%로 나타났다. 장애인가구주는 8%였고, 유배우 가구주는 71.3%였다, 가구주의 54.1%가 취업해 있었으며, 51.2%가 종교가 있었고, 비동거 가구주는 0.7%였다.

<표 II-6>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가구수, %

항목	전체	2,893	100.0
성별	남성	2,163	74.8
	여성	730	25.2
연령	18-29세	99	3.4
	30대	462	16.0
	40대	647	22.4
	50대	554	19.1
	60-64세	234	8.1
	65세 이상	897	31.0
학력	초등졸 이하	504	17.4
	중학교	298	10.3
	고등학교	828	28.6
	전문대학	163	5.6
	4년제 대학	926	32.0
	대학원 석사 이상	174	6.0
장애구분	비장애인	2,661	92.0
	중증(1,2급)	64	2.2
	경증(3급 이상)	145	5.0
	비등록	23	0.8

항목	전체	2,893	100.0
혼인상태	미혼	228	7.9
	유배우	2,062	71.3
	이혼	160	5.5
	사별	399	13.8
	별거	44	1.5
취업여부	취업자	1,564	54.1
	비취업자	1,329	45.9
종교여부	종교 없음	1,411	48.8
	종교 있음	1,482	51.2
동거여부	동거	2,873	99.3
	비동거	20	0.7

6) 분석변수 선정

가구용 자료 분석에 있어서는 가구의 일반적인 특성과 관련된 가구원수(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가구형태(일반가구,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장애인노인가구), 중위소득 구분(빈곤가구, 중산층가구, 고소득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수급가구, 비수급가구)를 기본적인 분석변수로 선정하였다. 이는 서울시복지패널의 주요 목적이 서울시민의 복지관련 정책육구 및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서울시 복지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는 데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사회복지정책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변수를 우선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가구원수와 가구형태는 소득수준의 산정과 복지서비스 수급여부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고, 중위소득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는 상대적 빈곤선과 절대적 빈곤선에 의한 구분을 보여줌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주제인 빈곤에 입각하여 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기타 가구주의 학력, 혼인상태, 취업여부 등의 변수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조사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지는 사람(breadwinner)이 아닌 가구원 중 가장 연장자인 남성을 가구주로 응답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력, 혼인상태 및 취업 여부와 같은 가구주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들이 가구 전체의 경제적 상황이나 복지욕구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대 가구의 경우, 할아버지가 가구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가구주로 분류되지 않은 아들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이 가구 전체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추후 조사에서는 가구주를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정의하여 조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2. 소득

가구의 월평균 소득에 따른 특성들을 비교해보면 다음 [표II-7]과 같다. 전체적으로 2,893가구 가운데 100만원 미만인 가구가 667가구(23.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200만원 미만이 610가구(21.1%)였으며 500만원 이상인 가구는 469가구(16.2%)로 나타났고 전체 응답자 평균 월소득은 27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에 따른 월평균소득을 비교해보면 4명으로 구성된 가구가 월평균 410만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았으며 가구원이 5명 이상인 가구가 399만원, 3명인 가구는 290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원수가 2명인 경우는 178만원, 1명인 경우는 96만원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소득 구간별로 살펴본 결과 1인 단독가구의 대부분(69.9%, 329가구)이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4인 가구는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12%정도였으며 400만원-500만원 사이가 16.3%(133가구), 500만원 이상 30.6%(250가구)를 차지해 소득수준과 가구규모가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형태에 따른 월평균소득을 보면, 일반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이

넘는 경우가 21.5%(447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0-300만원 미만은 20.3%(423가구), 100-200만원 미만은 19.5%(405가구), 300-400만원 미만은 16.2%(337가구) 순으로 전체적으로 소득분포별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반면 노인가구와 장애인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월평균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가구의 경우 67.8%(290가구)가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었으며 100-200만원 미만도 21.7%(93가구)인데 반해 200만원 넘는 가구가 10% 정도로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25개 자치구별로 살펴본 월평균 소득은 지역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대부분 한강 남쪽에 위치해 있었으며 그 가운데 강남구가 41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양천구 402만원, 송파구 364만원, 서초구 325만원, 동작구 30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지역은 총 3개구로 성북구가 186만원, 중랑구 191만원, 용산구 198만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강북구와 도봉구도 각각 211만원, 220만원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월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이 2배 이상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자치구별로 차별적인 소득 지원 서비스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7> 가구 월평균 소득(B1)

단위 : 가구수(%)

	전체	100 만원 미만	100-200 만원 미만	200-300 만원 미만	300-400 만원 미만	400-500 만원 미만	500 만원 이상	중앙값 (만원)	평균 (만원)	편차 (만원)
□ 항목 □	2,893 (100.0)	667 (23.1)	610 (21.1)	489 (16.9)	378 (13.1)	280 (9.7)	469 (16.2)	209.0	275.5	242.6
가구원 수										
1명	471 (100.0)	329 (69.9)	74 (15.7)	52 (11.0)	9 (1.9)	3 (0.6)	4 (0.8)	60.0	95.6	91.8
2명	716 (100.0)	249 (34.8)	253 (35.3)	91 (12.7)	58 (8.1)	30 (4.2)	35 (4.9)	126.0	178.2	173.3
3명	597 (100.0)	58 (9.7)	168 (28.1)	113 (18.9)	90 (15.1)	77 (12.9)	91 (15.2)	240.0	289.5	201.7
4명	817 (100.0)	18 (2.2)	87 (10.6)	176 (21.5)	153 (18.7)	133 (16.3)	250 (30.6)	351.0	410.1	281.4

	전체	100 만원 미만	100-200 만원 미만	200-300 만원 미만	300-400 만원 미만	400-500 만원 미만	500 만원 이상	중앙값 (만원)	평균 (만원)	편차 (만원)
▣ 항목 ▣	2,893 (100.0)	667 (23.1)	610 (21.1)	489 (16.9)	378 (13.1)	280 (9.7)	469 (16.2)	209.0	275.5	242.6
5명 이상	292 (100.0)	13 (4.5)	28 (9.6)	57 (19.5)	68 (23.3)	37 (12.7)	89 (30.5)	350.0	398.7	223.8
가구형태										
일반가구	2,079 (100.0)	211 (10.1)	405 (19.5)	423 (20.3)	337 (16.2)	256 (12.3)	447 (21.5)	300.0	332.3	251.3
노인가구	428 (100.0)	290 (67.8)	93 (21.7)	30 (7.0)	9 (2.1)	1 (0.2)	5 (1.2)	64.0	95.2	99.8
장애인 가구	296 (100.0)	99 (33.4)	91 (30.7)	35 (11.8)	31 (10.5)	23 (7.8)	17 (5.7)	150.0	196.3	171.3
장애노인 가구	90 (100.0)	67 (74.4)	21 (23.3)	1 (1.1)	1 (1.1)	0 (0.0)	0 (0.0)	68.0	79.6	49.5
거주지역										
종로구	91 (100.0)	23 (25.3)	24 (26.4)	13 (14.3)	9 (9.9)	7 (7.7)	15 (16.5)	189.0	269.4	262.3
중구	86 (100.0)	26 (30.2)	11 (12.8)	21 (24.4)	6 (7.0)	7 (8.1)	15 (17.4)	209.0	251.5	194.8
용산구	81 (100.0)	30 (37.0)	21 (25.9)	10 (12.3)	8 (9.9)	4 (4.9)	8 (9.9)	140.0	197.6	212.3
성동구	104 (100.0)	20 (19.2)	27 (26.0)	18 (17.3)	11 (10.6)	11 (10.6)	17 (16.3)	200.0	280.2	238.9
광진구	91 (100.0)	23 (25.3)	25 (27.5)	13 (14.3)	12 (13.2)	6 (6.6)	12 (13.2)	180.0	257.2	268.5
동대문구	100 (100.0)	18 (18.0)	28 (28.0)	22 (22.0)	17 (17.0)	8 (8.0)	7 (7.0)	200.0	239.2	237.4
중랑구	107 (100.0)	46 (43.0)	19 (17.8)	16 (15.0)	10 (9.3)	8 (7.5)	8 (7.5)	140.0	190.5	170.4
성북구	120 (100.0)	41 (34.2)	36 (30.0)	15 (12.5)	10 (8.3)	12 (10.0)	6 (5.0)	150.0	186.0	146.8
강북구	102 (100.0)	37 (36.3)	20 (19.6)	20 (19.6)	7 (6.9)	9 (8.8)	9 (8.8)	163.5	210.7	178.5
도봉구	102 (100.0)	38 (37.3)	17 (16.7)	15 (14.7)	12 (11.8)	9 (8.8)	11 (10.8)	163.5	219.8	182.1
노원구	153 (100.0)	45 (29.4)	31 (20.3)	20 (13.1)	23 (15.0)	13 (8.5)	21 (13.7)	200.0	254.1	209.5
은평구	115 (100.0)	32 (27.8)	25 (21.7)	23 (20.0)	15 (13.0)	10 (8.7)	10 (8.7)	200.0	229.8	179.4
서대문구	88 (100.0)	16 (18.2)	20 (22.7)	14 (15.9)	16 (18.2)	6 (6.8)	16 (18.2)	238.5	277.3	202.1

	전체	100 만원 미만	100-200 만원 미만	200-300 만원 미만	300-400 만원 미만	400-500 만원 미만	500 만원 이상	중앙값 (만원)	평균 (만원)	편차 (만원)
▣ 항목 ▣	2,893 (100.0)	667 (23.1)	610 (21.1)	489 (16.9)	378 (13.1)	280 (9.7)	469 (16.2)	209.0	275.5	242.6
마포구	98 (100.0)	25 (25.5)	23 (23.5)	13 (13.3)	9 (9.2)	12 (12.2)	16 (16.3)	200.0	263.7	210.5
양천구	118 (100.0)	15 (12.7)	13 (11.0)	16 (13.6)	23 (19.5)	14 (11.9)	37 (31.4)	300.0	402.2	415.7
강서구	135 (100.0)	31 (23.0)	32 (23.7)	27 (20.0)	15 (11.1)	9 (6.7)	21 (15.6)	200.0	254.6	200.8
구로구	110 (100.0)	25 (22.7)	18 (16.4)	18 (16.4)	22 (20.0)	15 (13.6)	12 (10.9)	250.0	278.2	212.9
금천구	124 (100.0)	20 (16.1)	37 (29.8)	27 (21.8)	15 (12.1)	11 (8.9)	14 (11.3)	200.0	252.4	185.5
영등포구	127 (100.0)	27 (21.3)	22 (17.3)	20 (15.7)	17 (13.4)	17 (13.4)	24 (18.9)	250.0	290.4	251.4
동작구	119 (100.0)	25 (21.0)	26 (21.8)	13 (10.9)	20 (16.8)	13 (10.9)	22 (18.5)	250.0	305.9	341.4
관악구	157 (100.0)	27 (17.2)	31 (19.7)	36 (22.9)	25 (15.9)	19 (12.1)	19 (12.1)	250.0	273.7	189.4
서초구	125 (100.0)	17 (13.6)	22 (17.6)	24 (19.2)	16 (12.8)	15 (12.0)	31 (24.8)	280.0	325.0	225.9
강남구	122 (100.0)	10 (8.2)	16 (13.1)	22 (18.0)	18 (14.8)	13 (10.7)	43 (35.2)	350.0	414.5	308.4
송파구	152 (100.0)	20 (13.2)	28 (18.4)	24 (15.8)	20 (13.2)	19 (12.5)	41 (27.0)	300.0	364.0	263.2
강동구	120 (100.0)	19 (15.8)	30 (25.0)	23 (19.2)	12 (10.0)	8 (6.7)	28 (23.3)	240.5	310.5	243.7
서울 이외 지역	4 (100.0)	1 (25.0)	1 (25.0)	1 (25.0)	1 (25.0)	0 (0.0)	0 (0.0)	175.0	186.5	86.8

[Base : 전체 가구]

가구 총소득의 중앙값은 209만원이었고, 평균은 278만원이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빈곤가구의 소득평균은 60만원으로 중위소득 151% 이상 고소득가구의 11.1%에 그쳤다. 소득유형별 총소득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의 평균이 30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을 포함한 재산소득의 평균이 189만원이었다.

<표 II-8> 가구 총 소득(B1)

	중앙값(만원)	평균(만원)	편차(만원)
■ 전 체 ■	209.0	275.5	242.6
중위소득 50% 이하	60.0	60.1	27.6
중위소득 51-150% 이하	200.0	207.1	61.8
중위소득 151% 이상	500.0	540.5	255.1

※ 총소득 : 경상소득 + 비경상소득(기타소득)

가구 총소득의 중앙값은 209.0원으로 『2009 서울서베이』에 나타난 중간값 300만원에 비해 낮았다.

<표 II-9> 소득유형별 총 소득(B1)

	중앙값(만원)	평균(만원)	편차(만원)	
가구 총 소득	209.0	275.5	242.6	
경상소득	임금소득	250.0	303.5	
	근로소득			
	재산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기타			
	개인연금			
비경상소득	기타 소득	20.0	87.7	255.9

다음은 경상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을 살펴본 결과이다. [표Ⅱ-10]과 같이 근로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 2,893가구 가운데 2,185가구(75.5%)인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도 708가구(24.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었다고 응답한 2,185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30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규모에 따라 1인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3.1%(297가구)로 더 많았으며 2인 가구도 43.2%(309가구)가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3인 가구와 4인, 5인 이상 가구는 대부분이 근로소득이 있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에 따라 근로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가구는 노인가구로 77.1%(330가구)를 차지하였으며 장애인 가구도 33.4%(99가구)로 나타나 일반가구 비율인 9.7%(201가구)보다 각각 8배, 3배 정도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중위소득에 따른 차이도 크게 나타났는데 50% 이하 가구에서는 71.6%(534가구)가 근로소득이 없었다고 응답한 반면 51-150% 이하 가구는 87.3%(1,070가구)가 근로소득이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중위소득 151% 이상인 가구에서는 97.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근로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을 비교해 보면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는 61만원, 51-150% 이하는 193만원, 151% 이상인 가구는 492만원으로 소득집단별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유무는 수급형태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 수급가구 가운데 27.4%(62가구)만이 근로소득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비수급가구는 79.6%(2,123가구)가 근로소득이 있었다고 하였다.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74만원 정도였으며 근로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비수급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310만원으로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표 II-10> 월평균 근로소득(B1-1)

단위 : 가구수(%)

	전체	있었다	없었다	중앙값 (만원)	평균 (만원)	편차 (만원)
□ 항목 □	2,893(100.0)	2,185(75.5)	708(24.5)	250.0	303.5	215.0
가구원 수						
1명	471(100.0)	174(36.9)	297(63.1)	130.0	140.8	106.4
2명	716(100.0)	407(56.8)	309(43.2)	140.0	191.8	182.4
3명	597(100.0)	526(88.1)	71(11.9)	250.0	285.1	189.1
4명	817(100.0)	797(97.6)	20(2.4)	350.0	381.2	218.5
5명 이상	292(100.0)	281(96.2)	11(3.8)	345.0	380.1	210.1
가구형태						
일반가구	2,079(100.0)	1,878(90.3)	201(9.7)	300.0	326.2	214.5
노인가구	428(100.0)	98(22.9)	330(77.1)	68.5	78.0	67.6
장애인 가구	296(100.0)	197(66.6)	99(33.4)	150.0	213.2	173.9
장애노인 가구	90(100.0)	12(13.3)	78(86.7)	59.0	74.4	55.1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746(100.0)	212(28.4)	534(71.6)	60.0	60.5	26.6
중위소득 51-150% 이하	1,225(100.0)	1,070(87.3)	155(12.7)	200.0	193.0	73.0
중위소득 151% 이상	922(100.0)	903(97.9)	19(2.1)	450.0	491.5	204.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226(100.0)	62(27.4)	164(72.6)	70.0	73.7	43.4
비수급가구	2,667(100.0)	2,123(79.6)	544(20.4)	280.0	310.2	214.3

[Base : 전체 가구/중앙값, 평균, 편차는 월평균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서울시복지패널에서 정의한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 주식의 매매차익 등이 포함한다. 그러나 자산의 가치가 변화하였더라도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은 경우(주식의 시세는 높아졌지만 실제로 주식을 사고 팔지는 않은 경우)는 금융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표II-11]를 보면 대부분(2,733 가구, 94.5%)의 가구가 금융소득이 없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금융소득이 있었다라고

응답한 160가구(5.5%)의 평균 금융소득은 68만원으로 전체 총소득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의 경우 가구원 수나 가구형태, 중위소득, 수급여부에 따른 항목별 차이가 없이 거의 모든 가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1> 월평균 금융소득(B2-1)

단위 : 가구수(%)

항목	전체	있었다	없었다	중앙값 (만원)	평균 (만원)	편차 (만원)
합계	2,893(100.0)	160(5.5)	2,733(94.5)	50.0	68.3	68.5
가구원 수						
1명	471(100.0)	18(3.8)	453(96.2)	40.0	70.2	68.9
2명	716(100.0)	43(6.0)	673(94.0)	50.0	69.8	66.7
3명	597(100.0)	34(5.7)	563(94.3)	30.0	43.6	38.3
4명	817(100.0)	50(6.1)	767(93.9)	50.0	79.5	83.3
5명 이상	292(100.0)	15(5.1)	277(94.9)	50.0	80.5	66.4
가구형태						
일반가구	2,079(100.0)	114(5.5)	1,965(94.5)	50.0	69.5	72.4
노인가구	428(100.0)	25(5.8)	403(94.2)	40.0	62.2	55.9
장애인 가구	296(100.0)	13(4.4)	283(95.6)	50.0	64.0	57.0
장애노인 가구	90(100.0)	8(8.9)	82(91.1)	55.0	77.5	73.7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746(100.0)	24(3.2)	722(96.8)	30.0	38.2	34.1
중위소득 51-150% 이하	1,225(100.0)	38(3.1)	1,187(96.9)	40.0	59.9	57.7
중위소득 151% 이상	922(100.0)	98(10.6)	824(89.4)	50.0	79.0	76.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226(100.0)	1(0.4)	225(99.6)	7.0	7.0	0.0
비수급가구	2,667(100.0)	159(6.0)	2,508(94.0)	50.0	68.7	68.6

[Base : 전체 가구/중앙값, 평균, 편차는 금융소득이 있는 가구]

서울시복지패널에서는 부동산 소득을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집세, 토지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등이 포함하였으며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받은 전세금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부동산소득이 있는 가구는 274가구로 9.4%를 차지하였고 월평균 12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소득은 가구규모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2인 가구에서 부동산 소득이 14%로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소득규모만으로 보았을 때 4인 가구가 158만원으로 크게 나타났다.

가구형태에 따른 부동산소득을 살펴보면 노인가구와 노인과 장애인이 혼재된 가구에서 부동산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4.5%(62가구), 18.9%(17가구)를 차지하였으나 절대적인 가구규모로는 100가구도 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미한 가구 특성으로 보기에는 한계를 보인다.

<표 II-12> 월평균 부동산소득(B3-1)

단위 : 가구수(%)

	전체	있었다	없었다	중앙값 (만원)	평균 (만원)	편차 (만원)
□ 항목 □	2,893(100.0)	274(9.5)	2,619(90.5)	80.0	120.4	137.1
가구원 수						
1명	471(100.0)	31(6.6)	440(93.4)	70.0	81.6	58.0
2명	716(100.0)	100(14.0)	616(86.0)	80.0	122.8	134.3
3명	597(100.0)	53(8.9)	544(91.1)	70.0	93.3	79.5
4명	817(100.0)	63(7.7)	754(92.3)	100.0	157.9	194.8
5명 이상	292(100.0)	27(9.2)	265(90.8)	100.0	122.0	121.7
가구형태						
일반가구	2,079(100.0)	169(8.1)	1,910(91.9)	100.0	129.8	152.2
노인가구	428(100.0)	62(14.5)	366(85.5)	80.0	119.6	121.3
장애인 가구	296(100.0)	26(8.8)	270(91.2)	70.0	104.0	96.4
장애노인 가구	90(100.0)	17(18.9)	73(81.1)	60.0	56.1	28.9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746(100.0)	52(7.0)	694(93.0)	60.0	58.8	21.1
중위소득 51-150% 이하	1,225(100.0)	107(8.7)	1,118(91.3)	80.0	98.0	63.5
중위소득 151% 이상	922(100.0)	115(12.5)	807(87.5)	100.0	169.1	190.9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226(100.0)	0(0.0)	226(100.0)	0.0	0.0	0.0
비수급가구	2,667(100.0)	274(10.3)	2,393(89.7)	80.0	120.4	137.1

[Base : 전체 가구/중앙값, 평균, 편차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가구]

다음은 사적이전과 관련하여 생활비나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가구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 친척, 친지로부터 받는 지원금 여부를 살펴보았다. 사적이전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2,893가구 가운데 581가구(20.1%)였으며 평균 47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규모에 따른 사적이전소득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인 단독가구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1.8%(197가구)였으며 2인 가구가 33.1%(237가구), 3인 가구가 12.7%(76가구), 4인 가구가 6.6%(54가구), 5인 이상 가구가 5.8%(17가구) 순으로 나타나 가구규모가 작을수록 사적이전소득 경험을 가진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구규모가 큰 가구의 경우 가구 안에서 소득을 충당하고 있지만 독거노인가구처럼 가구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자녀나 친지로부터 받는 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노인가구에서 사적이전소득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52.8%, 226가구)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또한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에서 사적이전소득이 있는 비율이 45.0%(336가구)로 중위소득 51-150% 이하(15.8%)와 151% 이상인 가구(5.5%)보다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빈곤가구의 사적이전 경험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급여부에 따른 사적이전소득 차이는 적게 나타났다.

<표 II-13> 월평균 사적이전소득(B4)

단위 : 가구수(%)

	전체	있다	없다	중앙값 (만원)	평균 (만원)	편차 (만원)
■ 항목 ■	2,893(100.0)	581(20.1)	2,312(79.9)	40.0	47.1	42.1
가구원 수						
1명	471(100.0)	197(41.8)	274(58.2)	30.0	42.2	39.2
2명	716(100.0)	237(33.1)	479(66.9)	50.0	50.7	42.1
3명	597(100.0)	76(12.7)	521(87.3)	40.0	51.6	48.0
4명	817(100.0)	54(6.6)	763(93.4)	30.0	47.2	43.5
5명 이상	292(100.0)	17(5.8)	275(94.2)	30.0	34.4	35.1
가구형태						
일반가구	2,079(100.0)	250(12.0)	1,829(88.0)	40.0	52.6	50.9

	전체	있다	없다	증양값 (만원)	평균 (만원)	편차 (만원)
노인가구	428(100.0)	226(52.8)	202(47.2)	30.0	42.0	34.4
장애인 가구	296(100.0)	62(20.9)	234(79.1)	37.5	42.2	32.8
장애노인 가구	90(100.0)	43(47.8)	47(52.2)	50.0	49.4	28.9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746(100.0)	336(45.0)	410(55.0)	32.5	38.9	25.7
중위소득 51-150% 이하	1,225(100.0)	194(15.8)	1,031(84.2)	50.0	60.2	52.9
중위소득 151% 이상	922(100.0)	51(5.5)	871(94.5)	30.0	51.1	64.4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226(100.0)	40(17.7)	186(82.3)	14.0	18.8	17.5
비수급가구	2,667(100.0)	541(20.3)	2,126(79.7)	40.0	49.2	42.6

[Base : 전체 가구/증양값, 평균, 편차는 월평균 사적이전소득이 있는 가구]

공적이전소득에 대해 살펴보면 상병수당, 산재보험수당, 장애수당, 노령수당, 다른 사회보험수당, 아동 및 가족수당, 실업수당, 공공부조 등을 모두 포괄한 소득을 산정하였으며 공적이전소득이 있는 가구가 1,126가구로 전체 2,893가구 가운데 38.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값은 40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항목별 공적이전소득의 차이를 살펴보면, 노인 또는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와 저소득 가구, 수급가구에서의 공적이전소득을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구원 수의 경우 4인 가구에서 공적이전소득을 경험한 가구 비율이 20.0%(163가구)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1인 단독가구는 절반 이상(53.5%, 252가구)이 공적이전소득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구형태에서는 일반가구를 제외하고는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장애노인가구에서 절반 이상이 공적이전소득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중위소득 기준으로는 빈곤(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서 64.5%(481가구)가 공적이전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1-150% 이하가 38.1%(467가구), 151% 이상이 19.3%(178가구)를 차지하였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가구는 100%(226가구) 모두 공적이전소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4> 월평균 공적이전소득(B5)

단위 : 가구수(%)

	전체	있었다	없었다	증양값 (만원)	평균 (만원)	편차 (만원)
■ 항목 ■	2,893(100.0)	1,126(38.9)	1,767(61.1)	23.0	39.8	55.1
가구원 수						
1명	471(100.0)	252(53.5)	219(46.5)	24.5	30.2	27.2
2명	716(100.0)	376(52.5)	340(47.5)	28.0	45.8	64.3
3명	597(100.0)	202(33.8)	395(66.2)	23.5	46.0	62.5
4명	817(100.0)	163(20.0)	654(80.0)	21.0	45.2	65.5
5명 이상	292(100.0)	133(45.5)	159(54.5)	14.0	25.3	30.2
가구형태						
일반가구	2,079(100.0)	566(27.2)	1,513(72.8)	20.0	36.5	53.8
노인가구	428(100.0)	303(70.8)	125(29.2)	25.0	40.4	55.4
장애인 가구	296(100.0)	191(64.5)	105(35.5)	33.0	50.4	63.9
장애노인 가구	90(100.0)	66(73.3)	24(26.7)	28.0	35.2	27.0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746(100.0)	481(64.5)	265(35.5)	24.0	30.2	22.7
중위소득 51-150% 이하	1,225(100.0)	467(38.1)	758(61.9)	23.0	41.3	50.5
중위소득 151% 이상	922(100.0)	178(19.3)	744(80.7)	19.0	62.2	102.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226(100.0)	226(100.0)	0(0.0)	45.0	53.6	24.5
비수급가구	2,667(100.0)	900(33.7)	1,767(66.3)	17.0	36.4	59.9

[Base : 전체 가구/증양값, 평균, 편차는 월평균공적이전소득이 있는 가구]

<표II-15>은 공적이전소득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현황을 살펴본 결과이다. 과거 혹은 현재 수급대상가구라고 응답한 비율은 7.8%(226가구)로 지원받은 금액은 평균 41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규모별로는 1인 단독가구에서 수급경험이 있는 비율이 23.4%(110가구)로 높게 나타났고 가구규모가 커질수록 수급경험 비율은 낮아지다가 5인 가구 이상에서는 조금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에 따라 살펴보면 장애노인가구(25.6%, 23가구)와 장애인가구(21.6%, 64가구)에서 수급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노인가구도 18.2%(78가구)로 파악되었다.

<표 II-15>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 및 지원금액(B5-1)

단위 : 가구수(%)

	전체	보호대상 가구였거나 현재 보호 대상 가구이다	보호대상 가구가 아니다	증양값 (만원)	평균 (만원)	편차 (만원)
■ 항목 ■	2,893(100.0)	226(7.8)	2,667(92.2)	36.0	40.8	20.4
가구원 수						
1명	471(100.0)	110(23.4)	361(76.6)	35.0	34.0	11.6
2명	716(100.0)	59(8.2)	657(91.8)	40.0	42.2	15.9
3명	597(100.0)	31(5.2)	566(94.8)	55.0	50.9	27.1
4명	817(100.0)	15(1.8)	802(98.2)	40.0	50.5	34.0
5명 이상	292(100.0)	11(3.8)	281(96.2)	55.0	60.5	34.0
가구형태						
일반가구	2,079(100.0)	61(2.9)	2,018(97.1)	40.0	46.9	26.1
노인가구	428(100.0)	78(18.2)	350(81.8)	34.0	34.0	11.9
장애인 가구	296(100.0)	64(21.6)	232(78.4)	40.0	45.0	21.2
장애노인 가구	90(100.0)	23(25.6)	67(74.4)	35.0	36.1	16.1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746(100.0)	176(23.6)	570(76.4)	35.0	37.7	14.8
중위소득 51-150% 이하	1,225(100.0)	50(4.1)	1,175(95.9)	43.0	51.7	31.0
중위소득 151% 이상	922(100.0)	0(0.0)	922(100.0)	0.0	0.0	0.0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226(100.0)	226(100.0)	0(0.0)	36.0	40.8	20.4
비수급가구	2,667(100.0)	0(0.0)	2,667(100.0)	0.0	0.0	0.0

[Base : 전체 가구/증양값, 평균, 편차는 보호대상 가구였거나 현재 보호대상인 가구]

공적이전소득 가운데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을 통한 이전 소득 현황을 파악해보면 전반적으로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23가구(14.6%)가구로 나타났다. 사회보험을 받은 가구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가구원 수나 중위소득, 수급 여부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가구형태에 따라 노인가구와 장애노인가구에서 각각 26.9%(115가구), 25.6%(23가구)로 높은 양상을 보여 연령 제한이 있는 국민연금이나 장애연금과 같은 사

회보험 수당을 지급받고 있음으로 추측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사회보험 규모와 관련해서는 노인가구보다는 장애인가구에서 액수가 더 크게 나타났다. 노인가구 가운데 사회보험을 받은 115가구 평균 사회보험 액수는 60만원 정도인데 반해 장애인 가구는 81만원으로 파악되었다.

<표 II-16> 사회보험(B6-1)

단위 : 가구수(%)

□ 항목 □	전체	있었다	없었다	중앙값 (만원)	평균 (만원)	편차 (만원)
□ 항목 □	2,893(100.0)	423(14.6)	2,470(85.4)	25.0	56.4	80.6
가구원 수						
1명	471(100.0)	57(12.1)	414(87.9)	15.0	34.0	42.7
2명	716(100.0)	193(27.0)	523(73.0)	30.0	58.9	83.6
3명	597(100.0)	96(16.1)	501(83.9)	23.0	57.5	82.9
4명	817(100.0)	54(6.6)	763(93.4)	30.0	78.5	100.1
5명 이상	292(100.0)	23(7.9)	269(92.1)	15.0	35.9	48.4
가구형태						
일반가구	2,079(100.0)	231(11.1)	1,848(88.9)	25.0	51.7	76.5
노인가구	428(100.0)	115(26.9)	313(73.1)	26.0	60.3	80.6
장애인 가구	296(100.0)	54(18.2)	242(81.8)	31.5	81.3	105.4
장애노인 가구	90(100.0)	23(25.6)	67(74.4)	20.0	26.8	20.5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746(100.0)	128(17.2)	618(82.8)	15.0	23.5	17.3
중위소득 51-150% 이하	1,225(100.0)	211(17.2)	1,014(82.8)	28.0	54.3	65.6
중위소득 151% 이상	922(100.0)	84(9.1)	838(90.9)	47.5	112.2	129.9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226(100.0)	29(12.8)	197(87.2)	15.0	18.7	15.2
비수급가구	2,667(100.0)	394(14.8)	2,273(85.2)	27.5	59.2	82.8

[Base : 전체 가구/중앙값, 평균, 편차는 사회보험을 지급받고 있는 가구]

국민연금이나 사회보험 이외에 공적으로 받은 이전 소득 여부를 파악해본 결과 27.5%(797가구)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규모는 15만원 정도로 적었다. 가구

규모에 따라서는 1인 단독가구에서 41.0%(193가구)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규모가 커질수록 기타 공적이전소득 경험율이 낮아지다가 5인 이상 가구에서 다시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가구형태에서는 장애인 가구 64.4%(58가구) 노인가구 절반 이상(53.7%, 230가구)이 기타 공적이전소득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장애인가구에서는 절반 정도(49.0%, 145가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소득액 차이는 거의 없었다. 중위소득 기준으로는 50% 이하에서 51.6%(385가구), 51-150% 이하에서 25.1%(308가구), 151% 이상에서 11.3%(104가구)가 기타 공적이전소득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수급여부에 따라 수급가구 가운데 71.2%(161가구)는 기타 공적이전소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수급가구의 경우 23.8%(636가구)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표 II-17> 사회보험 소득 이외의 공적으로 받은 이전 소득(B6)

단위 : 가구수(%)

구분	전체	있다	없다	중앙값 (만원)	평균 (만원)	편차 (만원)
□ 항목 □	2,893(100.0)	797(27.5)	2,096(72.5)	10.0	14.7	11.4
가구원 수						
1명	471(100.0)	193(41.0)	278(59.0)	9.0	10.0	5.2
2명	716(100.0)	239(33.4)	477(66.6)	10.0	14.1	9.9
3명	597(100.0)	133(22.3)	464(77.7)	14.0	16.5	10.9
4명	817(100.0)	120(14.7)	697(85.3)	15.0	19.8	16.1
5명 이상	292(100.0)	112(38.4)	180(61.6)	10.0	16.8	13.1
가구형태						
일반가구	2,079(100.0)	364(17.5)	1,715(82.5)	10.0	16.1	12.9
노인가구	428(100.0)	230(53.7)	198(46.3)	9.0	11.5	7.6
장애인 가구	296(100.0)	145(49.0)	151(51.0)	12.0	16.2	11.6
장애노인 가구	90(100.0)	58(64.4)	32(35.6)	11.0	15.1	10.4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746(100.0)	385(51.6)	361(48.4)	9.0	12.7	7.9
중위소득 51-150% 이하	1,225(100.0)	308(25.1)	917(74.9)	13.0	17.0	13.4
중위소득 151% 이상	922(100.0)	104(11.3)	818(88.7)	10.0	15.9	13.9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226(100.0)	161(71.2)	65(28.8)	10.0	14.6	9.3
비수급가구	2,667(100.0)	636(23.8)	2,031(76.2)	9.0	14.8	11.8

[Base : 전체 가구/중앙값, 평균, 편차는 기타 공적이전소득이 있는 가구]

개인연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 결과는 [표 II-18]과 같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개인연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2,893가구 가운데 91가구(3.1%)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렇게 사례수가 적게 나온 이유는 개인연금 가입여부가 아닌 개인연금 수급과 관련한 문항이라 실제로 가입이 되어있어도 연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개인연금을 받고 있는 사례수는 적었지만 연금액은 평균 77만원으로 근로소득과 부동산소득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항목별로 뚜렷한 차이는 없었으며 집단별로 거의 대부분이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표 II-18> 개인연금(B7-3)

단위 : 가구수(%)

구분	전체	있었다	없었다	중앙값 (만원)	평균 (만원)	편차 (만원)
□ 항목 □	2,893(100.0)	91(3.1)	2,802(96.9)	33.0	76.5	83.7
가구원 수						
1명	471(100.0)	8(1.7)	463(98.3)	25.5	69.9	82.6
2명	716(100.0)	47(6.6)	669(93.4)	30.0	79.5	86.1
3명	597(100.0)	17(2.8)	580(97.2)	40.0	76.2	91.0
4명	817(100.0)	12(1.5)	805(98.5)	52.5	91.3	89.8
5명 이상	292(100.0)	7(2.4)	285(97.6)	21.0	39.6	37.0
가구형태						
일반가구	2,079(100.0)	59(2.8)	2,020(97.2)	34.0	73.6	78.6
노인가구	428(100.0)	27(6.3)	401(93.7)	27.0	85.5	97.2
장애인 가구	296(100.0)	3(1.0)	293(99.0)	35.0	30.0	18.0
장애노인 가구	90(100.0)	2(2.2)	88(97.8)	113.0	113.0	123.0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746(100.0)	15(2.0)	731(98.0)	17.0	18.9	10.7
중위소득 51-150% 이하	1,225(100.0)	44(3.6)	1,181(96.4)	27.0	58.5	67.2
중위소득 151% 이상	922(100.0)	32(3.5)	890(96.5)	100.0	128.3	96.0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226(100.0)	1(0.4)	225(99.6)	10.0	10.0	0.0
비수급가구	2,667(100.0)	90(3.4)	2,577(96.6)	33.5	77.3	83.9

[Base : 전체 가구/중앙값, 평균, 편차는 개인연금이 있는 가구]

전체 월평균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소득에 대해서 파악한 결과이다. 기타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121가구(4.2%)의 평균 기타소득액은 88만원으로 나타났다. 기타소득 여부에 대한 항목별 특징은 없었으나 규모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의 경우 4인 가구 평균 기타소득액이 136만원으로 1인 단독가구(42만원)나 2인 가구(47만원)의 기타소득액의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에서는 일반가구가 98만원 정도로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중위소득 집 단별 분포에서도 고소득 가구에서 월평균 12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9> 기타 소득(B9)

단위 : 가구수(%)

	전체	있다	없다	중앙값 (만원)	평균 (만원)	편차 (만원)
□ 항목 □	2,893(100.0)	121(4.2)	2,772(95.8)	20.0	87.7	255.9
가구원 수						
1명	471(100.0)	6(1.3)	465(98.7)	10.0	42.2	64.5
2명	716(100.0)	27(3.8)	689(96.2)	25.0	47.4	56.0
3명	597(100.0)	30(5.0)	567(95.0)	25.0	64.9	113.7
4명	817(100.0)	46(5.6)	771(94.4)	18.5	135.5	395.3
5명 이상	292(100.0)	12(4.1)	280(95.9)	7.0	74.2	124.9
가구형태						
일반가구	2,079(100.0)	105(5.1)	1,974(94.9)	25.0	97.6	273.1
노인가구	428(100.0)	4(0.9)	424(99.1)	13.5	22.8	25.2
장애인 가구	296(100.0)	9(3.0)	287(97.0)	7.0	27.2	53.3
장애노인 가구	90(100.0)	3(3.3)	87(96.7)	7.0	7.7	4.0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746(100.0)	9(1.2)	737(98.8)	14.0	16.1	11.8
중위소득 51-150% 이하	1,225(100.0)	36(2.9)	1,189(97.1)	13.0	26.1	33.6
중위소득 151% 이상	922(100.0)	76(8.2)	846(91.8)	27.0	125.3	316.8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226(100.0)	1(0.4)	225(99.6)	13.0	13.0	0.0
비수급가구	2,667(100.0)	120(4.5)	2,547(95.5)	20.5	88.3	256.9

[Base : 전체 가구/중앙값, 평균, 편차는 기타소득이 있는 가구]

3. 소비와 저축

지출부문은 식료품비, 주거비, 세금, 가구·가사용품비, 교통통신비, 피복신발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사회보험비, 경조사비, 교양오락비, 송금보조 및 기타 항목을 포괄하였으며 이를 총 가계지출이라 칭하기로 하였다. 지출액은 월 평균 지출로 조사하였다.

총 가계지출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아래의 표에서 제시되어 있다. 전체 가구의 총 가계지출의 평균값은 197만원으로 나타났고 구간별로는 100-150만원 미만이 45.4%(1,312가구)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150-200만원 미만이 15.9%(461가구), 200-250만원 미만이 11.2%(324가구)로 나타났으며 4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9.2%(266가구)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가계지출은 가구규모가 클수록 지출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1인 단독가구(78만원)와 5인 이상 가구(309만원)의 지출액 차이가 5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가구가 상대적으로 지출이 적었으며 빈곤가구와 수급가구의 지출규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지출현황은 소득현황 분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평균소득이 높았던 양천구와 강남구, 송파구에서 총 가계지출 비용도 각각 303만원, 259만원, 258만원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소득이 낮았던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의 지출 비용도 각각 139만원, 155만원, 161만원, 168만원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일정 정도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20> 월평균 총 가계지출(C1)

단위 : 가구수(%)

	전체	100-150 만원 미만	150-200 만원 미만	200-250 만원 미만	250-300 만원 미만	300-350 만원 미만	350-400 만원 미만	400 만원 이상	중앙 값 (만원)	평균 (만원)	편차 (만원)
□ 항목 □	2,893 (100.0)	1,312 (45.4)	461 (15.9)	324 (11.2)	221 (7.6)	185 (6.4)	124 (4.3)	266 (9.2)	165.0	197.4	144.8
가구원 수											
1명	471 (100.0)	423 (89.8)	24 (5.1)	14 (3.0)	5 (1.1)	3 (0.6)	1 (0.2)	1 (0.2)	57.0	77.7	59.9

II. 가구용 설문 응답 결과

	전체	100-150 만원 미만	150-200 만원 미만	200-250 만원 미만	250-300 만원 미만	300-350 만원 미만	350-400 만원 미만	400 만원 이상	중앙 값 (만원)	평균 (만원)	편차 (만원)
2명	716 (100.0)	504 (70.4)	110 (15.4)	44 (6.1)	21 (2.9)	19 (2.7)	6 (0.8)	12 (1.7)	105.0	129.4	91.5
3명	597 (100.0)	241 (40.4)	134 (22.4)	79 (13.2)	47 (7.9)	40 (6.7)	21 (3.5)	35 (5.9)	173.0	197.3	117.6
4명	817 (100.0)	107 (13.1)	154 (18.8)	140 (17.1)	111 (13.6)	88 (10.8)	72 (8.8)	145 (17.7)	250.0	286.1	146.0
5명 이상	292 (100.0)	37 (12.7)	39 (13.4)	47 (16.1)	37 (12.7)	35 (12.0)	24 (8.2)	73 (25.0)	276.5	309.4	157.2
가구형태											
일반가구	2,079 (100.0)	675 (32.5)	372 (17.9)	294 (14.1)	204 (9.8)	168 (8.1)	115 (5.5)	251 (12.1)	198.0	233.0	146.6
노인가구	428 (100.0)	370 (86.4)	33 (7.7)	11 (2.6)	7 (1.6)	4 (0.9)	1 (0.2)	2 (0.5)	61.5	82.4	66.0
장애인 가구	296 (100.0)	183 (61.8)	51 (17.2)	18 (6.1)	10 (3.4)	13 (4.4)	8 (2.7)	13 (4.4)	118.0	150.7	112.3
장애노인 가구	90 (100.0)	84 (93.3)	5 (5.6)	1 (1.1)	0 (0.0)	0 (0.0)	0 (0.0)	0 (0.0)	68.5	76.9	41.8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746 (100.0)	701 (94.0)	24 (3.2)	10 (1.3)	5 (0.7)	2 (0.3)	1 (0.1)	3 (0.4)	60.0	72.2	50.3
중위소득 51-150% 이하	1,225 (100.0)	583 (47.6)	336 (27.4)	177 (14.4)	88 (7.2)	22 (1.8)	12 (1.0)	7 (0.6)	153.0	164.2	66.9
중위소득 151% 이상	922 (100.0)	28 (3.0)	101 (11.0)	137 (14.9)	128 (13.9)	161 (17.5)	111 (12.0)	256 (27.8)	319.5	342.8	150.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226 (100.0)	217 (96.0)	7 (3.1)	2 (0.9)	0 (0.0)	0 (0.0)	0 (0.0)	0 (0.0)	51.0	65.0	38.2
비수급가구	2,667 (100.0)	1,095 (41.1)	454 (17.0)	322 (12.1)	221 (8.3)	185 (6.9)	124 (4.6)	266 (10.0)	176.0	208.6	145.0
거주지역											
종로구	91 (100.0)	51 (56.0)	12 (13.2)	4 (4.4)	1 (1.1)	9 (9.9)	5 (5.5)	9 (9.9)	132.0	195.6	175.3
중구	86 (100.0)	36 (41.9)	10 (11.6)	9 (10.5)	10 (11.6)	6 (7.0)	6 (7.0)	9 (10.5)	176.5	209.4	147.9
용산구	81 (100.0)	47 (58.0)	11 (13.6)	6 (7.4)	5 (6.2)	2 (2.5)	2 (2.5)	8 (9.9)	134.0	179.3	190.4
성동구	104 (100.0)	45 (43.3)	17 (16.3)	14 (13.5)	3 (2.9)	10 (9.6)	5 (4.8)	10 (9.6)	171.0	208.3	156.0
광진구	91 (100.0)	47 (51.6)	15 (16.5)	6 (6.6)	8 (8.8)	6 (6.6)	3 (3.3)	6 (6.6)	148.0	196.9	174.4
동대문구	100 (100.0)	49 (49.0)	21 (21.0)	11 (11.0)	8 (8.0)	4 (4.0)	3 (3.0)	4 (4.0)	150.5	172.7	117.7

	전체	100-150 만원 미만	150-200 만원 미만	200-250 만원 미만	250-300 만원 미만	300-350 만원 미만	350-400 만원 미만	400 만원 이상	중앙 값 (만원)	평균 (만원)	편차 (만원)
중랑구	107 (100.0)	73 (68.2)	8 (7.5)	13 (12.1)	5 (4.7)	4 (3.7)	0 (0.0)	4 (3.7)	107.0	138.6	103.6
성북구	120 (100.0)	71 (59.2)	16 (13.3)	8 (6.7)	11 (9.2)	3 (2.5)	4 (3.3)	7 (5.8)	122.5	155.2	115.1
강북구	102 (100.0)	57 (55.9)	14 (13.7)	14 (13.7)	4 (3.9)	6 (5.9)	4 (3.9)	3 (2.9)	134.0	160.9	117.5
도봉구	102 (100.0)	53 (52.0)	15 (14.7)	11 (10.8)	11 (10.8)	3 (2.9)	3 (2.9)	6 (5.9)	140.5	167.9	116.0
노원구	153 (100.0)	74 (48.4)	23 (15.0)	19 (12.4)	6 (3.9)	9 (5.9)	7 (4.6)	15 (9.8)	155.0	187.3	137.0
은평구	115 (100.0)	56 (48.7)	16 (13.9)	12 (10.4)	6 (5.2)	9 (7.8)	2 (1.7)	14 (12.2)	155.0	194.0	137.5
서대문구	88 (100.0)	34 (38.6)	11 (12.5)	11 (12.5)	7 (8.0)	8 (9.1)	7 (8.0)	10 (11.4)	191.0	222.7	145.0
마포구	98 (100.0)	47 (48.0)	13 (13.3)	13 (13.3)	6 (6.1)	3 (3.1)	8 (8.2)	8 (8.2)	159.0	192.1	136.7
양천구	118 (100.0)	24 (20.3)	9 (7.6)	16 (13.6)	14 (11.9)	14 (11.9)	12 (10.2)	29 (24.6)	278.0	302.7	178.7
강서구	135 (100.0)	64 (47.4)	23 (17.0)	13 (9.6)	10 (7.4)	7 (5.2)	5 (3.7)	13 (9.6)	160.0	191.1	141.6
구로구	110 (100.0)	44 (40.0)	20 (18.2)	13 (11.8)	10 (9.1)	8 (7.3)	8 (7.3)	7 (6.4)	180.0	199.3	134.4
금천구	124 (100.0)	66 (53.2)	27 (21.8)	17 (13.7)	7 (5.6)	5 (4.0)	1 (0.8)	1 (0.8)	141.0	152.4	84.4
영등포구	127 (100.0)	55 (43.3)	23 (18.1)	17 (13.4)	11 (8.7)	10 (7.9)	4 (3.1)	7 (5.5)	164.0	179.7	121.9
동작구	119 (100.0)	51 (42.9)	25 (21.0)	15 (12.6)	14 (11.8)	4 (3.4)	4 (3.4)	6 (5.0)	168.0	179.8	118.8
관악구	157 (100.0)	75 (47.8)	33 (21.0)	19 (12.1)	16 (10.2)	8 (5.1)	2 (1.3)	4 (2.5)	152.0	169.1	100.7
서초구	125 (100.0)	48 (38.4)	21 (16.8)	18 (14.4)	7 (5.6)	13 (10.4)	7 (5.6)	11 (8.8)	184.0	212.7	136.2
강남구	122 (100.0)	30 (24.6)	22 (18.0)	14 (11.5)	15 (12.3)	12 (9.8)	9 (7.4)	20 (16.4)	225.0	258.9	148.3
송파구	152 (100.0)	52 (34.2)	24 (15.8)	13 (8.6)	13 (8.6)	15 (9.9)	6 (3.9)	29 (19.1)	200.5	257.7	187.8
강동구	120 (100.0)	44 (36.7)	23 (19.2)	9 (7.5)	10 (8.3)	5 (4.2)	6 (5.0)	23 (19.2)	184.0	239.1	164.5
서울 이외 지역	4 (100.0)	3 (75.0)	0 (0.0)	1 (25.0)	0 (0.0)	0 (0.0)	0 (0.0)	0 (0.0)	131.0	142.3	49.3

[Base : 전체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의 중앙값은 165만원이었고, 평균은 197만원이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빈곤가구의 지출평균은 72만원으로 가구총소득의 평균인 60만원보다 많았다. 가계지출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은 교육비였다.

<표 II-21> 월평균 가계 지출(C1)

	중앙값(만원)	평균(만원)	편차(만원)
▣ 전 체 ▣	165.0	197.4	144.8
중위소득 50% 이하	60.0	72.2	50.3
중위소득 51-150% 이하	153.0	164.2	66.9
중위소득 151% 이상	319.5	342.8	150.1

<표 II-22> 항목별 가계지출(C1)

항목	중앙값(만원)	평균(만원)	편차(만원)	
전체	식비	40.0	49.9	33.0
	주거비	10.0	13.6	17.2
	광열수도비	11.0	13.4	8.7
	가구가사용품비	5.0	7.8	14.6
	교통통신비	20.0	25.8	23.1
	피복신발비	5.0	9.8	14.4
	교육비	60.0	74.8	62.2
	보건의료비	5.0	9.7	17.7
	사회보험비	15.0	18.2	16.6
	경조사비	5.0	9.0	9.2
	교양오락비	5.0	8.2	12.5
	송금보조	20.0	26.4	34.3
	기타	10.0	24.9	39.0
	중위소득 50% 이하	식비	20.0	23.8
주거비		6.0	9.9	10.6
광열수도비		8.0	9.0	5.6
가구가사용품비		2.0	3.1	8.3
교통통신비		5.0	7.6	10.1

항목		중앙값(만원)	평균(만원)	편차(만원)
	피복신발비	2.0	3.6	5.4
	교육비	20.0	28.1	34.8
	보건의료비	5.0	8.3	12.6
	사회보험비	4.0	6.4	6.6
	경조사비	3.0	4.7	4.7
	교양오락비	2.0	3.2	5.2
	송금보조	5.0	11.1	13.2
	기타	5.0	8.7	11.1
중위소득 51-150% 이하	식비	40.0	46.0	20.7
	주거비	10.0	13.7	16.3
	광열수도비	11.0	13.0	6.3
	가구가사용품비	5.0	6.2	6.5
	교통통신비	20.0	22.3	14.7
	피복신발비	5.0	7.4	6.3
	교육비	40.0	47.4	35.9
	보건의료비	5.0	9.3	20.3
	사회보험비	10.0	12.8	8.2
	경조사비	5.0	7.4	6.2
	교양오락비	5.0	5.9	5.9
	송금보조	10.0	16.7	19.4
	기타	10.0	16.0	18.2
중위소득 151% 이상	식비	70.0	76.3	37.3
	주거비	10.0	16.2	21.1
	광열수도비	15.0	17.4	11.2
	가구가사용품비	10.0	13.6	22.3
	교통통신비	40.0	44.3	25.9
	피복신발비	10.0	16.9	21.3
	교육비	100.0	102.6	68.3
	보건의료비	5.0	11.3	17.2
	사회보험비	25.0	27.5	20.2
	경조사비	10.0	13.0	11.9
	교양오락비	10.0	13.5	18.0
	송금보조	20.0	34.3	40.8
	기타	25.0	41.9	54.4

저축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표II-23]와 같다. 저축을 하고 있는 가구는 1,485가구로 전체의 51.3%였으며 지난 1년간 월평균 81만원 정도를 저축했다고 조사되었다. 가구규모에 따라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저축한 가구 비율도 높은 양상을 보였으며 5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4인 가구보다는 적게 나타났다. 가구형태에서는 노인가구나 장애인가구에 비해 일반가구의 저축율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저축을 하는 비율도 높고 저축액도 크게 나타났다.

<표 II-23> 저축(C3)

단위 : 가구수(%)

	전체	있다	없다	증양값 (만원)	평균 (만원)	편차 (만원)
□ 항목 □	2,893(100.0)	1,485(51.3)	1,408(48.7)	50.0	80.9	89.3
가구원 수						
1명	471(100.0)	107(22.7)	364(77.3)	30.0	62.3	86.7
2명	716(100.0)	253(35.3)	463(64.7)	50.0	69.6	84.2
3명	597(100.0)	357(59.8)	240(40.2)	50.0	81.5	87.4
4명	817(100.0)	584(71.5)	233(28.5)	50.0	86.8	91.9
5명 이상	292(100.0)	184(63.0)	108(37.0)	60.0	87.4	90.9
가구형태						
일반가구	2,079(100.0)	1,318(63.4)	761(36.6)	50.0	83.5	90.7
노인가구	428(100.0)	55(12.9)	373(87.1)	30.0	45.3	52.8
장애인 가구	296(100.0)	107(36.1)	189(63.9)	36.0	69.0	84.5
장애노인 가구	90(100.0)	5(5.6)	85(94.4)	40.0	31.8	23.5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746(100.0)	62(8.3)	684(91.7)	15.0	23.7	24.8
중위소득 51-150% 이하	1,225(100.0)	659(53.8)	566(46.2)	30.0	49.1	63.5
중위소득 151% 이상	922(100.0)	764(82.9)	158(17.1)	100.0	113.0	99.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226(100.0)	31(13.7)	195(86.3)	10.0	17.3	22.5
비수급가구	2,667(100.0)	1,454(54.5)	1,213(45.5)	50.0	82.3	89.7

[Base : 전체 가구/증양값, 평균, 편차는 저축이 있는 가구]

4. 자산과 부채

다음은 부채 현황에 대해 파악한 결과이다. 부채에는 금융기관 부채를 비롯하여 회사를 통해 빌린 돈, 일반사채, 전세(임대) 보증금 받은 돈,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켓돈, 카드빚 등을 포함하고 있다. 부채가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의 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없는 가구가 54.1%(1,564가구)로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있는 가구의 부채 평균액은 9,235만원으로 나타났고 중앙값은 5천만원으로 나타났다.

가구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규모가 클수록 부채가 있는 가구 비율도 크게 나타났으며 노인이나 장애인가구보다 일반가구에서, 고소득 가구와 비수급가구의 부채액과 부채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4> 부채(D7)

단위 : 가구수(%)

구분	전체	있다	없다	중앙값 (만원)	평균 (만원)	편차 (만원)
□ 항목 □	2,893(100.0)	1,329(45.9)	1,564(54.1)	5,000.0	9,235.4	10,914.9
가구원 수						
1명	471(100.0)	102(21.7)	369(78.3)	3,000.0	6,495.2	10,622.7
2명	716(100.0)	307(42.9)	409(57.1)	5,000.0	8,088.5	9,954.2
3명	597(100.0)	289(48.4)	308(51.6)	5,000.0	8,452.2	9,443.8
4명	817(100.0)	460(56.3)	357(43.7)	7,000.0	10,751.8	11,968.0
5명 이상	292(100.0)	171(58.6)	121(41.4)	6,000.0	10,173.3	11,507.0
가구형태						
일반가구	2,079(100.0)	1,049(50.5)	1,030(49.5)	5,000.0	9,567.2	11,195.3
노인가구	428(100.0)	115(26.9)	313(73.1)	5,000.0	7,696.7	8,359.1
장애인 가구	296(100.0)	135(45.6)	161(54.4)	5,000.0	8,751.9	11,057.1
장애노인 가구	90(100.0)	30(33.3)	60(66.7)	2,600.0	5,706.7	7,699.1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746(100.0)	227(30.4)	519(69.6)	3,000.0	6,386.1	9,210.6

	전체	있다	없다	중앙값 (만원)	평균 (만원)	편차 (만원)
중위소득 51-150% 이하	1,225(100.0)	586(47.8)	639(52.2)	4,950.0	7,217.0	8,548.9
중위소득 151% 이상	922(100.0)	516(56.0)	406(44.0)	10,000.0	12,781.0	12,890.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226(100.0)	61(27.0)	165(73.0)	1,800.0	2,646.2	2,585.1
비수급가구	2,667(100.0)	1,268(47.5)	1,399(52.5)	5,000.0	9,552.4	11,061.8

[Base : 전체 가구/중앙값, 평균, 편차는 부채가 있는 가구]

<표 II-25>은 앞서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 가운데 현재 부채이자를 내고 있는지를 파악한 결과이다. 월평균 부채이자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현재 부채 이자를 내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1,040가구로 전체 응답자 가운데 78.3%를 차지하고 있었다. 월평균 부채이자는 4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5> 월평균 내고 있는 부채 이자(D8)

단위 : 가구수(%)

	전체	있다	없다	중앙값 (만원)	평균 (만원)	편차 (만원)
□ 항목 □	1,329(100.0)	1,040(78.3)	289(21.7)	30.0	46.9	61.9
가구원 수						
1명	102(100.0)	68(66.7)	34(33.3)	10.0	29.3	43.9
2명	307(100.0)	207(67.4)	100(32.6)	20.0	35.7	41.2
3명	289(100.0)	229(79.2)	60(20.8)	30.0	44.2	59.5
4명	460(100.0)	392(85.2)	68(14.8)	30.0	53.4	67.6
5명 이상	171(100.0)	144(84.2)	27(15.8)	35.0	57.5	76.2
가구형태						
일반가구	1,049(100.0)	865(82.5)	184(17.5)	30.0	48.8	64.0
노인가구	115(100.0)	50(43.5)	65(56.5)	21.0	36.4	44.6
장애인 가구	135(100.0)	110(81.5)	25(18.5)	22.0	39.6	54.1
장애노인 가구	30(100.0)	15(50.0)	15(50.0)	10.0	20.7	23.0

	전체	있다	없다	증양값 (만원)	평균 (만원)	편차 (만원)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227(100.0)	166(73.1)	61(26.9)	14.5	32.6	55.5
중위소득 51-150% 이하	586(100.0)	453(77.3)	133(22.7)	20.0	34.9	38.1
중위소득 151% 이상	516(100.0)	421(81.6)	95(18.4)	40.0	65.4	78.3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61(100.0)	60(98.4)	1(1.6)	10.0	14.7	17.7
비수급가구	1,268(100.0)	980(77.3)	288(22.7)	30.0	48.8	63.1

[Base : 부채가 있는 가구]

5. 최근 가족상황의 변화

최근 가족상황의 변화와 관련하여 경험한 내용을 파악하였다. 일자리를 그만두거나 사업상 큰 손해를 본 적이 있는 가구는 2,893가구 가운데 145가구(5.0%)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원 중에 새로 취업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가구는 4.3%(124가구)뿐이었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고용상태가 좋아진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12가구로 전체 2,893가구 가운데 0.4%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창업이나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도 26가구(0.9%)로 나타났으며 복지관련 보조금이 줄었거나 받지 못하게 된 경우도 0.4%(11가구)로 가족상황이 크게 변화한 경우는 드물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26> 일자리를 그만두거나 사업상 큰 손해를 본 경험(F1-1)

단위 : 가구수(%)

	전체	그렇다	아니다
일자리를 그만두거나 사업상 큰 손해를 본 경험 (F1-1)	2,893(100.0)	145(5.0)	2,748(95.0)
새로 취업한 가구원(F1-7)	2,893(100.0)	124(4.3)	2,769(95.7)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고용상태가 좋아진 가구원(F1-9)	2,893(100.0)	12(0.4)	2,881(99.6)
창업이나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F1-11)	2,893(100.0)	26(0.9)	2,867(99.1)
복지관련 보조금 줄거나, 받지 못하게 되었는지 여부(F1-22)	2,893(100.0)	11(0.4)	2,882(99.6)

[Base : 전체 가구]

6. 건강보험

2010년 2차 서울시복지패널조사를 통해 알아본 건강보험 가입 여부 및 종류에 대한 결과이다. 전체 2,893가구 가운데 거의 대부분(2,873가구, 99.3%)의 가구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이 가운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91.9%(2,659가구)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의료급여 1종이 5.3%(154가구), 의료급여 2종이 1.7%(48가구)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도 20가구(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가구원 수나 가구형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건강보험 가입자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집단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7> 건강보험 가입 여부 및 종류 (H1)

단위 : 가구수(%)

	전체	가입	국민건강 보험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미가입
□ 항목 □	2,893(100.0)	2,873(99.3)	2,659(91.9)	154(5.3)	48(1.7)	12(0.4)	20(0.7)
가구원 수							
1명	471(100.0)	463(98.3)	360(76.4)	88(18.7)	12(2.5)	3(0.6)	8(1.7)
2명	716(100.0)	709(99.0)	650(90.8)	37(5.2)	16(2.2)	6(0.8)	7(1.0)
3명	597(100.0)	595(99.7)	566(94.8)	18(3.0)	9(1.5)	2(0.3)	2(0.3)
4명	817(100.0)	815(99.8)	803(98.3)	8(1.0)	4(0.5)	0(0.0)	2(0.2)
5명 이상	292(100.0)	291(99.7)	280(95.9)	3(1.0)	7(2.4)	1(0.3)	1(0.3)
가구형태							
일반가구	2,079(100.0)	2,069(99.5)	2,013(96.8)	24(1.2)	30(1.4)	2(0.1)	10(0.5)
노인가구	428(100.0)	421(98.4)	348(81.3)	67(15.7)	3(0.7)	3(0.7)	7(1.6)
장애인 가구	296(100.0)	296(100.0)	234(79.1)	45(15.2)	14(4.7)	3(1.0)	0(0.0)
장애노인 가구	90(100.0)	87(96.7)	64(71.1)	18(20.0)	1(1.1)	4(4.4)	3(3.3)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746(100.0)	739(99.1)	569(76.3)	134(18.0)	29(3.9)	7(0.9)	7(0.9)
중위소득 51-150% 이하	1,225(100.0)	1,214(99.1)	1,170(95.5)	20(1.6)	19(1.6)	5(0.4)	11(0.9)
중위소득 151% 이상	922(100.0)	920(99.8)	920(99.8)	0(0.0)	0(0.0)	0(0.0)	2(0.2)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226(100.0)	225(99.6)	27(11.9)	154(68.1)	41(18.1)	3(1.3)	1(0.4)
비수급가구	2,667(100.0)	2,648(99.3)	2,632(98.7)	0(0.0)	7(0.3)	9(0.3)	19(0.7)

[Base : 전체 가구]

지난 1년 동안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경험여부를 살펴보면 96.5%(2,563가구)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실제로 건강보험을 미납한 가구는 3.5%(93가구)밖에 없었다. 미납한 이유에 대해서 파악해본 결과 건강보험 미납 경험이 있는 93가구 가운데 78.5%(73가구)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돈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납기기한을 잊어버린 경우는 12.9%(12가구), 건강보험을 별로 이용할 일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가구도 5가구(5.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51.6%, 48가구)이 1-3개월이라고 응답하였으며 7-12개월

(26.9%), 4-6개월(21.4%)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28> 지난 1년 동안 건강보험료 미납 경험 (H2)

단위 : 가구수(%)

	전체	있다	없다
지난 1년 동안 건강보험료 미납 경험 (H2)	2,656(100.0)	93 (3.5)	2,563(96.5)

[Base : 국민건강보험 가입 가구]

	전체	건강보험을 별로 이용할 일이 없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돈이 없어서	내는 돈에 비해 혜택이 없어서	납기기한을 잊어버려서	기타
지난 1년 동안 건강보험료 미납한 이유 (H2-1)	93(100.0)	5(5.4)	73(78.5)	1(1.1)	12(12.9)	2(2.2)

[Base : 건강보험료 미납 경험 가구]

	전체	1-3개월	4-6개월	7-12개월
지난 1년 동안 건강보험료 미납한 기간 (H2-2)	93(100.0)	48(51.6)	20(21.5)	25(26.9)

[Base : 건강보험료 미납 경험 가구]

7.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하여 지난 1년 동안 급여를 신청한 가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보았다. 228가구(7.9%)는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665가구(92.1%)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가구규모가 큰 가구보다 1인 단독가구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 가구형태는 장애인가구(28.9%, 26가구), 장애인가구(18.9%, 56가구), 노인가구(16.8%, 72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29> 지난 1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여부(I1)

단위 : 가구수(%)

		전체	있다	없다
□ 항목 □		2,893(100.0)	228(7.9)	2,665(92.1)
가구원 수				
	1명	471(100.0)	103(21.9)	368(78.1)
	2명	716(100.0)	63(8.8)	653(91.2)
	3명	597(100.0)	34(5.7)	563(94.3)
	4명	817(100.0)	17(2.1)	800(97.9)
	5명 이상	292(100.0)	11(3.8)	281(96.2)
가구형태				
	일반가구	2,079(100.0)	74(3.6)	2,005(96.4)
	노인가구	428(100.0)	72(16.8)	356(83.2)
	장애인 가구	296(100.0)	56(18.9)	240(81.1)
	장애노인 가구	90(100.0)	26(28.9)	64(71.1)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746(100.0)	169(22.7)	577(77.3)
	중위소득 51-150% 이하	1,225(100.0)	59(4.8)	1,166(95.2)
	중위소득 151% 이상	922(100.0)	0(0.0)	922(100.0)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226(100.0)	174(77.0)	52(23.0)
	비수급가구	2,667(100.0)	54(2.0)	2,613(98.0)

[Base : 전체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228가구에 대해 급여 신청 이유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93.4%, 213가구)의 가구에서 '기본적인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 의료급여나 자녀 교육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6%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0> 지난 1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한 이유(II-1)

단위 : 가구수(%)

구분	전체	기본적인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급여를 받기위해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	주거비를 지원받기 위해	취업알선, 창업 등 자활지원을 받기 위해
□ 항목 □	228(100.0)	213(93.4)	7(3.1)	5(2.2)	2(0.9)	1(0.4)
가구원 수						
1명	103(100.0)	100(97.1)	1(1.0)	0(0.0)	1(1.0)	1(1.0)
2명	63(100.0)	60(95.2)	1(1.6)	1(1.6)	1(1.6)	0(0.0)
3명	34(100.0)	29(85.3)	3(8.8)	2(5.9)	0(0.0)	0(0.0)
4명	17(100.0)	14(82.4)	1(5.9)	2(11.8)	0(0.0)	0(0.0)
5명 이상	11(100.0)	10(90.9)	1(9.1)	0(0.0)	0(0.0)	0(0.0)
가구형태						
일반가구	74(100.0)	67(90.5)	1(1.4)	5(6.8)	0(0.0)	1(1.4)
노인가구	72(100.0)	70(97.2)	1(1.4)	0(0.0)	1(1.4)	0(0.0)
장애인 가구	56(100.0)	50(89.3)	5(8.9)	0(0.0)	1(1.8)	0(0.0)
장애노인 가구	26(100.0)	26(100.0)	0(0.0)	0(0.0)	0(0.0)	0(0.0)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169(100.0)	164(97.0)	2(1.2)	0(0.0)	2(1.2)	1(0.6)
중위소득 51-150% 이하	59(100.0)	49(83.1)	5(8.5)	5(8.5)	0(0.0)	0(0.0)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174(100.0)	167(96.0)	3(1.7)	2(1.1)	1(0.6)	1(0.6)
비수급가구	54(100.0)	46(85.2)	4(7.4)	3(5.6)	1(1.9)	0(0.0)

[Base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228가구에 수급가구로 선정된 적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본 결과 76.3%(174가구)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1인 단독가구의 경우 급여 신청 후 선정되었다는 비율이 다른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형태로는 장애인가구가 그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1> 지난 1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선정 경험 여부(I1-2)

단위 : 가구수(%)

		전체	그렇다	그렇지 않다
☐ 항 목 ☐		228 (100.0)	174 (76.3)	54 (23.7)
가구원 수				
	1명	103(100.0)	85(82.5)	18(17.5)
	2명	63(100.0)	44(69.8)	19(30.2)
	3명	34(100.0)	25(73.5)	9(26.5)
	4명	17(100.0)	12(70.6)	5(29.4)
	5명 이상	11(100.0)	8(72.7)	3(27.3)
가구형태				
	일반가구	74(100.0)	52(70.3)	22(29.7)
	노인가구	72(100.0)	56(77.8)	16(22.2)
	장애인 가구	56(100.0)	47(83.9)	9(16.1)
	장애노인 가구	26(100.0)	19(73.1)	7(26.9)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169(100.0)	135(79.9)	34(20.1)
	중위소득 51-150% 이하	59(100.0)	39(66.1)	20(33.9)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174(100.0)	174(100.0)	0(0.0)
	비수급가구	54(100.0)	0(0.0)	54(100.0)

[Base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가구]

수급형태를 파악해보면 일반수급가구가 81.9%(140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조건부 수급가구가 12.9%(22가구), 가구원 중 일부수급가구가 4.1%(7가구), 특례가구 1.2%(2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규모나 가구형태, 소득기준 항목에 상관없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II-32>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형태(I1-2-1)

단위 : 가구수(%)

	전체	일반수급 가구	조건부 수급가구	가구원 중 일부수급가구	특례 가구
☐ 항 목 ☐	171(100.0)	140(81.9)	22(12.9)	7(4.1)	2(1.2)
가구원 수					
1명	85(100.0)	79(92.9)	4(4.7)	0(0.0)	2(2.4)
2명	43(100.0)	34(79.1)	7(16.3)	2(4.7)	0(0.0)
3명	25(100.0)	15(60.0)	6(24.0)	4(16.0)	0(0.0)
4명	10(100.0)	7(70.0)	2(20.0)	1(10.0)	0(0.0)
5명 이상	8(100.0)	5(62.5)	3(37.5)	0(0.0)	0(0.0)
가구형태					
일반가구	51(100.0)	31(60.8)	17(33.3)	3(5.9)	0(0.0)
노인가구	55(100.0)	53(96.4)	0(0.0)	2(3.6)	0(0.0)
장애인 가구	46(100.0)	39(84.8)	5(10.9)	2(4.3)	0(0.0)
장애노인 가구	19(100.0)	17(89.5)	0(0.0)	0(0.0)	2(10.5)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135(100.0)	118(87.4)	11(8.1)	5(3.7)	1(0.7)
중위소득 51-150% 이하	36(100.0)	22(61.1)	11(30.6)	2(5.6)	1(2.8)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171(100.0)	140(81.9)	22(12.9)	7(4.1)	2(1.2)

[Base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가구]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대상에서 벗어나더라도 지속적으로 받고 싶은 지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결과이다. 50.6%(86가구)로 가장 많은 가구가 의료비 지원을 원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주거비 지원이 35.3%(60가구), 교육비 지원이 10.6%(18가구)를 차지하였다.

<표 II-33>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대상에서 벗어나더라도 계속 받고 싶은 지원(I1-2-4)

단위 : 가구수(%)

	전체	의료비 지원	주거비 지원	교육비 지원	자활관련 지원	기타
□ 항목 □	170(100.0)	86(50.6)	60(35.3)	18(10.6)	4(2.4)	2(1.2)
가구원 수						
1명	85(100.0)	50(58.8)	31(36.5)	0(0.0)	3(3.5)	1(1.2)
2명	43(100.0)	25(58.1)	14(32.6)	3(7.0)	1(2.3)	0(0.0)
3명	24(100.0)	7(29.2)	11(45.8)	5(20.8)	0(0.0)	1(4.2)
4명	10(100.0)	1(10.0)	2(20.0)	7(70.0)	0(0.0)	0(0.0)
5명 이상	8(100.0)	3(37.5)	2(25.0)	3(37.5)	0(0.0)	0(0.0)
가구형태						
일반가구	51(100.0)	15(29.4)	15(29.4)	17(33.3)	3(5.9)	1(2.0)
노인가구	55(100.0)	33(60.0)	22(40.0)	0(0.0)	0(0.0)	0(0.0)
장애인 가구	45(100.0)	26(57.8)	17(37.8)	1(2.2)	1(2.2)	0(0.0)
장애노인 가구	19(100.0)	12(63.2)	6(31.6)	0(0.0)	0(0.0)	1(5.3)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135(100.0)	73(54.1)	50(37.0)	6(4.4)	4(3.0)	2(1.5)
중위소득 51-150% 이하	35(100.0)	13(37.1)	10(28.6)	12(34.3)	0(0.0)	0(0.0)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170(100.0)	86(50.6)	60(35.3)	18(10.6)	4(2.4)	2(1.2)

[Base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가구]

8. 주거

서울시의 주거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주택종류에 대해 물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 2,893가구 가운데 일반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가 1,320가구로 45.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일반단독주택 거주자는 416가구(14.4%), 다가구용단독주택은 325가구(11.2%), 다세대주택 309가구(10.7%), 연립주택 300가구(10.4%)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종류는 가구규모나 소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

저 가구원 수의 경우 가구규모가 큰 가구의 아파트 거주 비율이 1인 단독가구나 2인 가구에 비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인 단독가구의 경우 19.1%(90가구)만이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반해 4인 가구는 58.0%(474가구), 5인 이상 가구는 57.9%(169가구)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중위소득 151% 이상인 가구의 69.7%(643가구)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24.9%(186가구)만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4> 주택종류(J1-2)

단위 : 가구수(%)

구분	전체	일반 아파트	일반 단독 주택	다가구용 단독 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영구 임대 아파트	점포 주택 등 복합용도 주택	오피스텔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요양 시설
■ 항목 ■	2,893 (100.0)	1,320 (45.6)	416 (14.4)	325 (11.2)	309 (10.7)	300 (10.4)	125 (4.3)	57 (2.0)	33 (1.1)	6 (0.2)	2 (0.1)
가구원 수											
1명	471 (100.0)	90 (19.1)	95 (20.2)	94 (20.0)	71 (15.1)	39 (8.3)	47 (10.0)	12 (2.5)	18 (3.8)	3 (0.6)	2 (0.4)
2명	716 (100.0)	278 (38.8)	127 (17.7)	85 (11.9)	84 (11.7)	74 (10.3)	43 (6.0)	17 (2.4)	7 (1.0)	1 (0.1)	0 (0.0)
3명	597 (100.0)	309 (51.8)	81 (13.6)	55 (9.2)	58 (9.7)	56 (9.4)	22 (3.7)	14 (2.3)	2 (0.3)	0 (0.0)	0 (0.0)
4명	817 (100.0)	474 (58.0)	83 (10.2)	70 (8.6)	62 (7.6)	101 (12.4)	10 (1.2)	12 (1.5)	3 (0.4)	2 (0.2)	0 (0.0)
5명 이상	292 (100.0)	169 (57.9)	30 (10.3)	21 (7.2)	34 (11.6)	30 (10.3)	3 (1.0)	2 (0.7)	3 (1.0)	0 (0.0)	0 (0.0)
가구형태											
일반가구	2,079 (100.0)	1,054 (50.7)	243 (11.7)	220 (10.6)	222 (10.7)	225 (10.8)	33 (1.6)	46 (2.2)	31 (1.5)	5 (0.2)	0 (0.0)
노인가구	428 (100.0)	138 (32.2)	106 (24.8)	63 (14.7)	42 (9.8)	39 (9.1)	31 (7.2)	5 (1.2)	1 (0.2)	1 (0.2)	2 (0.5)
장애인 가구	296 (100.0)	99 (33.4)	46 (15.5)	28 (9.5)	38 (12.8)	30 (10.1)	49 (16.6)	5 (1.7)	1 (0.3)	0 (0.0)	0 (0.0)
장애노인 가구	90 (100.0)	29 (32.2)	21 (23.3)	14 (15.6)	7 (7.8)	6 (6.7)	12 (13.3)	1 (1.1)	0 (0.0)	0 (0.0)	0 (0.0)

	전체	일반 아파트	일반 단독 주택	다가구용 단독 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영구 임대 아파트	점포 주택 등 복합용도 주택	오피스텔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요양 시설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746 (100.0)	186 (24.9)	155 (20.8)	116 (15.5)	98 (13.1)	80 (10.7)	90 (12.1)	11 (1.5)	6 (0.8)	3 (0.4)	1 (0.1)
중위소득 51-150% 이하	1,225 (100.0)	491 (40.1)	191 (15.6)	164 (13.4)	157 (12.8)	144 (11.8)	30 (2.4)	29 (2.4)	16 (1.3)	2 (0.2)	1 (0.1)
중위소득 151% 이상	922 (100.0)	643 (69.7)	70 (7.6)	45 (4.9)	54 (5.9)	76 (8.2)	5 (0.5)	17 (1.8)	11 (1.2)	1 (0.1)	0 (0.0)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226 (100.0)	10 (4.4)	37 (16.4)	46 (20.4)	29 (12.8)	10 (4.4)	88 (38.9)	3 (1.3)	2 (0.9)	0 (0.0)	1 (0.4)
비수급가구	2,667 (100.0)	1,310 (49.1)	379 (14.2)	279 (10.5)	280 (10.5)	290 (10.9)	37 (1.4)	54 (2.0)	31 (1.2)	6 (0.2)	1 (0.0)

[Base : 전체 가구]

주거 입주형태를 살펴보면 자가인 경우가 53.2%(1,538가구)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는 27.6%(799가구), 월세 16.9%(490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1인 단독가구를 제외하고는 가구원 수에 상관없이 절반이상이 모두 자가인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일반가구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가구 모두 절반정도는 자가인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표 II-35> 입주형태(J1-1)

단위 : 가구수(%)

	전체	자가	전세	월세	무상거주
□ 항목 □	2,893(100.0)	1,538(53.2)	799(27.6)	490(16.9)	66(2.3)
가구원 수					
1명	471(100.0)	125(26.5)	135(28.7)	186(39.5)	25(5.3)
2명	716(100.0)	414(57.8)	157(21.9)	125(17.5)	20(2.8)
3명	597(100.0)	338(56.6)	167(28.0)	81(13.6)	11(1.8)
4명	817(100.0)	474(58.0)	267(32.7)	70(8.6)	6(0.7)
5명 이상	292(100.0)	187(64.0)	73(25.0)	28(9.6)	4(1.4)

	전체	자가	전세	월세	무상거주
가구형태					
일반가구	2,079(100.0)	1,115(53.6)	630(30.3)	299(14.4)	35(1.7)
노인가구	428(100.0)	224(52.3)	95(22.2)	90(21.0)	19(4.4)
장애인 가구	296(100.0)	155(52.4)	57(19.3)	80(27.0)	4(1.4)
장애노인 가구	90(100.0)	44(48.9)	17(18.9)	21(23.3)	8(8.9)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746(100.0)	307(41.2)	186(24.9)	220(29.5)	33(4.4)
중위소득 51-150% 이하	1,225(100.0)	622(50.8)	356(29.1)	218(17.8)	29(2.4)
중위소득 151% 이상	922(100.0)	609(66.1)	257(27.9)	52(5.6)	4(0.4)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226(100.0)	5(2.2)	60(26.5)	153(67.7)	8(3.5)
비수급가구	2,667(100.0)	1,533(57.5)	739(27.7)	337(12.6)	58(2.2)

[Base : 전체 가구]

다음은 현재 전월세 주택 거주자에게 장기전세주택(SHift)에 대해 물어본 결과이다. SHift는 서울특별시와 SH공사가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위해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의 가격에 최장 20년에 이르는 전세기간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주택정책이다. 전월세 주택 거주 가구 총 1,257가구 가운데 장기전세주택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878가구(69.8%)였으며 이 가운데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322가구(36.7%)로 나타났다.

<표 II-36> 장기전세주택(SHift) 인지 여부(J8)

단위 : 가구수(%)

	전체	예	아니오
장기전세주택(SHIFT) 인지 여부(J8)	1,257(100.0)	878(69.8)	379(30.2)

[Base : 전월세 주택 거주 가구]

<표 II-37> 장기전세주택(SHift) 신청 의향(J9)

	전체	있다	없다
장기전세주택(SHIFT) 신청 의향(J9)	878(100.0)	322(36.7)	556(63.3)

[Base : 장기전세주택 인지 가구]

장기전세주택 신청 의향이 있는 가구에게 신청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40.1% (129가구)가 '내 집을 소유하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형편이 안되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전세금 인상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22.4%(72가구), '주변 전세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입주할 수 있어서'가 19.3%(62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8> 장기전세주택(SHIFT) 신청하려는 이유(J9-1)

단위 : 가구수(%)

	전체	내 집을 소유하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형편이 안되서	전세금 인상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서	주변 전세시세 보다 낮은 가격에 입주할 수 있어서	내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 전세로 사는 것을 선호해서	서울시에 거주하고 싶어서	다른 가구원이 원해서	기타
■ 항목 ■	322(100.0)	129(40.1)	72(22.4)	62(19.3)	43(13.4)	11(3.4)	2(0.6)	3(0.9)
가구원 수								
1명	60(100.0)	22(36.7)	11(18.3)	13(21.7)	12(20.0)	1(1.7)	1(1.7)	0(0.0)
2명	60(100.0)	24(40.0)	15(25.0)	11(18.3)	6(10.0)	2(3.3)	0(0.0)	2(3.3)
3명	73(100.0)	29(39.7)	20(27.4)	17(23.3)	6(8.2)	1(1.4)	0(0.0)	0(0.0)
4명	98(100.0)	42(42.9)	23(23.5)	17(17.3)	12(12.2)	2(2.0)	1(1.0)	1(1.0)
5명 이상	31(100.0)	12(38.7)	3(9.7)	4(12.9)	7(22.6)	5(16.1)	0(0.0)	0(0.0)
가구형태								
일반가구	278(100.0)	110(39.6)	61(21.9)	55(19.8)	39(14.0)	10(3.6)	2(0.7)	1(0.4)
노인가구	15(100.0)	7(46.7)	3(20.0)	2(13.3)	1(6.7)	1(6.7)	0(0.0)	1(6.7)
장애인 가구	26(100.0)	11(42.3)	7(26.9)	5(19.2)	2(7.7)	0(0.0)	0(0.0)	1(3.8)
장애노인 가구	3(100.0)	1(33.3)	1(33.3)	0(0.0)	1(33.3)	0(0.0)	0(0.0)	0(0.0)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54(100.0)	28(51.9)	11(20.4)	7(13.0)	5(9.3)	1(1.9)	0(0.0)	2(3.7)
중위소득 51-150% 이하	185(100.0)	76(41.1)	39(21.1)	36(19.5)	26(14.1)	6(3.2)	2(1.1)	0(0.0)
중위소득 151% 이상	83(100.0)	25(30.1)	22(26.5)	19(22.9)	12(14.5)	4(4.8)	0(0.0)	1(1.2)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41(100.0)	21(51.2)	10(24.4)	3(7.3)	6(14.6)	0(0.0)	0(0.0)	1(2.4)
비수급가구	281(100.0)	108(38.4)	62(22.1)	59(21.0)	37(13.2)	11(3.9)	2(0.7)	2(0.7)

[Base : 장기전세주택 신청 의향이 있는 가구]

반대로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의향이 없는 556가구에겐 신청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신청 자격이 안되서'라고 응답한 가구가 179가구(32.2%)로 가장 많았다. 또한 '서울시 장기임대주택에 들어갈 돈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경우도 172가구(30.9%)로 나타나 여러 가지 자격 기준이 있는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 -39> 장기전세주택(SHIFT) 신청하지 않으려는 이유(J9-2)

단위 : 가구수(%)

	전체	신청 자격이 안 되서	장기임대 주택에 들어갈 돈이 없어서	원하는 지역에 들어서지 않아서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싫어서	임대주택이라 품질을 믿을 수 없어서	공급하는 평수가 작아서	기타
□ 항목 □	556(100.0)	179(32.2)	172(30.9)	77(13.8)	65(11.7)	16(2.9)	14(2.5)	33(5.9)
가구원 수								
1명	111(100.0)	22(19.8)	67(60.4)	4(3.6)	5(4.5)	3(2.7)	1(0.9)	9(8.1)
2명	111(100.0)	30(27.0)	46(41.4)	16(14.4)	16(14.4)	1(0.9)	0(0.0)	2(1.8)
3명	116(100.0)	46(39.7)	24(20.7)	24(20.7)	9(7.8)	2(1.7)	1(0.9)	10(8.6)
4명	172(100.0)	62(36.0)	26(15.1)	26(15.1)	31(18.0)	7(4.1)	9(5.2)	11(6.4)
5명 이상	46(100.0)	19(41.3)	9(19.6)	7(15.2)	4(8.7)	3(6.5)	3(6.5)	1(2.2)
가구형태								
일반가구	432(100.0)	156(36.1)	96(22.2)	69(16.0)	58(13.4)	16(3.7)	11(2.5)	26(6.0)
노인가구	51(100.0)	7(13.7)	34(66.7)	6(11.8)	1(2.0)	0(0.0)	0(0.0)	3(5.9)
장애인 가구	53(100.0)	15(28.3)	27(50.9)	0(0.0)	4(7.5)	0(0.0)	3(5.7)	4(7.5)
장애노인 가구	20(100.0)	1(5.0)	15(75.0)	2(10.0)	2(10.0)	0(0.0)	0(0.0)	0(0.0)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136(100.0)	20(14.7)	94(69.1)	12(8.8)	3(2.2)	1(0.7)	0(0.0)	6(4.4)
중위소득 51-150% 이하	244(100.0)	73(29.9)	70(28.7)	38(15.6)	26(10.7)	9(3.7)	9(3.7)	19(7.8)
중위소득 151% 이상	176(100.0)	86(48.9)	8(4.5)	27(15.3)	36(20.5)	6(3.4)	5(2.8)	8(4.5)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66(100.0)	6(9.1)	50(75.8)	1(1.5)	0(0.0)	0(0.0)	0(0.0)	9(13.6)
비수급가구	490(100.0)	173(35.3)	122(24.9)	76(15.5)	65(13.3)	16(3.3)	14(2.9)	24(4.9)

[Base : 장기전세주택 신청 의향이 없는 가구]

9. 노인부양

노인가구원(만65세 이상)이 있는 가구는 전체가구 중 38.6%인 1,117가구로 나타났다. 이 중 727가구(28.1%)는 노인가구원이 1명이었으나, 노인가구원이 2명 이상인 가구도 390가구(13.5%)로 나타났다. 노인가구 중 53.7%인 230가구는 독거노인 가구였고, 45.3%인 194가구는 노인2인으로 이루어진 가구였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빈곤가구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에서 노인가구원이 존재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서, 노년층의 빈곤문제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 -40> 노인(만65세 이상)가구원수 (K1)

단위 : 가구수(%)

	전체	없음	1명	2명	3명
□ 항목 □	2,893(100.0)	1,776(61.4)	727(25.1)	381(13.2)	9(0.3)
가구원 수					
1명	471(100.0)	203(43.1)	268(56.9)	0(0.0)	0(0.0)
2명	716(100.0)	258(36.0)	213(29.7)	245(34.2)	0(0.0)
3명	597(100.0)	428(71.7)	79(13.2)	85(14.2)	5(0.8)
4명	817(100.0)	724(88.6)	67(8.2)	23(2.8)	3(0.4)
5명 이상	292(100.0)	163(55.8)	100(34.2)	28(9.6)	1(0.3)
가구형태					
일반가구	2,079(100.0)	1,635(78.6)	349(16.8)	92(4.4)	3(0.1)
노인가구	428(100.0)	0(0.0)	230(53.7)	194(45.3)	4(0.9)
장애인 가구	296(100.0)	141(47.6)	110(37.2)	44(14.9)	1(0.3)
장애노인가구	90(100.0)	0(0.0)	38(42.2)	51(56.7)	1(1.1)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746(100.0)	203(27.2)	368(49.3)	172(23.1)	3(0.4)
중위소득 51-150% 이하	1,225(100.0)	807(65.9)	244(19.9)	171(14.0)	3(0.2)
중위소득 151% 이상	922(100.0)	766(83.1)	115(12.5)	38(4.1)	3(0.3)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226(100.0)	90(39.8)	108(47.8)	28(12.4)	0(0.0)
비수급가구	2,667(100.0)	1,686(63.2)	619(23.2)	353(13.2)	9(0.3)

[Base : 전체 가구]

노인가구원이 있는 가구들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노인복지서비스는 기초노령연금(55.7%)이고, 그 다음으로는 교통수당(26.0%)이었고, 의료비지원(13.7%)도 10% 이상의 가구가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무료급식을 포함한 다른 서비스들의 이용경험율이 낮았으나, 노인가구나 장애인인가구에서는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들을 이용한 경험이 높았다.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기초노령연금과 의료비지원을 포함한 전반적인 노인복지서비스 경험률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빈곤가구에서 더 높았으나, 교통수당의 경우 소득수준에 의한 차이가 없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는 교통수당을 제외한 모든 노인복지서비스 이용률, 특히 의료비지원과 무료급식 경험율이 비수급가구에 비해 매우 높았다.

<표 II-41> 노인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 (K10, 복수응답)

단위 : 가구수(%)

	기초 노령 연금	교통 수당	의료비 지원	무료 급식	방문 간호 간병	식사 혹은 말반찬 배달 서비스	물품 지원	가정 봉사	취업 지원	여가 활동	주간, 단기 보호 시설	기타
■ 항목	617 (55.7)	288 (26.0)	152 (13.7)	67 (6.0)	47 (4.2)	44 (4.0)	44 (4.0)	28 (2.5)	10 (0.9)	10 (0.9)	5 (0.5)	3 (0.3)
가구원 수												
1명	189 (71.3)	74 (27.9)	70 (26.4)	43 (16.2)	21 (7.9)	25 (9.4)	28 (10.6)	16 (6.0)	4 (1.5)	3 (1.1)	1 (0.4)	0 (0.0)
2명	207 (45.3)	104 (22.8)	45 (9.8)	16 (3.5)	13 (2.8)	10 (2.2)	10 (2.2)	7 (1.5)	4 (0.9)	2 (0.4)	0 (0.0)	1 (0.2)
3명	87 (52.4)	50 (30.1)	16 (9.6)	4 (2.4)	7 (4.2)	5 (3.0)	2 (1.2)	2 (1.2)	1 (0.6)	1 (0.6)	1 (0.6)	1 (0.6)
4명	56 (60.2)	25 (26.9)	9 (9.7)	1 (1.1)	1 (1.1)	2 (2.2)	2 (2.2)	0 (0.0)	0 (0.0)	1 (1.1)	1 (1.1)	0 (0.0)
5명 이상	78 (61.4)	35 (27.6)	12 (9.4)	3 (2.4)	5 (3.9)	2 (1.6)	2 (1.6)	3 (2.4)	1 (0.8)	3 (2.4)	2 (1.6)	1 (0.8)
가구형태												
일반가구	239 (54.3)	125 (28.4)	28 (6.4)	6 (1.4)	6 (1.4)	6 (1.4)	5 (1.1)	3 (0.7)	3 (0.7)	5 (1.1)	2 (0.5)	1 (0.2)
노인가구	228 (53.5)	108 (25.4)	75 (17.6)	43 (10.1)	19 (4.5)	25 (5.9)	26 (6.1)	17 (4.0)	5 (1.2)	2 (0.5)	1 (0.2)	1 (0.2)

	기초 노령 연금	교통 수당	의료비 지원	무료 급식	방문 간호 간병	식사 혹은 밀반찬 배달 서비스	물품 지원	가정 봉사	취업 지원	여가 활동	주간, 단기 보호 시설	기타
장애인 가구	93 (60.8)	37 (24.2)	27 (17.6)	6 (3.9)	13 (8.5)	6 (3.9)	6 (3.9)	3 (2.0)	1 (0.7)	1 (0.7)	2 (1.3)	1 (0.7)
장애노인가구	57 (64.0)	18 (20.2)	22 (24.7)	12 (13.5)	9 (10.1)	7 (7.9)	7 (7.9)	5 (5.6)	1 (1.1)	2 (2.2)	0 (0.0)	0 (0.0)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355 (66.1)	137 (25.5)	114 (21.2)	62 (11.5)	31 (5.8)	37 (6.9)	36 (6.7)	19 (3.5)	8 (1.5)	4 (0.7)	1 (0.2)	2 (0.4)
중위소득 51-150% 이하	196 (47.1)	108 (26.0)	29 (7.0)	3 (0.7)	11 (2.6)	6 (1.4)	7 (1.7)	7 (1.7)	1 (0.2)	3 (0.7)	0 (0.0)	0 (0.0)
중위소득 151% 이상	66 (42.6)	43 (27.7)	9 (5.8)	2 (1.3)	5 (3.2)	1 (0.6)	1 (0.6)	2 (1.3)	1 (0.6)	3 (1.9)	4 (2.6)	1 (0.6)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126 (94.0)	44 (32.8)	99 (73.9)	57 (42.5)	28 (20.9)	33 (24.6)	33 (24.6)	19 (14.2)	2 (1.5)	3 (2.2)	1 (0.7)	0 (0.0)
비수급가구	491 (50.4)	244 (25.1)	53 (5.4)	10 (1.0)	19 (2.0)	11 (1.1)	11 (1.1)	9 (0.9)	8 (0.8)	7 (0.7)	4 (0.4)	3 (0.3)

[Base : 노인가구원이 있는 가구]

노인가구원이 있는 가구 전체에서 서비스유형별 노인복지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를 살펴보면, 노령연금에 대해서는 85.6%에 해당하는 949가구가 '정말 또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의료비지원에 대해서는 81.7%에 해당하는 905가구가 '정말 또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기초노령연금과 의료비지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노령연금과 의료비지원 다음으로 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은 서비스는 교통수당(57.8%)이었다.

이 세 가지 서비스를 제외한 다음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정말 또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에 비해, '거의 또는 정말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많이 나타났다. 특히 가정봉사, 식사배달서비스, 방문간호·간병, 주간·단기보호시설, 취업지원, 여가활동 등에 대해서는 무료급식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가구가 '거의 또는 정말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노인가구원이 있는 가구 전반적으로는 이들 서비스

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2> 노인복지서비스 - 필요도 (K11) 노인가구원이 있는 가구 전체

단위 : 가구수(%)

서비스유형	전체	정말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기초노령연금	1,108(100.0)	645(58.2)	304(27.4)	86(7.8)	60(5.4)	13(1.2)
의료비지원	1,108(100.0)	513(46.3)	392(35.4)	97(8.8)	86(7.8)	20(1.8)
무료급식	1,108(100.0)	103(9.3)	137(12.4)	307(27.7)	377(34.0)	184(16.6)
물품지원	1,108(100.0)	108(9.7)	187(16.9)	299(27.0)	367(33.1)	147(13.3)
가정봉사	1,108(100.0)	84(7.6)	141(12.7)	318(28.7)	385(34.7)	180(16.2)
식사배달서비스	1,108(100.0)	79(7.1)	135(12.2)	297(26.8)	401(36.2)	196(17.7)
방문간호,간병	1,108(100.0)	100(9.0)	168(15.2)	285(25.7)	380(34.3)	175(15.8)
교통수당	1,108(100.0)	330(29.8)	310(28.0)	165(14.9)	224(20.2)	79(7.1)
주간,단기보호시설	1,108(100.0)	38(3.4)	131(11.8)	283(25.5)	430(38.8)	226(20.4)
취업지원	1,108(100.0)	58(5.2)	95(8.6)	298(26.9)	405(36.6)	252(22.7)
여가활동	1,108(100.0)	37(3.3)	130(11.7)	356(32.1)	388(35.0)	197(17.8)

[Base : 노인가구원이 있는 가구]

10. 미취학 아동

만6세 이하 미취학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전체가구 중 15.4%인 445가구로 나타났다. 장애인가구, 빈곤가구, 수급가구에서 만6세 이하 가구원이 있는 가구비율이 더 낮았다.

<표 II-43> 만6세 이하 가구원수 (L1)

단위 : 가구수(%)

	전체	없음	1명	2명	3명
□ 항목 □	2,893(100.0)	2,448(84.6)	291(10.1)	146(5.0)	8(0.3)
가구원 수					
1명	471(100.0)	471(100.0)	0(0.0)	0(0.0)	0(0.0)
2명	716(100.0)	715(99.9)	1(0.1)	0(0.0)	0(0.0)
3명	597(100.0)	454(76.0)	143(24.0)	0(0.0)	0(0.0)
4명	817(100.0)	613(75.0)	91(11.1)	113(13.8)	0(0.0)
5명 이상	292(100.0)	195(66.8)	56(19.2)	33(11.3)	8(2.7)
가구형태					
일반가구	2,079(100.0)	1,650(79.4)	282(13.6)	139(6.7)	8(0.4)
장애인 가구	296(100.0)	280(94.6)	9(3.0)	7(2.4)	0(0.0)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746(100.0)	738(98.9)	6(0.8)	1(0.1)	1(0.1)
중위소득 51-150% 이하	1,225(100.0)	1,000(81.6)	145(11.8)	78(6.4)	2(0.2)
중위소득 151% 이상	922(100.0)	710(77.0)	140(15.2)	67(7.3)	5(0.5)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226(100.0)	219(96.9)	4(1.8)	2(0.9)	1(0.4)
비수급가구	2,667(100.0)	2,229(83.6)	287(10.8)	144(5.4)	7(0.3)

[Base : 전체 가구]

만6세 이하 가구원이 있는 가구들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자녀보육관련 서비스는 보육료 감면 보조 및 학비지원(28.5%)이었다. 기타 서비스에 대한 이용율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았다.

<표 II-44> 자녀보육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L8, 복수응답)

단위 : 가구수(%)

	보육료 감면 보조 및 학비지원	보육시설 및 육아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	영/유아 대상 의료비지원	다자녀가구 및 출산지원	무료급식	상담	아이 돌보미 서비스
전체가구	127(28.5)	20(4.5)	15(3.4)	6(1.3)	5(1.1)	3(0.7)	2(0.4)
가구원 수							
2명	1(100.0)	0(0.0)	0(0.0)	0(0.0)	0(0.0)	1(100.0)	0(0.0)
3명	21(14.7)	1(0.7)	4(2.8)	1(0.7)	2(1.4)	1(0.7)	0(0.0)
4명	59(28.9)	7(3.4)	7(3.4)	2(1.0)	2(1.0)	1(0.5)	1(0.5)
5명 이상	46(47.4)	12(12.4)	4(4.1)	3(3.1)	1(1.0)	0(0.0)	1(1.0)
가구형태							
일반가구	122(28.4)	19(4.4)	14(3.3)	5(1.2)	5(1.2)	3(0.7)	2(0.5)
장애인 가구	5(31.3)	1(6.3)	1(6.3)	1(6.3)	0(0.0)	0(0.0)	0(0.0)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3(37.5)	0(0.0)	1(12.5)	0(0.0)	0(0.0)	1(12.5)	0(0.0)
중위소득 51-150% 이하	96(42.7)	8(3.6)	8(3.6)	6(2.7)	2(0.9)	1(0.4)	0(0.0)
중위소득 151% 이상	28(13.2)	12(5.7)	6(2.8)	0(0.0)	3(1.4)	1(0.5)	2(0.9)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7(100.0)	1(14.3)	1(14.3)	3(42.9)	1(14.3)	0(0.0)	0(0.0)
비수급가구	120(27.4)	19(4.3)	14(3.2)	3(0.7)	4(0.9)	3(0.7)	2(0.5)

[Base 만6세 이하 가구원이 있는 가구]

만6세 이하 가구원이 있는 가구 전체에서, 서비스유형별 자녀보육관련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를 살펴보면, 보육료 감면 보조 및 학비지원에 대해서는 87.6%의 가구에서 정말 또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육료 감면 보조 및 학비지원을 제외하고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가장 높은 서비스는 영유아 대상 의료비지원(77.3%)이었고, 가장 낮은 서비스는 무료급식(43.6%)이었다.

<표 II-45> 자녀보육관련 서비스 필요도 (L9-1) - 만6세 이하 가구원이 있는 가구 전체

단위 : 가구수(%)

서비스유형	전체	정말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보육료 감면 보조 및 학비지원	445(100.0)	192(43.1)	198(44.5)	30(6.7)	22(4.9)	3(0.7)
영·유아 대상 의료비지원	445(100.0)	129(29.0)	215(48.3)	59(13.3)	37(8.3)	5(1.1)
상담	445(100.0)	54(12.1)	170(38.2)	129(29.0)	68(15.3)	24(5.4)
아이돌보미서비스	445(100.0)	72(16.2)	189(42.5)	109(24.5)	58(13.0)	17(3.8)
보육 및 육아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	445(100.0)	54(12.1)	177(39.8)	115(25.8)	72(16.2)	27(6.1)
다자녀가구 출산지원	445(100.0)	73(16.4)	161(36.2)	101(22.7)	77(17.3)	33(7.4)
무료급식	445(100.0)	64(14.4)	130(29.2)	108(24.3)	97(21.8)	46(10.3)

[Base : 만6세 이하 가구원이 있는 가구]

11. 자녀교육

만7세에서 만18세 가구원의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전체가구의 26.6%인 770가구로, 만6세 이하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비율보다는 높았다. 장애인가구, 빈곤가구, 수급가구에서 만7세에서 만18세까지의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 -46> 만7세-만18세 가구원수 (M1)

단위 : 가구수(%)

	전체	없음	1명	2명	3명
□ 항목 □	2,893(100.0)	2,123(73.4)	371(12.8)	352(12.2)	47(1.6)
가구원 수					
1명	471(100.0)	471(100.0)	0(0.0)	0(0.0)	0(0.0)
2명	716(100.0)	694(96.9)	22(3.1)	0(0.0)	0(0.0)
3명	597(100.0)	481(80.6)	100(16.8)	15(2.5)	1(0.2)
4명	817(100.0)	394(48.2)	188(23.0)	233(28.5)	2(0.2)
5명 이상	292(100.0)	83(28.4)	61(20.9)	104(35.6)	44(15.1)
가구형태					
일반가구	2,079(100.0)	1,373(66.0)	343(16.5)	322(15.5)	41(2.0)
장애인 가구	296(100.0)	232(78.4)	28(9.5)	30(10.1)	6(2.0)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746(100.0)	692(92.8)	28(3.8)	25(3.4)	1(0.1)
중위소득 51-150% 이하	1,225(100.0)	916(74.8)	154(12.6)	133(10.9)	22(1.8)
중위소득 151% 이상	922(100.0)	515(55.9)	189(20.5)	194(21.0)	24(2.6)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226(100.0)	174(77.0)	28(12.4)	18(8.0)	6(2.7)
비수급가구	2,667(100.0)	1,949(73.1)	343(12.9)	334(12.5)	41(1.5)

[Base : 전체 가구]

자녀교육관련 서비스 이용경험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아서, 가장 경험율이 높은 '견학·문화체험·방문 등의 당일활동'을 이용한 경험도 4.8%에 그쳤고, 생활을 도와주기 위한 자원봉사자 방문 경험이 있는 가구는 단 한 가구였다.

정말 또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은 자녀교육관련 서비스는 견학, 문화체험 방문 등의 당일활동(56.4%)이었고, 그 다음은 캠프 등 1박 이상의 수련활동(48.8%)이었다. 고민이나 문제에 대한 상담, 학습지도, 성격이나 친구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도 정말 또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거의 또는 정말 불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율보다 높았다. 심리·언어·음악·놀이치료와 생활을 도와주기 위한 자원봉사자 방문은 정말 또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거의 또는 정말 불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율보다 낮아서, 필요성에 대

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7> 자녀교육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M9, 복수응답)

단위 : 가구수(%)

	견학, 문화체험 방문 등의 당일 활동	캠프 등 1박 이상의 수련활동	학습지도	심리, 언어, 음악, 놀이치료 등	고민이나 문제에 대한 상담	성격이나 친구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생활을 도와주기 위한 자원봉사자 방문
전체가구	37(4.8)	29(3.8)	27(3.5)	16(2.1)	15(1.9)	11(1.4)	1(0.1)
가구원 수							
2명	0(0.0)	0(0.0)	1(4.5)	0(0.0)	0(0.0)	0(0.0)	0(0.0)
3명	7(6.0)	5(4.3)	5(4.3)	7(6.0)	4(3.4)	1(0.9)	1(0.9)
4명	26(6.1)	19(4.5)	16(3.8)	7(1.7)	9(2.1)	10(2.4)	0(0.0)
5명 이상	4(1.9)	5(2.4)	5(2.4)	2(1.0)	2(1.0)	0(0.0)	0(0.0)
가구형태							
일반가구	35(5.0)	27(3.8)	27(3.8)	14(2.0)	15(2.1)	10(1.4)	1(0.1)
장애인 가구	2(3.1)	2(3.1)	0(0.0)	2(3.1)	0(0.0)	1(1.6)	0(0.0)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1(1.9)	0(0.0)	3(5.6)	4(7.4)	2(3.7)	0(0.0)	0(0.0)
중위소득 51-150% 이하	12(3.9)	9(2.9)	8(2.6)	4(1.3)	4(1.3)	4(1.3)	1(0.3)
중위소득 151% 이상	24(5.9)	20(4.9)	16(3.9)	8(2.0)	9(2.2)	7(1.7)	0(0.0)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2(3.8)	1(1.9)	3(5.8)	4(7.7)	3(5.8)	2(3.8)	1(1.9)
비수급가구	35(4.9)	28(3.9)	24(3.3)	12(1.7)	12(1.7)	9(1.3)	0(0.0)

[Base : 만7세-만18세 가구원이 있는 가구]

가구형태별로 서비스유형별 자녀교육 관련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를 살펴보면, '학습지도'와 '심리·언어·음악·놀이치료'가 정말 또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일반가구에 비해 장애인가구에서 10% 이상 높았다. 이는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서 학령기 자녀들을 위한 학습지도에 어려움이 더 크고, 전문적인 심리치료에 대한 욕구가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II-48> 자녀교육 관련서비스 필요도 (M10) - 만7세-만18세 가구원이 있는 가구 전체

단위 : 가구수(%)

서비스유형	전체	정말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고민이나 문제에 대한 상담	770(100.0)	33(4.3)	327(42.5)	178(23.1)	184(23.9)	48(6.2)
학습지도	770(100.0)	49(6.4)	306(39.7)	175(22.7)	191(24.8)	49(6.4)
생활을 도와주기 위한 자원봉사자 방문	770(100.0)	13(1.7)	179(23.2)	155(20.1)	276(35.8)	147(19.1)
심리, 언어, 음악, 놀이치료	770(100.0)	19(2.5)	210(27.3)	154(20.0)	277(36.0)	110(14.3)
캠프 등 1박 이상의 수련활동	770(100.0)	71(9.2)	305(39.6)	166(21.6)	178(23.1)	50(6.5)
견학, 문화체험 방문 등의 당일 활동	770(100.0)	83(10.8)	351(45.6)	151(19.6)	151(19.6)	34(4.4)
성격이나 친구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770(100.0)	54(7.0)	280(36.4)	186(24.2)	181(23.5)	69(9.0)

[Base : 만7세-만18세 가구원이 있는 가구]

<표 II-49> 자녀교육 관련서비스 - 필요도 (M10) 가구형태에 의한 가구 구분

단위 : 가구수(%)

서비스유형	가구구분	전체	정말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고민이나 문제에 대한 상담	일반가구	706(100.0)	27(3.8)	303(42.9)	46.7	163(23.1)	172(24.4)	41(5.8)
	장애인 가구	64(100.0)	6(9.4)	24(37.5)	46.9	15(23.4)	12(18.8)	7(10.9)
학습지도	일반가구	706(100.0)	37(5.2)	279(39.5)	44.7	166(23.5)	179(25.4)	45(6.4)
	장애인 가구	64(100.0)	12(18.8)	27(42.2)	61.0	9(14.1)	12(18.8)	4(6.3)
생활을 도와주기 위한 자원봉사자 방문	일반가구	706(100.0)	10(1.4)	162(22.9)	24.3	145(20.5)	259(36.7)	130(18.4)
	장애인 가구	64(100.0)	3(4.7)	17(26.6)	31.3	10(15.6)	17(26.6)	17(26.6)
심리, 언어, 음악, 놀이치료	일반가구	706(100.0)	15(2.1)	188(26.6)	28.7	145(20.5)	260(36.8)	98(13.9)
	장애인 가구	64(100.0)	4(6.3)	22(34.4)	40.7	9(14.1)	17(26.6)	12(18.8)
캠프 등 1박 이상의 수련활동	일반가구	706(100.0)	64(9.1)	276(39.1)	48.2	156(22.1)	169(23.9)	41(5.8)
	장애인 가구	64(100.0)	7(10.9)	29(45.3)	56.2	10(15.6)	9(14.1)	9(14.1)
견학, 문화체험 방문 등의 당일활동	일반가구	706(100.0)	74(10.5)	319(45.2)	55.7	141(20.0)	144(20.4)	28(4.0)
	장애인 가구	64(100.0)	9(14.1)	32(50.0)	64.1	10(15.6)	7(10.9)	6(9.4)
성격이나 친구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일반가구	706(100.0)	48(6.8)	256(36.3)	43.1	173(24.5)	171(24.2)	58(8.2)
	7장애인 가구	64(100.0)	6(9.4)	24(37.5)	46.9	13(20.3)	10(15.6)	11(17.2)

[Base : 만7세-만18세 가구원이 있는 가구]

12. 장애 및 재활

서울시복지패널조사 가구 가운데 장애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파악해보면 13.4%(386가구)가 1명 또는 2명의 장애가구원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인가구는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소득집단별 차이를 보였다. 중위소득 151% 이상의 고소득 가구에서는 93.8%(865가구)가 장애가구원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51-150% 이하는 88.2%(1,080가구), 50% 이하는 75.3%(562가구)로 소득이 낮을수록 장애가구원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II-50> 장애 가구원(N1)

단위 : 가구수(%)

		전체	없음	1명	2명
■	항 목 ■	2,893(100.0)	2,507(86.7)	358(12.4)	28(1.0)
가구원 수					
	1명	471(100.0)	402(85.4)	69(14.6)	0(0.0)
	2명	716(100.0)	576(80.4)	128(17.9)	12(1.7)
	3명	597(100.0)	522(87.4)	69(11.6)	6(1.0)
	4명	817(100.0)	760(93.0)	52(6.4)	5(0.6)
	5명 이상	292(100.0)	247(84.6)	40(13.7)	5(1.7)
가구형태					
	일반가구	2,079(100.0)	2,079(100.0)	0(0.0)	0(0.0)
	노인가구	428(100.0)	428(100.0)	0(0.0)	0(0.0)
	장애인 가구	296(100.0)	0(0.0)	274(92.6)	22(7.4)
	장애노인 가구	90(100.0)	0(0.0)	84(93.3)	6(6.7)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746(100.0)	562(75.3)	170(22.8)	14(1.9)
	중위소득 51-150% 이하	1,225(100.0)	1,080(88.2)	132(10.8)	13(1.1)
	중위소득 151% 이상	922(100.0)	865(93.8)	56(6.1)	1(0.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226(100.0)	139(61.5)	77(34.1)	10(4.4)
	비수급가구	2,667(100.0)	2,368(88.8)	281(10.5)	18(0.7)

[Base : 전체 가구]

주된 장애유형으로는 지체장애가 52.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뇌병변장애 (14.8%), 청각장애(10.1%), 시각장애(8.5%), 정신장애(8.0%) 순으로 나타났다. 간장애나 언어장애, 장루 및 요루장애, 간질장애의 비율은 낮았다.

<표 II-51> 주된 장애 유형(N4, 복수응답)

단위 : 가구수(%)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청각 장애	시각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호흡 기 장애	지적 장애	자폐 성 장애	심장 장애	안면 장애	간 장애	언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 항목 ■	202 (52.3)	57 (14.8)	39 (10.1)	33 (8.5)	31 (8.0)	13 (3.4)	7 (1.8)	7 (1.8)	6 (1.6)	5 (1.3)	5 (1.3)	3 (0.8)	2 (0.5)	2 (0.5)	2 (0.5)
가구원 수															
1명	41 (59.4)	3 (4.3)	6 (8.7)	5 (7.2)	6 (8.7)	1 (1.4)	4 (5.8)	0 (0.0)	0 (0.0)	0 (0.0)	2 (2.9)	0 (0.0)	1 (1.4)	0 (0.0)	0 (0.0)
2명	79 (56.4)	28 (20.0)	9 (6.4)	13 (9.3)	6 (4.3)	5 (3.6)	3 (2.1)	4 (2.9)	1 (0.7)	1 (0.7)	1 (0.7)	1 (0.7)	0 (0.0)	0 (0.0)	1 (0.7)
3명	38 (50.7)	10 (13.3)	9 (12.0)	3 (4.0)	10 (13.3)	3 (4.0)	0 (0.0)	2 (2.7)	1 (1.3)	1 (1.3)	0 (0.0)	1 (1.3)	1 (1.3)	1 (1.3)	1 (1.3)
4명	30 (52.6)	5 (8.8)	7 (12.3)	5 (8.8)	4 (7.0)	3 (5.3)	0 (0.0)	1 (1.8)	3 (5.3)	1 (1.8)	2 (3.5)	0 (0.0)	0 (0.0)	1 (1.8)	0 (0.0)
5명 이상	14 (31.1)	11 (24.4)	8 (17.8)	7 (15.6)	5 (11.1)	1 (2.2)	0 (0.0)	0 (0.0)	1 (2.2)	2 (4.4)	0 (0.0)	1 (2.2)	0 (0.0)	0 (0.0)	0 (0.0)
가구형태															
장애인 가구	148 (50.0)	43 (14.5)	28 (9.5)	25 (8.4)	30 (10.1)	12 (4.1)	3 (1.0)	6 (2.0)	6 (2.0)	4 (1.4)	5 (1.7)	3 (1.0)	1 (0.3)	2 (0.7)	2 (0.7)
장애노인 가구	54 (60.0)	14 (15.6)	11 (12.2)	8 (8.9)	1 (1.1)	1 (1.1)	4 (4.4)	1 (1.1)	0 (0.0)	1 (1.1)	0 (0.0)	0 (0.0)	1 (1.1)	0 (0.0)	0 (0.0)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103 (56.0)	22 (12.0)	15 (8.2)	14 (7.6)	19 (10.3)	6 (3.3)	7 (3.8)	5 (2.7)	0 (0.0)	2 (1.1)	2 (1.1)	1 (0.5)	1 (0.5)	0 (0.0)	1 (0.5)
중위소득 51-150% 이하	75 (51.7)	22 (15.2)	19 (13.1)	15 (10.3)	10 (6.9)	5 (3.4)	0 (0.0)	0 (0.0)	4 (2.8)	2 (1.4)	2 (1.4)	0 (0.0)	1 (0.7)	2 (1.4)	1 (0.7)
중위소득 151% 이상	24 (42.1)	13 (22.8)	5 (8.8)	4 (7.0)	2 (3.5)	2 (3.5)	0 (0.0)	2 (3.5)	2 (3.5)	1 (1.8)	1 (1.8)	2 (3.5)	0 (0.0)	0 (0.0)	0 (0.0)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52 (59.8)	7 (8.0)	7 (8.0)	5 (5.7)	13 (14.9)	4 (4.6)	1 (1.1)	3 (3.4)	1 (1.1)	0 (0.0)	3 (3.4)	0 (0.0)	1 (1.1)	0 (0.0)	0 (0.0)
비수급가구	150 (50.2)	50 (16.7)	32 (10.7)	28 (9.4)	18 (6.0)	9 (3.0)	6 (2.0)	4 (1.3)	5 (1.7)	5 (1.7)	2 (0.7)	3 (1.0)	1 (0.3)	2 (0.7)	2 (0.7)

[Base : 장애가구원이 있는 가구]

주된 장애 등급은 2등급이 24.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3등급 23.3%, 4등급 14.8%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으로 속하는 1, 2등급 비율이 37.1%였으며 대부분은 경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양상은 가구규모나 가구형태, 소득수준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52> 주된 장애 등급(N5, 복수응답)

단위 : 가구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 항목 □		50 (13.0)	93 (24.1)	90 (23.3)	57 (14.8)	55 (14.2)	69 (17.9)
가구원 수							
	1명	7 (10.1)	10 (14.5)	14 (20.3)	10 (14.5)	14 (20.3)	14 (20.3)
	2명	20 (14.3)	33 (23.6)	29 (20.7)	26 (18.6)	24 (17.1)	20 (14.3)
	3명	10 (13.3)	16 (21.3)	24 (32.0)	10 (13.3)	10 (13.3)	11 (14.7)
	4명	7 (12.3)	17 (29.8)	13 (22.8)	7 (12.3)	3 (5.3)	15 (26.3)
	5명 이상	6 (13.3)	17 (37.8)	10 (22.2)	4 (8.9)	4 (8.9)	9 (20.0)
가구형태							
	장애인 가구	41 (13.9)	84 (28.4)	72 (24.3)	34 (11.5)	35 (11.8)	52 (17.6)
	장애노인 가구	9 (10.0)	9 (10.0)	18 (20.0)	23 (25.6)	20 (22.2)	17 (18.9)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22 (12.0)	42 (22.8)	48 (26.1)	31 (16.8)	30 (16.3)	25 (13.6)
	중위소득 51-150% 이하	23 (15.9)	32 (22.1)	30 (20.7)	20 (13.8)	20 (13.8)	33 (22.8)
	중위소득 151% 이상	5 (8.8)	19 (33.3)	12 (21.1)	6 (10.5)	5 (8.8)	11 (19.3)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17 (19.5)	29 (33.3)	24 (27.6)	11 (12.6)	7 (8.0)	9 (10.3)
	비수급가구	33 (11.0)	64 (21.4)	66 (22.1)	46 (15.4)	48 (16.1)	60 (20.1)

[Base : 장애가구원이 있는 가구]

장애가구원이 있는 가구에게 주된장애를 등록했는지 물어본 결과 대부분(97.2%, 375가구)이 등록했다고 응답하였으며 10.1%(39가구)는 등록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가구규모나 가구형태, 소득, 수급여부와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이 주된 장애에 대해서 등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53> 주된 장애 등록 여부(N6, 복수응답)

단위 : 가구수(%)

구분	등록 했다	등록하지 않았다
■ 항목 ■	375(97.2)	39(10.1)
가구원 수		
1명	61(88.4)	8(11.6)
2명	138(98.6)	14(10.0)
3명	75(100.0)	6(8.0)
4명	60(105.3)	2(3.5)
5명 이상	41(91.1)	9(20.0)
가구형태		
장애인 가구	289(97.6)	29(9.8)
장애노인 가구	86(95.6)	10(11.1)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172(93.5)	26(14.1)
중위소득 51-150% 이하	146(100.7)	12(8.3)
중위소득 151% 이상	57(100.0)	1(1.8)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89(102.3)	8(9.2)
비수급가구	286(95.7)	31(10.4)

[Base : 장애가구원이 있는 가구]

대부분의 사람들이 등록을 한다고 응답하였지만 등록을 하지 않은 가구에게 미등록 사유를 물어본 결과 40.5%(15가구)가 장애등록을 해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안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등록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못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16.2%(6가구)로 나타났다.

<표 II-54> 주된 장애 미등록 이유(N7, 복수응답)

단위 : 가구수(%)

	등록해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등록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등록하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어서	등록하는데 비용이 들 것 같아서	앞으로 장애상태가 호전될 것 같아서	등록 과정이 번거로워서	장애인이 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남에게 장애인임을 알리기 싫어서	기타
□ 항목 □	15(40.5)	6(16.2)	5(13.5)	3(8.1)	3(8.1)	2(5.4)	2(5.4)	1(2.7)	2(5.4)
가구원 수									
1명	4(50.0)	1(12.5)	0(0.0)	0(0.0)	2(25.0)	0(0.0)	1(12.5)	0(0.0)	0(0.0)
2명	5(38.5)	2(15.4)	2(15.4)	2(15.4)	0(0.0)	0(0.0)	0(0.0)	1(7.7)	2(15.4)
3명	3(50.0)	1(16.7)	2(33.3)	0(0.0)	0(0.0)	0(0.0)	0(0.0)	0(0.0)	0(0.0)
4명	0(0.0)	1(50.0)	0(0.0)	1(50.0)	0(0.0)	0(0.0)	0(0.0)	0(0.0)	0(0.0)
5명 이상	3(37.5)	1(12.5)	1(12.5)	0(0.0)	1(12.5)	2(25.0)	1(12.5)	0(0.0)	0(0.0)
가구형태									
장애인 가구	12(42.9)	4(14.3)	3(10.7)	1(3.6)	2(7.1)	2(7.1)	2(7.1)	1(3.6)	2(7.1)
장애노인 가구	3(33.3)	2(22.2)	2(22.2)	2(22.2)	1(11.1)	0(0.0)	0(0.0)	0(0.0)	0(0.0)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11(44.0)	4(16.0)	3(12.0)	0(0.0)	3(12.0)	1(4.0)	2(8.0)	1(4.0)	1(4.0)
중위소득 51-150% 이하	4(36.4)	2(18.2)	1(9.1)	3(27.3)	0(0.0)	1(9.1)	0(0.0)	0(0.0)	1(9.1)
중위소득 151% 이상	0(0.0)	0(0.0)	1(100.0)	0(0.0)	0(0.0)	0(0.0)	0(0.0)	0(0.0)	0(0.0)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6(75.0)	1(12.5)	0(0.0)	0(0.0)	0(0.0)	0(0.0)	1(12.5)	0(0.0)	0(0.0)
비수급가구	9(31.0)	5(17.2)	5(17.2)	3(10.3)	3(10.3)	2(6.9)	1(3.4)	1(3.4)	2(6.9)

[Base : 장애가구원이 있는 가구]

다음은 장애가 있는 가구원을 돌보는 것이 가족들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먼저 장애 가구원을 돌보기 위해 외출이나 취미생활 등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과 부정적인 답변이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시간을 내기가 힘들다고 한 경우가 23.3%(90가구), 자기 시간을 전혀 낼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3.5%(52가구를 차지하고 있어 장애인 당사자를 지원하는 서비스 뿐만 아니라 가족 지원 서비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라 하겠다.

<표 II-55> 장애 가구원을 돌보기 위해 외출이나 취미생활 등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다(N8-1)

단위 : 가구수(%)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항목 □	386(100.0)	52(13.5)	90(23.3)	104(26.9)	92(23.8)	48(12.4)
가구원 수						
1명	69(100.0)	8(11.6)	9(13.0)	26(37.7)	13(18.8)	13(18.8)
2명	140(100.0)	25(17.9)	36(25.7)	38(27.1)	32(22.9)	9(6.4)
3명	75(100.0)	9(12.0)	19(25.3)	17(22.7)	18(24.0)	12(16.0)
4명	57(100.0)	6(10.5)	13(22.8)	12(21.1)	19(33.3)	7(12.3)
5명 이상	45(100.0)	4(8.9)	13(28.9)	11(24.4)	10(22.2)	7(15.6)
가구형태						
장애인 가구	296(100.0)	38(12.8)	77(26.0)	71(24.0)	69(23.3)	41(13.9)
장애노인 가구	90(100.0)	14(15.6)	13(14.4)	33(36.7)	23(25.6)	7(7.8)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184(100.0)	30(16.3)	43(23.4)	54(29.3)	40(21.7)	17(9.2)
중위소득 51-150% 이하	145(100.0)	16(11.0)	35(24.1)	36(24.8)	35(24.1)	23(15.9)
중위소득 151% 이상	57(100.0)	6(10.5)	12(21.1)	14(24.6)	17(29.8)	8(14.0)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87(100.0)	14(16.1)	27(31.0)	22(25.3)	14(16.1)	10(11.5)
비수급가구	299(100.0)	38(12.7)	63(21.1)	82(27.4)	78(26.1)	38(12.7)

[Base : 장애가구원이 있는 가구]

장애 가구원을 돌보다가 나의 건강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사례는 시간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본인 건강이 나빠졌다는데 동의하는 경우가 33%정도 나왔으며 32.4%는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는 경우가 33%정도 나타났다.

<표 II-56> 장애 가구원을 돌보다 나의 건강이 나빠졌다(N8-2)

단위 : 가구수(%)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항 목 ☐	386(100.0)	31(8.0)	103(26.7)	125(32.4)	89(23.1)	38(9.8)
가구원 수						
1명	69(100.0)	5(7.2)	18(26.1)	27(39.1)	13(18.8)	6(8.7)
2명	140(100.0)	14(10.0)	46(32.9)	42(30.0)	29(20.7)	9(6.4)
3명	75(100.0)	6(8.0)	20(26.7)	20(26.7)	19(25.3)	10(13.3)
4명	57(100.0)	2(3.5)	7(12.3)	23(40.4)	17(29.8)	8(14.0)
5명 이상	45(100.0)	4(8.9)	12(26.7)	13(28.9)	11(24.4)	5(11.1)
가구형태						
장애인 가구	296(100.0)	22(7.4)	78(26.4)	94(31.8)	68(23.0)	34(11.5)
장애노인 가구	90(100.0)	9(10.0)	25(27.8)	31(34.4)	21(23.3)	4(4.4)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184(100.0)	19(10.3)	63(34.2)	55(29.9)	38(20.7)	9(4.9)
중위소득 51-150% 이하	145(100.0)	8(5.5)	32(22.1)	49(33.8)	34(23.4)	22(15.2)
중위소득 151% 이상	57(100.0)	4(7.0)	8(14.0)	21(36.8)	17(29.8)	7(12.3)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87(100.0)	8(9.2)	36(41.4)	26(29.9)	14(16.1)	3(3.4)
비수급가구	299(100.0)	23(7.7)	67(22.4)	99(33.1)	75(25.1)	35(11.7)

[Base : 장애가구원이 있는 가구]

장애가구원을 돌보는 것이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29.8%(115가구)가 대체로 그런 편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다(26.2%), 별로 그렇지 않다(21.2%), 전혀 그렇지 않다(12.2%), 매우 그렇다(10.6%)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57> 장애인을 돌보는 것이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된다(N8-3)

단위 : 가구수(%)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항목 □	386(100.0)	41(10.6)	115(29.8)	101(26.2)	82(21.2)	47(12.2)
가구원 수						
1명	69(100.0)	5(7.2)	10(14.5)	27(39.1)	15(21.7)	12(17.4)
2명	140(100.0)	14(10.0)	50(35.7)	42(30.0)	24(17.1)	10(7.1)
3명	75(100.0)	11(14.7)	24(32.0)	14(18.7)	15(20.0)	11(14.7)
4명	57(100.0)	5(8.8)	13(22.8)	13(22.8)	19(33.3)	7(12.3)
5명 이상	45(100.0)	6(13.3)	18(40.0)	5(11.1)	9(20.0)	7(15.6)
가구형태						
장애인 가구	296(100.0)	34(11.5)	92(31.1)	72(24.3)	57(19.3)	41(13.9)
장애노인 가구	90(100.0)	7(7.8)	23(25.6)	29(32.2)	25(27.8)	6(6.7)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184(100.0)	19(10.3)	63(34.2)	51(27.7)	35(19.0)	16(8.7)
중위소득 51-150% 이하	145(100.0)	16(11.0)	40(27.6)	37(25.5)	29(20.0)	23(15.9)
중위소득 151% 이상	57(100.0)	6(10.5)	12(21.1)	13(22.8)	18(31.6)	8(14.0)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87(100.0)	9(10.3)	31(35.6)	19(21.8)	16(18.4)	12(13.8)
비수급가구	299(100.0)	32(10.7)	84(28.1)	82(27.4)	66(22.1)	35(11.7)

[Base : 장애가구원이 있는 가구]

장애가구원이 있을 경우 장애인에게 들어가는 추가적 비용이 부담되는지에 대해서는 29.8%가 대체로 그런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도 15.5%를 차지하였다.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앞서 살펴본 부양과 심리적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I-58> 장애인에게 들어가는 추가적 비용이 부담된다(N8-4)

단위 : 가구수(%)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항목 □	386(100.0)	60(15.5)	115(29.8)	95(24.6)	75(19.4)	41(10.6)
가구원 수						
1명	69(100.0)	10(14.5)	13(18.8)	18(26.1)	17(24.6)	11(15.9)
2명	140(100.0)	26(18.6)	49(35.0)	37(26.4)	18(12.9)	10(7.1)
3명	75(100.0)	10(13.3)	24(32.0)	17(22.7)	15(20.0)	9(12.0)
4명	57(100.0)	7(12.3)	13(22.8)	14(24.6)	17(29.8)	6(10.5)
5명 이상	45(100.0)	7(15.6)	16(35.6)	9(20.0)	8(17.8)	5(11.1)
가구형태						
장애인 가구	296(100.0)	47(15.9)	93(31.4)	72(24.3)	51(17.2)	33(11.1)
장애노인 가구	90(100.0)	13(14.4)	22(24.4)	23(25.6)	24(26.7)	8(8.9)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184(100.0)	34(18.5)	61(33.2)	43(23.4)	31(16.8)	15(8.2)
중위소득 51-150% 이하	145(100.0)	20(13.8)	36(24.8)	40(27.6)	29(20.0)	20(13.8)
중위소득 151% 이상	57(100.0)	6(10.5)	18(31.6)	12(21.1)	15(26.3)	6(10.5)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87(100.0)	11(12.6)	31(35.6)	23(26.4)	13(14.9)	9(10.3)
비수급가구	299(100.0)	49(16.4)	84(28.1)	72(24.1)	62(20.7)	32(10.7)
가구주 성별						
남성	281(100.0)	41(14.6)	86(30.6)	64(22.8)	59(21.0)	31(11.0)
여성	105(100.0)	19(18.1)	29(27.6)	31(29.5)	16(15.2)	10(9.5)
가구주 연령						
18-29세	1(100.0)	0(0.0)	0(0.0)	0(0.0)	1(100.0)	0(0.0)
30대	17(100.0)	3(17.6)	6(35.3)	2(11.8)	3(17.6)	3(17.6)
40대	57(100.0)	7(12.3)	19(33.3)	15(26.3)	12(21.1)	4(7.0)
50대	81(100.0)	10(12.3)	22(27.2)	25(30.9)	13(16.0)	11(13.6)
60-64세	42(100.0)	6(14.3)	15(35.7)	10(23.8)	6(14.3)	5(11.9)
65세 이상	188(100.0)	34(18.1)	53(28.2)	43(22.9)	40(21.3)	18(9.6)
가구주 학력						
초등졸 이하	123(100.0)	29(23.6)	34(27.6)	31(25.2)	21(17.1)	8(6.5)
중학교	57(100.0)	8(14.0)	15(26.3)	15(26.3)	11(19.3)	8(14.0)
고등학교	130(100.0)	15(11.5)	46(35.4)	31(23.8)	24(18.5)	14(10.8)
전문대학	14(100.0)	0(0.0)	4(28.6)	1(7.1)	4(28.6)	5(35.7)
4년제 대학	57(100.0)	7(12.3)	15(26.3)	15(26.3)	14(24.6)	6(10.5)
대학원 석사 이상	5(100.0)	1(20.0)	1(20.0)	2(40.0)	1(20.0)	0(0.0)

[Base : 장애가구원이 있는 가구]

장애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해서 모두 응답하도록 한 결과 각종 세금 면제
요금 할인이 41.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장애수당이 29%,
의료비 지원 18.4%, 방문 간호나 가정 간호가 5.7%를 차지하였다.

<표 II-59> 장애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N10, 복수응답)

단위 : 가구수(%)

구분	각종 세금 면제 요금 할인	장애 수당	의료 비 지원	방문 간호 가정 간호	재활 보조 기구 무료 교부	교육 비 지원	가정 봉사 원	장애 인 택시/ 셔틀	재활 병원	장애 인 자립 자금 대여	재활 시설 및 그룹 홈	주간 단기 보호 시설	장애 인 심부 름 센터	직업 재활 및 훈련	장애 인 체육 관	자립 생활 센터	기타
□ 항목 □	159 (41.2)	112 (29.0)	71 (18.4)	22 (5.7)	18 (4.7)	16 (4.1)	14 (3.6)	10 (2.6)	5 (1.3)	4 (1.0)	3 (0.8)	3 (0.8)	2 (0.5)	1 (0.3)	1 (0.3)	1 (0.3)	1 (0.3)
가구원 수																	
1명	36 (52.2)	30 (43.5)	23 (33.3)	7 (10.1)	5 (7.2)	0 (0.0)	6 (8.7)	3 (4.3)	1 (1.4)	3 (4.3)	1 (1.4)	0 (0.0)	1 (1.4)	0 (0.0)	0 (0.0)	0 (0.0)	0 (0.0)
2명	61 (43.6)	39 (27.9)	27 (19.3)	8 (5.7)	2 (1.4)	2 (1.4)	4 (2.9)	2 (1.4)	1 (0.7)	1 (0.7)	0 (0.0)	0 (0.0)	1 (0.7)	1 (0.7)	0 (0.0)	0 (0.0)	0 (0.0)
3명	27 (36.0)	22 (29.3)	12 (16.0)	6 (8.0)	5 (6.7)	4 (5.3)	4 (5.3)	2 (2.7)	2 (2.7)	0 (0.0)	0 (0.0)	1 (1.3)	0 (0.0)	0 (0.0)	0 (0.0)	0 (0.0)	0 (0.0)
4명	21 (36.8)	11 (19.3)	4 (7.0)	0 (0.0)	1 (1.8)	5 (8.8)	0 (0.0)	2 (3.5)	0 (0.0)	0 (0.0)	1 (1.8)	0 (0.0)	0 (0.0)	0 (0.0)	0 (0.0)	0 (0.0)	1 (1.8)
5명 이상	14 (31.1)	10 (22.2)	5 (11.1)	1 (2.2)	5 (11.1)	5 (11.1)	0 (0.0)	1 (2.2)	1 (2.2)	0 (0.0)	1 (2.2)	2 (4.4)	0 (0.0)	0 (0.0)	1 (2.2)	1 (2.2)	0 (0.0)
가구형태																	
장애인 가구	120 (40.5)	88 (29.7)	54 (18.2)	16 (5.4)	14 (4.7)	16 (5.4)	11 (3.7)	8 (2.7)	3 (1.0)	4 (1.4)	2 (0.7)	3 (1.0)	1 (0.3)	0 (0.0)	1 (0.3)	1 (0.3)	1 (0.3)
장애노인 가구	39 (43.3)	24 (26.7)	17 (18.9)	6 (6.7)	4 (4.4)	0 (0.0)	3 (3.3)	2 (2.2)	2 (2.2)	0 (0.0)	1 (1.1)	0 (0.0)	1 (1.1)	1 (1.1)	0 (0.0)	0 (0.0)	0 (0.0)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82 (44.6)	74 (40.2)	51 (27.7)	14 (7.6)	10 (5.4)	4 (2.2)	11 (6.0)	5 (2.7)	2 (1.1)	3 (1.6)	2 (1.1)	0 (0.0)	1 (0.5)	1 (0.5)	1 (0.5)	1 (0.5)	0 (0.0)
중위소득 51-150% 이하	52 (35.9)	33 (22.8)	17 (11.7)	5 (3.4)	5 (3.4)	10 (6.9)	1 (0.7)	2 (1.4)	3 (2.1)	1 (0.7)	0 (0.0)	0 (0.0)	1 (0.7)	0 (0.0)	0 (0.0)	0 (0.0)	0 (0.0)
중위소득 151% 이상	25 (43.9)	5 (8.8)	3 (5.3)	3 (5.3)	3 (5.3)	2 (3.5)	2 (3.5)	3 (5.3)	0 (0.0)	0 (0.0)	1 (1.8)	3 (5.3)	0 (0.0)	0 (0.0)	0 (0.0)	0 (0.0)	1 (1.8)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58 (66.7)	67 (77.0)	52 (59.8)	12 (13.8)	10 (11.5)	10 (11.5)	10 (11.5)	3 (3.4)	2 (2.3)	3 (3.4)	1 (1.1)	0 (0.0)	1 (1.1)	1 (1.1)	0 (0.0)	0 (0.0)	0 (0.0)
비수급가구	101 (33.8)	45 (15.1)	19 (6.4)	10 (3.3)	8 (2.7)	6 (2.0)	4 (1.3)	7 (2.3)	3 (1.0)	1 (0.3)	2 (0.7)	3 (1.0)	1 (0.3)	0 (0.0)	1 (0.3)	1 (0.3)	1 (0.3)

[Base : 장애가구원이 있는 가구]

장애 가구원이 있는 가구에 대해 향후 장애 관련 복지서비스를 받을 의향이 있다면 필요한 복지서비스는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장애수당(장애아 부양수당)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53.4%(206가구)가 정말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32.4%(125가구)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장애인가구에서 장애수당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 -60> 장애수당(장애아부양수당) - 필요정도(N11-1)

단위 : 가구수(%)

	전체	정말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 항 목 ☐	386(100.0)	206(53.4)	125(32.4)	32(8.3)	18(4.7)	5(1.3)
가구원 수						
1명	69(100.0)	40(58.0)	23(33.3)	3(4.3)	1(1.4)	2(2.9)
2명	140(100.0)	80(57.1)	46(32.9)	9(6.4)	5(3.6)	0(0.0)
3명	75(100.0)	42(56.0)	23(30.7)	5(6.7)	4(5.3)	1(1.3)
4명	57(100.0)	23(40.4)	19(33.3)	9(15.8)	5(8.8)	1(1.8)
5명 이상	45(100.0)	21(46.7)	14(31.1)	6(13.3)	3(6.7)	1(2.2)
가구형태						
장애인 가구	296(100.0)	159(53.7)	89(30.1)	28(9.5)	15(5.1)	5(1.7)
장애노인 가구	90(100.0)	47(52.2)	36(40.0)	4(4.4)	3(3.3)	0(0.0)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184(100.0)	120(65.2)	53(28.8)	8(4.3)	2(1.1)	1(0.5)
중위소득 51-150% 이하	145(100.0)	71(49.0)	53(36.6)	9(6.2)	10(6.9)	2(1.4)
중위소득 151% 이상	57(100.0)	15(26.3)	19(33.3)	15(26.3)	6(10.5)	2(3.5)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87(100.0)	70(80.5)	15(17.2)	0(0.0)	1(1.1)	1(1.1)
비수급가구	299(100.0)	136(45.5)	110(36.8)	32(10.7)	17(5.7)	4(1.3)

[Base : 장애가구원이 있는 가구]

장애수당에 비해 교육비 지원에 대한 욕구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교육비 지원이 정말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44.8%(173가구)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거의 불필요하다가 23.1%(89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원 중 학령기 자녀에 따라 자녀

가 없거나 학령기가 아닌 경우에는 욕구가 없기 때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원 수에 따른 집단별 욕구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는데 1인 단독가구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4%인데 반해 5인 이상 가구에서는 28.9%로 나타나 자녀유무에 따라서 욕구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61> 교육비 지원 - 필요정도(N11-2)

단위 : 가구수(%)

	전체	정말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 항목 ☐	386(100.0)	38(9.8)	41(10.6)	45(11.7)	89(23.1)	173(44.8)
가구원 수						
1명	69(100.0)	1(1.4)	4(5.8)	4(5.8)	18(26.1)	42(60.9)
2명	140(100.0)	4(2.9)	8(5.7)	18(12.9)	33(23.6)	77(55.0)
3명	75(100.0)	8(10.7)	5(6.7)	8(10.7)	20(26.7)	34(45.3)
4명	57(100.0)	12(21.1)	15(26.3)	10(17.5)	10(17.5)	10(17.5)
5명 이상	45(100.0)	13(28.9)	9(20.0)	5(11.1)	8(17.8)	10(22.2)
가구형태						
장애인 가구	296(100.0)	37(12.5)	39(13.2)	38(12.8)	67(22.6)	115(38.9)
장애노인 가구	90(100.0)	1(1.1)	2(2.2)	7(7.8)	22(24.4)	58(64.4)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184(100.0)	11(6.0)	10(5.4)	19(10.3)	43(23.4)	101(54.9)
중위소득 51-150% 이하	145(100.0)	22(15.2)	18(12.4)	14(9.7)	27(18.6)	64(44.1)
중위소득 151% 이상	57(100.0)	5(8.8)	13(22.8)	12(21.1)	19(33.3)	8(14.0)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87(100.0)	11(12.6)	10(11.5)	8(9.2)	21(24.1)	37(42.5)
비수급가구	299(100.0)	27(9.0)	31(10.4)	37(12.4)	68(22.7)	136(45.5)

[Base : 장애가구원이 있는 가구]

의료비 지원에 대한 욕구는 대부분의 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정말 필요하다가 51.3%(198가구), 어느 정도 필요하다가 31.9%(123가구), 보통이다 9.3%(36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가구원 수나 가구형태, 중위소득 기준, 수급

여부별 집단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62> 의료비지원 - 필요정도(N11-3)

단위 : 가구수(%)

	전체	정말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 항목 □	386(100.0)	198(51.3)	123(31.9)	36(9.3)	18(4.7)	11(2.8)
가구원 수						
1명	69(100.0)	39(56.5)	20(29.0)	5(7.2)	3(4.3)	2(2.9)
2명	140(100.0)	71(50.7)	46(32.9)	13(9.3)	8(5.7)	2(1.4)
3명	75(100.0)	41(54.7)	19(25.3)	7(9.3)	3(4.0)	5(6.7)
4명	57(100.0)	25(43.9)	21(36.8)	8(14.0)	1(1.8)	2(3.5)
5명 이상	45(100.0)	22(48.9)	17(37.8)	3(6.7)	3(6.7)	0(0.0)
가구형태						
장애인 가구	296(100.0)	152(51.4)	88(29.7)	31(10.5)	14(4.7)	11(3.7)
장애노인 가구	90(100.0)	46(51.1)	35(38.9)	5(5.6)	4(4.4)	0(0.0)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184(100.0)	116(63.0)	51(27.7)	7(3.8)	7(3.8)	3(1.6)
중위소득 51-150% 이하	145(100.0)	61(42.1)	51(35.2)	19(13.1)	7(4.8)	7(4.8)
중위소득 151% 이상	57(100.0)	21(36.8)	21(36.8)	10(17.5)	4(7.0)	1(1.8)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87(100.0)	69(79.3)	15(17.2)	1(1.1)	1(1.1)	1(1.1)
비수급가구	299(100.0)	129(43.1)	108(36.1)	35(11.7)	17(5.7)	10(3.3)

[Base : 장애가구원이 있는 가구]

각종 세금면제나 요금할인 혜택에 대한 욕구는 정말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389가구 가운데 46.9%(181가구)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36.3%), 보통이다(10.6%) 순으로 나타났으며 거의 불필요하다와 정말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6%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63> 각종 세금면제 / 요금할인 - 필요정도(N11-4)

단위 : 가구수(%)

	전체	정말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 항목 □	386(100.0)	181(46.9)	140(36.3)	41(10.6)	17(4.4)	7(1.8)
가구원 수						
1명	69(100.0)	33(47.8)	26(37.7)	8(11.6)	1(1.4)	1(1.4)
2명	140(100.0)	65(46.4)	52(37.1)	16(11.4)	5(3.6)	2(1.4)
3명	75(100.0)	37(49.3)	25(33.3)	7(9.3)	4(5.3)	2(2.7)
4명	57(100.0)	22(38.6)	23(40.4)	8(14.0)	3(5.3)	1(1.8)
5명 이상	45(100.0)	24(53.3)	14(31.1)	2(4.4)	4(8.9)	1(2.2)
가구형태						
장애인 가구	296(100.0)	142(48.0)	105(35.5)	28(9.5)	14(4.7)	7(2.4)
장애노인 가구	90(100.0)	39(43.3)	35(38.9)	13(14.4)	3(3.3)	0(0.0)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184(100.0)	94(51.1)	68(37.0)	18(9.8)	4(2.2)	0(0.0)
중위소득 51-150% 이하	145(100.0)	66(45.5)	51(35.2)	14(9.7)	9(6.2)	5(3.4)
중위소득 151% 이상	57(100.0)	21(36.8)	21(36.8)	9(15.8)	4(7.0)	2(3.5)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87(100.0)	58(66.7)	24(27.6)	5(5.7)	0(0.0)	0(0.0)
비수급가구	299(100.0)	123(41.1)	116(38.8)	36(12.0)	17(5.7)	7(2.3)

[Base : 장애가구원이 있는 가구]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에 대한 필요성을 살펴보면 거의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4.6%(95가구)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이다가 23.1%(89가구), 정말 불필요하다가 21.5%(83가구)를 차지하였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와 정말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0%정도 밖에 안 되어 다른 지원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장애인자립자금대출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대여제한 기준이 까다롭고 대여절차가

복잡하여 상대적으로 욕구가 낮게 나온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II-64>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 필요정도(N11-5)

단위 : 가구수(%)

	전체	정말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 항목 □	386(100.0)	55(14.2)	64(16.6)	89(23.1)	95(24.6)	83(21.5)
가구원 수						
1명	69(100.0)	9(13.0)	8(11.6)	15(21.7)	18(26.1)	19(27.5)
2명	140(100.0)	15(10.7)	25(17.9)	37(26.4)	28(20.0)	35(25.0)
3명	75(100.0)	12(16.0)	15(20.0)	14(18.7)	18(24.0)	16(21.3)
4명	57(100.0)	13(22.8)	12(21.1)	12(21.1)	15(26.3)	5(8.8)
5명 이상	45(100.0)	6(13.3)	4(8.9)	11(24.4)	16(35.6)	8(17.8)
가구형태						
장애인 가구	296(100.0)	46(15.5)	48(16.2)	71(24.0)	74(25.0)	57(19.3)
장애노인 가구	90(100.0)	9(10.0)	16(17.8)	18(20.0)	21(23.3)	26(28.9)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184(100.0)	26(14.1)	27(14.7)	43(23.4)	39(21.2)	49(26.6)
중위소득 51-150% 이하	145(100.0)	22(15.2)	29(20.0)	28(19.3)	39(26.9)	27(18.6)
중위소득 151% 이상	57(100.0)	7(12.3)	8(14.0)	18(31.6)	17(29.8)	7(12.3)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87(100.0)	16(18.4)	12(13.8)	22(25.3)	20(23.0)	17(19.5)
비수급가구	299(100.0)	39(13.0)	52(17.4)	67(22.4)	75(25.1)	66(22.1)

[Base : 장애가구원이 있는 가구]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에 대한 욕구도 장애수당이나 의료혜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거의 불필요하다는 의견(26.4%, 102가구)이었으며 정말 불필요하다는 23.8%(92가구)로 전반적으로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가구에게 간접적인 현물지원보다는 직접적인 현금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표 II-65>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 필요정도(N11-6)

단위 : 가구수(%)

	전체	정말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 항목 □	386(100.0)	49(12.7)	53(13.7)	90(23.3)	102(26.4)	92(23.8)
가구원 수						
1명	69(100.0)	6(8.7)	10(14.5)	12(17.4)	20(29.0)	21(30.4)
2명	140(100.0)	16(11.4)	19(13.6)	41(29.3)	32(22.9)	32(22.9)
3명	75(100.0)	12(16.0)	11(14.7)	12(16.0)	20(26.7)	20(26.7)
4명	57(100.0)	7(12.3)	10(17.5)	15(26.3)	17(29.8)	8(14.0)
5명 이상	45(100.0)	8(17.8)	3(6.7)	10(22.2)	13(28.9)	11(24.4)
가구형태						
장애인 가구	296(100.0)	41(13.9)	40(13.5)	72(24.3)	78(26.4)	65(22.0)
장애노인 가구	90(100.0)	8(8.9)	13(14.4)	18(20.0)	24(26.7)	27(30.0)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184(100.0)	24(13.0)	25(13.6)	40(21.7)	47(25.5)	48(26.1)
중위소득 51-150% 이하	145(100.0)	15(10.3)	21(14.5)	33(22.8)	41(28.3)	35(24.1)
중위소득 151% 이상	57(100.0)	10(17.5)	7(12.3)	17(29.8)	14(24.6)	9(15.8)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87(100.0)	13(14.9)	16(18.4)	18(20.7)	20(23.0)	20(23.0)
비수급가구	299(100.0)	36(12.0)	37(12.4)	72(24.1)	82(27.4)	72(24.1)

[Base : 장애가구원이 있는 가구]

장애인 직업재활 및 훈련에 대한 필요성 정도를 분석해본 결과 거의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32.1%(124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는 비율은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나 가구형태, 중위소득, 수급여부에 따른 집단별 비율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표 II-66> 직업재활 및 훈련 - 필요정도(N11-7)

단위 : 가구수(%)

	전체	정말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 항목 ■	386(100.0)	23(6.0)	45(11.7)	86(22.3)	124(32.1)	108(28.0)
가구원 수						
1명	69(100.0)	1(1.4)	6(8.7)	11(15.9)	26(37.7)	25(36.2)
2명	140(100.0)	4(2.9)	18(12.9)	40(28.6)	37(26.4)	41(29.3)
3명	75(100.0)	5(6.7)	6(8.0)	17(22.7)	24(32.0)	23(30.7)
4명	57(100.0)	8(14.0)	9(15.8)	10(17.5)	22(38.6)	8(14.0)
5명 이상	45(100.0)	5(11.1)	6(13.3)	8(17.8)	15(33.3)	11(24.4)
가구형태						
장애인 가구	296(100.0)	23(7.8)	37(12.5)	67(22.6)	93(31.4)	76(25.7)
장애노인 가구	90(100.0)	0(0.0)	8(8.9)	19(21.1)	31(34.4)	32(35.6)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184(100.0)	6(3.3)	22(12.0)	42(22.8)	59(32.1)	55(29.9)
중위소득 51-150% 이하	145(100.0)	10(6.9)	15(10.3)	30(20.7)	45(31.0)	45(31.0)
중위소득 151% 이상	57(100.0)	7(12.3)	8(14.0)	14(24.6)	20(35.1)	8(14.0)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87(100.0)	3(3.4)	16(18.4)	22(25.3)	23(26.4)	23(26.4)
비수급가구	299(100.0)	20(6.7)	29(9.7)	64(21.4)	101(33.8)	85(28.4)

[Base : 장애가구원이 있는 가구]

재활시설이나 그룹홈에 대한 욕구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었으며 필요하다는 응답은 15%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집단 차이도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표 II-67> 재활시설 및 그룹홈 - 필요정도(N11-8)

단위 : 가구수(%)

	전체	정말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 항목 □	386(100.0)	13(3.4)	42(10.9)	85(22.0)	135(35.0)	111(28.8)
가구원 수						
1명	69(100.0)	1(1.4)	6(8.7)	12(17.4)	24(34.8)	26(37.7)
2명	140(100.0)	2(1.4)	16(11.4)	39(27.9)	45(32.1)	38(27.1)
3명	75(100.0)	3(4.0)	7(9.3)	16(21.3)	25(33.3)	24(32.0)
4명	57(100.0)	5(8.8)	7(12.3)	9(15.8)	24(42.1)	12(21.1)
5명 이상	45(100.0)	2(4.4)	6(13.3)	9(20.0)	17(37.8)	11(24.4)
가구형태						
장애인 가구	296(100.0)	12(4.1)	30(10.1)	69(23.3)	103(34.8)	82(27.7)
장애노인 가구	90(100.0)	1(1.1)	12(13.3)	16(17.8)	32(35.6)	29(32.2)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184(100.0)	3(1.6)	17(9.2)	42(22.8)	67(36.4)	55(29.9)
중위소득 51-150% 이하	145(100.0)	6(4.1)	18(12.4)	26(17.9)	48(33.1)	47(32.4)
중위소득 151% 이상	57(100.0)	4(7.0)	7(12.3)	17(29.8)	20(35.1)	9(15.8)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87(100.0)	2(2.3)	14(16.1)	24(27.6)	22(25.3)	25(28.7)
비수급가구	299(100.0)	11(3.7)	28(9.4)	61(20.4)	113(37.8)	86(28.8)

[Base : 장애가구원이 있는 가구]

다음은 방문간호나 가정간호에 대한 욕구를 살펴본 결과이다. 앞서 살펴본 장애인 관련 시설들에 대한 욕구보다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 필요하다는 의견이 27%로 나와 장애인 재활시설이나 그룹홈처럼 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재택 지원 서비스를 보다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68> 방문간호, 가정간호 - 필요정도(N11-9)

단위 : 가구수(%)

	전체	정말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 항목 □	386(100.0)	40(10.4)	64(16.6)	80(20.7)	110(28.5)	92(23.8)
가구원 수						
1명	69(100.0)	8(11.6)	10(14.5)	12(17.4)	21(30.4)	18(26.1)
2명	140(100.0)	20(14.3)	25(17.9)	32(22.9)	33(23.6)	30(21.4)
3명	75(100.0)	6(8.0)	10(13.3)	13(17.3)	21(28.0)	25(33.3)
4명	57(100.0)	3(5.3)	12(21.1)	11(19.3)	22(38.6)	9(15.8)
5명 이상	45(100.0)	3(6.7)	7(15.6)	12(26.7)	13(28.9)	10(22.2)
가구형태						
장애인 가구	296(100.0)	28(9.5)	48(16.2)	63(21.3)	86(29.1)	71(24.0)
장애노인 가구	90(100.0)	12(13.3)	16(17.8)	17(18.9)	24(26.7)	21(23.3)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184(100.0)	25(13.6)	28(15.2)	38(20.7)	50(27.2)	43(23.4)
중위소득 51-150% 이하	145(100.0)	11(7.6)	25(17.2)	25(17.2)	44(30.3)	40(27.6)
중위소득 151% 이상	57(100.0)	4(7.0)	11(19.3)	17(29.8)	16(28.1)	9(15.8)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87(100.0)	16(18.4)	17(19.5)	19(21.8)	17(19.5)	18(20.7)
비수급가구	299(100.0)	24(8.0)	47(15.7)	61(20.4)	93(31.1)	74(24.7)

[Base : 장애가구원이 있는 가구]

방문간호와 가정간호와 마찬가지로 가정봉사원에 대한 욕구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원 수가 적은 1인 단독가구나 2, 3인 가구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0% 이상으로 나타나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구원이 부재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69> 가정봉사원 - 필요정도(N11-10)

단위 : 가구수(%)

	전체	정말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 항목 □	386(100.0)	39(10.1)	67(17.4)	79(20.5)	112(29.0)	89(23.1)
가구원 수						
1명	69(100.0)	8(11.6)	10(14.5)	14(20.3)	19(27.5)	18(26.1)
2명	140(100.0)	14(10.0)	30(21.4)	33(23.6)	36(25.7)	27(19.3)
3명	75(100.0)	9(12.0)	10(13.3)	13(17.3)	18(24.0)	25(33.3)
4명	57(100.0)	5(8.8)	11(19.3)	9(15.8)	24(42.1)	8(14.0)
5명 이상	45(100.0)	3(6.7)	6(13.3)	10(22.2)	15(33.3)	11(24.4)
가구형태						
장애인 가구	296(100.0)	30(10.1)	45(15.2)	65(22.0)	86(29.1)	70(23.6)
장애노인 가구	90(100.0)	9(10.0)	22(24.4)	14(15.6)	26(28.9)	19(21.1)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184(100.0)	21(11.4)	32(17.4)	39(21.2)	51(27.7)	41(22.3)
중위소득 51-150% 이하	145(100.0)	12(8.3)	26(17.9)	22(15.2)	46(31.7)	39(26.9)
중위소득 151% 이상	57(100.0)	6(10.5)	9(15.8)	18(31.6)	15(26.3)	9(15.8)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87(100.0)	18(20.7)	15(17.2)	19(21.8)	17(19.5)	18(20.7)
비수급가구	299(100.0)	21(7.0)	52(17.4)	60(20.1)	95(31.8)	71(23.7)

[Base : 장애가구원이 있는 가구]

재활병원과 관련하여 재활병원에 대한 필요성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단순히 재활병원이 필요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다는 장애인 전문 재활병원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실제로도 현재 서울에 있는 장애인 전문 재활병원은 10군데가 안 되며 이 가운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4군데이다. 장애인의 경우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이 아니면 서비스 이용에 있어 한계가 있다.

<표 II-70> 재활병원 - 필요정도(N11-11)

단위 : 가구수(%)

	전체	정말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 항목 □	386(100.0)	35(9.1)	61(15.8)	87(22.5)	111(28.8)	92(23.8)
가구원 수						
1명	69(100.0)	2(2.9)	10(14.5)	17(24.6)	21(30.4)	19(27.5)
2명	140(100.0)	14(10.0)	24(17.1)	36(25.7)	37(26.4)	29(20.7)
3명	75(100.0)	6(8.0)	10(13.3)	16(21.3)	17(22.7)	26(34.7)
4명	57(100.0)	6(10.5)	13(22.8)	9(15.8)	21(36.8)	8(14.0)
5명 이상	45(100.0)	7(15.6)	4(8.9)	9(20.0)	15(33.3)	10(22.2)
가구형태						
장애인 가구	296(100.0)	30(10.1)	47(15.9)	65(22.0)	83(28.0)	71(24.0)
장애노인 가구	90(100.0)	5(5.6)	14(15.6)	22(24.4)	28(31.1)	21(23.3)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184(100.0)	15(8.2)	31(16.8)	46(25.0)	48(26.1)	44(23.9)
중위소득 51-150% 이하	145(100.0)	11(7.6)	24(16.6)	24(16.6)	46(31.7)	40(27.6)
중위소득 151% 이상	57(100.0)	9(15.8)	6(10.5)	17(29.8)	17(29.8)	8(14.0)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87(100.0)	4(4.6)	21(24.1)	25(28.7)	16(18.4)	21(24.1)
비수급가구	299(100.0)	31(10.4)	40(13.4)	62(20.7)	95(31.8)	71(23.7)

[Base : 장애가구원이 있는 가구]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에 대한 필요정도를 살펴보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말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9%(19가구)밖에 안 되었으며 특히 1인 단독가구의 경우 욕구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규모가 큰 가구에서 주단기보호시설의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71> 주간, 단기보호시설 - 필요정도(N11-12)

단위 : 가구수(%)

	전체	정말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 항목 □	386(100.0)	19(4.9)	39(10.1)	93(24.1)	130(33.7)	105(27.2)
가구원 수						
1명	69(100.0)	1(1.4)	4(5.8)	12(17.4)	27(39.1)	25(36.2)
2명	140(100.0)	6(4.3)	18(12.9)	40(28.6)	42(30.0)	34(24.3)
3명	75(100.0)	4(5.3)	8(10.7)	18(24.0)	21(28.0)	24(32.0)
4명	57(100.0)	3(5.3)	8(14.0)	11(19.3)	24(42.1)	11(19.3)
5명 이상	45(100.0)	5(11.1)	1(2.2)	12(26.7)	16(35.6)	11(24.4)
가구형태						
장애인 가구	296(100.0)	16(5.4)	28(9.5)	75(25.3)	99(33.4)	78(26.4)
장애노인 가구	90(100.0)	3(3.3)	11(12.2)	18(20.0)	31(34.4)	27(30.0)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184(100.0)	5(2.7)	17(9.2)	48(26.1)	63(34.2)	51(27.7)
중위소득 51-150% 이하	145(100.0)	10(6.9)	17(11.7)	25(17.2)	48(33.1)	45(31.0)
중위소득 151% 이상	57(100.0)	4(7.0)	5(8.8)	20(35.1)	19(33.3)	9(15.8)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87(100.0)	4(4.6)	11(12.6)	25(28.7)	24(27.6)	23(26.4)
비수급가구	299(100.0)	15(5.0)	28(9.4)	68(22.7)	106(35.5)	82(27.4)

[Base : 장애가구원이 있는 가구]

장애인 택시 혹은 셔틀에 대한 욕구를 살펴보면 필요하다는 응답보다는 불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1인 단독가구의 경우 불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가구규모에 따른 집단별 차이가 거의 없어 집단의 특성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표 II-72> 장애인 택시/셔틀 - 필요정도(N11-13)

단위 : 가구수(%)

	전체	정말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 항목 □	386(100.0)	26(6.7)	59(15.3)	93(24.1)	103(26.7)	105(27.2)
가구원 수						
1명	69(100.0)	6(8.7)	7(10.1)	14(20.3)	17(24.6)	25(36.2)
2명	140(100.0)	7(5.0)	23(16.4)	41(29.3)	35(25.0)	34(24.3)
3명	75(100.0)	7(9.3)	10(13.3)	14(18.7)	17(22.7)	27(36.0)
4명	57(100.0)	4(7.0)	11(19.3)	13(22.8)	21(36.8)	8(14.0)
5명 이상	45(100.0)	2(4.4)	8(17.8)	11(24.4)	13(28.9)	11(24.4)
가구형태						
장애인 가구	296(100.0)	24(8.1)	42(14.2)	72(24.3)	83(28.0)	75(25.3)
장애노인 가구	90(100.0)	2(2.2)	17(18.9)	21(23.3)	20(22.2)	30(33.3)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184(100.0)	12(6.5)	22(12.0)	51(27.7)	44(23.9)	55(29.9)
중위소득 51-150% 이하	145(100.0)	9(6.2)	28(19.3)	23(15.9)	43(29.7)	42(29.0)
중위소득 151% 이상	57(100.0)	5(8.8)	9(15.8)	19(33.3)	16(28.1)	8(14.0)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87(100.0)	7(8.0)	15(17.2)	25(28.7)	15(17.2)	25(28.7)
비수급가구	299(100.0)	19(6.4)	44(14.7)	68(22.7)	88(29.4)	80(26.8)

[Base : 장애가구원이 있는 가구]

다음으로는 장애인심부름센터에 대한 욕구이다.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는 응답보다는 불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가구규모나 가구형태, 소득기준, 수급여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II-73> 장애인심부름센터 - 필요정도(N11-14)

단위 : 가구수(%)

	전체	정말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 항목 □	386(100.0)	19(4.9)	45(11.7)	97(25.1)	116(30.1)	109(28.2)
가구원 수						
1명	69(100.0)	6(8.7)	5(7.2)	11(15.9)	21(30.4)	26(37.7)
2명	140(100.0)	3(2.1)	17(12.1)	49(35.0)	37(26.4)	34(24.3)
3명	75(100.0)	5(6.7)	9(12.0)	15(20.0)	17(22.7)	29(38.7)
4명	57(100.0)	2(3.5)	9(15.8)	14(24.6)	24(42.1)	8(14.0)
5명 이상	45(100.0)	3(6.7)	5(11.1)	8(17.8)	17(37.8)	12(26.7)
가구형태						
장애인 가구	296(100.0)	16(5.4)	35(11.8)	74(25.0)	94(31.8)	77(26.0)
장애노인 가구	90(100.0)	3(3.3)	10(11.1)	23(25.6)	22(24.4)	32(35.6)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184(100.0)	10(5.4)	14(7.6)	54(29.3)	51(27.7)	55(29.9)
중위소득 51-150% 이하	145(100.0)	4(2.8)	24(16.6)	24(16.6)	48(33.1)	45(31.0)
중위소득 151% 이상	57(100.0)	5(8.8)	7(12.3)	19(33.3)	17(29.8)	9(15.8)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87(100.0)	5(5.7)	13(14.9)	27(31.0)	17(19.5)	25(28.7)
비수급가구	299(100.0)	14(4.7)	32(10.7)	70(23.4)	99(33.1)	84(28.1)

[Base : 장애가구원이 있는 가구]

장애인 체육관과 관련하여 필요성 정도는 낮게 나타났다. 항목별로 뚜렷한 특징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규모가 클수록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정말 필요하다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인 단독가구와 2인 가구의 경우 각각 8.6%로 나온 데 반해 4인 가구와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각각 19.3%, 17.7%로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II-74> 장애인체육관 - 필요정도(N11-15)

단위 : 가구수(%)

	전체	정말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 항목 □	386(100.0)	13(3.4)	35(9.1)	98(25.4)	125(32.4)	115(29.8)
가구원 수						
1명	69(100.0)	1(1.4)	5(7.2)	15(21.7)	23(33.3)	25(36.2)
2명	140(100.0)	1(0.7)	11(7.9)	47(33.6)	43(30.7)	38(27.1)
3명	75(100.0)	6(8.0)	5(6.7)	16(21.3)	19(25.3)	29(38.7)
4명	57(100.0)	3(5.3)	8(14.0)	12(21.1)	23(40.4)	11(19.3)
5명 이상	45(100.0)	2(4.4)	6(13.3)	8(17.8)	17(37.8)	12(26.7)
가구형태						
장애인 가구	296(100.0)	12(4.1)	32(10.8)	72(24.3)	98(33.1)	82(27.7)
장애노인 가구	90(100.0)	1(1.1)	3(3.3)	26(28.9)	27(30.0)	33(36.7)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184(100.0)	3(1.6)	9(4.9)	57(31.0)	57(31.0)	58(31.5)
중위소득 51-150% 이하	145(100.0)	5(3.4)	20(13.8)	22(15.2)	49(33.8)	49(33.8)
중위소득 151% 이상	57(100.0)	5(8.8)	6(10.5)	19(33.3)	19(33.3)	8(14.0)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87(100.0)	1(1.1)	9(10.3)	33(37.9)	21(24.1)	23(26.4)
비수급가구	299(100.0)	12(4.0)	26(8.7)	65(21.7)	104(34.8)	92(30.8)

[Base : 장애가구원이 있는 가구]

자립생활센터가 필요한지를 물어본 결과이다. 다른 여타 시설의 필요성 정도와 유사하였으며 필요하다는 응답보다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위소득 기준으로 살펴보면 소득집단별 차이를 볼 수 있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서 자립생활센터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총 비율은 8.2%, 51-150% 이하 가구에서는 17.9%, 중위소득 150% 이상인 가구에서는 21%로 나타났다.

<표 II-75> 자립생활센터 - 필요정도(N11-16)

단위 : 가구수(%)

	전체	정말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 항목 □	386(100.0)	18(4.7)	35(9.1)	98(25.4)	122(31.6)	113(29.3)
가구원 수						
1명	69(100.0)	1(1.4)	5(7.2)	15(21.7)	21(30.4)	27(39.1)
2명	140(100.0)	1(0.7)	12(8.6)	46(32.9)	44(31.4)	37(26.4)
3명	75(100.0)	7(9.3)	5(6.7)	17(22.7)	20(26.7)	26(34.7)
4명	57(100.0)	7(12.3)	8(14.0)	11(19.3)	20(35.1)	11(19.3)
5명 이상	45(100.0)	2(4.4)	5(11.1)	9(20.0)	17(37.8)	12(26.7)
가구형태						
장애인 가구	296(100.0)	17(5.7)	32(10.8)	73(24.7)	94(31.8)	80(27.0)
장애노인 가구	90(100.0)	1(1.1)	3(3.3)	25(27.8)	28(31.1)	33(36.7)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184(100.0)	4(2.2)	11(6.0)	57(31.0)	56(30.4)	56(30.4)
중위소득 51-150% 이하	145(100.0)	8(5.5)	18(12.4)	23(15.9)	46(31.7)	50(34.5)
중위소득 151% 이상	57(100.0)	6(10.5)	6(10.5)	18(31.6)	20(35.1)	7(12.3)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87(100.0)	4(4.6)	9(10.3)	33(37.9)	18(20.7)	23(26.4)
비수급가구	299(100.0)	14(4.7)	26(8.7)	65(21.7)	104(34.8)	90(30.1)

[Base : 장애가구원이 있는 가구]

이 외에도 다른 장애인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지 살펴본 결과 4% 정도만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대부분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장애인 지원서비스가 풍족해서 나온 결과라기 보다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장애수당이나 의료급여와 같은 직접적인 현금급여에 대한 서비스의 확대와 지원의 필요성이 급선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II-76> 기타 - 필요정도(N11-17)

단위 : 가구수(%)

구분	전체	정말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 항목 ■	386(100.0)	3(0.8)	12(3.1)	79(20.5)	135(35.0)	157(40.7)
가구원 수						
1명	69(100.0)	0(0.0)	1(1.4)	14(20.3)	21(30.4)	33(47.8)
2명	140(100.0)	0(0.0)	3(2.1)	32(22.9)	50(35.7)	55(39.3)
3명	75(100.0)	2(2.7)	3(4.0)	17(22.7)	20(26.7)	33(44.0)
4명	57(100.0)	0(0.0)	2(3.5)	10(17.5)	27(47.4)	18(31.6)
5명 이상	45(100.0)	1(2.2)	3(6.7)	6(13.3)	17(37.8)	18(40.0)
가구형태						
장애인 가구	296(100.0)	3(1.0)	11(3.7)	60(20.3)	108(36.5)	114(38.5)
장애노인 가구	90(100.0)	0(0.0)	1(1.1)	19(21.1)	27(30.0)	43(47.8)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184(100.0)	0(0.0)	2(1.1)	42(22.8)	64(34.8)	76(41.3)
중위소득 51-150% 이하	145(100.0)	2(1.4)	8(5.5)	23(15.9)	47(32.4)	65(44.8)
중위소득 151% 이상	57(100.0)	1(1.8)	2(3.5)	14(24.6)	24(42.1)	16(28.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87(100.0)	0(0.0)	3(3.4)	29(33.3)	23(26.4)	32(36.8)
비수급가구	299(100.0)	3(1.0)	9(3.0)	50(16.7)	112(37.5)	125(41.8)

[Base : 장애가구원이 있는 가구]

13. 복지서비스 수요

복지수요 항목에 대한 응답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복지서비스 관련 이용 경험에 대해서 복수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생계비지원이 1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의료비지원이 7.5%, 영구임대주택(6.0%), 교육비 지원(5.6%)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규모에 따라 생계비 지원을 받은 비율이 차이가 났는데 1인 단독가구는 31.6%인데 반해 5인 이상 가구는 8.8%로 전반적으로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생계비 지원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생계비지원 이외에 영구임대주택과 의료비지원에 대한 이용 경험이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특히 장애인 가구에서는 영구임대 주택 이용 경험이 1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77>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복지서비스 관련 이용 경험(O2, 복수응답)

단위 : 가구수(%)

	생계비 지원	교육비 지원	취업 지원	주거비 지원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전세금 지원	저소득층 지원	주거복지 지원	의료비 지원	상담 서비스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물품 지원	가정사원	식사대
■ 항목	211 (14.1)	83 (5.6)	25 (1.7)	74 (4.9)	90 (6.0)	14 (0.9)	15 (1.0)	18 (1.2)	2 (0.1)	112 (7.5)	11 (0.7)	3 (0.2)	48 (3.2)	25 (1.7)	35 (2.3)
가구원 수															
1명	104 (31.6)	1 (0.3)	4 (1.2)	29 (8.8)	41 (12.5)	6 (1.8)	2 (0.6)	8 (2.4)	1 (0.3)	51 (15.5)	2 (0.6)	1 (0.3)	26 (7.9)	15 (4.6)	18 (5.5)
2명	52 (10.9)	13 (2.7)	6 (1.3)	22 (4.6)	30 (6.3)	3 (0.6)	1 (0.2)	5 (1.1)	0 (0.0)	34 (7.2)	2 (0.4)	1 (0.2)	11 (2.3)	6 (1.3)	7 (1.5)
3명	29 (10.0)	25 (8.7)	8 (2.8)	13 (4.5)	13 (4.5)	2 (0.7)	2 (0.7)	4 (1.4)	0 (0.0)	12 (4.2)	3 (1.0)	1 (0.3)	5 (1.7)	3 (0.6)	6 (2.1)
4명	14 (5.3)	29 (10.9)	4 (1.5)	5 (1.9)	3 (1.1)	1 (0.4)	8 (3.0)	0 (0.0)	1 (0.4)	10 (3.8)	4 (1.5)	0 (0.0)	5 (1.9)	0 (0.0)	3 (1.1)
5명 이상	12 (8.8)	15 (10.9)	3 (2.2)	5 (3.6)	3 (2.2)	2 (1.5)	2 (1.5)	1 (0.7)	0 (0.0)	5 (3.6)	0 (0.0)	0 (0.0)	1 (0.7)	1 (0.7)	1 (0.7)
가구형태															
일반가구	57 (6.8)	61 (7.3)	16 (1.9)	24 (2.9)	15 (1.8)	6 (0.7)	12 (1.4)	3 (0.4)	1 (0.1)	25 (3.0)	6 (0.7)	1 (0.1)	14 (1.7)	3 (0.4)	8 (1.0)
노인가구	73 (20.3)	2 (0.6)	4 (1.1)	19 (5.3)	27 (7.5)	6 (1.7)	2 (0.6)	4 (1.1)	1 (0.3)	39 (10.9)	1 (0.3)	1 (0.3)	17 (4.7)	12 (3.3)	13 (3.6)
장애인 가구	59 (26.7)	20 (9.0)	5 (2.3)	22 (10.0)	36 (16.3)	2 (0.9)	1 (0.5)	10 (4.5)	0 (0.0)	33 (14.9)	3 (1.4)	1 (0.5)	12 (5.4)	6 (2.7)	8 (3.6)
장애노인 가구	22 (27.2)	0 (0.0)	0 (0.0)	9 (11.1)	12 (14.8)	0 (0.0)	0 (0.0)	1 (1.2)	0 (0.0)	15 (18.5)	1 (1.2)	0 (0.0)	5 (6.2)	4 (4.9)	6 (7.4)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169 (23.1)	20 (2.7)	12 (1.6)	56 (7.7)	78 (10.7)	11 (1.5)	4 (0.5)	15 (2.1)	1 (0.1)	93 (12.7)	5 (0.7)	3 (0.4)	40 (5.5)	23 (3.1)	29 (4.0)
중위소득 51-150% 이하	42 (5.6)	62 (8.2)	13 (1.7)	18 (2.4)	11 (1.5)	3 (0.4)	11 (1.5)	3 (0.4)	1 (0.1)	19 (2.5)	6 (0.8)	0 (0.0)	8 (1.1)	2 (0.3)	6 (0.8)
중위소득 151% 이상	0 (0.0)	1 (9.1)	0 (0.0)	0 (0.0)	1 (9.1)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생계비 지원	교육비 지원	취업 지원	주거비 지원	영양대우	공영주택	공공주택	전세자금 지원	저소득층 지원	소상공인 지원	주거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상담 서비스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물품 지원	가정 지원	식사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196 (88.3)	41 (18.5)	16 (7.2)	73 (32.9)	76 (34.2)	9 (4.1)	9 (4.1)	17 (7.7)	1 (0.5)	95 (42.8)	7 (3.2)	2 (0.9)	37 (16.7)	20 (9.0)	28 (12.6)		
비수급가구	15 (1.2)	42 (3.3)	9 (0.7)	1 (0.1)	14 (1.1)	5 (0.4)	6 (0.5)	1 (0.1)	1 (0.1)	17 (1.3)	4 (0.3)	1 (0.1)	11 (0.9)	5 (0.4)	7 (0.5)		

[Base :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다음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각각의 복지수요를 살펴본 결과이다. 생계비 지원에 대한 필요정도를 보면 절반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1,495가구 가운데 정말 필요하다고 30.2%(451가구)를 차지하였으며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29.0%(434가구)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1인 단독가구의 경우 정말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가 329가구 가운데 167가구가 절반이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에서는 장애인 가구와 장애인가구에서 절반 이상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소득집단별로 중위소득 50% 이하의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의 차이가 컸는데 빈곤가구에서는 42.8%(313가구)가 정말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중위소득 51-150% 가구에서는 18.1%(136가구), 중위소득 151% 이상 가구에서는 2가구만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였다.

<표 II-78> 생계비 지원 - 필요정도(O3-1)

단위 : 가구수(%)

	전체	정말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 항목 ■	1,495(100.0)	451(30.2)	434(29.0)	290(19.4)	251(16.8)	69(4.6)
가구원 수						
1명	329(100.0)	167(50.8)	89(27.1)	30(9.1)	34(10.3)	9(2.7)
2명	475(100.0)	132(27.8)	167(35.2)	92(19.4)	71(14.9)	13(2.7)
3명	289(100.0)	75(26.0)	73(25.3)	62(21.5)	60(20.8)	19(6.6)

	전체	정말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4명	265(100.0)	40(15.1)	77(29.1)	73(27.5)	58(21.9)	17(6.4)
5명 이상	137(100.0)	37(27.0)	28(20.4)	33(24.1)	28(20.4)	11(8.0)
가구형태						
일반가구	834(100.0)	155(18.6)	233(27.9)	208(24.9)	183(21.9)	55(6.6)
노인가구	359(100.0)	141(39.3)	120(33.4)	49(13.6)	42(11.7)	7(1.9)
장애인 가구	221(100.0)	112(50.7)	56(25.3)	26(11.8)	20(9.0)	7(3.2)
장애노인 가구	81(100.0)	43(53.1)	25(30.9)	7(8.6)	6(7.4)	0(0.0)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731(100.0)	313(42.8)	231(31.6)	86(11.8)	79(10.8)	22(3.0)
중위소득 51-150% 이하	753(100.0)	136(18.1)	200(26.6)	203(27.0)	168(22.3)	46(6.1)
중위소득 151% 이상	11(100.0)	2(18.2)	3(27.3)	1(9.1)	4(36.4)	1(9.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222(100.0)	197(88.7)	20(9.0)	4(1.8)	1(0.5)	0(0.0)
비수급가구	1,273(100.0)	254(20.0)	414(32.5)	286(22.5)	250(19.6)	69(5.4)

[Base :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교육비 지원에 대한 욕구는 자녀의 유무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욕구는 낮게 나타났지만 가구규모별 필요정도를 보면 4인 이상 가구에서는 절반 이상이 필요성을 인식한 반면 2인 미만 가구에서는 10% 미만으로 차지하였다.

<표 II -79> 교육비지원 - 필요정도(O3-2)

단위 : 가구수(%)

	전체	정말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 항목 □	1,495(100.0)	180(12.0)	233(15.6)	168(11.2)	367(24.5)	547(36.6)
가구원 수						
1명	329(100.0)	5(1.5)	21(6.4)	19(5.8)	87(26.4)	197(59.9)
2명	475(100.0)	20(4.2)	27(5.7)	64(13.5)	143(30.1)	221(46.5)

	전체	정말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3명	289(100.0)	43(14.9)	49(17.0)	34(11.8)	75(26.0)	88(30.4)
4명	265(100.0)	62(23.4)	97(36.6)	33(12.5)	43(16.2)	30(11.3)
5명 이상	137(100.0)	50(36.5)	39(28.5)	18(13.1)	19(13.9)	11(8.0)
가구형태						
일반가구	834(100.0)	135(16.2)	186(22.3)	111(13.3)	186(22.3)	216(25.9)
노인가구	359(100.0)	7(1.9)	18(5.0)	32(8.9)	100(27.9)	202(56.3)
장애인 가구	221(100.0)	38(17.2)	25(11.3)	22(10.0)	53(24.0)	83(37.6)
장애노인 가구	81(100.0)	0(0.0)	4(4.9)	3(3.7)	28(34.6)	46(56.8)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731(100.0)	39(5.3)	57(7.8)	69(9.4)	192(26.3)	374(51.2)
중위소득 51-150% 이하	753(100.0)	136(18.1)	174(23.1)	99(13.1)	173(23.0)	171(22.7)
중위소득 151% 이상	11(100.0)	5(45.5)	2(18.2)	0(0.0)	2(18.2)	2(18.2)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222(100.0)	48(21.6)	26(11.7)	12(5.4)	36(16.2)	100(45.0)
비수급가구	1,273(100.0)	132(10.4)	207(16.3)	156(12.3)	331(26.0)	447(35.1)

[Base :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취업지원에 대한 욕구를 파악해보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1,495가구 가운데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30% 미만으로 나타났다. 특기할만한 결과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나타난 취업지원 욕구 차이였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경우 정말 필요하다와 어느 정도 필요하다가 각각 9%, 18.5%, 중위소득 51-150% 이하 가구는 8.1%, 21.4%로 필요하다는 비율이 3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중위소득 151% 이상 가구에서는 정말 필요하다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비율이 각각 18.2%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응답 기준 자체가 최저생계비 200%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중위소득 151% 이상인 가구수가 총 11가구밖에 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표 II-80> 취업지원 - 필요정도(O3-3)

단위 : 가구수(%)

	전체	정말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 항목 ■	1,495(100.0)	129(8.6)	298(19.9)	287(19.2)	439(29.4)	342(22.9)
가구원 수						
1명	329(100.0)	25(7.6)	51(15.5)	49(14.9)	83(25.2)	121(36.8)
2명	475(100.0)	43(9.1)	80(16.8)	88(18.5)	144(30.3)	120(25.3)
3명	289(100.0)	29(10.0)	69(23.9)	53(18.3)	84(29.1)	54(18.7)
4명	265(100.0)	17(6.4)	69(26.0)	59(22.3)	88(33.2)	32(12.1)
5명 이상	137(100.0)	15(10.9)	29(21.2)	38(27.7)	40(29.2)	15(10.9)
가구형태						
일반가구	834(100.0)	84(10.1)	186(22.3)	185(22.2)	254(30.5)	125(15.0)
노인가구	359(100.0)	19(5.3)	50(13.9)	56(15.6)	108(30.1)	126(35.1)
장애인 가구	221(100.0)	22(10.0)	47(21.3)	40(18.1)	56(25.3)	56(25.3)
장애노인 가구	81(100.0)	4(4.9)	15(18.5)	6(7.4)	21(25.9)	35(43.2)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731(100.0)	66(9.0)	135(18.5)	121(16.6)	192(26.3)	217(29.7)
중위소득 51-150% 이하	753(100.0)	61(8.1)	161(21.4)	164(21.8)	244(32.4)	123(16.3)
중위소득 151% 이상	11(100.0)	2(18.2)	2(18.2)	2(18.2)	3(27.3)	2(18.2)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222(100.0)	25(11.3)	45(20.3)	35(15.8)	49(22.1)	68(30.6)
비수급가구	1,273(100.0)	104(8.2)	253(19.9)	252(19.8)	390(30.6)	274(21.5)

[Base :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주거비지원과 관련한 필요정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거의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27.0%(403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23.3%), 보통이다(19.4%)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비 지원에 대한 욕구는 소득과 수급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빈곤가구에서는 19.0%가 정말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비빈곤 가구에서는 정말 필요하다는 응답이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급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났다. 수급가구의 경우 절반정도(48.2%)가 정말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비수급가구의 경우 정말 필요하다는 의견이 7.9%로 나타났다.

<표 II -81> 주거비지원 - 필요정도(O3-4)

단위 : 가구수(%)

	전체	정말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 항목 ■	1,495(100.0)	208(13.9)	349(23.3)	290(19.4)	403(27.0)	245(16.4)
가구원 수						
1명	329(100.0)	80(24.3)	88(26.7)	37(11.2)	65(19.8)	59(17.9)
2명	475(100.0)	52(10.9)	105(22.1)	96(20.2)	130(27.4)	92(19.4)
3명	289(100.0)	39(13.5)	59(20.4)	56(19.4)	90(31.1)	45(15.6)
4명	265(100.0)	21(7.9)	69(26.0)	66(24.9)	78(29.4)	31(11.7)
5명 이상	137(100.0)	16(11.7)	28(20.4)	35(25.5)	40(29.2)	18(13.1)
가구형태						
일반가구	834(100.0)	74(8.9)	190(22.8)	189(22.7)	264(31.7)	117(14.0)
노인가구	359(100.0)	61(17.0)	86(24.0)	55(15.3)	84(23.4)	73(20.3)
장애인 가구	221(100.0)	58(26.2)	53(24.0)	35(15.8)	38(17.2)	37(16.7)
장애노인 가구	81(100.0)	15(18.5)	20(24.7)	11(13.6)	17(21.0)	18(22.2)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731(100.0)	139(19.0)	182(24.9)	113(15.5)	161(22.0)	136(18.6)
중위소득 51-150% 이하	753(100.0)	68(9.0)	165(21.9)	174(23.1)	238(31.6)	108(14.3)
중위소득 151% 이상	11(100.0)	1(9.1)	2(18.2)	3(27.3)	4(36.4)	1(9.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222(100.0)	107(48.2)	68(30.6)	17(7.7)	14(6.3)	16(7.2)
비수급가구	1,273(100.0)	101(7.9)	281(22.1)	273(21.4)	389(30.6)	229(18.0)

[Base :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욕구를 파악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은 35%정도 였으며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49%정도로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규모에서 영구 임대주택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난 집단은 1인 단독가구로 32.8%가 영구임대주택이 정말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1.9%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소득집단별로 빈곤가구에서 영구 임대주택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표 II-82> 영구 임대주택 - 필요정도(O3-5)

단위 : 가구수(%)

	전체	정말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 항목 ■	1,495(100.0)	274(18.3)	262(17.5)	243(16.3)	446(29.8)	270(18.1)
가구원 수						
1명	329(100.0)	108(32.8)	72(21.9)	30(9.1)	61(18.5)	58(17.6)
2명	475(100.0)	79(16.6)	65(13.7)	73(15.4)	156(32.8)	102(21.5)
3명	289(100.0)	39(13.5)	44(15.2)	56(19.4)	94(32.5)	56(19.4)
4명	265(100.0)	30(11.3)	58(21.9)	56(21.1)	88(33.2)	33(12.5)
5명 이상	137(100.0)	18(13.1)	23(16.8)	28(20.4)	47(34.3)	21(15.3)
가구형태						
일반가구	834(100.0)	96(11.5)	149(17.9)	166(19.9)	289(34.7)	134(16.1)
노인가구	359(100.0)	79(22.0)	66(18.4)	42(11.7)	93(25.9)	79(22.0)
장애인 가구	221(100.0)	78(35.3)	34(15.4)	29(13.1)	45(20.4)	35(15.8)
장애노인 가구	81(100.0)	21(25.9)	13(16.0)	6(7.4)	19(23.5)	22(27.2)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731(100.0)	190(26.0)	130(17.8)	90(12.3)	172(23.5)	149(20.4)
중위소득 51-150% 이하	753(100.0)	83(11.0)	130(17.3)	150(19.9)	271(36.0)	119(15.8)
중위소득 151% 이상	11(100.0)	1(9.1)	2(18.2)	3(27.3)	3(27.3)	2(18.2)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222(100.0)	126(56.8)	51(23.0)	19(8.6)	16(7.2)	10(4.5)
비수급가구	1,273(100.0)	148(11.6)	211(16.6)	224(17.6)	430(33.8)	260(20.4)

[Base :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욕구는 영구임대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말 필요하다(11.7%)와 어느 정도 필요하다(17.1%)는 의견보다는 거의 불필요하다(30.9%)와 정말 불필요하다(20.3%)는 의견이 더 많았다. 가구규모나 가구주택, 중위소득 기준과 공공임대주택 욕구는 별다른 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급여부에 따라서 비수급가구 보다 수급가구에서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배 이상 높았다.

<표 II-83> 공공(국민)임대주택 - 필요정도(O3-6)

단위 : 가구수(%)

	전체	정말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 항목 ■	1,495(100.0)	175(11.7)	256(17.1)	299(20.0)	462(30.9)	303(20.3)
가구원 수						
1명	329(100.0)	54(16.4)	63(19.1)	58(17.6)	79(24.0)	75(22.8)
2명	475(100.0)	45(9.5)	65(13.7)	89(18.7)	163(34.3)	113(23.8)
3명	289(100.0)	34(11.8)	44(15.2)	61(21.1)	92(31.8)	58(20.1)
4명	265(100.0)	23(8.7)	59(22.3)	60(22.6)	88(33.2)	35(13.2)
5명 이상	137(100.0)	19(13.9)	25(18.2)	31(22.6)	40(29.2)	22(16.1)
가구형태						
일반가구	834(100.0)	84(10.1)	158(18.9)	178(21.3)	277(33.2)	137(16.4)
노인가구	359(100.0)	42(11.7)	54(15.0)	70(19.5)	102(28.4)	91(25.3)
장애인 가구	221(100.0)	42(19.0)	32(14.5)	44(19.9)	54(24.4)	49(22.2)
장애노인 가구	81(100.0)	7(8.6)	12(14.8)	7(8.6)	29(35.8)	26(32.1)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731(100.0)	104(14.2)	123(16.8)	129(17.6)	200(27.4)	175(23.9)
중위소득 51-150% 이하	753(100.0)	69(9.2)	132(17.5)	168(22.3)	258(34.3)	126(16.7)
중위소득 151% 이상	11(100.0)	2(18.2)	1(9.1)	2(18.2)	4(36.4)	2(18.2)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222(100.0)	54(24.3)	49(22.1)	44(19.8)	40(18.0)	35(15.8)
비수급가구	1,273(100.0)	121(9.5)	207(16.3)	255(20.0)	422(33.2)	268(21.1)

[Base :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다음은 전세자금(용자)지원과 관련한 내용이다. 필요하다는 의견보다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수급여부에 따라 전세자금 용자에 대한 욕구 차이가 나타났다. 수급가구의 경우 전체 222가구 가운데 14.9%(33가구)가 정말 필요하다 21.6%(48가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비수급가구는 6.6%(84가구)가 정말 필요하다, 14.5%(184가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II-84> 전세자금(융자)지원(저소득·근로자·서민) - 필요정도(O3-7)

단위 : 가구수(%)

	전체	정말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 항목 ■	1,495(100.0)	117(7.8)	232(15.5)	295(19.7)	500(33.4)	351(23.5)
가구원 수						
1명	329(100.0)	28(8.5)	64(19.5)	49(14.9)	94(28.6)	94(28.6)
2명	475(100.0)	28(5.9)	54(11.4)	92(19.4)	176(37.1)	125(26.3)
3명	289(100.0)	22(7.6)	41(14.2)	57(19.7)	101(34.9)	68(23.5)
4명	265(100.0)	28(10.6)	54(20.4)	56(21.1)	86(32.5)	41(15.5)
5명 이상	137(100.0)	11(8.0)	19(13.9)	41(29.9)	43(31.4)	23(16.8)
가구형태						
일반가구	834(100.0)	73(8.8)	137(16.4)	178(21.3)	293(35.1)	153(18.3)
노인가구	359(100.0)	20(5.6)	55(15.3)	57(15.9)	119(33.1)	108(30.1)
장애인 가구	221(100.0)	21(9.5)	29(13.1)	49(22.2)	61(27.6)	61(27.6)
장애노인 가구	81(100.0)	3(3.7)	11(13.6)	11(13.6)	27(33.3)	29(35.8)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731(100.0)	60(8.2)	116(15.9)	132(18.1)	224(30.6)	199(27.2)
중위소득 51-150% 이하	753(100.0)	56(7.4)	115(15.3)	160(21.2)	272(36.1)	150(19.9)
중위소득 151% 이상	11(100.0)	1(9.1)	1(9.1)	3(27.3)	4(36.4)	2(18.2)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222(100.0)	33(14.9)	48(21.6)	47(21.2)	49(22.1)	45(20.3)
비수급가구	1,273(100.0)	84(6.6)	184(14.5)	248(19.5)	451(35.4)	306(24.0)

[Base :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저소득층 월세지원에 대한 욕구도 앞서 살펴본 전세자금융자에 대한 욕구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보다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가구규모나 가구형태, 소득기준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수급여부에 따라 수급가구에서 저소득층 월세지원에 대한 욕구가 6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85> 저소득층 월세지원 - 필요정도(O3-8)

단위 : 가구수(%)

	전체	정말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 항 목 ☐	1,495(100.0)	135(9.0)	245(16.4)	277(18.5)	498(33.3)	340(22.7)
가구원 수						
1명	329(100.0)	50(15.2)	69(21.0)	41(12.5)	90(27.4)	79(24.0)
2명	475(100.0)	31(6.5)	70(14.7)	86(18.1)	164(34.5)	124(26.1)
3명	289(100.0)	27(9.3)	37(12.8)	52(18.0)	105(36.3)	68(23.5)
4명	265(100.0)	18(6.8)	51(19.2)	59(22.3)	90(34.0)	47(17.7)
5명 이상	137(100.0)	9(6.6)	18(13.1)	39(28.5)	49(35.8)	22(16.1)
가구형태						
일반가구	834(100.0)	56(6.7)	131(15.7)	169(20.3)	309(37.1)	169(20.3)
노인가구	359(100.0)	35(9.7)	61(17.0)	53(14.8)	114(31.8)	96(26.7)
장애인 가구	221(100.0)	33(14.9)	41(18.6)	45(20.4)	52(23.5)	50(22.6)
장애노인 가구	81(100.0)	11(13.6)	12(14.8)	10(12.3)	23(28.4)	25(30.9)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731(100.0)	89(12.2)	137(18.7)	115(15.7)	209(28.6)	181(24.8)
중위소득 51-150% 이하	753(100.0)	45(6.0)	107(14.2)	160(21.2)	284(37.7)	157(20.8)
중위소득 151% 이상	11(100.0)	1(9.1)	1(9.1)	2(18.2)	5(45.5)	2(18.2)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222(100.0)	65(29.3)	63(28.4)	37(16.7)	34(15.3)	23(10.4)
비수급가구	1,273(100.0)	70(5.5)	182(14.3)	240(18.9)	464(36.4)	317(24.9)

[Base :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전반적인 욕구는 20%가 되지 않았지만 소득에 따른 욕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소득 기준에서 50% 이하 가구는 정말 필요하다는 응답이 3.8%인데 반해 중위소득 151% 이상 가구에서는 18.2%로 나타났다.

<표 II-86>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근로자·서민) - 필요정도(O3-9)

단위 : 가구수(%)

	전체	정말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 항목 ■	1,495(100.0)	70(4.7)	203(13.6)	317(21.2)	541(36.2)	364(24.3)
가구원 수						
1명	329(100.0)	14(4.3)	42(12.8)	52(15.8)	115(35.0)	106(32.2)
2명	475(100.0)	10(2.1)	49(10.3)	105(22.1)	183(38.5)	128(26.9)
3명	289(100.0)	15(5.2)	37(12.8)	61(21.1)	108(37.4)	68(23.5)
4명	265(100.0)	22(8.3)	56(21.1)	61(23.0)	88(33.2)	38(14.3)
5명 이상	137(100.0)	9(6.6)	19(13.9)	38(27.7)	47(34.3)	24(17.5)
가구형태						
일반가구	834(100.0)	44(5.3)	131(15.7)	199(23.9)	306(36.7)	154(18.5)
노인가구	359(100.0)	14(3.9)	38(10.6)	59(16.4)	134(37.3)	114(31.8)
장애인 가구	221(100.0)	10(4.5)	27(12.2)	47(21.3)	70(31.7)	67(30.3)
장애노인 가구	81(100.0)	2(2.5)	7(8.6)	12(14.8)	31(38.3)	29(35.8)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731(100.0)	28(3.8)	91(12.4)	147(20.1)	252(34.5)	213(29.1)
중위소득 51-150% 이하	753(100.0)	40(5.3)	111(14.7)	169(22.4)	284(37.7)	149(19.8)
중위소득 151% 이상	11(100.0)	2(18.2)	1(9.1)	1(9.1)	5(45.5)	2(18.2)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222(100.0)	14(6.3)	39(17.6)	57(25.7)	57(25.7)	55(24.8)
비수급가구	1,273(100.0)	56(4.4)	164(12.9)	260(20.4)	484(38.0)	309(24.3)

[Base :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해산 및 장제비를 포함한 의료비지원에 대한 욕구를 살펴보면 절반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1인 단독가구의 경우 정말 필요하다고 37.1%(122가구),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26.4%(87가구)를 차지하였다. 또한 일반가구에 비해 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 장애노인가구에서 의료비 지원에 대한 욕구가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87> 의료비지원(해산 및 장제비 포함) - 필요정도(O3-10)

단위 : 가구수(%)

	전체	정말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 항목 ■	1,495(100.0)	376(25.2)	436(29.2)	222(14.8)	314(21.0)	147(9.8)
가구원 수						
1명	329(100.0)	122(37.1)	87(26.4)	30(9.1)	55(16.7)	35(10.6)
2명	475(100.0)	126(26.5)	165(34.7)	55(11.6)	87(18.3)	42(8.8)
3명	289(100.0)	67(23.2)	73(25.3)	48(16.6)	65(22.5)	36(12.5)
4명	265(100.0)	36(13.6)	67(25.3)	60(22.6)	78(29.4)	24(9.1)
5명 이상	137(100.0)	25(18.2)	44(32.1)	29(21.2)	29(21.2)	10(7.3)
가구형태						
일반가구	834(100.0)	132(15.8)	237(28.4)	162(19.4)	223(26.7)	80(9.6)
노인가구	359(100.0)	121(33.7)	117(32.6)	33(9.2)	53(14.8)	35(9.7)
장애인 가구	221(100.0)	86(38.9)	60(27.1)	22(10.0)	26(11.8)	27(12.2)
장애노인 가구	81(100.0)	37(45.7)	22(27.2)	5(6.2)	12(14.8)	5(6.2)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731(100.0)	255(34.9)	219(30.0)	79(10.8)	114(15.6)	64(8.8)
중위소득 51-150% 이하	753(100.0)	119(15.8)	214(28.4)	142(18.9)	196(26.0)	82(10.9)
중위소득 151% 이상	11(100.0)	2(18.2)	3(27.3)	1(9.1)	4(36.4)	1(9.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222(100.0)	124(55.9)	44(19.8)	16(7.2)	13(5.9)	25(11.3)
비수급가구	1,273(100.0)	252(19.8)	392(30.8)	206(16.2)	301(23.6)	122(9.6)

[Base :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최저생계비 200% 이하 1,495가구의 상담서비스 욕구는 보통이다가 502가구 (33.6%)로 가장 많았으며 거의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28.4%(424가구) 차지하였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빈곤가구에서는 26%가 상담서비스를 원하고 있는 반면 중위소득 151% 이상의 고소득가구에서는 10%로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가구에 대한 현금 및 현물 지원과 함께 정기적인 상담서비스도 지원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88> 상담서비스 - 필요정도(O3-11)

단위 : 가구수(%)

	전체	정말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 항목 ☐	1,495(100.0)	69(4.6)	279(18.7)	502(33.6)	424(28.4)	221(14.8)
가구원 수						
1명	329(100.0)	17(5.2)	72(21.9)	98(29.8)	77(23.4)	65(19.8)
2명	475(100.0)	19(4.0)	88(18.5)	168(35.4)	130(27.4)	70(14.7)
3명	289(100.0)	11(3.8)	56(19.4)	95(32.9)	89(30.8)	38(13.1)
4명	265(100.0)	15(5.7)	44(16.6)	88(33.2)	86(32.5)	32(12.1)
5명 이상	137(100.0)	7(5.1)	19(13.9)	53(38.7)	42(30.7)	16(11.7)
가구형태						
일반가구	834(100.0)	26(3.1)	125(15.0)	304(36.5)	268(32.1)	111(13.3)
노인가구	359(100.0)	16(4.5)	88(24.5)	101(28.1)	89(24.8)	65(18.1)
장애인 가구	221(100.0)	21(9.5)	46(20.8)	71(32.1)	48(21.7)	35(15.8)
장애노인 가구	81(100.0)	6(7.4)	20(24.7)	26(32.1)	19(23.5)	10(12.3)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731(100.0)	36(4.9)	154(21.1)	251(34.3)	178(24.4)	112(15.3)
중위소득 51-150% 이하	753(100.0)	33(4.4)	124(16.5)	247(32.8)	241(32.0)	108(14.3)
중위소득 151% 이상	11(100.0)	0(0.0)	1(9.1)	4(36.4)	5(45.5)	1(9.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222(100.0)	17(7.7)	65(29.3)	90(40.5)	21(9.5)	29(13.1)
비수급가구	1,273(100.0)	52(4.1)	214(16.8)	412(32.4)	403(31.7)	192(15.1)

[Base :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서비스 욕구는 대부분이 보통 혹은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중위소득 151% 이상인 고소득 가구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27%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 소득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저소득 취약계층에서는 여가 및 문화활동보다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이 급선무이며 고소득 일반 가구에게는 다양한 문화활동에 대한 혜택을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보인다.

<표 II-89>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 필요정도(O3-12)

단위 : 가구수(%)

	전체	정말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 항 목 ☐	1,495(100.0)	51(3.4)	275(18.4)	484(32.4)	441(29.5)	244(16.3)
가구원 수						
1명	329(100.0)	13(4.0)	64(19.5)	91(27.7)	89(27.1)	72(21.9)
2명	475(100.0)	10(2.1)	83(17.5)	164(34.5)	142(29.9)	76(16.0)
3명	289(100.0)	11(3.8)	61(21.1)	88(30.4)	87(30.1)	42(14.5)
4명	265(100.0)	11(4.2)	48(18.1)	87(32.8)	82(30.9)	37(14.0)
5명 이상	137(100.0)	6(4.4)	19(13.9)	54(39.4)	41(29.9)	17(12.4)
가구형태						
일반가구	834(100.0)	21(2.5)	144(17.3)	289(34.7)	263(31.5)	117(14.0)
노인가구	359(100.0)	13(3.6)	76(21.2)	101(28.1)	103(28.7)	66(18.4)
장애인 가구	221(100.0)	15(6.8)	38(17.2)	72(32.6)	52(23.5)	44(19.9)
장애노인 가구	81(100.0)	2(2.5)	17(21.0)	22(27.2)	23(28.4)	17(21.0)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731(100.0)	24(3.3)	136(18.6)	239(32.7)	204(27.9)	128(17.5)
중위소득 51-150% 이하	753(100.0)	26(3.5)	137(18.2)	244(32.4)	232(30.8)	114(15.1)
중위소득 151% 이상	11(100.0)	1(9.1)	2(18.2)	1(9.1)	5(45.5)	2(18.2)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222(100.0)	9(4.1)	54(24.3)	92(41.4)	29(13.1)	38(17.1)
비수급가구	1,273(100.0)	42(3.3)	221(17.4)	392(30.8)	412(32.4)	206(16.2)

[Base :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복지서비스 가운데 물품지원에 대한 지원 의향을 물어본 결과이다. 물품지원에 대한 욕구는 1인 단독가구(43.8%, 144가구)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33.1%, 242가구), 수급가구(64.4%, 143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일반가구에 비해 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 장애노인가구 욕구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물품지원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I-90> 물품지원 - 필요정도(O3-13)

단위 : 가구수(%)

	전체	정말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 항 목 ☐	1,495(100.0)	110(7.4)	242(16.2)	425(28.4)	476(31.8)	242(16.2)
가구원 수						
1명	329(100.0)	53(16.1)	91(27.7)	63(19.1)	69(21.0)	53(16.1)
2명	475(100.0)	27(5.7)	71(14.9)	148(31.2)	155(32.6)	74(15.6)
3명	289(100.0)	16(5.5)	36(12.5)	81(28.0)	104(36.0)	52(18.0)
4명	265(100.0)	10(3.8)	26(9.8)	79(29.8)	105(39.6)	45(17.0)
5명 이상	137(100.0)	4(2.9)	18(13.1)	54(39.4)	43(31.4)	18(13.1)
가구형태						
일반가구	834(100.0)	26(3.1)	90(10.8)	266(31.9)	316(37.9)	136(16.3)
노인가구	359(100.0)	43(12.0)	90(25.1)	86(24.0)	91(25.3)	49(13.6)
장애인 가구	221(100.0)	31(14.0)	42(19.0)	55(24.9)	49(22.2)	44(19.9)
장애노인 가구	81(100.0)	10(12.3)	20(24.7)	18(22.2)	20(24.7)	13(16.0)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731(100.0)	85(11.6)	157(21.5)	200(27.4)	183(25.0)	106(14.5)
중위소득 51-150% 이하	753(100.0)	25(3.3)	82(10.9)	223(29.6)	289(38.4)	134(17.8)
중위소득 151% 이상	11(100.0)	0(0.0)	3(27.3)	2(18.2)	4(36.4)	2(18.2)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222(100.0)	61(27.5)	82(36.9)	42(18.9)	14(6.3)	23(10.4)
비수급가구	1,273(100.0)	49(3.8)	160(12.6)	383(30.1)	462(36.3)	219(17.2)

[Base :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가정봉사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구 집단을 살펴보면 1인 단독가구(33.2%, 109가구), 노인가구(30.0%, 108가구), 빈곤가구(24.8%, 181가구), 수급가구(47.3%, 105가구)인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가정봉사원 확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91> 가정봉사지원 - 필요정도(O3-14)

단위 : 가구수(%)

	전체	정말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 항 목 ☐	1,495(100.0)	82(5.5)	179(12.0)	407(27.2)	542(36.3)	285(19.1)
가구원 수						
1명	329(100.0)	38(11.6)	71(21.6)	76(23.1)	81(24.6)	63(19.1)
2명	475(100.0)	24(5.1)	55(11.6)	137(28.8)	172(36.2)	87(18.3)
3명	289(100.0)	11(3.8)	23(8.0)	68(23.5)	124(42.9)	63(21.8)
4명	265(100.0)	6(2.3)	19(7.2)	72(27.2)	117(44.2)	51(19.2)
5명 이상	137(100.0)	3(2.2)	11(8.0)	54(39.4)	48(35.0)	21(15.3)
가구형태						
일반가구	834(100.0)	13(1.6)	57(6.8)	242(29.0)	361(43.3)	161(19.3)
노인가구	359(100.0)	40(11.1)	68(18.9)	98(27.3)	98(27.3)	55(15.3)
장애인 가구	221(100.0)	21(9.5)	37(16.7)	49(22.2)	61(27.6)	53(24.0)
장애노인 가구	81(100.0)	8(9.9)	17(21.0)	18(22.2)	22(27.2)	16(19.8)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731(100.0)	62(8.5)	119(16.3)	201(27.5)	219(30.0)	130(17.8)
중위소득 51-150% 이하	753(100.0)	20(2.7)	59(7.8)	203(27.0)	318(42.2)	153(20.3)
중위소득 151% 이상	11(100.0)	0(0.0)	1(9.1)	3(27.3)	5(45.5)	2(18.2)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222(100.0)	35(15.8)	70(31.5)	52(23.4)	34(15.3)	31(14.0)
비수급가구	1,273(100.0)	47(3.7)	109(8.6)	355(27.9)	508(39.9)	254(20.0)

[Base :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식사배달 서비스에 대한 필요정도는 가정봉사지원 욕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인 단독가구(30.4%, 100가구), 빈곤가구(21.3%, 156가구), 수급가구(44.6%, 99가구)에서 정말 필요하다 또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92> 식사배달 - 필요정도(O3-15)

단위 : 가구수(%)

	전체	정말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 항목 ☐	1,495(100.0)	59(3.9)	146(9.8)	407(27.2)	560(37.5)	323(21.6)
가구원 수						
1명	329(100.0)	35(10.6)	65(19.8)	83(25.2)	79(24.0)	67(20.4)
2명	475(100.0)	16(3.4)	46(9.7)	137(28.8)	175(36.8)	101(21.3)
3명	289(100.0)	7(2.4)	11(3.8)	64(22.1)	132(45.7)	75(26.0)
4명	265(100.0)	1(0.4)	16(6.0)	72(27.2)	121(45.7)	55(20.8)
5명 이상	137(100.0)	0(0.0)	8(5.8)	51(37.2)	53(38.7)	25(18.2)
가구형태						
일반가구	834(100.0)	6(0.7)	47(5.6)	238(28.5)	366(43.9)	177(21.2)
노인가구	359(100.0)	35(9.7)	60(16.7)	97(27.0)	102(28.4)	65(18.1)
장애인 가구	221(100.0)	10(4.5)	24(10.9)	56(25.3)	69(31.2)	62(28.1)
장애노인 가구	81(100.0)	8(9.9)	15(18.5)	16(19.8)	23(28.4)	19(23.5)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731(100.0)	50(6.8)	106(14.5)	206(28.2)	222(30.4)	147(20.1)
중위소득 51-150% 이하	753(100.0)	9(1.2)	40(5.3)	197(26.2)	335(44.5)	172(22.8)
중위소득 151% 이상	11(100.0)	0(0.0)	0(0.0)	4(36.4)	3(27.3)	4(36.4)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222(100.0)	36(16.2)	63(28.4)	56(25.2)	38(17.1)	29(13.1)
비수급가구	1,273(100.0)	23(1.8)	83(6.5)	351(27.6)	522(41.0)	294(23.1)

[Base :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다음은 일자리/창업 관련 복지서비스 가운데 현재 정부나 공공기관 또는 다른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그나마 제일 비중이 높은 것은 구직알선이었지만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가운데 2.7%(40가구)밖에 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보기에 어렵다.

<표 II-93> 일자리/창업 관련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O6)

단위 : 가구수(%)

	구직 알선	시장 진입형 자활 근로	사회적 일자리 형 자활 근로	자활공 동체	근로 유지형 자활 근로	직업 훈련	구직 세일즈	인턴형 자활 근로	직업 적응 훈련	창업 지원	재활 프로 그램
■ 항목 ■	40 (2.7)	9 (0.6)	8 (0.5)	7 (0.5)	5 (0.3)	4 (0.3)	2 (0.1)	2 (0.1)	1 (0.1)	1 (0.1)	1 (0.1)
가구원 수											
1명	11 (3.3)	2 (0.6)	2 (0.6)	1 (0.3)	3 (0.9)	2 (0.6)	1 (0.3)	1 (0.3)	1 (0.3)	0 (0.0)	1 (0.3)
2명	16 (3.4)	2 (0.4)	6 (1.3)	1 (0.2)	2 (0.4)	0 (0.0)	0 (0.0)	1 (0.2)	0 (0.0)	1 (0.2)	0 (0.0)
3명	8 (2.8)	3 (1.0)	0 (0.0)	2 (0.7)	0 (0.0)	1 (0.3)	1 (0.3)	0 (0.0)	0 (0.0)	0 (0.0)	0 (0.0)
4명	4 (1.5)	1 (0.4)	0 (0.0)	0 (0.0)	0 (0.0)	1 (0.4)	0 (0.0)	0 (0.0)	0 (0.0)	0 (0.0)	0 (0.0)
5명 이상	1 (0.7)	1 (0.7)	0 (0.0)	3 (2.2)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가구형태											
일반가구	17 (2.0)	8 (1.0)	2 (0.2)	3 (0.4)	3 (0.4)	3 (0.4)	0 (0.0)	0 (0.0)	0 (0.0)	0 (0.0)	1 (0.1)
노인가구	14 (3.9)	0 (0.0)	2 (0.6)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3)	0 (0.0)
장애인 가구	8 (3.6)	0 (0.0)	2 (0.9)	3 (1.4)	1 (0.5)	0 (0.0)	1 (0.5)	1 (0.5)	0 (0.0)	0 (0.0)	0 (0.0)
장애노인 가구	1 (1.2)	1 (1.2)	2 (2.5)	1 (1.2)	1 (1.2)	1 (1.2)	1 (1.2)	1 (1.2)	1 (1.2)	0 (0.0)	0 (0.0)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24 (3.3)	2 (0.3)	5 (0.7)	3 (0.4)	5 (0.7)	2 (0.3)	2 (0.3)	1 (0.1)	1 (0.1)	0 (0.0)	1 (0.1)
중위소득 51-150% 이하	15 (2.0)	7 (0.9)	3 (0.4)	4 (0.5)	0 (0.0)	2 (0.3)	0 (0.0)	1 (0.1)	0 (0.0)	1 (0.1)	0 (0.0)
중위소득 151% 이상	1 (9.1)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10 (4.5)	7 (3.2)	2 (0.9)	5 (2.3)	4 (1.8)	1 (0.5)	0 (0.0)	0 (0.0)	0 (0.0)	0 (0.0)	0 (0.0)
비수급가구	30 (2.4)	2 (0.2)	6 (0.5)	2 (0.2)	1 (0.1)	3 (0.2)	2 (0.2)	2 (0.2)	1 (0.1)	1 (0.1)	1 (0.1)

[Base :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구직알선과 관련하여 향후 이용 의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거의 불필요하다가 29.3%(438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26.2%(392가구), 정말 불필요하다는 19.5%(291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구직 알선과 관련한 욕구는 가구규모나 가구형태, 중위소득, 수급여부에 따른 차이가 크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94> 구직 알선 - 필요정도(O7-1)

단위 : 가구수(%)

	전체	정말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 항목 □	1,495(100.0)	135(9.0)	392(26.2)	239(16.0)	438(29.3)	291(19.5)
가구원 수						
1명	329(100.0)	26(7.9)	70(21.3)	36(10.9)	93(28.3)	104(31.6)
2명	475(100.0)	47(9.9)	124(26.1)	74(15.6)	141(29.7)	89(18.7)
3명	289(100.0)	34(11.8)	78(27.0)	48(16.6)	80(27.7)	49(17.0)
4명	265(100.0)	13(4.9)	87(32.8)	53(20.0)	80(30.2)	32(12.1)
5명 이상	137(100.0)	15(10.9)	33(24.1)	28(20.4)	44(32.1)	17(12.4)
가구형태						
일반가구	834(100.0)	76(9.1)	247(29.6)	151(18.1)	257(30.8)	103(12.4)
노인가구	359(100.0)	21(5.8)	74(20.6)	50(13.9)	106(29.5)	108(30.1)
장애인 가구	221(100.0)	35(15.8)	54(24.4)	34(15.4)	49(22.2)	49(22.2)
장애노인 가구	81(100.0)	3(3.7)	17(21.0)	4(4.9)	26(32.1)	31(38.3)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731(100.0)	80(10.9)	189(25.9)	100(13.7)	195(26.7)	167(22.8)
중위소득 51-150% 이하	753(100.0)	53(7.0)	201(26.7)	139(18.5)	238(31.6)	122(16.2)
중위소득 151% 이상	11(100.0)	2(18.2)	2(18.2)	0(0.0)	5(45.5)	2(18.2)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222(100.0)	18(8.1)	49(22.1)	36(16.2)	62(27.9)	57(25.7)
비수급가구	1,273(100.0)	117(9.2)	343(26.9)	203(15.9)	376(29.5)	234(18.4)

[Base :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구직 세일즈의 필요성은 구직 알선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불필

요하다(38.7%)와 정말 필요하다(24.0%)는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보통이다는 20.8%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20%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 세일즈의 경우 비수급가구에서 다른 가구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95> 구직 세일즈 - 필요정도(O7-2)

단위 : 가구수(%)

	전체	정말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 항목 ■	1,495(100.0)	42(2.8)	205(13.7)	311(20.8)	578(38.7)	359(24.0)
가구원 수						
1명	329(100.0)	6(1.8)	40(12.2)	51(15.5)	114(34.7)	118(35.9)
2명	475(100.0)	14(2.9)	66(13.9)	94(19.8)	190(40.0)	111(23.4)
3명	289(100.0)	11(3.8)	32(11.1)	66(22.8)	113(39.1)	67(23.2)
4명	265(100.0)	10(3.8)	46(17.4)	64(24.2)	104(39.2)	41(15.5)
5명 이상	137(100.0)	1(0.7)	21(15.3)	36(26.3)	57(41.6)	22(16.1)
가구형태						
일반가구	834(100.0)	27(3.2)	131(15.7)	198(23.7)	341(40.9)	137(16.4)
노인가구	359(100.0)	2(0.6)	40(11.1)	56(15.6)	142(39.6)	119(33.1)
장애인 가구	221(100.0)	11(5.0)	25(11.3)	50(22.6)	65(29.4)	70(31.7)
장애노인 가구	81(100.0)	2(2.5)	9(11.1)	7(8.6)	30(37.0)	33(40.7)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731(100.0)	20(2.7)	106(14.5)	140(19.2)	266(36.4)	199(27.2)
중위소득 51-150% 이하	753(100.0)	22(2.9)	96(12.7)	171(22.7)	306(40.6)	158(21.0)
중위소득 151% 이상	11(100.0)	0(0.0)	3(27.3)	0(0.0)	6(54.5)	2(18.2)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222(100.0)	2(0.9)	31(14.0)	49(22.1)	72(32.4)	68(30.6)
비수급가구	1,273(100.0)	40(3.1)	174(13.7)	262(20.6)	506(39.7)	291(22.9)

[Base :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의 직업훈련 욕구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

체 66.3%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항목별로 가구집단의 특징을 보이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적으로 일반 비수급가구에서 직업훈련의 욕구가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96> 직업훈련 - 필요정도(O7-3)

단위 : 가구수(%)

	전체	정말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 항목 ☐	1,495(100.0)	34(2.3)	200(13.4)	270(18.1)	608(40.7)	383(25.6)
가구원 수						
1명	329(100.0)	4(1.2)	38(11.6)	42(12.8)	121(36.8)	124(37.7)
2명	475(100.0)	11(2.3)	63(13.3)	75(15.8)	202(42.5)	124(26.1)
3명	289(100.0)	5(1.7)	41(14.2)	55(19.0)	118(40.8)	70(24.2)
4명	265(100.0)	12(4.5)	37(14.0)	64(24.2)	110(41.5)	42(15.8)
5명 이상	137(100.0)	2(1.5)	21(15.3)	34(24.8)	57(41.6)	23(16.8)
가구형태						
일반가구	834(100.0)	26(3.1)	130(15.6)	174(20.9)	358(42.9)	146(17.5)
노인가구	359(100.0)	1(0.3)	36(10.0)	46(12.8)	146(40.7)	130(36.2)
장애인 가구	221(100.0)	5(2.3)	26(11.8)	47(21.3)	71(32.1)	72(32.6)
장애노인 가구	81(100.0)	2(2.5)	8(9.9)	3(3.7)	33(40.7)	35(43.2)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731(100.0)	14(1.9)	101(13.8)	113(15.5)	289(39.5)	214(29.3)
중위소득 51-150% 이하	753(100.0)	20(2.7)	96(12.7)	156(20.7)	313(41.6)	168(22.3)
중위소득 151% 이상	11(100.0)	0(0.0)	3(27.3)	1(9.1)	6(54.5)	1(9.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222(100.0)	2(0.9)	29(13.1)	47(21.2)	76(34.2)	68(30.6)
비수급가구	1,273(100.0)	32(2.5)	171(13.4)	223(17.5)	532(41.8)	315(24.7)

[Base :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직업적응훈련의 경우도 직업훈련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불필요하다는 의견(68.0%)이 필요하다는 의견(13.6%)보다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가구규모나 가구형태, 소득기준, 수급여부에 따라 별다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97> 직업적응훈련 - 필요정도(O7-4)

단위 : 가구수(%)

	전체	정말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 항목 ☐	1,495(100.0)	23(1.5)	181(12.1)	275(18.4)	628(42.0)	388(26.0)
가구원 수						
1명	329(100.0)	3(0.9)	39(11.9)	41(12.5)	123(37.4)	123(37.4)
2명	475(100.0)	9(1.9)	52(10.9)	80(16.8)	208(43.8)	126(26.5)
3명	289(100.0)	5(1.7)	32(11.1)	57(19.7)	125(43.3)	70(24.2)
4명	265(100.0)	5(1.9)	39(14.7)	63(23.8)	113(42.6)	45(17.0)
5명 이상	137(100.0)	1(0.7)	19(13.9)	34(24.8)	59(43.1)	24(17.5)
가구형태						
일반가구	834(100.0)	18(2.2)	114(13.7)	175(21.0)	374(44.8)	153(18.3)
노인가구	359(100.0)	1(0.3)	33(9.2)	50(13.9)	147(40.9)	128(35.7)
장애인 가구	221(100.0)	3(1.4)	26(11.8)	47(21.3)	73(33.0)	72(32.6)
장애노인 가구	81(100.0)	1(1.2)	8(9.9)	3(3.7)	34(42.0)	35(43.2)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731(100.0)	12(1.6)	92(12.6)	112(15.3)	299(40.9)	216(29.5)
중위소득 51-150% 이하	753(100.0)	11(1.5)	86(11.4)	162(21.5)	323(42.9)	171(22.7)
중위소득 151% 이상	11(100.0)	0(0.0)	3(27.3)	1(9.1)	6(54.5)	1(9.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222(100.0)	1(0.5)	28(12.6)	46(20.7)	79(35.6)	68(30.6)
비수급가구	1,273(100.0)	22(1.7)	153(12.0)	229(18.0)	549(43.1)	320(25.1)

[Base :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자활공동체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직업적응훈련보다도 더 욕구가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거의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42.9%(641가구)였으며 다음으로는 정말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25.9%(387가구)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말

필요하다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은 각각 1.9%, 10.1%밖에 되지 않았다.

<표 II-98> 자활공동체 - 필요정도(O7-5)

단위 : 가구수(%)

	전체	정말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 항목 □	1,495(100.0)	28(1.9)	151(10.1)	288(19.3)	641(42.9)	387(25.9)
가구원 수						
1명	329(100.0)	7(2.1)	32(9.7)	44(13.4)	123(37.4)	123(37.4)
2명	475(100.0)	10(2.1)	49(10.3)	83(17.5)	205(43.2)	128(26.9)
3명	289(100.0)	7(2.4)	25(8.7)	62(21.5)	127(43.9)	68(23.5)
4명	265(100.0)	1(0.4)	34(12.8)	64(24.2)	122(46.0)	44(16.6)
5명 이상	137(100.0)	3(2.2)	11(8.0)	35(25.5)	64(46.7)	24(17.5)
가구형태						
일반가구	834(100.0)	16(1.9)	90(10.8)	184(22.1)	389(46.6)	155(18.6)
노인가구	359(100.0)	4(1.1)	33(9.2)	51(14.2)	143(39.8)	128(35.7)
장애인 가구	221(100.0)	7(3.2)	20(9.0)	48(21.7)	77(34.8)	69(31.2)
장애노인 가구	81(100.0)	1(1.2)	8(9.9)	5(6.2)	32(39.5)	35(43.2)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731(100.0)	20(2.7)	77(10.5)	119(16.3)	296(40.5)	219(30.0)
중위소득 51-150% 이하	753(100.0)	8(1.1)	74(9.8)	167(22.2)	337(44.8)	167(22.2)
중위소득 151% 이상	11(100.0)	0(0.0)	0(0.0)	2(18.2)	8(72.7)	1(9.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222(100.0)	3(1.4)	24(10.8)	46(20.7)	85(38.3)	64(28.8)
비수급가구	1,273(100.0)	25(2.0)	127(10.0)	242(19.0)	556(43.7)	323(25.4)

[Base :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서울시복지패널조사에서는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공동체 창업 등을 위한 기초능력배

양에 중점으로 두고 있다.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① 근로유지형, ② 인턴형, ③ 사회적 일자리형, ④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구분대로 향후 자활근로 사업에 대한 필요정도를 살펴보았다. 우선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욕구부터 살펴보려고 한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은 현재의 근로능력과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차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 결과는 거의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41.3%(618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정말 불필요하다(25.9%), 보통이다(20.0%), 어느 정도 필요하다(10.5%) 순으로 나타났다. 정말 필요하다라는 응답은 전체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가운데 34가구(2.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에 대한 욕구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한 경우 소득집단별 차이가 나타났다. 빈곤가구에서는 정말 필요하다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1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위소득 151%이상의 고소득 가구에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소득 가구 사례수 자체가 11가구로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함의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표 II-99>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 필요정도(O7-6)

단위 : 가구수(%)

	전체	정말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 항목 □	1,495(100.0)	34(2.3)	157(10.5)	299(20.0)	618(41.3)	387(25.9)
가구원 수						
1명	329(100.0)	10(3.0)	34(10.3)	47(14.3)	116(35.3)	122(37.1)
2명	475(100.0)	16(3.4)	56(11.8)	81(17.1)	198(41.7)	124(26.1)
3명	289(100.0)	6(2.1)	25(8.7)	66(22.8)	123(42.6)	69(23.9)
4명	265(100.0)	2(0.8)	30(11.3)	69(26.0)	117(44.2)	47(17.7)
5명 이상	137(100.0)	0(0.0)	12(8.8)	36(26.3)	64(46.7)	25(18.2)
가구형태						
일반가구	834(100.0)	16(1.9)	95(11.4)	190(22.8)	374(44.8)	159(19.1)
노인가구	359(100.0)	7(1.9)	39(10.9)	50(13.9)	136(37.9)	127(35.4)
장애인 가구	221(100.0)	9(4.1)	16(7.2)	53(24.0)	76(34.4)	67(30.3)
장애노인 가구	81(100.0)	2(2.5)	7(8.6)	6(7.4)	32(39.5)	34(42.0)

	전체	정말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731(100.0)	26(3.6)	87(11.9)	119(16.3)	287(39.3)	212(29.0)
중위소득 51-150% 이하	753(100.0)	8(1.1)	70(9.3)	178(23.6)	323(42.9)	174(23.1)
중위소득 151% 이상	11(100.0)	0(0.0)	0(0.0)	2(18.2)	8(72.7)	1(9.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222(100.0)	4(1.8)	24(10.8)	44(19.8)	83(37.4)	67(30.2)
비수급가구	1,273(100.0)	30(2.4)	133(10.4)	255(20.0)	535(42.0)	320(25.1)

[Base :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다음은 인턴형 자활근로에 대해 알아본 결과이다. 인턴형 자활근로 사업은 일반 기업체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하면서 기술과 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근로사업을 말한다. 전체 1,495가구 가운데 인턴형 자활근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0%가 안 되었으며 가구원 수나 가구형태, 중위소득 기준, 수급여부와는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불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100> 인턴형 자활근로 - 필요정도(O7-7)

단위 : 가구수(%)

	전체	정말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 항목 ▣	1,495(100.0)	15(1.0)	126(8.4)	311(20.8)	644(43.1)	399(26.7)
가구원 수						
1명	329(100.0)	2(0.6)	20(6.1)	53(16.1)	127(38.6)	127(38.6)
2명	475(100.0)	10(2.1)	44(9.3)	88(18.5)	207(43.6)	126(26.5)
3명	289(100.0)	1(0.3)	22(7.6)	66(22.8)	125(43.3)	75(26.0)
4명	265(100.0)	2(0.8)	28(10.6)	68(25.7)	122(46.0)	45(17.0)
5명 이상	137(100.0)	0(0.0)	12(8.8)	36(26.3)	63(46.0)	26(19.0)
가구형태						
일반가구	834(100.0)	8(1.0)	82(9.8)	198(23.7)	388(46.5)	158(18.9)

	전체	정말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노인가구	359(100.0)	1(0.3)	29(8.1)	52(14.5)	144(40.1)	133(37.0)
장애인 가구	221(100.0)	5(2.3)	11(5.0)	54(24.4)	80(36.2)	71(32.1)
장애노인 가구	81(100.0)	1(1.2)	4(4.9)	7(8.6)	32(39.5)	37(45.7)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731(100.0)	11(1.5)	60(8.2)	137(18.7)	301(41.2)	222(30.4)
중위소득 51-150% 이하	753(100.0)	4(0.5)	65(8.6)	173(23.0)	335(44.5)	176(23.4)
중위소득 151% 이상	11(100.0)	0(0.0)	1(9.1)	1(9.1)	8(72.7)	1(9.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222(100.0)	0(0.0)	19(8.6)	46(20.7)	87(39.2)	70(31.5)
비수급가구	1,273(100.0)	15(1.2)	107(8.4)	265(20.8)	557(43.8)	329(25.8)

[Base :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사업은 사업의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인턴형 자활근로보다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은 13.4%였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표 II-101>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 필요정도(O7-8)

단위 : 가구수(%)

	전체	정말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 항목 □	1,495(100.0)	47(3.1)	154(10.3)	288(19.3)	629(42.1)	377(25.2)
가구원 수						
1명	329(100.0)	12(3.6)	29(8.8)	48(14.6)	118(35.9)	122(37.1)
2명	475(100.0)	20(4.2)	53(11.2)	80(16.8)	204(42.9)	118(24.8)
3명	289(100.0)	11(3.8)	29(10.0)	61(21.1)	121(41.9)	67(23.2)
4명	265(100.0)	2(0.8)	30(11.3)	67(25.3)	121(45.7)	45(17.0)
5명 이상	137(100.0)	2(1.5)	13(9.5)	32(23.4)	65(47.4)	25(18.2)

	전체	정말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가구형태						
일반가구	834(100.0)	19(2.3)	98(11.8)	184(22.1)	383(45.9)	150(18.0)
노인가구	359(100.0)	8(2.2)	33(9.2)	50(13.9)	140(39.0)	128(35.7)
장애인 가구	221(100.0)	15(6.8)	18(8.1)	47(21.3)	76(34.4)	65(29.4)
장애노인 가구	81(100.0)	5(6.2)	5(6.2)	7(8.6)	30(37.0)	34(42.0)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731(100.0)	34(4.7)	75(10.3)	124(17.0)	291(39.8)	207(28.3)
중위소득 51-150% 이하	753(100.0)	13(1.7)	78(10.4)	163(21.6)	330(43.8)	169(22.4)
중위소득 151% 이상	11(100.0)	0(0.0)	1(9.1)	1(9.1)	8(72.7)	1(9.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222(100.0)	6(2.7)	24(10.8)	43(19.4)	81(36.5)	68(30.6)
비수급가구	1,273(100.0)	41(3.2)	130(10.2)	245(19.2)	548(43.0)	309(24.3)

[Base :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마지막으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는 투입 예산의 20%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 기간 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으로의 근로를 의미한다.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에 대한 욕구는 필요하다는 응답은 10% 미만으로 나와 인턴형 자활근로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네가지 자활근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욕구를 파악해 본 결과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강조하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로 나타났다.

<표 II-102>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 필요정도(07-9)

단위 : 가구수(%)

	전체	정말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 항목 ☐	1,495(100.0)	19(1.3)	124(8.3)	309(20.7)	643(43.0)	400(26.8)
가구원 수						
1명	329(100.0)	2(0.6)	23(7.0)	52(15.8)	124(37.7)	128(38.9)

	전체	정말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2명	475(100.0)	11(2.3)	35(7.4)	90(18.9)	212(44.6)	127(26.7)
3명	289(100.0)	5(1.7)	24(8.3)	60(20.8)	128(44.3)	72(24.9)
4명	265(100.0)	1(0.4)	30(11.3)	72(27.2)	117(44.2)	45(17.0)
5명 이상	137(100.0)	0(0.0)	12(8.8)	35(25.5)	62(45.3)	28(20.4)
가구형태						
일반가구	834(100.0)	13(1.6)	81(9.7)	198(23.7)	384(46.0)	158(18.9)
노인가구	359(100.0)	1(0.3)	25(7.0)	54(15.0)	147(40.9)	132(36.8)
장애인 가구	221(100.0)	4(1.8)	14(6.3)	52(23.5)	78(35.3)	73(33.0)
장애노인 가구	81(100.0)	1(1.2)	4(4.9)	5(6.2)	34(42.0)	37(45.7)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731(100.0)	10(1.4)	61(8.3)	129(17.6)	308(42.1)	223(30.5)
중위소득 51-150% 이하	753(100.0)	9(1.2)	63(8.4)	178(23.6)	327(43.4)	176(23.4)
중위소득 151% 이상	11(100.0)	0(0.0)	0(0.0)	2(18.2)	8(72.7)	1(9.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222(100.0)	4(1.8)	24(10.8)	43(19.4)	81(36.5)	70(31.5)
비수급가구	1,273(100.0)	15(1.2)	100(7.9)	266(20.9)	562(44.1)	330(25.9)

[Base :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다음은 창업지원에 대한 욕구를 파악한 결과이다. 창업지원에 대하여 41.1%(615가구)는 거의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8.5%(426가구)는 정말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가구형태에서는 노인가구나 장애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가구에서 창업지원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었으며 수급여부에 따라서도 수급가구 보다는 비수급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창업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반 비수급가구에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 절대적인 수치가 적게 나온 것은 다른 서비스에 비해 복잡하고 까다로운 자격기준과 절차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II-103> 창업지원 - 필요정도(O7-10)

단위 : 가구수(%)

	전체	정말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 항 목 ☐	1,495(100.0)	32(2.1)	131(8.8)	291(19.5)	615(41.1)	426(28.5)
가구원 수						
1명	329(100.0)	1(0.3)	20(6.1)	45(13.7)	125(38.0)	138(41.9)
2명	475(100.0)	10(2.1)	41(8.6)	83(17.5)	205(43.2)	136(28.6)
3명	289(100.0)	8(2.8)	27(9.3)	61(21.1)	116(40.1)	77(26.6)
4명	265(100.0)	10(3.8)	31(11.7)	69(26.0)	107(40.4)	48(18.1)
5명 이상	137(100.0)	3(2.2)	12(8.8)	33(24.1)	62(45.3)	27(19.7)
가구형태						
일반가구	834(100.0)	28(3.4)	92(11.0)	184(22.1)	365(43.8)	165(19.8)
노인가구	359(100.0)	0(0.0)	23(6.4)	56(15.6)	138(38.4)	142(39.6)
장애인 가구	221(100.0)	4(1.8)	12(5.4)	46(20.8)	78(35.3)	81(36.7)
장애노인 가구	81(100.0)	0(0.0)	4(4.9)	5(6.2)	34(42.0)	38(46.9)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731(100.0)	9(1.2)	67(9.2)	121(16.6)	291(39.8)	243(33.2)
중위소득 51-150% 이하	753(100.0)	22(2.9)	64(8.5)	168(22.3)	317(42.1)	182(24.2)
중위소득 151% 이상	11(100.0)	1(9.1)	0(0.0)	2(18.2)	7(63.6)	1(9.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222(100.0)	2(0.9)	19(8.6)	40(18.0)	81(36.5)	80(36.0)
비수급가구	1,273(100.0)	30(2.4)	112(8.8)	251(19.7)	534(41.9)	346(27.2)

[Base :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마지막으로 일자리/창업관련 복지서비스 가운데 지역봉사와 관련한 필요성을 알아본 결과이다. 거의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42.8%(640가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정말 불필요하다(28.0%), 보통이다(21.4%), 어느 정도 필요하다(7.4%) 순으로 나타났다. 정말 필요하다는 응답은 1,495가구 가운데 6가구(0.4%)밖에 되지 않았다.

<표 II-104> 지역봉사 - 필요정도(O7-12)

단위 : 가구수(%)

	전체	정말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불필요하다	정말 불필요하다
☐ 항 목 ☐	1,495(100.0)	6(0.4)	110(7.4)	320(21.4)	640(42.8)	419(28.0)
가구원 수						
1명	329(100.0)	0(0.0)	24(7.3)	55(16.7)	125(38.0)	125(38.0)
2명	475(100.0)	3(0.6)	34(7.2)	88(18.5)	216(45.5)	134(28.2)
3명	289(100.0)	2(0.7)	19(6.6)	71(24.6)	122(42.2)	75(26.0)
4명	265(100.0)	1(0.4)	22(8.3)	70(26.4)	113(42.6)	59(22.3)
5명 이상	137(100.0)	0(0.0)	11(8.0)	36(26.3)	64(46.7)	26(19.0)
가구형태						
일반가구	834(100.0)	2(0.2)	69(8.3)	204(24.5)	378(45.3)	181(21.7)
노인가구	359(100.0)	0(0.0)	24(6.7)	58(16.2)	146(40.7)	131(36.5)
장애인 가구	221(100.0)	4(1.8)	12(5.4)	51(23.1)	82(37.1)	72(32.6)
장애노인 가구	81(100.0)	0(0.0)	5(6.2)	7(8.6)	34(42.0)	35(43.2)
중위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731(100.0)	3(0.4)	59(8.1)	135(18.5)	308(42.1)	226(30.9)
중위소득 51-150% 이하	753(100.0)	3(0.4)	50(6.6)	184(24.4)	324(43.0)	192(25.5)
중위소득 151% 이상	11(100.0)	0(0.0)	1(9.1)	1(9.1)	8(72.7)	1(9.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222(100.0)	0(0.0)	17(7.7)	50(22.5)	82(36.9)	73(32.9)
비수급가구	1,273(100.0)	6(0.5)	93(7.3)	270(21.2)	558(43.8)	346(27.2)

[Base :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제 3 장



가무원용 설문 응답 결과

III. 가구원용 설문 응답 결과

1. 조사대상 가구원 일반사항

1) 조사대상 가구원의 일반적 특성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 전체 가구원 6,304명중 2,870명(45.5%)은 남성, 3,434명(54.5%)는 여성응답자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10%가량 높았다. 응답자들의 연령은 15세부터 93세였으며, 65세 이상이 1,429명으로 22.7%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30대와 40대가 각각 1,176명과 1,178명으로 전체의 18.7%였다.

학력수준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생이 2,004명(31.8%)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졸업생이 1,997명인 31.7%이었으며 초등학교 졸업 이하는 963명으로 전체의 15.3%를 차지하고 있다.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전체의 62.8%인 3,957명이 배우자가 있었고, 19.0%인 1,200명이 미혼이었다. 사별했다는 가구원도 568명인 9.0%였으며, 이혼은 3.0%정도였다. 655명인 10.4%가 중위소득 50%이하였고, 1,327명인 21.1%가 중위소득 51-150%였으며, 중위소득 150%이상은 577명인 9.2%였다. 취업자 2,624명은 전체의 41.6%였고, 나머지 3,680명은 비취업자로 취업자보다 숫자가 많았다.

거주 지역은 서울이외지역 79명(1.3%)을 제외한 나머지 25개구에 2.5%에서 5.6%까지 분포되어 있다. 용산구가 156명으로 가장 작았고, 송파구가 356명으로 가장 많았다.

<표 III-1> 응답자 분포표

□ 항목 □		6,304 (100.0)			
	18세 이하	404 (6.4)	거주지역		
	19-29세	773 (12.3)		종로구	164 (2.6)
	30대	1,176 (18.7)		중구	203 (3.2)
	40대	1,178 (18.7)		용산구	156 (2.5)
	4년제 대학	2,004 (31.8)		성동구	212 (3.4)
	50대	911 (14.5)		광진구	186 (3.0)
	60-64세	433 (6.9)		동대문구	206 (3.3)
	65세 이상	1,429 (22.7)		중랑구	227 (3.6)
	고등학교	1,997 (31.7)		성북구	262 (4.2)
	남성	2,870 (45.5)		강북구	197 (3.1)
	대학원 석사 이상	262 (4.2)		도봉구	216 (3.4)
	모름/무응답	4 (0.1)		노원구	339 (5.4)
	무급가족종사자	61 (1.0)		은평구	275 (4.4)
	미혼	1,200 (19.0)		서대문구	174 (2.8)
	별거	59 (0.9)	마포구	206 (3.3)	
	비취업자	3,680 (58.4)	양천구	260 (4.1)	
	비취업자	3,680 (58.4)	강서구	266 (4.2)	
	비해당	330 (5.2)	구로구	236 (3.7)	
	사별	568 (9.0)	금천구	305 (4.8)	
성별			영등포구	306 (4.9)	
	여성	3,434 (54.5)	동작구	255 (4.0)	
연령			관악구	353 (5.6)	
	유배우	3,957 (62.8)	서초구	286 (4.5)	
	이혼	190 (3.0)	강남구	313 (5.0)	
	전문대학	468 (7.4)	송파구	356 (5.6)	
	중위소득 151% 이상	577 (9.2)	강동구	266 (4.2)	
	중위소득 50% 이하	655 (10.4)	서울 이외 지역	79 (1.3)	
	중위소득 51-150% 이하	1,327 (21.1)			
중위소득 기준 개인					
	중학교	610 (9.7)			
	초등졸 이하	963 (15.3)			
취업상태					
	취업자	2,624 (41.6)			
학력					
혼인상태					

[Base : 전체 가구원]

2) 분석변수 선정

가구원용 자료 분석에 있어서는 가구원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련된 변수들이 사용되었다. 성별, 연령(18세이하, 19-29세, 30대, 40대, 40대, 60-64세, 65세 이상), 학력 (초등졸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석사 이상), 그리고 소득(비취업자, 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51-150%이하, 중위소득 50%이상)등 기본적인 인구학적 변수를 분석변수로 선정하였다.

공통으로 분석된 주요 변수 외에는 혼인상태(비해당, 미혼, 이혼, 사별, 별거), 취업상태(취업자, 비취업자), 그리고 거주지역(서울시 25개 자치구)이 이용되었는데, 문항별로 해당변수의 수치가 의미가 있을 때에만 분석에 포함하였다.

2. 경제활동

1) 경제활동 상태

경제활동에서는 취업여부 및 구직활동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서울시복지패널 조사 응답자를 조사당시의 경제활동 상태별로 분류 해 보면 <표 III-2>와 같다. 일한 가구원이 2,564명으로 전체의 40.9%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성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체 2,851명의 남성응답자 중 1,647명인 57.8%가 일하였던 반면, 3,412명의 여성응답자 중 917명인 26.9%만 일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고학력일수록 일하고 있는 비중이 높았는데, 최종학력이 4년제 대학인 응답자는 2,003명중 49.8%인 997명이, 석사 이상은 총 262명중 176명인 67.2%가 일하고 있었다. 이것은 중학교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의 29.3%인 170명, 그리고 초등학교까지 졸업한 응답자의 17.9%인 172명 보다 높은 수치이다.

구별 차이를 살펴보면, 양친구가 34.8%(89명)로 가장 적은 수가 일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관악구가 49.0%(172명)로 가장 많은 가구원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40.9%의 나머지 59.1%인 3,699명은 구직활동, 육아, 학업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중 가사 때문에 일하지 않았다는 응답원이 1,333명(21.3%)으로 가장 많았다. 특별한 이유 없이 '쉬었다'고 응답한 가구원도 1,223명으로 19.5%정도를 차지하였다.

<표 III-2> 지난 1주일간 한 일(A1)

단위 : 가구원수(%)

	전체	일하였음	일시후직	구직활동	발령대기	육아	가사	정규교육기관통학	대도대학재학	취업한원,관강수	취업준비	진학준비	심신장애	군입대대기	결혼준비	쉬었음	기타
■ 항목 ■	6,263 (100.0)	2,564 (40.9)	27 (0.4)	37 (0.6)	3 (0.0)	190 (3.0)	1,333 (21.3)	347 (5.5)	211 (3.4)	25 (0.4)	55 (0.9)	61 (1.0)	135 (2.2)	9 (0.1)	4 (0.1)	1,223 (19.5)	39 (0.6)
성별																	
남성	2,851 (100.0)	1,647 (57.8)	15 (0.5)	24 (0.8)	2 (0.1)	3 (0.1)	15 (0.5)	188 (6.6)	113 (4.0)	15 (0.5)	30 (1.1)	42 (1.5)	79 (2.8)	9 (0.3)	0 (0.0)	646 (22.7)	23 (0.8)
여성	3,412 (100.0)	917 (26.9)	12 (0.4)	13 (0.4)	1 (0.0)	187 (5.5)	1,318 (38.6)	159 (4.7)	98 (2.9)	10 (0.3)	25 (0.7)	19 (0.6)	56 (1.6)	0 (0.0)	4 (0.1)	577 (16.9)	16 (0.5)
연령																	
18세 이하	363 (100.0)	6 (1.7)	1 (0.3)	1 (0.3)	1 (0.3)	0 (0.0)	1 (0.3)	283 (78.0)	20 (5.5)	0 (0.0)	1 (0.3)	23 (6.3)	1 (0.3)	3 (0.8)	0 (0.0)	16 (4.4)	6 (1.7)
19-29세	773 (100.0)	302 (39.1)	4 (0.5)	12 (1.6)	2 (0.3)	14 (1.8)	19 (2.5)	61 (7.9)	183 (23.7)	17 (2.2)	36 (4.7)	37 (4.8)	2 (0.3)	6 (0.8)	1 (0.1)	71 (9.2)	6 (0.8)
30대	1,176 (100.0)	673 (57.2)	7 (0.6)	3 (0.3)	0 (0.0)	136 (11.6)	232 (19.7)	1 (0.1)	7 (0.6)	7 (0.6)	15 (1.3)	0 (0.0)	6 (0.5)	0 (0.0)	1 (0.1)	80 (6.8)	8 (0.7)
40대	1,178 (100.0)	743 (63.1)	7 (0.6)	12 (1.0)	0 (0.0)	21 (1.8)	296 (25.1)	1 (0.1)	1 (0.1)	0 (0.0)	3 (0.3)	0 (0.0)	12 (1.0)	0 (0.0)	1 (0.1)	79 (6.7)	2 (0.2)
50대	911 (100.0)	490 (53.8)	5 (0.5)	3 (0.3)	0 (0.0)	8 (0.9)	253 (27.8)	0 (0.0)	0 (0.0)	1 (0.1)	0 (0.0)	0 (0.0)	12 (1.3)	0 (0.0)	0 (0.0)	135 (14.8)	4 (0.4)
60-64세	433 (100.0)	155 (35.8)	1 (0.2)	1 (0.2)	0 (0.0)	1 (0.2)	158 (36.5)	0 (0.0)	0 (0.0)	0 (0.0)	0 (0.0)	0 (0.0)	8 (1.8)	0 (0.0)	0 (0.0)	107 (24.7)	2 (0.5)
65세 이상	1,429 (100.0)	195 (13.6)	2 (0.1)	5 (0.3)	0 (0.0)	10 (0.7)	374 (26.2)	1 (0.1)	0 (0.0)	0 (0.0)	0 (0.0)	1 (0.1)	94 (6.6)	0 (0.0)	1 (0.1)	735 (51.4)	11 (0.8)

III. 가구원용 설문 응답 결과

	전체	영입하 였음	유리의 시각	구직 불황	반영 대기	육아	가사	정규 고용	대 학 재 학	취 업 기 회 감 소	취 업 기 회 감 소	취 업 기 회 감 소	지 난 학 비	심 장 애	군 입 대 기	경 험 하 였 음	쉬 었 음	기타
학력																		
초등졸 이하	962 (100.0)	172 (17.9)	3 (0.3)	4 (0.4)	0 (0.0)	9 (0.9)	306 (31.8)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63 (6.5)	0 (0.0)	0 (0.0)	396 (41.2)	9 (0.9)
중학교	581 (100.0)	170 (29.3)	3 (0.5)	4 (0.7)	0 (0.0)	5 (0.9)	163 (28.1)	21 (3.6)	1 (0.2)	0 (0.0)	0 (0.0)	1 (0.2)	25 (4.3)	0 (0.0)	1 (0.2)	185 (31.8)	2 (0.3)	
고등학교	1,987 (100.0)	822 (41.4)	9 (0.5)	13 (0.7)	2 (0.1)	38 (1.9)	420 (21.1)	248 (12.5)	8 (0.4)	1 (0.1)	9 (0.5)	32 (1.6)	32 (1.6)	2 (0.1)	0 (0.0)	337 (17.0)	14 (0.7)	
전문대학	468 (100.0)	227 (48.5)	4 (0.9)	4 (0.9)	0 (0.0)	42 (9.0)	77 (16.5)	16 (3.4)	18 (3.8)	8 (1.7)	13 (2.8)	6 (1.3)	3 (0.6)	1 (0.2)	0 (0.0)	46 (9.8)	3 (0.6)	
4년제 대학	2,003 (100.0)	997 (49.8)	6 (0.3)	12 (0.6)	1 (0.0)	87 (4.3)	345 (17.2)	62 (3.1)	165 (8.2)	16 (0.8)	31 (1.5)	22 (1.1)	10 (0.5)	6 (0.3)	3 (0.1)	230 (11.5)	10 (0.5)	
대학원 석사 이상	262 (100.0)	176 (67.2)	2 (0.8)	0 (0.0)	0 (0.0)	9 (3.4)	22 (8.4)	0 (0.0)	19 (7.3)	0 (0.0)	2 (0.8)	0 (0.0)	2 (0.8)	0 (0.0)	0 (0.0)	29 (11.1)	1 (0.4)	
중위소득 기준 개인																		
비취업자	3,639 (100.0)	0 (0.0)	16 (0.4)	37 (1.0)	3 (0.1)	181 (5.0)	1,324 (36.4)	344 (9.5)	208 (5.7)	23 (0.6)	54 (1.5)	60 (1.6)	135 (3.7)	9 (0.2)	4 (0.1)	1,206 (33.1)	35 (1.0)	
무급 가족종사자	61 (100.0)	57 (93.4)	0 (0.0)	0 (0.0)	0 (0.0)	0 (0.0)	1 (1.6)	0 (0.0)	0 (0.0)	0 (0.0)	1 (1.6)	0 (0.0)	0 (0.0)	0 (0.0)	0 (0.0)	0 (0.0)	2 (3.3)	
중위소득 50% 이하	655 (100.0)	630 (96.2)	3 (0.5)	0 (0.0)	0 (0.0)	1 (0.2)	6 (0.9)	1 (0.2)	2 (0.3)	2 (0.3)	0 (0.0)	1 (0.2)	0 (0.0)	0 (0.0)	0 (0.0)	8 (1.2)	1 (0.2)	
중위소득 51-150% 이하	1,327 (100.0)	1,299 (97.9)	7 (0.5)	0 (0.0)	0 (0.0)	6 (0.5)	2 (0.2)	2 (0.2)	1 (0.1)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9 (0.7)	1 (0.1)	
중위소득 151% 이상	577 (100.0)	574 (99.5)	1 (0.2)	0 (0.0)	0 (0.0)	2 (0.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모름/무응답	4 (100.0)	4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거주지역																		
종로구	163 (100.0)	57 (35.0)	1 (0.6)	1 (0.6)	0 (0.0)	2 (1.2)	39 (23.9)	10 (6.1)	1 (0.6)	0 (0.0)	1 (0.6)	0 (0.0)	3 (1.8)	1 (0.6)	0 (0.0)	46 (28.2)	1 (0.6)	
중구	203 (100.0)	90 (44.3)	3 (1.5)	3 (1.5)	0 (0.0)	7 (3.4)	44 (21.7)	12 (5.9)	2 (1.0)	1 (0.5)	0 (0.0)	3 (1.5)	10 (4.9)	1 (0.5)	0 (0.0)	21 (10.3)	6 (3.0)	
용산구	155 (100.0)	56 (36.1)	1 (0.6)	0 (0.0)	0 (0.0)	3 (1.9)	26 (16.8)	8 (5.2)	4 (2.6)	0 (0.0)	2 (1.3)	1 (0.6)	1 (0.6)	0 (0.0)	1 (0.6)	51 (32.9)	1 (0.6)	
성동구	209 (100.0)	85 (40.7)	1 (0.5)	3 (1.4)	0 (0.0)	11 (5.3)	50 (23.9)	15 (7.2)	4 (1.9)	0 (0.0)	2 (1.0)	1 (0.5)	2 (1.0)	0 (0.0)	0 (0.0)	34 (16.3)	1 (0.5)	
광진구	183 (100.0)	84 (45.9)	1 (0.5)	4 (2.2)	0 (0.0)	8 (4.4)	35 (19.1)	8 (4.4)	5 (2.7)	0 (0.0)	1 (0.5)	0 (0.0)	8 (4.4)	0 (0.0)	0 (0.0)	28 (15.3)	1 (0.5)	
동대문구	206 (100.0)	89 (43.2)	0 (0.0)	0 (0.0)	0 (0.0)	9 (4.4)	45 (21.8)	10 (4.9)	8 (3.9)	1 (0.5)	4 (1.9)	2 (1.0)	4 (1.9)	0 (0.0)	0 (0.0)	33 (16.0)	1 (0.5)	
중랑구	225 (100.0)	86 (38.2)	2 (0.9)	0 (0.0)	0 (0.0)	7 (3.1)	52 (23.1)	6 (2.7)	5 (2.2)	0 (0.0)	0 (0.0)	2 (0.9)	14 (6.2)	0 (0.0)	0 (0.0)	51 (22.7)	0 (0.0)	

	전체	일일 하 업 없음	유망 시 직	구직 중 불합격	발령대 기	육아	가사	정규직 고용관 통	대학 재학	취업 희망 수	취업 희망 비	지 학 비	심 신 장애	군 입 대 기	경 험 비	쉬 었 음	기 타
성북구	262 (100.0)	101 (38.5)	1 (0.4)	1 (0.4)	1 (0.4)	6 (2.3)	42 (16.0)	9 (3.4)	8 (3.1)	2 (0.8)	5 (1.9)	1 (0.4)	21 (8.0)	1 (0.4)	0 (0.0)	61 (23.3)	2 (0.8)
강북구	196 (100.0)	85 (43.4)	1 (0.5)	1 (0.5)	0 (0.0)	1 (0.5)	29 (14.8)	7 (3.6)	0 (0.0)	0 (0.0)	0 (0.0)	1 (0.5)	6 (3.1)	0 (0.0)	0 (0.0)	65 (33.2)	0 (0.0)
도봉구	216 (100.0)	80 (37.0)	1 (0.5)	3 (1.4)	0 (0.0)	5 (2.3)	27 (12.5)	7 (3.2)	5 (2.3)	0 (0.0)	2 (0.9)	2 (0.9)	10 (4.6)	0 (0.0)	0 (0.0)	71 (32.9)	3 (1.4)
노원구	339 (100.0)	136 (40.1)	1 (0.3)	4 (1.2)	0 (0.0)	13 (3.8)	64 (18.9)	19 (5.6)	6 (1.8)	0 (0.0)	0 (0.0)	1 (0.3)	6 (1.8)	3 (0.9)	0 (0.0)	83 (24.5)	3 (0.9)
은평구	270 (100.0)	117 (43.3)	0 (0.0)	1 (0.4)	1 (0.4)	6 (2.2)	29 (10.7)	18 (6.7)	8 (3.0)	1 (0.4)	3 (1.1)	12 (4.4)	2 (0.7)	0 (0.0)	0 (0.0)	64 (23.7)	8 (3.0)
서대문구	173 (100.0)	74 (42.8)	2 (1.2)	1 (0.6)	0 (0.0)	4 (2.3)	12 (6.9)	9 (5.2)	5 (2.9)	1 (0.6)	0 (0.0)	1 (0.6)	5 (2.9)	0 (0.0)	0 (0.0)	59 (34.1)	0 (0.0)
마포구	205 (100.0)	72 (35.1)	1 (0.5)	2 (1.0)	0 (0.0)	8 (3.9)	47 (22.9)	9 (4.4)	10 (4.9)	1 (0.5)	4 (2.0)	2 (1.0)	3 (1.5)	0 (0.0)	1 (0.5)	45 (22.0)	0 (0.0)
양천구	256 (100.0)	89 (34.8)	1 (0.4)	0 (0.0)	0 (0.0)	14 (5.5)	49 (19.1)	31 (12.1)	12 (4.7)	0 (0.0)	1 (0.4)	1 (0.4)	0 (0.0)	0 (0.0)	0 (0.0)	58 (22.7)	0 (0.0)
강서구	266 (100.0)	106 (39.8)	1 (0.4)	1 (0.4)	0 (0.0)	11 (4.1)	57 (21.4)	18 (6.8)	8 (3.0)	2 (0.8)	4 (1.5)	2 (0.8)	1 (0.4)	1 (0.4)	0 (0.0)	54 (20.3)	0 (0.0)
구로구	235 (100.0)	97 (41.3)	0 (0.0)	1 (0.4)	0 (0.0)	12 (5.1)	65 (27.7)	12 (5.1)	4 (1.7)	2 (0.9)	2 (0.9)	1 (0.4)	2 (0.9)	0 (0.0)	0 (0.0)	36 (15.3)	1 (0.4)
금천구	304 (100.0)	132 (43.4)	0 (0.0)	1 (0.3)	0 (0.0)	2 (0.7)	91 (29.9)	15 (4.9)	11 (3.6)	1 (0.3)	0 (0.0)	0 (0.0)	3 (1.0)	0 (0.0)	0 (0.0)	48 (15.8)	0 (0.0)
영등포구	305 (100.0)	126 (41.3)	0 (0.0)	0 (0.0)	0 (0.0)	3 (1.0)	100 (32.8)	9 (3.0)	13 (4.3)	0 (0.0)	2 (0.7)	7 (2.3)	0 (0.0)	0 (0.0)	0 (0.0)	45 (14.8)	0 (0.0)
동작구	254 (100.0)	89 (35.0)	0 (0.0)	2 (0.8)	0 (0.0)	9 (3.5)	59 (23.2)	13 (5.1)	15 (5.9)	4 (1.6)	4 (1.6)	2 (0.8)	2 (0.8)	0 (0.0)	0 (0.0)	54 (21.3)	1 (0.4)
관악구	351 (100.0)	172 (49.0)	4 (1.1)	1 (0.3)	0 (0.0)	9 (2.6)	78 (22.2)	10 (2.8)	10 (2.8)	4 (1.1)	4 (1.1)	5 (1.4)	1 (0.3)	0 (0.0)	0 (0.0)	50 (14.2)	3 (0.9)
서초구	284 (100.0)	123 (43.3)	0 (0.0)	0 (0.0)	0 (0.0)	4 (1.4)	67 (23.6)	13 (4.6)	14 (4.9)	1 (0.4)	1 (0.4)	2 (0.7)	3 (1.1)	0 (0.0)	2 (0.7)	54 (19.0)	0 (0.0)
강남구	309 (100.0)	136 (44.0)	1 (0.3)	3 (1.0)	0 (0.0)	8 (2.6)	62 (20.1)	21 (6.8)	22 (7.1)	2 (0.6)	6 (1.9)	4 (1.3)	14 (4.5)	0 (0.0)	0 (0.0)	27 (8.7)	3 (1.0)
송파구	352 (100.0)	142 (40.3)	3 (0.9)	3 (0.9)	0 (0.0)	13 (3.7)	84 (23.9)	29 (8.2)	23 (6.5)	0 (0.0)	2 (0.6)	3 (0.9)	6 (1.7)	2 (0.6)	0 (0.0)	41 (11.6)	1 (0.3)
강동구	263 (100.0)	106 (40.3)	1 (0.4)	1 (0.4)	1 (0.4)	10 (3.8)	57 (21.7)	27 (10.3)	7 (2.7)	1 (0.4)	4 (1.5)	5 (1.9)	7 (2.7)	0 (0.0)	0 (0.0)	33 (12.5)	3 (1.1)
서울 이외 지역	79 (100.0)	34 (43.0)	0 (0.0)	0 (0.0)	0 (0.0)	5 (6.3)	23 (29.1)	2 (2.5)	1 (1.3)	1 (1.3)	1 (1.3)	0 (0.0)	1 (1.3)	0 (0.0)	0 (0.0)	11 (13.9)	0 (0.0)

[Base : 전체 가구원]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2,624명²⁾의 평균 근로기간은 88.3개월이었다. 12개월 이하, 13-36개월 이하, 37개월 이상 중 근로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물었을 때, 37개월 이상 경제활동에 참여하였다고 답한 비율이 62.3%(1,635명)으로 가장 많았다. 평균 근로기간에서도 성별에 따라 비율의 차이가 나타났다. 12개월 이하 및 13개월-36개월 이하에는 여성이 각각 13.2%, 34.8%로 남성의 7.5%와 23.3%보다 높게 나타났다으나, 37개월 이상에서는 51.5%로 68.5%인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근로 기간을 소득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에도 성별과 유사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 12개월 이하 및 13-36개월 이하는 중위소득 50%이하가 15.6% 및 36.6%로 타 집단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중위소득 51-150%는 각각 9.5%와 29.8%였고, 중위소득 151%이상은 2.8%와 12.5%였다. 하지만 37개월 이상에서는 중위소득 151%이상이 84.2%으로 가장 높았고, 51-150%가 60.1%, 그리고 50%이하는 46.9%로 조사되었다. 여성근로자이며, 소득이 낮을수록 근속년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 평균 근로기간(A8)

	전체	12개월 이하	13-36개월 이하	37개월 이상	모름/ 무응답	평균 (개월)
■ 항목 ■	2,624(100.0)	251(9.6)	721(27.5)	1,635(62.3)	17(0.6)	88.3
성별						
남성	1,671(100.0)	125(7.5)	389(23.3)	1,144(68.5)	13(0.8)	100.6
여성	953(100.0)	126(13.2)	332(34.8)	491(51.5)	4(0.4)	66.8
연령						
18세 이하	7(100.0)	4(57.1)	3(42.9)	0(0.0)	0(0.0)	9.6
19-29세	314(100.0)	66(21.0)	159(50.6)	89(28.3)	0(0.0)	29.2
30대	695(100.0)	58(8.3)	209(30.1)	427(61.4)	1(0.1)	64.4
40대	754(100.0)	62(8.2)	156(20.7)	531(70.4)	5(0.7)	99.7
50대	498(100.0)	32(6.4)	108(21.7)	352(70.7)	6(1.2)	122.0

2) <표 III-3>에 "일하였다"고 응답한 가구원보다 인원이 많은 이유는 휴직, 발령대기 등 취업상태 이나 일하고 있지 않은 인원도 포함하였기 때문임

	전체	12개월 이하	13-36개월 이하	37개월 이상	모름/ 무응답	평균 (개월)
60-64세	158(100.0)	9(5.7)	38(24.1)	109(69.0)	2(1.3)	128.8
65세 이상	198(100.0)	20(10.1)	48(24.2)	127(64.1)	3(1.5)	110.4
학력						
초등졸 이하	177(100.0)	20(11.3)	45(25.4)	111(62.7)	1(0.6)	99.6
중학교	173(100.0)	15(8.7)	45(26.0)	110(63.6)	3(1.7)	103.8
고등학교	841(100.0)	82(9.8)	247(29.4)	502(59.7)	10(1.2)	87.9
전문대학	234(100.0)	40(17.1)	73(31.2)	120(51.3)	1(0.4)	67.6
4년제 대학	1,016(100.0)	87(8.6)	272(26.8)	655(64.5)	2(0.2)	86.8
대학원 석사 이상	183(100.0)	7(3.8)	39(21.3)	137(74.9)	0(0.0)	99.5
중위소득 기준 개인						
중위소득 50% 이하	655(100.0)	102(15.6)	240(36.6)	307(46.9)	6(0.9)	64.5
중위소득 51-150% 이하	1,327(100.0)	126(9.5)	395(29.8)	798(60.1)	8(0.6)	78.8
중위소득 151% 이상	577(100.0)	16(2.8)	72(12.5)	486(84.2)	3(0.5)	135.1
모름/무응답	65(100.0)	7(10.8)	14(21.5)	44(67.7)	0(0.0)	166.0

[Base : 취업 가구원]

무급 가족봉사자를 제외한 취업 가구원 2,563명의 월평균 소득은 232.9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중앙값은 200.0만원이었고, 편차는 172.8만원이다. 이 부분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남성 취업자의 월평균소득은 277.9만원인 반면, 여성 취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150.6만원으로 조사되어, 무려 127.3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값의 경우에도 남성은 250만원, 여성은 120만원으로 130만원의 차이가 있었다.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평균값은 184.5만원으로 성북구가 가장 낮았으나, 중앙값은 강북구(140만원)가 가장 낮았다. 평균 월소득이 가장 높았던 곳은 양천구로 336.6만원이었으며, 중앙값 역시 3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양천구는 취업률은 가장 낮았으나, 소득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 월평균 소득(A16)

단위 : 가구원수(%)

		전체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중앙값 (만원)	평균 (만원)	편차 (만원)
■	항 목	2,563 (100.0)	421 (16.4)	822 (32.1)	547 (21.3)	321 (12.5)	193 (7.5)	255 (9.9)	4 (0.2)	200.0	232.9	172.8
성별												
	남성	1,658 (100.0)	150 (9.0)	431 (26.0)	405 (24.4)	265 (16.0)	168 (10.1)	237 (14.3)	2 (0.1)	250.0	277.9	185.5
	여성	905 (100.0)	271 (29.9)	391 (43.2)	142 (15.7)	56 (6.2)	25 (2.8)	18 (2.0)	2 (0.2)	120.0	150.6	104.8
연령												
	18세 이하	7 (100.0)	6 (85.7)	1 (14.3)	0 (0.0)	0 (0.0)	0 (0.0)	0 (0.0)	0 (0.0)	45.9	58.2	34.7
	19-29세	308 (100.0)	39 (12.7)	152 (49.4)	91 (29.5)	16 (5.2)	7 (2.3)	2 (0.6)	1 (0.3)	150.0	171.8	90.1
	30대	683 (100.0)	42 (6.1)	213 (31.2)	205 (30.0)	119 (17.4)	57 (8.3)	47 (6.9)	0 (0.0)	215.0	247.0	137.3
	40대	734 (100.0)	86 (11.7)	186 (25.3)	137 (18.7)	116 (15.8)	82 (11.2)	127 (17.3)	0 (0.0)	250.0	286.2	197.0
	50대	483 (100.0)	79 (16.4)	153 (31.7)	85 (17.6)	56 (11.6)	39 (8.1)	70 (14.5)	1 (0.2)	200.0	250.5	201.4
	60-64세	156 (100.0)	53 (34.0)	63 (40.4)	17 (10.9)	12 (7.7)	6 (3.8)	4 (2.6)	1 (0.6)	100.0	155.2	130.3
	65세 이상	192 (100.0)	116 (60.4)	54 (28.1)	12 (6.3)	2 (1.0)	2 (1.0)	5 (2.6)	1 (0.5)	80.0	101.6	113.7
학력												
	초등졸 이하	172 (100.0)	104 (60.5)	56 (32.6)	9 (5.2)	1 (0.6)	1 (0.6)	1 (0.6)	0 (0.0)	80.0	89.1	66.8
	중학교	168 (100.0)	68 (40.5)	77 (45.8)	16 (9.5)	4 (2.4)	2 (1.2)	1 (0.6)	0 (0.0)	100.0	119.6	79.5
	고등학교	806 (100.0)	148 (18.4)	333 (41.3)	183 (22.7)	84 (10.4)	28 (3.5)	28 (3.5)	2 (0.2)	150.0	183.4	123.1
	전문대학	231 (100.0)	25 (10.8)	104 (45.0)	63 (27.3)	21 (9.1)	11 (4.8)	7 (3.0)	0 (0.0)	170.0	197.1	111.3
	4년제 대학	1,003 (100.0)	64 (6.4)	231 (23.0)	243 (24.2)	178 (17.7)	119 (11.9)	166 (16.6)	2 (0.2)	250.0	298.6	183.7
	대학원 석사 이상	183 (100.0)	12 (6.6)	21 (11.5)	33 (18.0)	33 (18.0)	32 (17.5)	52 (28.4)	0 (0.0)	350.0	375.8	231.2
거주지역												
	종로구	54 (100.0)	10 (18.5)	14 (25.9)	13 (24.1)	6 (11.1)	6 (11.1)	5 (9.3)	0 (0.0)	200.0	225.7	145.7
	중구	88 (100.0)	22 (25.0)	20 (22.7)	25 (28.4)	4 (4.5)	8 (9.1)	9 (10.2)	0 (0.0)	200.0	213.5	151.6
	용산구	56 (100.0)	15 (26.8)	17 (30.4)	8 (14.3)	8 (14.3)	3 (5.4)	5 (8.9)	0 (0.0)	155.0	211.1	164.6
	성동구	82 (100.0)	13 (15.9)	29 (35.4)	19 (23.2)	7 (8.5)	1 (1.2)	13 (15.9)	0 (0.0)	175.0	235.5	187.7

	전체	100 만원 미만	100-200 만원 미만	200-300 만원 미만	300-400 만원 미만	400-500 만원 미만	500 만원 이상	모름/ 무응답	중앙값 (만원)	평균 (만원)	편차 (만원)
광진구	84 (100.0)	18 (21.4)	32 (38.1)	17 (20.2)	11 (13.1)	2 (2.4)	4 (4.8)	0 (0.0)	155.0	195.7	138.2
동대문구	85 (100.0)	8 (9.4)	45 (52.9)	16 (18.8)	9 (10.6)	4 (4.7)	3 (3.5)	0 (0.0)	150.0	196.4	152.9
중랑구	91 (100.0)	17 (18.7)	41 (45.1)	18 (19.8)	5 (5.5)	6 (6.6)	4 (4.4)	0 (0.0)	150.0	186.2	124.2
성북구	103 (100.0)	26 (25.2)	36 (35.0)	20 (19.4)	10 (9.7)	5 (4.9)	5 (4.9)	1 (1.0)	150.0	184.5	129.9
강북구	83 (100.0)	23 (27.7)	31 (37.3)	11 (13.3)	6 (7.2)	9 (10.8)	3 (3.6)	0 (0.0)	140.0	188.0	157.3
도봉구	82 (100.0)	20 (24.4)	26 (31.7)	13 (15.9)	12 (14.6)	5 (6.1)	6 (7.3)	0 (0.0)	150.0	203.8	146.3
노원구	133 (100.0)	28 (21.1)	41 (30.8)	18 (13.5)	23 (17.3)	9 (6.8)	14 (10.5)	0 (0.0)	170.0	232.3	179.3
은평구	118 (100.0)	27 (22.9)	46 (39.0)	19 (16.1)	12 (10.2)	8 (6.8)	5 (4.2)	1 (0.8)	150.0	186.1	136.9
서대문구	76 (100.0)	18 (23.7)	25 (32.9)	7 (9.2)	8 (10.5)	9 (11.8)	9 (11.8)	0 (0.0)	160.0	229.9	176.2
마포구	71 (100.0)	8 (11.3)	20 (28.2)	11 (15.5)	10 (14.1)	11 (15.5)	10 (14.1)	1 (1.4)	250.0	271.4	172.3
양천구	89 (100.0)	6 (6.7)	16 (18.0)	16 (18.0)	19 (21.3)	11 (12.4)	21 (23.6)	0 (0.0)	300.0	336.6	274.9
강서구	106 (100.0)	18 (17.0)	42 (39.6)	23 (21.7)	13 (12.3)	1 (0.9)	9 (8.5)	0 (0.0)	160.0	210.9	174.6
구로구	98 (100.0)	17 (17.3)	21 (21.4)	23 (23.5)	27 (27.6)	6 (6.1)	4 (4.1)	0 (0.0)	230.0	233.7	148.0
금천구	132 (100.0)	19 (14.4)	51 (38.6)	35 (26.5)	14 (10.6)	8 (6.1)	5 (3.8)	0 (0.0)	150.0	199.0	126.0
영등포구	125 (100.0)	10 (8.0)	40 (32.0)	34 (27.2)	16 (12.8)	11 (8.8)	14 (11.2)	0 (0.0)	200.0	259.0	179.5
동작구	89 (100.0)	16 (18.0)	23 (25.8)	17 (19.1)	14 (15.7)	7 (7.9)	12 (13.5)	0 (0.0)	200.0	258.6	182.5
관악구	175 (100.0)	22 (12.6)	64 (36.6)	49 (28.0)	18 (10.3)	14 (8.0)	8 (4.6)	0 (0.0)	200.0	213.0	134.7
서초구	124 (100.0)	11 (8.9)	27 (21.8)	41 (33.1)	18 (14.5)	11 (8.9)	16 (12.9)	0 (0.0)	208.3	271.6	173.2
강남구	132 (100.0)	4 (3.0)	32 (24.2)	31 (23.5)	27 (20.5)	11 (8.3)	27 (20.5)	0 (0.0)	270.8	316.0	206.2
송파구	144 (100.0)	23 (16.0)	32 (22.2)	33 (22.9)	8 (5.6)	18 (12.5)	30 (20.8)	0 (0.0)	200.0	289.0	211.5
강동구	108 (100.0)	17 (15.7)	35 (32.4)	23 (21.3)	14 (13.0)	7 (6.5)	12 (11.1)	0 (0.0)	200.0	237.9	167.8
서울 이외 지역	35 (100.0)	5 (14.3)	16 (45.7)	7 (20.0)	2 (5.7)	2 (5.7)	2 (5.7)	1 (2.9)	157.5	198.5	131.3

[Base :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취업 가구원]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이 1,200명으로 45.7%로 가장 높았으며, 임시직이 493명,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수가 435명으로 뒤를 따랐다. 종사상 지위에서도 성별, 학력, 중위소득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성보다 남성의 상용직 비율이 높았고(남성 50.9%, 여성 36.6%), 학력이 높아질수록(초등졸 이하 10.2%, 대학원 석사이상 70.5%), 소득이 높을수록(중위소득 50%이하 15.0%, 중위소득 151%이상 69.7%) 역시 상용직 비율이 점차 느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사한 내용을 고용형태 조사결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정규직 근로가 60.4%로 가장 높고, 그 다음 기간제 근로 10.6%, 일일근로 8.4%로 조사되었다. 종사상 지위와 마찬가지로, 남성이 여성보다,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정규직의 비율이 높았다. 기간제 근로 및 일일 근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III-5> 종사상 지위(A11)

단위 : 가구원수(%)

항 목	전체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종업원을 둔 고용주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항 목	2,624(100.0)	1,200(45.7)	493(18.8)	232(8.8)	203(7.7)	435(16.6)	61(2.3)
성별							
남성	1,671(100.0)	851(50.9)	228(13.6)	115(6.9)	166(9.9)	298(17.8)	13(0.8)
여성	953(100.0)	349(36.6)	265(27.8)	117(12.3)	37(3.9)	137(14.4)	48(5.0)
연령							
18세 이하	7(100.0)	0(0.0)	4(57.1)	3(42.9)	0(0.0)	0(0.0)	0(0.0)
19-29세	314(100.0)	206(65.6)	74(23.6)	17(5.4)	1(0.3)	10(3.2)	6(1.9)
30대	695(100.0)	424(61.0)	108(15.5)	27(3.9)	36(5.2)	88(12.7)	12(1.7)
40대	754(100.0)	351(46.6)	118(15.6)	63(8.4)	90(11.9)	112(14.9)	20(2.7)
50대	498(100.0)	162(32.5)	91(18.3)	50(10.0)	55(11.0)	125(25.1)	15(3.0)
60-64세	158(100.0)	27(17.1)	42(26.6)	30(19.0)	12(7.6)	45(28.5)	2(1.3)
65세 이상	198(100.0)	30(15.2)	56(28.3)	42(21.2)	9(4.5)	55(27.8)	6(3.0)
학력							
초등졸 이하	177(100.0)	18(10.2)	47(26.6)	63(35.6)	2(1.1)	42(23.7)	5(2.8)

	전체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종업원을 둔 고용주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중학교	173(100.0)	30(17.3)	49(28.3)	31(17.9)	7(4.0)	51(29.5)	5(2.9)
고등학교	841(100.0)	257(30.6)	194(23.1)	101(12.0)	70(8.3)	184(21.9)	35(4.2)
전문대학	234(100.0)	140(59.8)	38(16.2)	13(5.6)	12(5.1)	28(12.0)	3(1.3)
4년제 대학	1,016(100.0)	626(61.6)	140(13.8)	23(2.3)	97(9.5)	117(11.5)	13(1.3)
대학원 석사 이상	183(100.0)	129(70.5)	25(13.7)	1(0.5)	15(8.2)	13(7.1)	0(0.0)
중위소득 기준 개인							
중위소득 50% 이하	655(100.0)	98(15.0)	250(38.2)	154(23.5)	12(1.8)	141(21.5)	0(0.0)
중위소득 51-150% 이하	1,327(100.0)	699(52.7)	231(17.4)	75(5.7)	91(6.9)	231(17.4)	0(0.0)
중위소득 151% 이상	577(100.0)	402(69.7)	12(2.1)	3(0.5)	100(17.3)	60(10.4)	0(0.0)
모름/무응답	65(100.0)	1(1.5)	0(0.0)	0(0.0)	0(0.0)	3(4.7)	61(93.8)

[Base : 취업 가구원]

<표 III-6> 고용형태(A11-1)

단위 : 가구원수(%)

□ 항목 □	전체	특수 형태 근로	재택/ 가내 근로	파견 근로	용역 근로	일일 근로	시간제 근로	기간제 근로	기간제 가아닌 한시적 근로	정규직 근로
□ 항목 □	1,925 (100.0)	44 (2.3)	21 (1.1)	26 (1.4)	70 (3.6)	162 (8.4)	112 (5.8)	204 (10.6)	129 (6.7)	1,162 (60.4)
성별										
남성	1,194 (100.0)	27 (2.3)	3 (0.3)	13 (1.1)	40 (3.4)	94 (7.9)	33 (2.8)	100 (8.4)	57 (4.8)	828 (69.3)
여성	731 (100.0)	17 (2.3)	18 (2.5)	13 (1.8)	30 (4.1)	68 (9.3)	79 (10.8)	104 (14.2)	72 (9.8)	334 (45.7)
연령										
18세 이하	7 (100.0)	0 (0.0)	0 (0.0)	0 (0.0)	0 (0.0)	1 (14.3)	5 (71.4)	1 (14.3)	0 (0.0)	0 (0.0)
19-29세	297 (100.0)	7 (2.4)	1 (0.3)	4 (1.3)	4 (1.3)	13 (4.4)	20 (6.7)	29 (9.8)	19 (6.4)	200 (67.3)
30대	559 (100.0)	12 (2.1)	6 (1.1)	5 (0.9)	2 (0.4)	23 (4.1)	18 (3.2)	53 (9.5)	29 (5.2)	413 (73.9)
40대	532 (100.0)	12 (2.3)	6 (1.1)	6 (1.1)	8 (1.5)	47 (8.8)	27 (5.1)	48 (9.0)	36 (6.8)	342 (64.3)
50대	303 (100.0)	9 (3.0)	4 (1.3)	9 (3.0)	13 (4.3)	32 (10.6)	28 (9.2)	33 (10.9)	25 (8.3)	153 (50.5)

	전체	특수 형태 근로	재택/ 가내 근로	파견 근로	용역 근로	일일 근로	시간제 근로	기간제 근로	기간제 가아닌 한시적 근로	정규직 근로
60-64세	99 (100.0)	1 (1.0)	0 (0.0)	0 (0.0)	25 (25.3)	19 (19.2)	6 (6.1)	16 (16.2)	6 (6.1)	26 (26.3)
65세 이상	128 (100.0)	3 (2.3)	4 (3.1)	2 (1.6)	18 (14.1)	27 (21.1)	8 (6.3)	24 (18.8)	14 (10.9)	28 (21.9)
학력										
초등졸 이하	128 (100.0)	1 (0.8)	2 (1.6)	5 (3.9)	22 (17.2)	40 (31.3)	9 (7.0)	22 (17.2)	12 (9.4)	15 (11.7)
중학교	110 (100.0)	1 (0.9)	1 (0.9)	4 (3.6)	16 (14.5)	17 (15.5)	12 (10.9)	16 (14.5)	15 (13.6)	28 (25.5)
고등학교	552 (100.0)	13 (2.4)	9 (1.6)	9 (1.6)	25 (4.5)	77 (13.9)	43 (7.8)	76 (13.8)	57 (10.3)	246 (44.6)
전문대학	191 (100.0)	5 (2.6)	2 (1.0)	1 (0.5)	4 (2.1)	7 (3.7)	11 (5.8)	19 (9.9)	8 (4.2)	134 (70.2)
4년제 대학	789 (100.0)	16 (2.0)	6 (0.8)	6 (0.8)	3 (0.4)	21 (2.7)	32 (4.1)	55 (7.0)	34 (4.3)	618 (78.3)
대학원 석사 이상	155 (100.0)	8 (5.2)	1 (0.6)	1 (0.6)	0 (0.0)	0 (0.0)	5 (3.2)	16 (10.3)	3 (1.9)	121 (78.1)
중위소득 기준 개인										
중위소득 50% 이하	502 (100.0)	14 (2.8)	14 (2.8)	10 (2.0)	46 (9.2)	96 (19.1)	83 (16.5)	96 (19.1)	60 (12.0)	87 (17.3)
중위소득 51-150% 이하	1,005 (100.0)	23 (2.3)	5 (0.5)	14 (1.4)	23 (2.3)	64 (6.4)	26 (2.6)	105 (10.4)	67 (6.7)	678 (67.5)
중위소득 151% 이상	417 (100.0)	7 (1.7)	2 (0.5)	2 (0.5)	1 (0.2)	2 (0.5)	3 (0.7)	3 (0.7)	2 (0.5)	396 (95.0)
모름/무응답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Base : [임근근로자인 가구원]

2) 사회보험

경제활동 여부와 더불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사회보험 가입 여부가 조사되었다. 취업가구원 2,624명 조사 결과, <표 III-2-6>와 같이 건강보험 가입률이 61.6%(1,616명)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국민연금(57.9%), 산재보험(54.6%), 고용보험(53.9%)의 순이었다.

<표 III-7> 사회보험 가입여부(A18)

	가입되어 있다	가입되어 있지 않다	모른다
국민연금/특수직연금	1,503 (57.3%)	1,104(42.1%)	17(0.6%)
건강보험	1,616 (61.6%)	993(37.8%)	15(0.6%)
고용보험	1,414(53.9%)	1,165(44.4%)	45(1.7%)
산재보험	1,433(54.6%)	1,139(43.4%)	52(2.0%)

경제활동 부분에서 특징적이었던 성별, 학력 및 소득에 따른 차이는 사회보험 가입여부 전반에 걸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국민연금/특수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는 비율이 높았으며, 또한 학력이 낮고 소득이 낮을수록 4가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사회보험 가입 여부는 종사상 지위 및 고용형태와 밀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성별, 학력, 소득에 따른 차이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특수직연금은 1,503명인 57.3%가 가입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성은 63.0%로 47.2%인 여성보다 많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석사이상은 21.3%만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나, 초등졸 이하는 73.4%로 3배 이상이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도 중위소득 50%이하는 26.3%, 중위소득 151%이상은 84.9%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표 III-8> 국민연금/특수직 연금 가입여부(A18-1)

단위 : 가구원수(%)

항 목	전체	가입 되어 있다	가입 되어 있지 않다	모른다
항 목	2,624(100.0)	1,503(57.3)	1,104(42.1)	17(0.6)
성별				
남성	1,671(100.0)	1,053(63.0)	608(36.4)	10(0.6)
여성	953(100.0)	450(47.2)	496(52.0)	7(0.7)
연령				
18세 이하	7(100.0)	1(14.3)	6(85.7)	0(0.0)
19-29세	314(100.0)	220(70.1)	90(28.7)	4(1.3)

	전체	가입 되어 있다	가입 되어 있지 않다	모른다
30대	695(100.0)	471(67.8)	220(31.7)	4(0.6)
40대	754(100.0)	464(61.5)	287(38.1)	3(0.4)
50대	498(100.0)	257(51.6)	238(47.8)	3(0.6)
60-64세	158(100.0)	60(38.0)	98(62.0)	0(0.0)
65세 이상	198(100.0)	30(15.2)	165(83.3)	3(1.5)
학력				
초등졸 이하	177(100.0)	44(24.9)	130(73.4)	3(1.7)
중학교	173(100.0)	51(29.5)	122(70.5)	0(0.0)
고등학교	841(100.0)	365(43.4)	470(55.9)	6(0.7)
전문대학	234(100.0)	155(66.2)	76(32.5)	3(1.3)
4년제 대학	1,016(100.0)	745(73.3)	267(26.3)	4(0.4)
대학원 석사 이상	183(100.0)	143(78.1)	39(21.3)	1(0.5)
중위소득 기준 개인				
중위소득 50% 이하	655(100.0)	172(26.3)	475(72.5)	8(1.2)
중위소득 51-150% 이하	1,327(100.0)	830(62.5)	489(36.9)	8(0.6)
중위소득 151% 이상	577(100.0)	490(84.9)	86(14.9)	1(0.2)
모름/무응답	65(100.0)	11(16.9)	54(83.1)	0(0.0)

[Base : 취업 가구원]

건강 보험은 전체 2,624명중 1,616명인 61.6%가 가입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성은 67.6%였고 여성은 51.1%로 다른 보험보다 가입률이 높았다.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학력, 소득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표 III-9> 건강보험 가입여부(A18-2)

단위 : 가구원수(%)

항 목	전체	가입 되어 있다	가입 되어 있지 않다	모른다
합 계	2,624(100.0)	1,616(61.6)	993(37.8)	15(0.6)
성별				
남성	1,671(100.0)	1,129(67.6)	534(32.0)	8(0.5)
여성	953(100.0)	487(51.1)	459(48.2)	7(0.7)

	전체	가입 되어 있다	가입 되어 있지 않다	모른다
연령				
18세 이하	7(100.0)	1(14.3)	6(85.7)	0(0.0)
19-29세	314(100.0)	224(71.3)	88(28.0)	2(0.6)
30대	695(100.0)	484(69.6)	207(29.8)	4(0.6)
40대	754(100.0)	482(63.9)	269(35.7)	3(0.4)
50대	498(100.0)	267(53.6)	227(45.6)	4(0.8)
60-64세	158(100.0)	77(48.7)	80(50.6)	1(0.6)
65세 이상	198(100.0)	81(40.9)	116(58.6)	1(0.5)
학력				
초등졸 이하	177(100.0)	68(38.4)	106(59.9)	3(1.7)
중학교	173(100.0)	70(40.5)	103(59.5)	0(0.0)
고등학교	841(100.0)	398(47.3)	435(51.7)	8(1.0)
전문대학	234(100.0)	162(69.2)	71(30.3)	1(0.4)
4년제 대학	1,016(100.0)	773(76.1)	241(23.7)	2(0.2)
대학원 석사 이상	183(100.0)	145(79.2)	37(20.2)	1(0.5)
중위소득 기준 개인				
중위소득 50% 이하	655(100.0)	229(35.0)	418(63.8)	8(1.2)
중위소득 51-150% 이하	1,327(100.0)	872(65.7)	449(33.8)	6(0.5)
중위소득 151% 이상	577(100.0)	498(86.3)	78(13.5)	1(0.2)
모름/무응답	65(100.0)	17(26.2)	48(73.8)	0(0.0)

[Base : 취업 가구원]

고용보험은 전체 사회보험 중 가장 낮은 가입률을 보였다. 전체 2,624명중 1,165명인 44.4%가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입여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1.7% 정도였다.

<표 III-10> 고용보험 가입여부(A18-3)

단위 : 가구원수(%)

	전체	가입 되어 있다	가입 되어 있지 않다	모른다
▣ 항목 ▣	2,624(100.0)	1,414(53.9)	1,165(44.4)	45(1.7)

	전체	가입 되어 있다	가입 되어 있지 않다	모른다
성별				
남성	1,671(100.0)	996(59.6)	651(39.0)	24(1.4)
여성	953(100.0)	418(43.9)	514(53.9)	21(2.2)
연령				
18세 이하	7(100.0)	2(28.6)	5(71.4)	0(0.0)
19-29세	314(100.0)	222(70.7)	88(28.0)	4(1.3)
30대	695(100.0)	442(63.6)	239(34.4)	14(2.0)
40대	754(100.0)	432(57.3)	308(40.8)	14(1.9)
50대	498(100.0)	207(41.6)	283(56.8)	8(1.6)
60-64세	158(100.0)	67(42.4)	89(56.3)	2(1.3)
65세 이상	198(100.0)	42(21.2)	153(77.3)	3(1.5)
학력				
초등졸 이하	177(100.0)	41(23.2)	132(74.6)	4(2.3)
중학교	173(100.0)	45(26.0)	125(72.3)	3(1.7)
고등학교	841(100.0)	330(39.2)	497(59.1)	14(1.7)
전문대학	234(100.0)	149(63.7)	83(35.5)	2(0.9)
4년제 대학	1,016(100.0)	713(70.2)	286(28.1)	17(1.7)
대학원 석사 이상	183(100.0)	136(74.3)	42(23.0)	5(2.7)
중위소득 기준 개인				
중위소득 50% 이하	655(100.0)	160(24.4)	480(73.3)	15(2.3)
중위소득 51-150% 이하	1,327(100.0)	785(59.2)	515(38.8)	27(2.0)
중위소득 151% 이상	577(100.0)	465(80.6)	109(18.9)	3(0.5)
모름/무응답	65(100.0)	4(6.2)	61(93.8)	0(0.0)

[Base : 취업 가구원]

산재보험은 1,433명인 54.6%가 가입되어 있었고, 43.4%는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사회보험관련 문항 중 본인의 가입여부를 모른다는 응답이 2.0%로 가장 많았다.

<표 III-11> 산재보험 가입여부(A18-4)

단위 : 가구원수(%)

항 목	전체	가입 되어 있다	가입 되어 있지 않다	모른다
항 목	2,624(100.0)	1,433(54.6)	1,139(43.4)	52(2.0)
성별				
남성	1,671(100.0)	1,010(60.4)	633(37.9)	28(1.7)
여성	953(100.0)	423(44.4)	506(53.1)	24(2.5)
연령				
18세 이하	7(100.0)	2(28.6)	5(71.4)	0(0.0)
19-29세	314(100.0)	221(70.4)	87(27.7)	6(1.9)
30대	695(100.0)	450(64.7)	234(33.7)	11(1.6)
40대	754(100.0)	433(57.4)	305(40.5)	16(2.1)
50대	498(100.0)	216(43.4)	272(54.6)	10(2.0)
60-64세	158(100.0)	67(42.4)	87(55.1)	4(2.5)
65세 이상	198(100.0)	44(22.2)	149(75.3)	5(2.5)
학력				
초등졸 이하	177(100.0)	42(23.7)	130(73.4)	5(2.8)
중학교	173(100.0)	50(28.9)	119(68.8)	4(2.3)
고등학교	841(100.0)	339(40.3)	485(57.7)	17(2.0)
전문대학	234(100.0)	147(62.8)	85(36.3)	2(0.9)
4년제 대학	1,016(100.0)	720(70.9)	279(27.5)	17(1.7)
대학원 석사 이상	183(100.0)	135(73.8)	41(22.4)	7(3.8)
중위소득 기준 개인				
중위소득 50% 이하	655(100.0)	172(26.3)	464(70.8)	19(2.9)
중위소득 51-150% 이하	1,327(100.0)	792(59.7)	507(38.2)	28(2.1)
중위소득 151% 이상	577(100.0)	465(80.6)	107(18.5)	5(0.9)
모름/무응답	65(100.0)	4(6.2)	61(93.8)	0(0.0)

[Base : 취업 가구원]

취업자 중 직장을 통해 국민연금/특수직 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는 가구원의 지역 가입 실태를 살펴보면, 가구원 1,104명중 28.2%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고, 788명인 71.4%는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남성이 여성보다 가입확률이 높았으나

(34.2% : 20.8%) 직장가입과 달리 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아 크게 영향은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 부분에 있어서는 직장 가입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높을수록 가입률도 높았다. 중위소득 50%이하가 16%였던 반면 151%이상은 57%로 3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표 III-12> 사회보험 : 국민연금/특수직연금 지역 가입 실태(A18-1-2)

단위 : 가구원수(%)

구분		전체	가입 되어 있다	가입 되어 있지 않다	모른다
■ 항목		1,104(100.0)	311(28.2)	788(71.4)	5(0.5)
성별	남성	608(100.0)	208(34.2)	397(65.3)	3(0.5)
	여성	496(100.0)	103(20.8)	391(78.8)	2(0.4)
연령	18세 이하	6(100.0)	0(0.0)	6(100.0)	0(0.0)
	19-29세	90(100.0)	14(15.6)	75(83.3)	1(1.1)
	30대	220(100.0)	76(34.5)	142(64.5)	2(0.9)
	40대	287(100.0)	86(30.0)	201(70.0)	0(0.0)
	50대	238(100.0)	98(41.2)	140(58.8)	0(0.0)
	60-64세	98(100.0)	22(22.4)	75(76.5)	1(1.0)
	65세 이상	165(100.0)	15(9.1)	149(90.3)	1(0.6)
학력	초등졸 이하	130(100.0)	23(17.7)	106(81.5)	1(0.8)
	중학교	122(100.0)	33(27.0)	89(73.0)	0(0.0)
	고등학교	470(100.0)	129(27.4)	338(71.9)	3(0.6)
	전문대학	76(100.0)	15(19.7)	61(80.3)	0(0.0)
	4년제 대학	267(100.0)	99(37.1)	167(62.5)	1(0.4)
	대학원 석사 이상	39(100.0)	12(30.8)	27(69.2)	0(0.0)
중위소득 기준 개인	중위소득 50% 이하	475(100.0)	76(16.0)	398(83.8)	1(0.2)
	중위소득 51-150% 이하	489(100.0)	171(35.0)	315(64.4)	3(0.6)
	중위소득 151% 이상	86(100.0)	49(57.0)	37(43.0)	0(0.0)
	모름/무응답	54(100.0)	15(27.7)	38(70.4)	1(1.9)

[Base : 취업자 중 국민연금/특수직연금 직장 비가입 가구원]

건강보험 지역 가입도 국민연금/특수직연금 지역가입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전체 993명중 506명인 51.0%는 가입되어 있었고, 나머지 49.0%(487명)은 가입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여기서도 남성이 57.1%, 여성이 43.8%로 남성응답자의 가입률이 높게 나타났고, 소득의 영향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학력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 III-13> 건강보험 지역 가입 실태(A18-2-2)

단위 : 가구원수(%)

		전체	가입 되어 있다	가입 되어 있지 않다
항 목		993(100.0)	506(51.0)	487(49.0)
성별	남성	534(100.0)	305(57.1)	229(42.9)
	여성	459(100.0)	201(43.8)	258(56.2)
연령	18세 이하	6(100.0)	0(0.0)	6(100.0)
	19-29세	88(100.0)	36(40.9)	52(59.1)
	30대	207(100.0)	107(51.7)	100(48.3)
	40대	269(100.0)	137(50.9)	132(49.1)
	50대	227(100.0)	134(59.0)	93(41.0)
	60-64세	80(100.0)	45(56.3)	35(43.8)
	65세 이상	116(100.0)	47(40.5)	69(59.5)
학력	초등졸 이하	106(100.0)	49(46.2)	57(53.8)
	중학교	103(100.0)	50(48.5)	53(51.5)
	고등학교	435(100.0)	225(51.7)	210(48.3)
	전문대학	71(100.0)	33(46.5)	38(53.5)
	4년제 대학	241(100.0)	136(56.4)	105(43.6)
	대학원 석사 이상	37(100.0)	13(35.1)	24(64.9)
중위소득 기준 개인	중위소득 50% 이하	418(100.0)	182(43.5)	236(56.5)
	중위소득 51-150% 이하	449(100.0)	243(54.1)	206(45.9)
	중위소득 151% 이상	78(100.0)	54(69.2)	24(30.8)
	모름/무응답	48(100.0)	27(56.3)	21(43.7)

[Base : 취업자 중 건강보험 직장 비가입 가구원]

다음은 부가 급여 및 복리후생 제공 실태영역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취업가구원의 응답 내용을 종합해보면 법정 퇴직금을 제공한다는 응답이 45.6%인 1,194명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유급휴가(33.6%), 상여금(32.2%)의 순이었다. 가족간호휴가 및 휴업보상을 받는다고 대답한 비율은 15.4%와 13.6%에 불과했다. 나머지 생리휴가, 출산휴가, 병가, 육아휴직 등은 20%대 초반으로 거의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사회보험영역과 마찬가지로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음으로 성별에 의한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연령에 의한 차이도 확연히 나타났는데, 나이가 적을수록 부가 급여 및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법정퇴직금의 경우, 18-29세는 64.8%가 제공받는다고 응답한 반면, 50대는 34.7%였다. 학력과 소득은 경제활동 부분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학력이 높고 소득이 많을수록 부가 급여 및 복리후생을 제공 받을 확률이 높았다.

<표 III-14> 부가급여 및 복리후생 제공 실태(A19-1)

	법정 퇴직금	퇴직 연금	유급 휴가	생리 휴가	유급출산휴가	유급 병가	육아 휴직	가족간호휴가	시간외 수당	상여금	휴업 보상
□ 항목 □	1,194 (45.6)	551 (21.0)	877 (33.5)	590 (22.5)	597 (22.8)	617 (23.5)	583 (22.2)	405 (15.5)	625 (23.8)	844 (32.2)	357 (13.6)
성별											
남성	855 (51.2)	418 (25.0)	630 (37.7)	412 (24.7)	405 (24.3)	448 (26.8)	406 (24.3)	293 (17.5)	462 (27.7)	619 (37.1)	275 (16.5)
여성	339 (35.6)	133 (14.0)	247 (26.0)	178 (18.7)	192 (20.2)	169 (17.8)	177 (18.6)	112 (11.8)	163 (17.1)	225 (23.7)	82 (8.6)
연령											
18-29세	206 (64.8)	89 (28.0)	151 (47.5)	93 (29.2)	100 (31.4)	97 (30.5)	89 (28.0)	56 (17.6)	96 (30.2)	133 (41.8)	56 (17.6)
30대	393 (56.5)	178 (25.6)	300 (43.2)	196 (28.2)	209 (30.1)	203 (29.2)	202 (29.1)	125 (18.0)	203 (29.2)	292 (42.0)	121 (17.4)
40대	360 (47.7)	184 (24.4)	271 (35.9)	188 (24.9)	187 (24.8)	208 (27.6)	192 (25.5)	143 (19.0)	208 (27.6)	270 (35.8)	117 (15.5)
50대	173 (34.7)	88 (17.7)	123 (24.7)	98 (19.7)	87 (17.5)	95 (19.1)	87 (17.5)	73 (14.7)	102 (20.5)	123 (24.7)	62 (12.4)
60-64세	35 (22.2)	7 (4.4)	18 (11.4)	9 (5.7)	8 (5.1)	9 (5.7)	8 (5.1)	4 (2.5)	9 (5.7)	15 (9.5)	0 (0.0)
65세 이상	27 (13.6)	5 (2.5)	14 (7.1)	6 (3.0)	6 (3.0)	5 (2.5)	5 (2.5)	4 (2.0)	7 (3.5)	11 (5.6)	1 (0.5)

	법정 퇴직금	퇴직 연금	유급 휴가	생리 휴가	유급출산휴가	유급 병가	육아 휴직	가족간 호휴가	시간외 수당	상여금	휴업 보상
학력											
초등졸 이하	28 (15.8)	3 (1.7)	5 (2.8)	2 (1.1)	2 (1.1)	1 (0.6)	2 (1.1)	1 (0.6)	6 (3.4)	9 (5.1)	2 (1.1)
중학교	28 (16.2)	6 (3.5)	13 (7.5)	7 (4.0)	6 (3.5)	8 (4.6)	6 (3.5)	3 (1.7)	7 (4.0)	9 (5.2)	1 (0.6)
고등학교	250 (29.8)	80 (9.5)	148 (17.7)	89 (10.6)	88 (10.5)	88 (10.5)	85 (10.1)	64 (7.6)	111 (13.2)	156 (18.6)	48 (5.7)
전문대학	130 (55.6)	46 (19.7)	90 (38.5)	54 (23.1)	58 (24.8)	62 (26.5)	51 (21.8)	23 (9.8)	57 (24.4)	87 (37.2)	32 (13.7)
4년제 대학	636 (62.6)	330 (32.5)	517 (50.9)	356 (35.0)	358 (35.2)	369 (36.3)	353 (34.7)	246 (24.2)	363 (35.7)	476 (46.9)	220 (21.7)
대학원 석사 이상	122 (66.7)	86 (47.0)	104 (56.8)	82 (44.8)	85 (46.4)	89 (48.6)	86 (47.0)	68 (37.2)	81 (44.3)	107 (58.5)	54 (29.5)
중위소득 기준 개인											
중위소득 50% 이하	103 (15.8)	19 (2.9)	54 (8.3)	31 (4.8)	19 (2.9)	18 (2.8)	20 (3.1)	16 (2.5)	30 (4.6)	44 (6.7)	10 (1.5)
중위소득 51-150% 이하	664 (50.0)	249 (18.8)	459 (34.6)	272 (20.5)	299 (22.5)	289 (21.8)	272 (20.5)	172 (13.0)	303 (22.8)	432 (32.6)	162 (12.2)
중위소득 151% 이상	426 (73.8)	282 (48.9)	363 (62.9)	286 (49.6)	278 (48.2)	309 (53.6)	290 (50.3)	216 (37.4)	291 (50.4)	367 (63.6)	184 (31.9)
모름/무응답	1 (25.0)	1 (25.0)	1 (25.0)	1 (25.0)	1 (25.0)	1 (25.0)	1 (25.0)	1 (25.0)	1 (25.0)	1 (25.0)	1 (25.0)

[Base : 취업 가구원]

하지만 회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응답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법정 퇴직금을 제공하는 회사에 다니는 1,077명의 응답원 중 9.8%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유급휴가도 마찬가지로 8.8%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특수한 복리후생(생리휴가, 출산휴가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성별에 따른 차이점은 없었으나, 상여금은 남성이 92.1%이고 여성이 86.7%, 휴업보상은 남성이 92.7%, 여성의 89.0%로 여성이 다소 낮았다. 연령이나 학력에 의한 차이점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소득은 높을수록 부가급여나 복지서비스를 실제로 받고 있을 확률이 높았다. 퇴직연금의 경우, 중위소득 50%이하는 73.7%, 51-150%는 89.2%, 151%이상은 96.5%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생리휴가인데, 이것은 다른 복리후생/소득 관계와 반대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생리 휴가를 제공하는 직장에 다니는 비율이 높아서, 중위소득 50%이하는 64.5%, 51-150%는 39.0%, 그리고 151%이상은 10.1%가 수급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5> 부가급여 및 복리후생 수급 실태(A19-2, 복수응답)

단위 : 가구원수(%)

항 목	법정 퇴직금	퇴직 연금	유급 휴가	생리 휴가	유급출산휴가	유급 병가	육아 휴직	가족간 호휴가	시간외 수당	상여금	휴업 보상
합 계	1,077 (90.2)	509 (92.4)	800 (91.2)	156 (26.4)	471 (78.9)	558 (90.4)	455 (78.0)	359 (88.6)	576 (92.2)	765 (90.6)	328 (91.9)
성별											
남성	772 (90.3)	386 (92.3)	575 (91.3)	1 (0.2)	313 (77.3)	405 (90.4)	305 (75.1)	262 (89.4)	428 (92.6)	570 (92.1)	255 (92.7)
여성	305 (90.0)	123 (92.5)	225 (91.1)	155 (87.1)	158 (82.3)	153 (90.5)	150 (84.7)	97 (86.6)	148 (90.8)	195 (86.7)	73 (89.0)
연령											
18-29세	187 (90.8)	77 (86.5)	133 (88.1)	44 (47.3)	78 (78.0)	86 (88.7)	69 (77.5)	47 (83.9)	86 (89.6)	117 (88.0)	52 (92.9)
30대	359 (91.3)	168 (94.4)	279 (93.0)	58 (29.6)	169 (80.9)	190 (93.6)	160 (79.2)	116 (92.8)	190 (93.6)	268 (91.8)	116 (95.9)
40대	325 (90.3)	174 (94.6)	246 (90.8)	38 (20.2)	148 (79.1)	189 (90.9)	148 (77.1)	127 (88.8)	188 (90.4)	245 (90.7)	105 (89.7)
50대	151 (87.3)	83 (94.3)	114 (92.7)	14 (14.3)	66 (75.9)	82 (86.3)	68 (78.2)	63 (86.3)	97 (95.1)	114 (92.7)	54 (87.1)
60-64세	30 (85.7)	4 (57.1)	16 (88.9)	1 (11.1)	6 (75.0)	7 (77.8)	6 (75.0)	3 (75.0)	9 (100.0)	10 (66.7)	0 (0.0)
65세 이상	25 (92.6)	3 (60.0)	12 (85.7)	1 (16.7)	4 (66.7)	4 (80.0)	4 (80.0)	3 (75.0)	6 (85.7)	11 (100.0)	1 (100.0)
학력											
초등졸 이하	26 (92.9)	3 (100.0)	5 (100.0)	1 (50.0)	2 (100.0)	1 (100.0)	2 (100.0)	1 (100.0)	4 (66.7)	7 (77.8)	2 (100.0)
중학교	22 (78.6)	4 (66.7)	10 (76.9)	2 (28.6)	5 (83.3)	6 (75.0)	4 (66.7)	2 (66.7)	7 (100.0)	7 (77.8)	1 (100.0)
고등학교	211 (84.4)	71 (88.8)	128 (86.5)	29 (32.6)	61 (69.3)	76 (86.4)	62 (72.9)	55 (85.9)	97 (87.4)	137 (87.8)	42 (87.5)
전문대학	117 (90.0)	41 (89.1)	83 (92.2)	23 (42.6)	49 (84.5)	56 (90.3)	40 (78.4)	20 (87.0)	53 (93.0)	79 (90.8)	27 (84.4)
4년제 대학	582 (91.5)	306 (92.7)	477 (92.3)	84 (23.6)	284 (79.3)	338 (91.6)	276 (78.2)	219 (89.0)	341 (93.9)	438 (92.0)	207 (94.1)
대학원 석사 이상	119 (97.5)	84 (97.7)	97 (93.3)	17 (20.7)	70 (82.4)	81 (91.0)	71 (82.6)	62 (91.2)	74 (91.4)	97 (90.7)	49 (90.7)
중위소득 기준 개인											
중위소득 50% 이하	84 (81.6)	14 (73.7)	37 (68.5)	20 (64.5)	13 (68.4)	13 (72.2)	13 (65.0)	9 (56.3)	24 (80.0)	31 (70.5)	8 (80.0)
중위소득 51-150% 이하	590 (88.9)	222 (89.2)	420 (91.5)	106 (39.0)	234 (78.3)	258 (89.3)	209 (76.8)	149 (86.6)	279 (92.1)	390 (90.3)	149 (92.0)
중위소득 151% 이상	402 (94.4)	272 (96.5)	342 (94.2)	29 (10.1)	223 (80.2)	286 (92.6)	232 (80.0)	200 (92.6)	272 (93.5)	343 (93.5)	170 (92.4)
모름/무응답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Base : 부가급여 및 복리후생 직장 제공 가구원]

3. 사회보험

사회보험 부분에서는 공적연금 가입여부, 가입종류 및 수급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우선 가입 여부를 살펴보면, 응답 가구원 5,973명중 42.4%인 2,534명이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3,439명은 가입하고 있지 않았다. 연령별 가입 차이를 보면, 30대 및 40대가 59.4%로 가장 높았으며 50대가 55.5%였고 19-29세가 38.6%였다. 공적연금 가입 여부도 학력과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경제활동부분과 유사하게 학력이 높고 소득이 많을수록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을 확률이 높았다.

<표 III-16> 공적연금 가입 여부(B1)

단위 : 가구원수(%)

□ 항목 □		전체 5,973(100.0)	예 2,534(42.4)	아니오 3,439(57.6)
성별	남성	2,689(100.0)	1,514(56.3)	1,175(43.7)
	여성	3,284(100.0)	1,020(31.1)	2,264(68.9)
연령	18세 이하	73(100.0)	3(4.1)	70(95.9)
	19-29세	773(100.0)	298(38.6)	475(61.4)
	30대	1,176(100.0)	698(59.4)	478(40.6)
	40대	1,178(100.0)	699(59.3)	479(40.7)
	50대	911(100.0)	506(55.5)	405(44.5)
	60-64세	433(100.0)	140(32.3)	293(67.7)
	65세 이상	1,429(100.0)	190(13.3)	1,239(86.7)
학력	초등졸 이하	962(100.0)	157(16.3)	805(83.7)
	중학교	559(100.0)	154(27.5)	405(72.5)
	고등학교	1,723(100.0)	695(40.3)	1,028(59.7)
	전문대학	468(100.0)	230(49.1)	238(50.9)
	4년제 대학	1,999(100.0)	1,113(55.7)	886(44.3)
	대학원 석사 이상	262(100.0)	185(70.6)	77(29.4)

	전체	예	아니오
중위소득 기준 개인			
비취업자	3,352(100.0)	650(19.4)	2,702(80.6)
중위소득 50% 이하	652(100.0)	275(42.2)	377(57.8)
중위소득 51-150% 이하	1,327(100.0)	1,037(78.1)	290(21.9)
중위소득 151% 이상	577(100.0)	546(94.6)	31(5.4)
모름/무응답	65(100.0)	26(40.0)	39(60.0)

[Base : 1992년 1월 이전 출생 가구원]

공적연금 가입실태를 살펴보면, 전체 2,524명 중 2,382명인 94%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해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보다 가입률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 가입 여부를 살펴보면 298명중 292명인 98%가 가입했다고 응답한 19-29세 그룹이 가장 가입률이 높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입률이 조금씩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65세 이상은 가입자가 161명인 84.7%로, 타 연령대에 비해 가입률이 낮았다.

<표 III-17> 공적연금 가입 실태(B1)

단위 : 가구원수(%)

	전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 우체국연금
□ 항목 □	2,534(100.0)	2,382(94.0)	112(4.4)	29(1.1)	15(0.6)	5(0.2)
성별						
남성	1,514(100.0)	1,413(93.3)	75(5.0)	17(1.1)	12(0.8)	4(0.3)
여성	1,020(100.0)	969(95.0)	37(3.6)	12(1.2)	3(0.3)	1(0.1)
연령						
18세 이하	3(100.0)	3(100.0)	0(0.0)	0(0.0)	0(0.0)	0(0.0)
19-29세	298(100.0)	292(98.0)	3(1.0)	2(0.7)	0(0.0)	1(0.3)
30대	698(100.0)	665(95.3)	27(3.9)	4(0.6)	1(0.1)	2(0.3)
40대	699(100.0)	657(94.0)	35(5.0)	6(0.9)	3(0.4)	1(0.1)
50대	506(100.0)	472(93.3)	26(5.1)	8(1.6)	2(0.4)	0(0.0)
60-64세	140(100.0)	132(94.3)	6(4.3)	2(1.4)	1(0.7)	0(0.0)
65세 이상	190(100.0)	161(84.7)	15(7.9)	7(3.7)	8(4.2)	1(0.5)

	전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 우체국연금
학력						
초등졸 이하	157(100.0)	156(99.4)	0(0.0)	0(0.0)	1(0.6)	0(0.0)
중학교	154(100.0)	152(98.7)	1(0.6)	0(0.0)	0(0.0)	1(0.6)
고등학교	695(100.0)	668(96.1)	25(3.6)	3(0.4)	2(0.3)	1(0.1)
전문대학	230(100.0)	219(95.2)	8(3.5)	1(0.4)	2(0.9)	0(0.0)
4년제 대학	1,113(100.0)	1,027(92.3)	66(5.9)	13(1.2)	9(0.8)	2(0.2)
대학원 석사 이상	185(100.0)	160(86.5)	12(6.5)	12(6.5)	1(0.5)	1(0.5)
중위소득 기준 개인						
비취업자	650(100.0)	607(93.4)	27(4.2)	8(1.2)	9(1.4)	2(0.3)
중위소득 50% 이하	275(100.0)	268(97.5)	3(1.1)	3(1.1)	2(0.7)	0(0.0)
중위소득 51-150% 이하	1,037(100.0)	994(95.9)	34(3.3)	8(0.8)	2(0.2)	3(0.3)
중위소득 151% 이상	546(100.0)	488(89.4)	46(8.4)	10(1.8)	2(0.4)	0(0.0)
모름/무응답	26(100.0)	24(92.3)	2(7.7)	0(0.0)	0(0.0)	0(0.0)

[Base : 공적연금 가입 가구원]

다음은 사회보험 수급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전체 응답자 5,973명중 수급경험이 있는 가구원은 6.2%인 368명이다.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남성이 253명, 여성이 115명으로 남성이 2배가량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학력이 낮을수록 수급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많았으며, 또한 소득이 낮을수록 수급한 적이 있다는 대답이 많았다.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사별이나 별거한 응답자의 수급경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별의 경우 총 586명 가운데 70명인 12.3%가, 별거의 경우 59명중 7명인 11.9% 수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유배우자의 수급률이 6.9%임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거주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양천구가 1.8%로 수급 받았다는 사람이 가장 적었고, 강남구가 15.9%가장 높았다. 이러한 구별 특징은 경제활동 부분의 월평균 소득과 같다.

<표 III-18> 사회보험 수급경험(B5)

단위 : 가구원수(%)

항 목	전체	수급경험 있다	수급경험 없다
□ 항 목 □	5,973(100.0)	368(6.2)	5,605(93.8)
성별			
남성	2,689(100.0)	253(9.4)	2,436(90.6)
여성	3,284(100.0)	115(3.5)	3,169(96.5)
연령			
18세 이하	73(100.0)	0(0.0)	73(100.0)
19-29세	773(100.0)	1(0.1)	772(99.9)
30대	1,176(100.0)	2(0.2)	1,174(99.8)
40대	1,178(100.0)	12(1.0)	1,166(99.0)
50대	911(100.0)	23(2.5)	888(97.5)
60-64세	433(100.0)	80(18.5)	353(81.5)
65세 이상	1,429(100.0)	250(17.5)	1,179(82.5)
학력			
초등졸 이하	962(100.0)	110(11.4)	852(88.6)
중학교	559(100.0)	64(11.4)	495(88.6)
고등학교	1,723(100.0)	101(5.9)	1,622(94.1)
전문대학	468(100.0)	8(1.7)	460(98.3)
4년제 대학	1,999(100.0)	70(3.5)	1,929(96.5)
대학원 석사 이상	262(100.0)	15(5.7)	247(94.3)
혼인상태			
비해당(남 17세 이하, 여15세 이하)	51(100.0)	0(0.0)	51(100.0)
미혼	1,148(100.0)	6(0.5)	1,142(99.5)
유배우	3,957(100.0)	272(6.9)	3,685(93.1)
이혼	190(100.0)	13(6.8)	177(93.2)
사별	568(100.0)	70(12.3)	498(87.7)
별거	59(100.0)	7(11.9)	52(88.1)
중위소득 기준 개인			
비취업자	3,352(100.0)	262(7.8)	3,090(92.2)
중위소득 50% 이하	652(100.0)	58(8.9)	594(91.1)
중위소득 51-150% 이하	1,327(100.0)	40(3.0)	1,287(97.0)
중위소득 151% 이상	577(100.0)	6(1.0)	571(99.0)
모름/무응답	65(100.0)	2(3.1)	63(96.9)

		전체	수급경험 있다	수급경험 없다
거주지역				
	종로구	158(100.0)	14(8.9)	144(91.1)
	중구	197(100.0)	6(3.0)	191(97.0)
	용산구	145(100.0)	15(10.3)	130(89.7)
	성동구	199(100.0)	15(7.5)	184(92.5)
	광진구	176(100.0)	7(4.0)	169(96.0)
	동대문구	198(100.0)	5(2.5)	193(97.5)
	중랑구	218(100.0)	15(6.9)	203(93.1)
	성북구	252(100.0)	18(7.1)	234(92.9)
	강북구	189(100.0)	30(15.9)	159(84.1)
	도봉구	210(100.0)	25(11.9)	185(88.1)
	노원구	324(100.0)	27(8.3)	297(91.7)
	은평구	249(100.0)	17(6.8)	232(93.2)
	서대문구	167(100.0)	5(3.0)	162(97.0)
	마포구	199(100.0)	10(5.0)	189(95.0)
	양천구	227(100.0)	4(1.8)	223(98.2)
	강서구	251(100.0)	12(4.8)	239(95.2)
	구로구	224(100.0)	20(8.9)	204(91.1)
	금천구	292(100.0)	26(8.9)	266(91.1)
	영등포구	295(100.0)	11(3.7)	284(96.3)
	동작구	242(100.0)	14(5.8)	228(94.2)
	관악구	339(100.0)	15(4.4)	324(95.6)
	서초구	274(100.0)	18(6.6)	256(93.4)
	강남구	290(100.0)	10(3.4)	280(96.6)
	송파구	331(100.0)	10(3.0)	321(97.0)
	강동구	248(100.0)	13(5.2)	235(94.8)
	서울 이외 지역	79(100.0)	6(7.6)	73(92.4)

[Base : 1992년 1월 이전 출생 가구원]

사회보험 수급액의 평균은 <표 III-19>와 같다. 수급 경험이 있는 368명의 평균 수급액은 85만원이었으며, 중앙값은 35만원, 편차는 93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 85만원과 여성 86만원으로 평균값에는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중앙값은 남성 42만원, 여성 25만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7만원 적었다.

<표 III-19> 사회보험 수급실태(B5)

단위 : 가구원수(%)

		중앙값 (만원)	평균 (만원)	편차 (만원)
□ 전 체 □		35.0	85.4	93.4
성별	남성	42.0	85.3	96.9
	여성	25.0	85.7	106.8
연령	19-29세	0.0	0.0	0.0
	30대	0.0	0.0	0.0
	40대	0.0	0.0	0.0
	50대	0.0	0.0	0.0
	60-64세	0.0	0.0	0.0
	65세 이상	35.0	85.4	93.4
	학력	초등졸 이하	25.0	107.0
중학교		23.0	23.0	0.0
고등학교		23.0	23.0	0.0
전문대학		0.0	0.0	0.0
4년제 대학		79.0	100.5	79.1
대학원 석사 이상		0.0	0.0	0.0
중위소득 기준 개인		비취업자	30.0	82.5
	중위소득 50% 이하	109.0	109.0	0.0
	중위소득 51-150% 이하	0.0	0.0	0.0
	중위소득 151% 이상	0.0	0.0	0.0
	모름/무응답	0.0	0.0	0.0

[Base : 사회보험 수급 경험이 있는 가구원]

사회보험 수급액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특수직 연금이 평균 163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이 100만원인 산재보험, 보훈연금, 고용연금 및 기타가 42만원, 국민연금이 29만원으로 나타났다. 중앙값 역시 특수직 연금이 19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

며, 산재보험이 36만원으로 그 다음이었다. 하지만 평균값과는 달리 국민연금의 중앙값이 16만원으로 15만원인 보훈연금, 고용보험 및 기타보다 금액이 많았다. 편차가 가장 큰 사회보험은 산재보험(142만원)이며, 특수직 연금은 112만원, 보훈연금, 고용연금 및 기타가 51만원이었다. 국민연금이 32만원으로 가장 편차가 작았다.

<표 III-20> 사회보험 종류별 수급액 (6-4, 복수응답)

단위 : 가구원수(%)

	사례수	중앙값 (만원)	평균 (만원)	편차 (만원)
전 체	368(100.0)	35.0	85.4	93.4
국민연금	253(100.0)	16.0	29.3	32.0
특수직연금	71(100.0)	190.0	162.9	111.7
산재보험	6(100.0)	36.0	99.5	141.7
보훈연금, 고용보험 및 기타	47(100.0)	15.0	41.8	51.2

[Base : 사회보험 수급 경험이 있는 가구원]

4. 건강·의료

건강, 의료부분에서는 건강상태, 질병, 건강검진, 진료 경험 등을 조사하였다. 본인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을 물었을 때, 전체 6,304명 중 2,835명인 45%가 건강한 편이라고 대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1,244명으로 19.7%였고,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라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1,149명).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13.2%였으며, 건강이 아주 좋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도 3.9%정도 있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성이 대체적으로 여성보다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편이었다. 매우 건강하다와 건강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남성이 여성보다 각각 5.1%와 3.7% 많았다.

혼인상태를 보면, 미혼이나 유배우의 경우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

으나, 이혼이나 사별을 경험한 경우에는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특히 사별의 경우 60%이상이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해 다른 경우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 차이에 따라 건강상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위소득 50%이하의 55.4%가 매우 건강하다 혹은 건강한 편이라고 대답한 반면, 중위소득 51-150%는 77.1%가, 중위소득의 151%은 79.4%가 본인이 건강한편 이상이라고 대답하였다. 반대로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하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중위소득 151%이상과 51-150%는 각각 4.5%, 6.2%만이 해당 응답을 선택한 반면, 중위소득 50%이하는 22%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21> 건강상태 (E1)

단위 : 가구원수(%)

구분	전체	매우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보통이다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건강이 아주 좋지 않다
합계	6,304(100.0)	829(13.2)	2,835(45.0)	1,244(19.7)	1,149(18.2)	247(3.9)
성별						
남성	2,870(100.0)	457(15.9)	1,348(47.0)	543(18.9)	404(14.1)	118(4.1)
여성	3,434(100.0)	372(10.8)	1,487(43.3)	701(20.4)	745(21.7)	129(3.8)
연령						
18세 이하	404(100.0)	149(36.9)	212(52.5)	37(9.2)	5(1.2)	1(0.2)
19-29세	773(100.0)	243(31.4)	435(56.3)	72(9.3)	20(2.6)	3(0.4)
30대	1,176(100.0)	210(17.9)	765(65.1)	152(12.9)	44(3.7)	5(0.4)
40대	1,178(100.0)	141(12.0)	686(58.2)	237(20.1)	91(7.7)	23(2.0)
50대	911(100.0)	56(6.1)	428(47.0)	245(26.9)	157(17.2)	25(2.7)
60-64세	433(100.0)	14(3.2)	148(34.2)	133(30.7)	123(28.4)	15(3.5)
65세 이상	1,429(100.0)	16(1.1)	161(11.3)	368(25.8)	709(49.6)	175(12.2)
학력						
초등졸 이하	963(100.0)	15(1.6)	120(12.5)	251(26.1)	459(47.7)	118(12.3)
중학교	610(100.0)	49(8.0)	177(29.0)	149(24.4)	199(32.6)	36(5.9)

	전체	매우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보통이다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건강이 아주 좋지 않다
고등학교	1,997(100.0)	271(13.6)	966(48.4)	400(20.0)	299(15.0)	61(3.1)
전문대학	468(100.0)	81(17.3)	273(58.3)	71(15.2)	36(7.7)	7(1.5)
4년제 대학	2,004(100.0)	379(18.9)	1,140(56.9)	327(16.3)	134(6.7)	24(1.2)
대학원 석사 이상	262(100.0)	34(13.0)	159(60.7)	46(17.6)	22(8.4)	1(0.4)
혼인상태						
비해당(남 17세 이하, 여15세 이하)	330(100.0)	129(39.1)	171(51.8)	28(8.5)	2(0.6)	0(0.0)
미혼	1,200(100.0)	325(27.1)	651(54.3)	143(11.9)	66(5.5)	15(1.3)
유배우	3,957(100.0)	357(9.0)	1,867(47.2)	857(21.7)	729(18.4)	147(3.7)
이혼	190(100.0)	8(4.2)	65(34.2)	42(22.1)	51(26.8)	24(12.6)
사별	568(100.0)	7(1.2)	59(10.4)	157(27.6)	286(50.4)	59(10.4)
별거	59(100.0)	3(5.1)	22(37.3)	17(28.8)	15(25.4)	2(3.4)
중위소득 기준 개인						
비취업자	3,680(100.0)	419(11.4)	1,353(36.8)	771(21.0)	908(24.7)	229(6.2)
중위소득 50% 이하	655(100.0)	68(10.4)	295(45.0)	148(22.6)	131(20.0)	13(2.0)
중위소득 51-150% 이하	1,327(100.0)	244(18.4)	779(58.7)	221(16.7)	80(6.0)	3(0.2)
중위소득 151% 이상	577(100.0)	91(15.8)	367(63.6)	93(16.1)	24(4.2)	2(0.3)
모름/무응답	65(100.0)	7(10.8)	41(63.1)	11(16.9)	6(9.2)	0(0.0)

[Base : 전체 가구원]

다음은 지난 1년간 입원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1년간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 경험이 있는 가구원 3,1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15명인 9.9%가 입원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15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54명, 30대가 45명이었다. 50대는 30,40대보다 낮은 37명이었으며, 19-29세는 18명으로 나타났다. 입원한 이유로는 지병 또는 질병이 67.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사고(17.5%)였다. 그 외의 이유로는 출산, 성·정형교정 건강검진, 요양/휴직 등의 이유가 있었다.

<표 III-22> 지난 1년간 입원경험 (E8-2)

단위 : 가구원수(%)

		전체	있다	없다
항 목		3,166(100.0)	315(9.9)	2,851(90.1)
성별	남성	1,280(100.0)	117(9.1)	1,163(90.9)
	여성	1,886(100.0)	198(10.5)	1,688(89.5)
연령	18세 이하	112(100.0)	2(1.8)	110(98.2)
	19-29세	198(100.0)	18(9.1)	180(90.9)
	30대	430(100.0)	45(10.5)	385(89.5)
	40대	491(100.0)	54(11.0)	437(89.0)
	50대	497(100.0)	37(7.4)	460(92.6)
	60-64세	294(100.0)	23(7.8)	271(92.2)
	65세 이상	1,144(100.0)	136(11.9)	1,008(88.1)
학력	초등졸 이하	740(100.0)	83(11.2)	657(88.8)
	중학교	406(100.0)	43(10.6)	363(89.4)
	고등학교	944(100.0)	86(9.1)	858(90.9)
	전문대학	192(100.0)	19(9.9)	173(90.1)
	4년제 대학	769(100.0)	75(9.8)	694(90.2)
	대학원 석사 이상	115(100.0)	9(7.8)	106(92.2)
중위소득 기준 개인	비취업자	2,082(100.0)	235(11.3)	1,847(88.7)
	중위소득 50% 이하	338(100.0)	29(8.6)	309(91.4)
	중위소득 51-150% 이하	500(100.0)	28(5.6)	472(94.4)
	중위소득 151% 이상	217(100.0)	19(8.8)	198(91.2)
	모름/무응답	29(100.0)	4(13.8)	25(86.2)

[Base : 지난 1년간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 경험이 있는 가구원]

<표 III-23> 지난 1년간 입원한 이유 (E8-3)

단위 : 가구원수(%)

		전체	지병 또는 질병	사고	출산	기타	성·정형 교정	건강 검진	요양/ 휴식
항 목		315(100.0)	214(67.9)	55(17.5)	24(7.6)	12(3.8)	6(1.9)	3(1.0)	1(0.3)
성별	남성	117(100.0)	84(71.8)	26(22.2)	0(0.0)	4(3.4)	1(0.9)	2(1.7)	0(0.0)
	여성	198(100.0)	130(65.7)	29(14.6)	24(12.1)	8(4.0)	5(2.5)	1(0.5)	1(0.5)

	전체	지병 또는 질병	사고	출산	기타	성·정형 교정	건강 검진	요양/ 휴식
연령								
18세 이하	2(100.0)	1(50.0)	1(50.0)	0(0.0)	0(0.0)	0(0.0)	0(0.0)	0(0.0)
19-29세	18(100.0)	6(33.3)	3(16.7)	7(38.9)	0(0.0)	1(5.6)	0(0.0)	1(5.6)
30대	45(100.0)	12(26.7)	12(26.7)	17(37.8)	2(4.4)	0(0.0)	2(4.4)	0(0.0)
40대	54(100.0)	34(63.0)	11(20.4)	0(0.0)	8(14.8)	0(0.0)	1(1.9)	0(0.0)
50대	37(100.0)	27(73.0)	8(21.6)	0(0.0)	0(0.0)	2(5.4)	0(0.0)	0(0.0)
60-64세	23(100.0)	17(73.9)	6(26.1)	0(0.0)	0(0.0)	0(0.0)	0(0.0)	0(0.0)
65세 이상	136(100.0)	117(86.0)	14(10.3)	0(0.0)	2(1.5)	3(2.2)	0(0.0)	0(0.0)
학력								
초등졸 이하	83(100.0)	64(77.1)	15(18.1)	0(0.0)	1(1.2)	3(3.6)	0(0.0)	0(0.0)
중학교	43(100.0)	38(88.4)	2(4.7)	0(0.0)	2(4.7)	1(2.3)	0(0.0)	0(0.0)
고등학교	86(100.0)	63(73.3)	14(16.3)	4(4.7)	2(2.3)	1(1.2)	2(2.3)	0(0.0)
전문대학	19(100.0)	11(57.9)	3(15.8)	5(26.3)	0(0.0)	0(0.0)	0(0.0)	0(0.0)
4년제 대학	75(100.0)	34(45.3)	19(25.3)	14(18.7)	6(8.0)	0(0.0)	1(1.3)	1(1.3)
대학원 석사 이상	9(100.0)	4(44.4)	2(22.2)	1(11.1)	1(11.1)	1(11.1)	0(0.0)	0(0.0)
중위소득 기준 개인								
비취업자	235(100.0)	165(70.2)	36(15.3)	21(8.9)	7(3.0)	4(1.7)	2(0.9)	0(0.0)
중위소득 50% 이하	29(100.0)	22(75.9)	3(10.3)	0(0.0)	2(6.9)	1(3.4)	0(0.0)	1(3.4)
중위소득 51-150% 이하	28(100.0)	16(57.1)	7(25.0)	3(10.7)	1(3.6)	1(3.6)	0(0.0)	0(0.0)
중위소득 151% 이상	23(100.0)	11(47.8)	9(39.1)	0(0.0)	2(8.7)	0(0.0)	1(4.3)	0(0.0)

[Base : 지난 1년간 입원한 경험이 있는 가구원]

5. 사회참여

서울시 복지패널에서는 자원봉사 및 기부활동에 관한 부분도 조사문항에 포함시켰다. 이 부분에서는 자원봉사 및 기부에 대한 경험 및 횟수, 의향, 동인 등에 대해 가구원들에게 질문하였다.

먼저 자원봉사 부분을 살펴보면, 총 가구원 6,388명 중 1년간 자원봉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원은 10.7%인 684명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5,704명인 89%는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차이를 살펴보면 684명중 400명이 여성으로 284명인 남성보다 많았다.

<표 III-24> 봉사활동 경험 유무 (H5)

		전체	있다	없다
□ 항목 □		6,388(100.0)	684(10.7)	5,704(89.0)
성별	남성	3,142(100.0)	285(9.1)	2,857(91.9)
	여성	3,246(100.0)	400(12.3)	2,847(87.7)

자원봉사의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5,704명에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더니 시간적 여유가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서라는 응답이 40.3%로 가장 많았고, 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도 25.5%, 자원봉사활동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가 21.5%였다. 나머지 '어디에서 어떻게 자원봉사 활동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직접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서'는 각각 4.7%와 5.6%로 나타났다.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원봉사를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표 III-25>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H5-1)

		전체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자원봉사활동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시간적 여유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어디에서 어떻게 자원봉사활동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직접적인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서	기타
□ 항목 □		5,704 (100.0)	1,454 (25.5)	1,226 (21.5)	2,296 (40.3)	268 (4.7)	320 (5.6)	139 (2.4)

자원봉사활동 분야를 살펴보면, 종교단체를 통한 사회복지기관이나 불우이웃을 돕는 활동이 21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종교단체를 위한 봉사활동(187명),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161명), 교육기관을 위한 자원봉사(121명), 자선단체를 위한 자원봉사(118명)의 순이었다. 나머지 의료기관을 위한 자원봉사, 가까운 이웃을 위한 봉사, 환경 및 동물보호를 위한 자원봉사 등은 20명 미만으로 낮게 집계되었다.

<표 III-26> 봉사활동 참여 분야 (H7)

'자원봉사' 활동	참여 경험	
	사례수(명)	비율(%)
종교단체를 통해 사회복지기관이나 불우이웃을 돕는 활동	217	34.8
종교단체(교회, 성당, 절 등)를 위한 봉사활동	187	30.0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161	25.8
교육기관(초/중/고/대학교)을 위한 자원봉사	121	19.4
자선단체(재해 긴급구호 및 불우이웃돕기, 사회복지기관, 모금구호단체 등)를 위한 자원봉사	118	18.9
의료기관(병원, 연구센터 등)을 위한 자원봉사	18	2.9
직계가족을 제외한 친척, 친구 및 가까운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	16	2.6
환경 및 동물보호(단체)를 위한 자원봉사	13	2.1
해외구호를 위한 자원봉사(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 아프리카 의료 자원봉사 등)	10	1.6
선거, 정치단체, 정치인 등을 위한 자원봉사	9	1.4
알지 못하는 길가의 부랑인, 노숙인 등을 위한 자원봉사	8	1.3
문화예술단체(미술관, 문화재단, 박물관 등)를 위한 자원봉사	7	1.1
기타	30	4.8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순위는 자원봉사활동 분야의 순위와는 차이가 있었다³⁾. 종교단체를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87명중 102명인 54.5%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종교단체를 통한 사회복지기관이나 불우이웃을 돕는 활동은 99명인 45.6%가 정기적으로 참여한다고 응답해 그 다음이었다.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는 35.5%였으며, 교육기관을 위한 자원봉사를 정기적으로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29.2%로 자선단체를 위한 정기적인 자원봉사자 28%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III-27> 정기적 봉사활동 참여 분야 (H8)

'자원봉사' 활동	정기적 참여여부	
	사례수(명)	비율(%)
종교단체(교회, 성당, 절 등)를 위한 봉사활동	102 (187)	54.5%
종교단체를 통해 사회복지기관이나 불우이웃을 돕는 활동	99 (217)	45.6%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43 (121)	35.5%
교육기관(초/중/고/대학교)을 위한 자원봉사	47 (161)	29.2%
자선단체(재해 긴급구호 및 불우이웃돕기, 사회복지기관, 모금구호단체 등)를 위한 자원봉사	33 (118)	28.0%

자원봉사 분야별 참여 횟수 및 1회 평균 활동시간은, 참여 경험 및 정기적 참여의 순위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참여횟수가 가장 높았던 분야는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자원봉사로 1년간 참여횟수가 18.3회였다. 그 다음은 종교단체를 위한 봉사활동으로 16.9회였으며, 의료기관을 위한 자원봉사(14.2회), 종교단체를 통해 사회복지기관이나 불우이웃을 돕는 활동(11.5회)의 순이었다. 자선단체를 위한 자원 봉사는 참여경험 비율에서는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참여횟수는 6.8회로 낮은 편에 속했다. 1회 평균 활동시간은 해외구호를 위한 자원봉사(7.7시간)를 제외하고는 2.9시간에서 4.8시간까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3) 자원봉사 인원이 많은 5개의 영역만 분석하고, 케이스 수가 20미만이었던 활동은 제외하였음.

<표 III-28> 자원봉사 활동 참여 횟수 및 1회 평균 활동 시간 (H9)

'자원봉사' 활동	지난 1년간 참여 횟수 (회)	1회 평균 활동 시간 (시간)
문화예술단체(미술관, 문화재단, 박물관 등)를 위한 자원봉사	18.3	3.9
종교단체(교회, 성당, 절 등)를 위한 봉사활동	16.9	3.0
의료기관(병원, 연구센터 등)을 위한 자원봉사	14.2	4.2
종교단체를 통해 사회복지기관이나 불우이웃을 돕는 활동	11.5	4.0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10.9	4.1
알지 못하는 길가의 부랑인, 노숙인 등을 위한 자원봉사	10.9	4.4
직계가족을 제외한 친척, 친구 및 가까운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	10.6	3.2
교육기관(초/중/고/대학교)을 위한 자원봉사	9.9	4.8
환경 및 동물보호(단체)를 위한 자원봉사	9.2	2.9
자선단체(재해 긴급구호 및 불우이웃돕기, 사회복지기관, 모금구호단체 등)를 위한 자원봉사	6.8	4.3
선거, 정치단체, 정치인 등을 위한 자원봉사	6.4	4.4
해외구호를 위한 자원봉사(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 아프리카 의료 자원봉사 등)	1.9	7.7
기타	17.5	4.0

다음은 기부에 대한 응답 내용이다. 기부도 봉사활동 경험과 비슷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봉사활동과 기부활동에 관한 비교가 가능하다. 기부의 경우 응답자 중 1,074명인 16.8%가 기부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봉사활동 (684명, 11%)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봉사활동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기부 참여율이 남성보다 높았다. 기부한 경험이 있는 가구원 전체 중 남성은 474명으로 44.1%였고, 여성은 600명으로 55.9%였다. 자원봉사 경험보다는 남녀간 참여 비율의 차이가 작았다.

<표 III-29> 기부 경험 유무 (H11)

		전체	있다	없다
□	항 목 □	6,388(100.0)	1,074(16.8)	5,314(83.2)
성별				
	남성	3,142(100.0)	474(15.1)	2,668(84.9)
	여성	3,246(100.0)	600(18.5)	2,646(81.5)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32.2%로 가장 높았고, 기부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가 26.1%, 그리고 기부가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가 24.2%로 나타났다. 이것은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와 같은 순위였다. 자원봉사와 마찬가지로, 기부도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책임의식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표 III-30> 기부 하지 않는 이유 (H11-1)

		전체	기부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기부가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기부 대상자 및 기부를 요청한 시설/기관/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어디에 어떻게 기부해야 하는지 몰라서	직접적인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서	기타
□	항 목 □	5,314 (100.0)	1,389 (26.1)	1,288 (24.2)	327 (6.2)	1,712 (32.2)	127 (2.4)	380 (7.2)	90 (1.7)

기부활동의 경험을 살펴보면 봉사활동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띠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선단체를 위한 기부가 472명으로 48.9%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종교적 단체를 위한 사회복지기관이나 불우이웃돕기 헌금이 43.4%으로 그 다음이었다. 봉사활동에서 가장 낮은 경험율을 보였던 해외구호를 위한 기부 활동이 127명으로 13.2%로 3번째로 많은 기부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가 10.4%로 그 뒤를 이었다. 봉사활동 경험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던

교육기관을 위한 기부는 5.4%로 기부참여 분야에서는 낮은 편에 속했다.

<표 III-31> 기부 참여 분야 (H13)

'기부' 활동	기부 경험	
	사례수(명)	비율(%)
자선단체(재해긴급구조 및 불우이웃돕기, 사회복지 기관, 모금구조단체 등)를 위한 기부	472	48.9
종교단체를 통한 사회복지기관이나 불우이웃 돕기 헌금 (※ 종교적 헌금 및 보시 제외)	419	43.4
해외 구호를 위한 기부(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 아프리카 의료지원 등)	127	13.2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	100	10.4
알지 못하는 길가의 부랑인, 노숙인 등을 위한 기부	64	6.6
교육기관(초/중/고/대학교)을 위한 기부	52	5.4
직계가족을 제외한 친척, 친구 및 가까운 이웃 등 지인을 위한 기부	47	4.9
선거, 정치단체, 정치인 등을 위한 기부	29	3.0
환경 및 동물보호(단체)를 위한 기부	19	2.0
의료기관(병원, 연구센터 등)을 위한 기부	9	0.9
문화예술단체(미술관, 문화재단, 박물관 등)를 위한 기부	8	0.8
기타	57	5.9

기부활동이 정기적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종교단체를 통한 사회복지기관이나 불우이웃 돕기 헌금은 전체 419명중 175명인 41.8%가 정기적으로 기부한다고 대답하여 정기적 기부의 비율이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자선단체를 위한 기부 (32.4%)였다. 교육기관을 위한 기부는 사례수는 17명으로 매우 작았으나, 비율은 32.7%로 다른 영역보다 높은 수치였다. 알지 못하는 길가의 부랑인 노숙인을 위한 기부의 경우는 기부활동 경험 여부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었으나, 정기적인 기부는 7.8%로 낮았다.

<표 III-32> 정기적 기부 참여 분야 (H14)

'기부' 활동	정기적 참여여부	
	사례수(명)	비율(%)
종교단체를 통한 사회복지기관이나 불우이웃 돕기 헌금 (※ 종교적 헌금 및 보시 제외)	175	41.8
자선단체(재해긴급구조 및 불우이웃돕기, 사회복지 기관, 모금구조단체 등)를 위한 기부	153	32.4
교육기관(초/중/고/대학교)을 위한 기부	17	32.7
해외 구호를 위한 기부(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 아프리카 의료지원 등)	38	29.9
직계가족을 제외한 친척, 친구 및 가까운 이웃 등 지인을 위한 기부	11	23.4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	18	18.0
알지 못하는 길가의 부랑인, 노숙인 등을 위한 기부	5	7.8

기부액수의 순위를 살펴보면 봉사활동과 마찬가지로 경험 및 정기적 기부여부와 크게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가장 기부액수가 컸던 영역은 직계가족을 제외한 친척, 친구 및 가까운 지인을 위한 기부 (49만원)이었다. 문화 예술 단체를 위한 기부도 33만원, 환경 및 동물보호를 위한 기부도 27만원으로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기부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던 자선단체를 위한 기부는 13만원, 해외구호를 위한 기부는 9만원으로 금액이 적었다. 다만 종교단체를 통한 사회복지기관이나 불우이웃돕기 헌금은 36만원으로 나타나 경험률 및 정기적 기부률, 액수 3가지 항목에 고르게 높게 나타났다.

<표 III-33> 지난 1년간 기부액 (H15)

'기부' 활동	지난 1년간 기부액(만원)
직계가족을 제외한 친척, 친구 및 가까운 이웃 등 지인을 위한 기부	49.0

'기부' 활동	지난 1년간 기부액(만원)
종교단체를 통한 사회복지기관이나 불우이웃 돕기 헌금 (※ 종교적 헌금 및 보시 제외)	35.5
문화예술단체(미술관, 문화재단, 박물관 등)를 위한 기부	33.4
환경 및 동물보호(단체)를 위한 기부	27.1
교육기관(초/중/고/대학교)을 위한 기부	21.0
선거, 정치단체, 정치인 등을 위한 기부	18.9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	16.6
자선단체(재해긴급구조 및 불우이웃돕기, 사회복지 기관, 모금구조단체 등)를 위한 기부	13.4
의료기관(병원, 연구센터 등)을 위한 기부	12.2
알지 못하는 길가의 부랑인, 노숙인 등을 위한 기부	10.5
해외 구호를 위한 기부(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 아프리카 의료지원 등)	9.1
기타	22.7

6. 주관적 태도 및 복지정책관련 의견

서울시 복지패널조사에서는 주관적 문장에 대한 동의정도를 물어 주관적 태도 및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III-34]와 같다.

동의 정도가 가장 높았던 항목은 '정부는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로 매우 또는 대체로 동의한다가 69.8%였다. 비동의 정도가 가장 높았던 항목은 '어린이 보육부담은 전적으로 각 가정이 책임져야 한다'로, 역시 전혀 또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가 70.1%였다.

<표 III-34> 주관적 태도 및 복지정책 관련 의견(16)

단위 : 가구원(%)

주관적 태도 및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	동의정도				
	매우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보통 이다	별로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정부는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1,205 (19.1)	3,193 (50.7)	1,671 (26.5)	197 (3.1)	38 (0.6)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903 (14.3)	3,191 (50.6)	1,948 (30.9)	209 (3.3)	52 (0.8)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604 (9.6)	3,004 (47.7)	1,978 (31.4)	672 (10.7)	46 (0.7)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선진국에 비해 더 크다.	476 (7.6)	2,224 (35.3)	3,003 (47.6)	548 (8.7)	53 (0.8)
우리 사회에서 한 번 낙오되면 다시 일어서기 힘들다.	337 (5.3)	2,132 (33.8)	3,014 (47.8)	741 (11.8)	80 (1.3)
복지서비스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242 (3.8)	2,142 (34.0)	2,234 (35.4)	1,481 (23.5)	205 (3.3)
우리나라는 복지예산의 비중이 너무 낮다.	371 (5.9)	1,947 (30.9)	3,415 (54.2)	517 (8.2)	52 (0.8)
중산층에게도 복지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160 (2.5)	1,778 (28.2)	3,396 (53.9)	844 (13.4)	126 (2.0)
세금을 더 늘여서라도 복지예산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244 (3.9)	1,633 (25.9)	2,690 (42.7)	1,460 (23.2)	277 (4.4)
분배보다는 성장이 더 우선이다.	178 (2.8)	1,565 (24.8)	3,365 (53.4)	1,053 (16.7)	143 (2.3)
복지서비스는 긴급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120 (1.9)	1,511 (24.0)	2,204 (35.0)	2,074 (32.9)	395 (6.3)
복지지출이 너무 많으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133 (2.1)	1,240 (19.7)	3,257 (51.7)	1,443 (22.9)	230 (3.6)
우리 사회는 노력만하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86 (1.4)	1,266 (20.1)	3,262 (51.7)	1,391 (22.1)	299 (4.7)
사회복지를 늘이면 일할 의욕이 줄어든다.	151 (2.4)	1,153 (18.3)	3,228 (51.2)	1,549 (24.6)	222 (3.5)
우리 사회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이다.	102 (1.6)	1,049 (16.6)	3,376 (53.6)	1,472 (23.4)	305 (4.8)
정부예산이 적자가 나더라도 복지예산을 늘여야 한다.	133 (2.1)	999 (15.8)	2,506 (39.8)	2,138 (33.9)	528 (8.4)
노인부양의 부담은 전적으로 각 가정이 책임져야 한다.	109 (1.7)	431 (6.8)	1,346 (21.4)	3,425 (54.3)	993 (15.8)
어린이 보육부담은 전적으로 각 가정이 책임져야 한다.	104 (1.6)	396 (6.3)	1,395 (22.1)	3,392 (53.8)	1,017 (16.1)

먼저 제일 높은 비율이 동의한다고 응답했던 ‘정부는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3.7%에 불과했다. 학력에는 크게 상관없이 고르게 나타났으나, 소득별 차이를 보면, 중위소득 50%이하는 69.3%가 동의하였고, 중위소득 51-150%는 72.3%가, 중위소득 151%이상은 74.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율이 약간씩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상태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비취업자의 동의율은 68.1%, 취업자의 동의율은 72.1%로 취업자의 동의율이 근소하게나마 조금 더 높았다.

<표 III-35> 주관적 태도 : 정부는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16-18)

단위 : 가구원수(%)

구분	전체	매우 동의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보통이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합계	6,304(100.0)	1,205(19.1)	3,193(50.7)	1,671(26.5)	197(3.1)	38(0.6)
성별						
남성	2,870(100.0)	549(19.1)	1,476(51.4)	733(25.5)	91(3.2)	21(0.7)
여성	3,434(100.0)	656(19.1)	1,717(50.0)	938(27.3)	106(3.1)	17(0.5)
연령						
18세 이하	404(100.0)	65(16.1)	171(42.3)	157(38.9)	9(2.2)	2(0.5)
19-29세	773(100.0)	142(18.4)	396(51.2)	202(26.1)	25(3.2)	8(1.0)
30대	1,176(100.0)	255(21.7)	618(52.6)	266(22.6)	33(2.8)	4(0.3)
40대	1,178(100.0)	248(21.1)	596(50.6)	279(23.7)	47(4.0)	8(0.7)
50대	911(100.0)	158(17.3)	502(55.1)	209(22.9)	33(3.6)	9(1.0)
60-64세	433(100.0)	76(17.6)	231(53.3)	107(24.7)	14(3.2)	5(1.2)
65세 이상	1,429(100.0)	261(18.3)	679(47.5)	451(31.6)	36(2.5)	2(0.1)
학력						
초등졸 이하	963(100.0)	189(19.6)	440(45.7)	307(31.9)	20(2.1)	7(0.7)
중학교	610(100.0)	113(18.5)	310(50.8)	166(27.2)	19(3.1)	2(0.3)
고등학교	1,997(100.0)	345(17.3)	1,025(51.3)	543(27.2)	74(3.7)	10(0.5)
전문대학	468(100.0)	101(21.6)	237(50.6)	114(24.4)	10(2.1)	6(1.3)
4년제 대학	2,004(100.0)	401(20.0)	1,051(52.4)	474(23.7)	67(3.3)	11(0.5)
대학원 석사 이상	262(100.0)	56(21.4)	130(49.6)	67(25.6)	7(2.7)	2(0.8)

	전체	매우 동의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보통이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중위소득 기준 개인						
비취업자	3,680(100.0)	710(19.3)	1,797(48.8)	1,047(28.5)	107(2.9)	19(0.5)
중위소득 50% 이하	655(100.0)	114(17.4)	340(51.9)	174(26.6)	24(3.7)	3(0.5)
중위소득 51-150% 이하	1,327(100.0)	235(17.7)	724(54.6)	314(23.7)	45(3.4)	9(0.7)
중위소득 151% 이상	577(100.0)	120(20.8)	309(53.6)	123(21.3)	19(3.3)	6(1.0)
모름/무응답	65(100.0)	26(40.0)	23(35.4)	13(20.0)	2(3.1)	1(0.0)
취업상태						
취업자	2,624(100.0)	495(18.9)	1,396(53.2)	624(23.8)	90(3.4)	19(0.7)
비취업자	3,680(100.0)	710(19.3)	1,797(48.8)	1,047(28.5)	107(2.9)	19(0.5)

[Base : 전체 가구원]

비동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어린이 보육부담은 전적으로 각 가정이 책임져야 한다’는 항목을 살펴보면, 연령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19-29세는 69.1%가 동의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30대는 77.7%가 동의하지 않았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19.6%로 타 연령대에 비해 더 높았다. 40대 및 50대는 각각 72.1%와 73.6%였으며, 60-64세는 68.8%로 다시 낮아졌다. 미혼(66.8%)이나 이혼(63.2%)인 상태의 가구원보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원(73.4%)의 비동의율이 높았고 취업자가 (73.4%)가 비취업자 (67.8%)보다 높았다. 거주지역별 응답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취업률이 가장 낮았던 양친구에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3.8%로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마포구는 절반이 넘는 53.4%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보육부담을 정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6> 주관적 태도 : 어린이 보육부담은 전적으로 각 가정이 책임져야 한다(16-14)

위 : 가구원수(%)

	전체	매우 동의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보통이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항목 □	6,304(100.0)	104(1.6)	396(6.3)	1,395(22.1)	3,392(53.8)	1,017(16.1)

	전체	매우 동의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보통이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성별						
남성	2,870(100.0)	47(1.6)	195(6.8)	631(22.0)	1,534(53.4)	463(16.1)
여성	3,434(100.0)	57(1.7)	201(5.9)	764(22.2)	1,858(54.1)	554(16.1)
연령						
18세 이하	404(100.0)	8(2.0)	38(9.4)	152(37.6)	161(39.9)	45(11.1)
19-29세	773(100.0)	14(1.8)	49(6.3)	176(22.8)	396(51.2)	138(17.9)
30대	1,176(100.0)	11(0.9)	62(5.3)	190(16.2)	683(58.1)	230(19.6)
40대	1,178(100.0)	22(1.9)	71(6.0)	235(19.9)	633(53.7)	217(18.4)
50대	911(100.0)	19(2.1)	51(5.6)	171(18.8)	531(58.3)	139(15.3)
60-64세	433(100.0)	5(1.2)	32(7.4)	98(22.6)	242(55.9)	56(12.9)
65세 이상	1,429(100.0)	25(1.7)	93(6.5)	373(26.1)	746(52.2)	192(13.4)
학력						
초등졸 이하	963(100.0)	21(2.2)	61(6.3)	253(26.3)	500(51.9)	128(13.3)
중학교	610(100.0)	14(2.3)	41(6.7)	144(23.6)	327(53.6)	84(13.8)
고등학교	1,997(100.0)	28(1.4)	124(6.2)	477(23.9)	1,081(54.1)	287(14.4)
전문대학	468(100.0)	12(2.6)	33(7.1)	101(21.6)	245(52.4)	77(16.5)
4년제 대학	2,004(100.0)	27(1.3)	122(6.1)	380(19.0)	1,090(54.4)	385(19.2)
대학원 석사 이상	262(100.0)	2(0.8)	15(5.7)	40(15.3)	149(56.9)	56(21.4)
혼인상태						
비해당(남 17세 이하, 여15세 이하)	330(100.0)	6(1.8)	32(9.7)	119(36.1)	133(40.3)	40(12.1)
미혼	1,200(100.0)	19(1.6)	75(6.3)	305(25.4)	602(50.2)	199(16.6)
유배우	3,957(100.0)	55(1.4)	240(6.1)	758(19.2)	2,233(56.4)	671(17.0)
이혼	190(100.0)	6(3.2)	10(5.3)	54(28.4)	95(50.0)	25(13.2)
사별	568(100.0)	18(3.2)	34(6.0)	148(26.1)	293(51.6)	75(13.2)
별거	59(100.0)	0(0.0)	5(8.5)	11(18.6)	36(61.0)	7(11.9)
중위소득 기준 개인						
비취업자	3,680(100.0)	66(1.8)	249(6.8)	887(24.1)	1,913(52.0)	565(15.4)
중위소득 50% 이하	655(100.0)	13(2.0)	39(6.0)	133(20.3)	372(56.8)	98(15.0)
중위소득 51-150% 이하	1,327(100.0)	19(1.4)	69(5.2)	264(19.9)	756(57.0)	219(16.5)
중위소득 151% 이상	577(100.0)	6(1.0)	38(6.6)	102(17.7)	313(54.2)	118(20.5)
모름/무응답	65(100.0)	0(0.0)	1(1.5)	9(13.8)	38(58.5)	17(26.2)
취업상태						
취업자	2,624(100.0)	38(1.4)	147(5.6)	508(19.4)	1,479(56.4)	452(17.2)
비취업자	3,680(100.0)	66(1.8)	249(6.8)	887(24.1)	1,913(52.0)	565(15.4)

III. 가구원용 설문 응답 결과

	전체	매우 동의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보통이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거주지역						
종로구	164(100.0)	1(0.6)	16(9.8)	34(20.7)	90(54.9)	23(14.0)
중구	203(100.0)	31(15.3)	11(5.4)	53(26.1)	65(32.0)	43(21.2)
용산구	156(100.0)	5(3.2)	4(2.6)	62(39.7)	57(36.5)	28(17.9)
성동구	212(100.0)	1(0.5)	11(5.2)	41(19.3)	143(67.5)	16(7.5)
광진구	186(100.0)	3(1.6)	12(6.5)	30(16.1)	110(59.1)	31(16.7)
동대문구	206(100.0)	3(1.5)	5(2.4)	29(14.1)	158(76.7)	11(5.3)
중랑구	227(100.0)	0(0.0)	10(4.4)	36(15.9)	175(77.1)	6(2.6)
성북구	262(100.0)	3(1.1)	48(18.3)	104(39.7)	89(34.0)	18(6.9)
강북구	197(100.0)	0(0.0)	14(7.1)	32(16.2)	106(53.8)	45(22.8)
도봉구	216(100.0)	1(0.5)	7(3.2)	34(15.7)	139(64.4)	35(16.2)
노원구	339(100.0)	4(1.2)	35(10.3)	89(26.3)	165(48.7)	46(13.6)
은평구	275(100.0)	1(0.4)	2(0.7)	68(24.7)	75(27.3)	129(46.9)
서대문구	174(100.0)	6(3.4)	13(7.5)	75(43.1)	64(36.8)	16(9.2)
마포구	206(100.0)	0(0.0)	2(1.0)	33(16.0)	61(29.6)	110(53.4)
양천구	260(100.0)	3(1.2)	39(15.0)	168(64.6)	40(15.4)	10(3.8)
강서구	266(100.0)	4(1.5)	19(7.1)	78(29.3)	119(44.7)	46(17.3)
구로구	236(100.0)	1(0.4)	3(1.3)	24(10.2)	178(75.4)	30(12.7)
금천구	305(100.0)	0(0.0)	4(1.3)	24(7.9)	259(84.9)	18(5.9)
영등포구	306(100.0)	18(5.9)	5(1.6)	24(7.8)	153(50.0)	106(34.6)
동작구	255(100.0)	1(0.4)	16(6.3)	45(17.6)	145(56.9)	48(18.8)
관악구	353(100.0)	1(0.3)	24(6.8)	64(18.1)	219(62.0)	45(12.7)
서초구	286(100.0)	0(0.0)	9(3.1)	36(12.6)	218(76.2)	23(8.0)
강남구	313(100.0)	1(0.3)	9(2.9)	53(16.9)	203(64.9)	47(15.0)
송파구	356(100.0)	9(2.5)	52(14.6)	75(21.1)	181(50.8)	39(11.0)
강동구	266(100.0)	6(2.3)	19(7.1)	63(23.7)	139(52.3)	39(14.7)
서울 이외 지역	79(100.0)	1(1.3)	7(8.9)	21(26.6)	41(51.9)	9(11.4)

[Base : 전체 가구원]

7. 노년준비

1) 노년 준비 실태(만35-64세 vs. 65세 이상)

가구원용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서울시민의 노년 준비 실태에 대해 물었다. 만 35세 미만의 가구원은 조사에서 제외되었으며, 35-64세 가구원과 65세 이상 가구원의 노년 준비 상태를 각각 나누어 살펴보았다.

만 35-64세 가구원 3,196명을 대상으로 노년 준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건강 유지를 위한 규칙적인 운동 및 건강검진'이라는 응답이 57.3%로 가장 높게 나타나 건강상태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노후 자금 준비'(51.4%), '사회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참여'(43.2%), '취미/여가 활동'(38.5%),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준비'(39.0%)의 비율이 높았다.

사회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참여 부분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 있어 남성이 여성보다 노후생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 부분은 남성이 39.6%, 여성이 46.8%로 여성이 7.2%가량 더 높았다.

대체적으로 월 평균 소득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노년준비를 하고 있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 및 건강 검진 경우의 경우, 중위소득 50%이하는 186명인 47.2%만 준비를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소득에 따라 비율이 증가하여, 중위소득 151%이상인 집단은 78.9%인 399명이 노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노후자금의 경우에는, 초등졸 이하는 88명인 32.0%가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학력에 따라 비율이 증가하여 대학원 석사 이상은 124명인 73.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사회 참여나 취미, 여가활동, 직업능력을 위한 준비의 영역에서도 학력 및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부터 50대까지는 전 영역에 이르러 노년 준비를 하는 사람이 증가하나, 60대에 이르러서는 감소하였다. 사회참여 준비의 경우 30대에 38.4%, 40대에 43.4%, 50대에 47.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60대는 43%로 줄

어 들었다.

<표 III-37> 노후 준비 실태(J1 매우 열심히 준비한다+준비한다)

단위 : 가구원수(%)

항 목	건강 유지를 위한 규칙적인 운동 및 건강검진	노후 자금 준비	사회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참여	취미 여가활동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준비
항 목	1,829(57.6)	1,635(51.5)	1,379(43.5)	1,235(38.9)	1,244(39.2)
성별					
남성	870(59.6)	776(53.2)	578(39.6)	585(40.1)	618(42.3)
여성	959(56.0)	859(50.1)	801(46.8)	650(37.9)	626(36.5)
연령					
30대	340(52.2)	335(51.5)	250(38.4)	263(40.4)	316(48.5)
40대	662(56.2)	609(51.7)	511(43.4)	469(39.8)	542(46.0)
50대	564(61.9)	493(54.1)	432(47.4)	360(39.5)	290(31.8)
60-64세	263(60.7)	198(45.7)	186(43.0)	143(33.0)	96(22.2)
학력					
초등졸 이하	120(43.6)	88(32.0)	74(26.9)	53(19.3)	36(13.1)
중학교	168(55.3)	118(38.8)	108(35.5)	76(25.0)	70(23.0)
고등학교	610(51.6)	538(45.5)	491(41.5)	396(33.5)	348(29.4)
전문대학	115(58.1)	103(52.0)	89(44.9)	78(39.4)	86(43.4)
4년제 대학	689(65.9)	664(63.5)	524(50.1)	532(50.9)	598(57.2)
대학원 석사 이상	127(75.6)	124(73.8)	93(55.4)	100(59.5)	106(63.1)
혼인상태					
미혼	86(38.1)	80(35.4)	63(27.9)	71(31.4)	94(41.6)
유배우	1,623(61.2)	1,470(55.4)	1,217(45.9)	1,099(41.4)	1,074(40.5)
이혼	53(36.3)	34(23.3)	44(30.1)	26(17.8)	48(32.9)
사별	51(48.6)	43(41.0)	43(41.0)	31(29.5)	20(19.0)
별거	16(38.1)	8(19.0)	12(28.6)	8(19.0)	8(19.0)
중위소득 기준 개인					
비취업자	778(57.2)	651(47.8)	614(45.1)	551(40.5)	416(30.6)
중위소득 50% 이하	186(47.2)	136(34.5)	152(38.6)	86(21.8)	140(35.5)
중위소득 51-150% 이하	445(51.4)	416(48.0)	317(36.6)	286(33.0)	344(39.7)
중위소득 151% 이상	399(78.9)	410(81.0)	279(55.1)	299(59.1)	330(65.2)
모름/무응답	1(50.0)	1(50.0)	2(100.0)	1(50.0)	0(0.0)

[Base : 만35-64세 가구원 가구원]

2) 65세 이상

만65세 이상 가구원의 경우 35-64세 집단과 마찬가지로 '건강 유지를 위한 규칙적인 운동 및 건강검진'으로 노후를 준비했다는 응답이 4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경우 35-64세와는 달리 노후자금 준비 (32.6%)보다는 사회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참여(35.6%)에 더 힘쓰는 것으로 보인다.

65세 미만과 마찬가지로, 사회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참여를 제외하고는 전 영역에 있어 남성이 여성보다 더 열심히 준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35-64세 집단과 마찬가지로 고령으로 갈수록 노년준비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의 데이터와 종합해 보면, 노년에 대한 준비는 50대까지 계속 증가하며, 퇴직을 앞둔 시점에 가장 높으며, 그 이후로는 차차 감소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과 소득에 따른 차이도 35세-64세 집단과 마찬가지로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열심히 준비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II-38> 과거 노후 준비 실태(J2, 매우 열심히 준비했다+준비했다)

단위 : 가구원수(%)

□ 항목 □		건강 유지를 위한 규칙적인 운동 및 건강검진	노후 자금 준비	사회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참여	취미 여가활동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준비
□ 항목 □		704(49.3)	458(32.1)	504(35.3)	337(23.6)	84(5.9)
성별						
	남성	345(58.2)	230(38.8)	194(32.7)	163(27.5)	47(7.9)
	여성	359(42.9)	228(27.3)	310(37.1)	174(20.8)	37(4.4)
학력						
	초등졸 이하	230(33.6)	124(18.1)	177(25.9)	87(12.7)	24(3.5)
	중학교	129(52.7)	74(30.2)	87(35.5)	51(20.8)	11(4.5)
	고등학교	198(67.8)	133(45.5)	116(39.7)	99(33.9)	24(8.2)
	전문대학	18(69.2)	15(57.7)	16(61.5)	9(34.6)	2(7.7)
	4년제 대학	117(70.9)	100(60.6)	96(58.2)	80(48.5)	19(11.5)
	대학원 석사 이상	12(70.6)	12(70.6)	12(70.6)	11(64.7)	4(23.5)

	건강 유지를 위한 규칙적인 운동 및 건강검진	노후 자금 준비	사회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참여	취미 여가활동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준비
혼인상태					
미혼	4(33.3)	0(0.0)	4(33.3)	2(16.7)	0(0.0)
유배우	517(57.4)	358(39.8)	338(37.6)	246(27.3)	63(7.0)
이혼	11(28.9)	4(10.5)	10(26.3)	4(10.5)	1(2.6)
사별	165(35.7)	94(20.3)	147(31.8)	82(17.7)	20(4.3)
별거	7(41.2)	2(11.8)	5(29.4)	3(17.6)	0(0.0)
중위소득 기준 개인					
비취업자	584(47.4)	376(30.5)	431(35.0)	285(23.2)	56(4.5)
중위소득 50% 이하	78(53.8)	45(31.0)	50(34.5)	32(22.1)	19(13.1)
중위소득 51-150% 이하	31(79.5)	26(66.7)	17(43.6)	13(33.3)	5(12.8)
중위소득 151% 이상	6(85.7)	6(85.7)	4(57.1)	5(71.4)	2(28.6)
모름/무응답	1(100.0)	1(100.0)	0(0.0)	0(0.0)	0(0.0)

[Base : 만65세 이상 가구원]

마지막으로 노년 생활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한 대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필요하다든 응답자가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3,979명인 86.5%가 동의한 노인 일자리 창출이었다. 국가 운영의 양로원 설치 확대가 85.0%, 부모 부양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혜택 또한 84.4%로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노인을 위한 사회봉사 시설 및 기구의 확대 (82.4%)였으며, 노인고용의무비율의 확대 (75.7%) 및 직장 정년 연령의 연장 (73.2%)이 필요하다든 응답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국민연금혜택 시한의 앞당김은 2,251명인 48.9%로 다른 항목에 비해 동의율이 다소 낮았다.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응답물에는 큰 차이는 없었다. 학력에 의한 차이도 대부분의 항목에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직장 정년 연령의 연장'에 있어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작게나마 필요하다든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직장 정년 연령의 연장 항목의 경우, 초등졸 이하의 62.1%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대학원 석사 이상은 78.4%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취업상태는 대부분의 항목에 일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취업자가 비취업자보다 모든 항목에 더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일자리 창출의 경우에는 취업자의 91.3%

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비취업자(82.7%)보다 동의율이 10%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9>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한 대책(J3, 매우 필요하다+필요하다)

단위 : 가구원수(%)

	노인 일자리 창출	국가 운영의 양로원시설 설치 확대	직장 정년연령 의 연장	국민연금 혜택 시한의 앞당김	노인고용 의무비율 의 확대	부모 부양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	노인을 위한 사회봉사 시설 및 기구의 확대	기타
□ 항목 □	3,979(86.5)	3,913(85.0)	3,369(73.2)	2,251(48.9)	3,486(75.7)	3,886(84.4)	3,790(82.4)	641(13.9)
성별								
남성	1,812(88.3)	1,757(85.6)	1,549(75.5)	1,018(49.6)	1,596(77.7)	1,753(85.4)	1,728(84.2)	296(14.4)
여성	2,167(85.0)	2,156(84.6)	1,820(71.4)	1,233(48.4)	1,890(74.1)	2,133(83.7)	2,062(80.9)	345(13.5)
연령								
30대	589(90.5)	556(85.4)	528(81.1)	344(52.8)	504(77.4)	550(84.5)	556(85.4)	93(14.3)
40대	1,051(89.2)	1,009(85.7)	906(76.9)	617(52.4)	900(76.4)	992(84.2)	991(84.1)	174(14.8)
50대	808(88.7)	799(87.7)	686(75.3)	467(51.3)	698(76.6)	793(87.0)	768(84.3)	141(15.5)
60-64세	380(87.8)	367(84.8)	329(76.0)	207(47.8)	340(78.5)	362(83.6)	350(80.8)	57(13.2)
65세 이상	1,151(80.5)	1,182(82.7)	920(64.4)	616(43.1)	1,044(73.1)	1,189(83.2)	1,125(78.7)	176(12.3)
학력								
초등졸 이하	751(78.3)	784(81.8)	596(62.1)	410(42.8)	688(71.7)	806(84.0)	752(78.4)	124(12.9)
중학교	462(84.2)	454(82.7)	373(67.9)	243(44.3)	398(72.5)	458(83.4)	430(78.3)	66(12.0)
고등학교	1,307(88.7)	1,275(86.5)	1,120(76.0)	772(52.4)	1,144(77.6)	1,260(85.5)	1,225(83.1)	218(14.8)
전문대학	201(89.7)	195(87.1)	169(75.4)	118(52.7)	164(73.2)	188(83.9)	192(85.7)	33(14.7)
4년제 대학	1,094(90.3)	1,046(86.4)	966(79.8)	622(51.4)	946(78.1)	1,020(84.2)	1,032(85.2)	187(15.4)
대학원 석사 이상	164(88.6)	159(85.9)	145(78.4)	86(46.5)	146(78.9)	154(83.2)	159(85.9)	13(7.0)
중위소득 기준 개인								
비취업자	2,143(82.7)	2,159(83.3)	1,800(69.4)	1,224(47.2)	1,910(73.7)	2,147(82.8)	2,094(80.8)	339(13.1)
중위소득 50% 이하	484(89.8)	476(88.3)	401(74.4)	259(48.1)	417(77.4)	465(86.3)	437(81.1)	83(15.4)
중위소득 51-150% 이하	828(91.5)	786(86.9)	714(78.9)	492(54.4)	715(79.0)	782(86.4)	772(85.3)	117(12.9)
중위소득 151% 이상	475(92.6)	443(86.4)	417(81.3)	254(49.5)	403(78.6)	447(87.1)	442(86.2)	94(18.3)
모름/무응답	3(100.0)	3(100.0)	3(100.0)	2(66.7)	3(100.0)	2(66.7)	3(100.0)	0(0.0)
취업상태								
취업자	1,836(91.3)	1,754(87.3)	1,569(78.1)	1,027(51.1)	1,576(78.4)	1,739(86.5)	1,696(84.4)	302(15.0)
비취업자	2,143(82.7)	2,159(83.3)	1,800(69.4)	1,224(47.2)	1,910(73.7)	2,147(82.8)	2,094(80.8)	339(13.1)

[Base : 만35세 이상 가구원]

부록

서울시 복지패널 1차 부가조사
심층분석보고서

목 차

I . 연구개관(김지영)	199
1. 연구목적	199
2. 연구내용	200
3. 서울시복지패널 1차 부가조사 개요	200
4. 응답가구 및 응답가구원 특성	204
II . 저소득층의 나눔행동에 대한 연구(강철희)	21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0
2. 나눔관련 이론적 배경	213
3. 연구질문 및 연구모형	225
4. 연구방법	227
5. 연구결과	232
6. 결론 및 논의	246
7. 참고문헌	249
III . 서울시 저소득 가구의 빈곤이행의 실태와 특성(김교성) ...	261
1. 들어가며	261
2. 서울시복지패널 자료에 대한 소개	262
3. 서울시 복지패널을 이용한 빈곤실태와 빈곤이행 분석	265
4. 나가며	273
5. 참고문헌	275

— 표 목 차 —

<표 I-1> 조사대상 선정 기준	201
<표 I-2> 조사대상 가구 및 조사완료율	201
<표 I-3> 1차 부가조사 조사표의 구성	202
<표 I-4> 응답가구 특성	205
<표 I-5> 응답가구의 거주지역 분포	206
<표 I-6> 가구주 특성	207
<표 I-7> 응답자 특성	208
<표 II-1> 종속변수 및 관련변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 결과	232
<표 II-2> 독립 변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 결과	234
<표 II-3> 서울시 저소득층 시민의 기부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Probit 분석 결과	237
<표 II-4> 서울시 저소득층 시민의 기부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Tobit 분석 결과	239
<표 II-5> 서울시 저소득층 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Probit 분석 결과	240
<표 II-6> 서울시 저소득층 시민의 자원봉사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Tobit 분석 결과	242
<표 II-7> 서울시 저소득층 시민의 기부 참여율, 기부 금액, 자원봉사 참여율, 자원봉사 시간에 대한 Probit 및 Tobit 분석 결과의 총 정리표	244
<표 III-1> 서울시 복지패널 본조사와 부가조사의 설문지 구성	264
<표 III-2> 연도별 최저생계비	267
<표 III-3> 각 연도의 권역별 빈곤율	268
<표 III-4> 연도별 빈곤가구의 특성	269
<표 III-5> 각 연도의 가구유형별 빈곤율과 이전소득의 빈곤완화효과	271
<표 III-6> 빈곤이행 실태	272
<표 III-7> 빈곤이행 가구의 특성	273

1. 연구개관

김지영

1. 연구목적

서울시 복지재단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의 복지수준을 측정하고 연도별로 분야별 복지수준의 변화를 추적하여 조사하여 서울시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2008년부터 서울시 복지패널조사를 실시해왔다.

서울시복지패널 조사는 소득, 소비, 저축, 부채, 자산, 생활여건, 건강, 주거, 노인 부양, 자녀교육, 장애 및 재활, 복지서비스 등 기존의 복지관련 조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온 영역들 외에도, 문화생활 및 사회참여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문항들과 복지정책관련 의견을 묻는 문항들을 포함시켜 서울시민의 삶의 모습과 복지욕구를 포괄적으로 담아내려고 하고 있다.

첫해인 2008년에는 3,665가구의 7,761명을 대상으로 1차 본조사를 실시하였고, 2009년에는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저소득층 1,096가구, 2,212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1차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부가조사의 목적은 저소득층 서울시민의 객관적인 생활조건 및 주관적인 삶의 질, 다양한 생활영역의 변화 등을 파악하여, 복지취약계층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고 복지취약계층에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수요를 추정하는데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 보다 심화된 경제양극화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빈곤층 이외에도 신빈곤층, 근로빈곤층(working poor)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높아지고 있으나, 이러한 계층의 실태에 대한 계량적 데이터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시 복지패널 1차 부가조사는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저소득층까지 조사대

상으로 확대하여 절대빈곤계층은 물론 이러한 새로운 빈곤층의 상황과 복지욕구를 조망함으로써, 이들을 포괄하는 복지정책의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서울시복지패널 1차 부가조사의 구성 및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부가조사 자료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원자료를 활용한 2편의 논문을 통해 서울시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한 심층적 연구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2. 연구내용

본 보고서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소개하고, 2장 [서울시복지패널 1차 부가조사 개관]에서는 표본추출, 조사표의 구성과 내용, 조사 절차 등 1차 부가조사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3장 [저소득층의 나눔 행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1차 부가조사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 저소득층의 나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1차 부가조사 자료의 영역별 활용을 통한 연구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4장 [빈곤가구의 빈곤실태와 빈곤이행 분석]에서는 1차 본조사의 자료와 1차 부가조사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 빈곤가구의 빈곤진입과 탈피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본조사 자료와 부가조사 자료의 연계를 통한 연구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3. 서울시복지패널 1차 부가조사개요

1) 조사대상 및 조사완료율

서울시복지패널 1차 부가조사의 대상은 서울시복지패널 1차 본조사에 응답한 3,665가구 중 2009년 기준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가구와 해당가구의

15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이다. 조사대상 선정을 위해 사용된 가구소득의 기준은 <표 I-1>과 같다.

<표 I-1> 조사대상 선정 기준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최저생계비 200%	981,690	1,671,526	2,162,372	2,653,218	3,144,062	3,634,908
조사기준	980,000	1,670,000	2,160,000	2,650,000	3,140,000	3,630,000

※ 월평균 소득 기준임

가구원에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평소에 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친인척 모두가 포함되었다. 타지역 근무, 군복무, 치료 및 요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살고 있는 직계 가족과 사실혼 관계에 의한 배우자는 가구원에 포함되었다. 함께 거주하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독립한 미혼자녀나 분가한 기혼자녀와, 함께 거주하고는 있으나 친인척 관계가 없는 고용인이나 세입자 등은 제외되었다.

조사대상 가구 및 응답가구의 수와 비율은 <표 I-2>과 같다.

<표 I-2> 조사대상 가구 및 조사완료율

단위 : 가구수(%)

구분	조사대상	조사완료가구	조사완료율(%)
전체	1,599(100.0)	1,096(100.0)	70.3
최저생계비 이하	575(36.0)	413(37.7)	71.8
최저생계비 101~150%	526(32.9)	332(30.3)	61.9
최저생계비 151~200%	497(31.1)	351(32.0)	70.6

※ 1차 본조사 응답가구 3,665가구 중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는 1,599가구(43.6%)였음

※ 최저생계비 기준년도는 1차 본조사는 '2008년도', 부가조사는 '2009년도'임

2) 조사표 구성 및 조사내용

조사표는 가구용과 가구원용 등 2종으로 구성되었다. 가구용은 가구원 일반사항

과 소득, 소비와 저축, 자산과 부채, 가구경제 인식, 최근 가족상황의 변화, 생활여건, 건강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노인부양(부양자녀용), 미취학 아동 보육, 자녀교육(초/중/고 연령대), 아동빈곤(초/중/고 연령대), 장애 및 재활, 복지서비스 수요, 여성가구주 관련 등 17개 분야로 구성되었다. 가구원용은 경제활동, 사회보험, 직업훈련 경험 및 취득 자격증, 배우자와의 관계, 건강/의료, 정신건강, 문화생활/여가활동/정보화, 사회참여/평생학습/자원봉사 및 기부활동, 주관적 태도 및 복지정책관련 의견, 자활, 성장과정, 직업력, 혼인상태 등 13개 분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조사표의 구성은 <표 I-3>과 같다.

<표 I-3> 1차 부가조사 조사표의 구성

가구용	가구원용
1. 가구원 일반사항	1. 경제활동
2. 소득	2. 사회보험
3. 소비와 저축	3. 직업훈련 경험 및 취득 자격증
4. 자산과 부채	4. 배우자와의 관계
5. 가구경제 인식	5. 건강/의료
6. 최근 가족상황의 변화	6. 정신건강
7. 생활여건	7. 문화생활/여가활동/정보화
8. 건강보험	8. 사회참여/평생학습/자원봉사 및 기부활동
9. 국민기초생활보장	9. 주관적 태도 및 복지정책관련 의견
10. 주거	10. 자활
11. 노인부양(부양자녀용)	11. 성장과정
12. 미취학 아동 보육	12. 직업력
13. 자녀교육(초/중/고 연령대)	13. 혼인상태
14. 아동빈곤(초/중/고 연령대)	
15. 장애 및 재활	
16. 복지서비스 수요	
17. 여성가구주 관련	

1차 본조사 조사표와는 달리 1차 부가조사용 가구용 조사표에는 아동보육 및 자

녀교육과는 분리된 아동빈곤 항목을 포함시켜 양육에 관한 일반적인 문항으로 파악할 수 없는 아동빈곤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게 하였고, 여성가구주를 위한 복지 서비스 관련 문항을 포함시켜 빈곤문제와 관련성이 높은 여성가구주의 복지욕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구원용 조사표에는 자활 관련 항목을 포함시켜 자활사업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고, 성장과정, 직업력, 혼인상태 등 회고력을 묻는 문항을 포함시켜 개인사에 기초하여 저소득층의 삶과 복지욕구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1차 본조사 가구원 조사표에 포함되어 있던 노후생활은 1차 부가조사에서는 삭제되었다.

3) 조사방법

조사는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이하 CAPI)로 실시되었다. CAPI는 면접원이 조사 대상 가구로 선정된 가구를 방문하여,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조화된 설문에 따라 응답한 내용을 컴퓨터에 저장하여 활용하는 형태로, 문항간, 응답자간 응답의 일치성의 현장 확인과 실시간 조사 관리를 용이하게 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한 조사방법이다.

가구 조사의 경우, 전체 가구와 가구원 개개인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응답자가 응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가구 조사가 완료된 후 가구원 조사를 실시하였다.

가구원 조사의 경우, 가구원 개인을 면접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나, 조사표 표지에 명시된 대리응답사유(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3급 이상)에 해당하는 가구원의 경우는 해당 가구원에 대해 잘 아는 가구원이 대리응답 가능하도록 하였다. 뇌병변장애,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2급, 사망 등의 미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구원의 경우는 조사표의 표지만 작성하고 해당 사유를 명기하는 것으로 조사를 완료

하도록 하였다.

가구주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면서 해당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나 사실상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을 조달하는 사람으로 하였다.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하였고, 장애인은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장애등급 및 유형에 따라 지정된 조사대상자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4) 조사시기 및 조사기준 시점

조사는 2010년 1월 8일부터 2월 2일까지 4주간 이루어졌다. 소득 및 소비와 저축 항목에 대한 응답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였고, 자산과 부채는 조사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4. 응답가구 및 응답가구원 특성

1) 가구구성

서울시복지패널 1차 부가조사의 응답가구의 가구구성상의 특성은 <표 I-4>와 같다.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271가구(24.7%)가 1인 가구이고, 2인 가구는 364가구(33.2%)이며, 3인 이상 가구는 461가구(42.1%)이다.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되어 있는 가구는 644가구(58.7%)인데, 이 중 노인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이하 노인가구)는 354가구(32.3%)였다. 노인가구의 대다수는 독거노인인 노인 1인 가구(198가구, 18.1%)이거나, 노인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구(149가구,

13.6%)이다.

장애인 가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가구(이하 장애인가구)는 214가구(19.5%)인데, 이 중 53가구(4.8%)는 장애인 1인 가구(독거장애인가구)이고, 49가구(4.5%)는 장애인 가구원이 포함된 노인가구이다.

18세 미만 아동이 포함되어 있는 가구는 258가구(23.5%)인데, 이 중 59가구(5.4%)는 조손가구를 포함한 한부모 가구이다. 3인 이상의 자녀로 구성된 다자녀가구는 37가구(3.4%)이고, 이 중 한부모-다자녀 가구는 7가구(0.6%)였다.

<표 1-4> 응답가구 특성

구분	가구유형	가구수	%	
가구원수	1명	271	24.7	
	2명	364	33.2	
	3명	213	19.4	
	4명	167	15.2	
	5명 이상	81	7.4	
장애가구원수	없음	838	76.5	
	있음	1명	233	21.3
		2명	24	2.2
		3명 이상	1	0.1
노인가구원수	없음	452	41.2	
	있음	1명	416	38.0
		2명	221	20.2
		3명 이상	7	0.6
아동가구원수	없음	838	76.5	
	있음	1명	110	10.0
		2명	116	10.6
		3명 이상	32	0.3
가구유형	노인가구(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354	32.3	
	한부모 가구(조손 가구 포함)	59	5.4	
	다자녀 가구	37	3.4	
	한부모-다자녀 가구	7	0.6	

응답자들의 거주지역 분포를 25개구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I-5>와 같다.

<표 I-5> 응답가구의 거주지역 분포

거주지역	가구수	%
전체	1,096	100.0
종로구	43	3.9
중구	46	4.2
용산구	35	3.2
성동구	43	3.9
광진구	46	4.2
동대문구	40	3.6
중랑구	76	6.9
성북구	67	6.1
강북구	53	4.8
도봉구	49	4.5
노원구	49	4.5
은평구	46	4.2
서대문구	28	2.6
마포구	37	3.4
양천구	30	2.7
강서구	46	4.2
구로구	39	3.6
금천구	51	4.7
영등포구	49	4.5
동작구	42	3.8
관악구	53	4.8
서초구	23	2.1
강남구	18	1.6
송파구	34	3.1
강동구	50	4.6
서울 이외 지역	3	0.3

2) 가구주 특성

응답가구의 가구주의 특성을 1차 본조사 응답가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표 I-6>와 같다.

<표 I-6> 가구주 특성

구분	1차 본조사		1차 부가조사	
	가구수	%	가구수	%
전체	3,665	100.0	1,096	100.0
성별				
남성	2,748	75.0	716	65.3
여성	917	25.0	380	34.7
연령				
20대 이하	201	5.5	18	1.6
30대	691	18.9	93	8.5
40대	815	22.2	150	13.7
50대	676	18.4	188	17.2
60대	652	17.8	263	24.0
70대 이상	630	17.2	384	35.0
취업상태				
취업자	2,155	58.8	400	36.5
비취업자	1,510	41.2	696	63.5
학력				
초등학교 이하	599	16.3	362	33.0
중학교	361	9.8	164	15.0
고등학교	1,043	28.5	348	31.8
2년제 대학	213	5.8	48	4.4
4년제 대학	1,210	33.0	159	14.5
대학원석사 이상	239	6.5	15	1.4

가구주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1차 부가조사 응답가구의 여성가구주 비율이 34.7%로 1차 본조사 응답가구의 여성가구주 비율 25.0%에 비해 높았다. 가구주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가구주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비율이 1차 부가조사 응답가구에서는 59.0%로 나타나 1차 본조사 응답가구의 60세 이상 가구주 비율인 35.0%에 비해 확연히 높았다. 취업가구주 비율은 1차 부가조사 응답가구에서 36.5%로 나타나 1차 본조사 응답가구의 취업가구주 비율인 58.8%에 비해 확연히 낮았다. 가구주의 학력을 살펴보면, 1차 부가조사 응답가구의 경우 초등학교 이하 학력을 가진 가구주의 비율이 33.3%로 1차 본조사 응답가구의 16.3%보다 2배 이상 높았고, 2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구주의 비율은 20.3%로 1차 본조사 응답가구의 45.3%의 1/2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3) 응답자 특성

가구원용 설문지 응답자의 특성을 1차 본조사 응답자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표 I-7>과 같다.

<표 I-7> 응답자 특성

구분	1차 본조사		1차 부가조사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전체	7,761	100.0	2,212	100.0
성별				
남성	3,547	45.7	972	43.9
여성	4,214	54.3	1,240	56.1
연령				
20대 이하	1,509	19.4	318	14.4
30대	1,577	20.3	282	12.7
40대	1,425	18.4	267	12.1
50대	1,139	14.7	306	13.8
60대	1,130	14.6	474	21.4
70대 이상	981	12.6	565	25.5

구분	1차 본조사		1차 부가조사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취업상태				
취업자	3,199	41.2	669	30.2
비취업자	4,562	58.5	1,543	69.8
학력				
초등학교 이하	1,143	14.7	631	28.5
중학교	703	9.1	340	18.4
고등학교	2,483	32.0	734	33.2
2년제 대학	572	7.4	131	5.9
4년제 대학	2,516	32.4	351	15.9
대학원석사 이상	344	4.4	25	1.1

응답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1차 부가조사의 여성응답자 비율은 56.1%로 1차 본조사의 여성응답자 비율인 54.3%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응답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1차 부가조사의 60세 이상 응답자 비율은 47.0%로 나타나 1차 본조사의 60세 이상 응답자 비율인 27.2%보다 확연히 높았다. 응답자의 취업여부를 살펴보면, 1차 부가조사 응답자 중 취업자 비율은 30.2%로 1차 본조사 응답자 중 취업자 비율 41.2%보다 낮았다. 응답자의 학력을 살펴보면, 1차 부가조사의 초등학교 이하 학력을 가진 응답자의 비율이 28.5%로 1차 본조사의 초등학교 이하 학력 응답자 비율 14.7%보다 확연히 높았고, 1차 부가조사의 2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의 비율은 22.9%로 1차 본조사의 2년제 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응답자 비율 44.2%의 1/2정도였다.

II. 저소득층의 나눔 행동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강철희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자선적 Civic Engagement의 한 형태인 나눔 행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의 Civic Engagement를 활성화시키면서 사회발전 및 건강한 사회의 유지에 기여한다(강철희, 2007). 또한 사회 구성원의 공동체 의식을 촉진시키면서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기부와 자원봉사를 포함하는 이러한 나눔 행동은 한 사회의 복지를 유지 및 증대시키기 위한 다섯 가지 사회복지제도인 자선(Charity and Philanthropy), 상호부조(Mutual Aid),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사회복지서비스(Social Service) 중에서(Handel, 1982) 가장 오래 전부터 존재해 오는 제도인 자선(Charity and Philanthropy)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부에 의한 복지제도가 발전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복지제도가 발전한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도 이러한 나눔 행동이 하나의 사회복지의 중요한 하위 영역으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다(Schervish & Havens, 1995a; 1995b; 1998; 2001; Wiepking, 2007). 한국의 경우도 이제 이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언론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문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증대 속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은 누가 과연 이러한 행동을 주도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가장 기초적인 그러나 가장 분명한 설명은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의 물질적인 준비가 되어있는 집단이라는 것이다(Wiepking, 2007). 이는 자신의 돈과 시간을 내어놓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부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종교적 기부를 제외한 자선적 기부의 수준에 해당 주체가 지닌

재정적인 자원이 미치는 영향은 논리적으로는 당연한 설명이다. 즉, 더 높은 수준의 소득과 더 많은 부의 축적은 더 많은 기부를 가능하게 한다(Auten & Rudney, 1990; Bekkers, 2004; Rooney, Steinberg, & Schervish, 2001; Schlegelmilch et al., 1997).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저소득층에 속한 이들의 나눔 행동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저소득층의 나눔 행동에 대한 보도를 빈번하게 들을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서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대상은 저소득층이다.

사실 자선적 행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소득 수준과 기부행동에 대한 일관적인 결론을 도출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자선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소득과 기부 참여율 간의 관계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Wiepking, 2007). 예를 들어, Rooney와 그의 동료의 연구(2001)와 Smith와 그의 동료의 연구(1995)에서는 소득 계층 별로 기부를 할 확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고 있으나, Regnerus와 그의 동료의 연구(1998)는 더 높은 소득 계층에 속한 사람들의 기부 참여율이 더 크다고 제시하고 있다.

소득 수준과 기부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논란은 Clotfelter와 Steuerle(1981)이 미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과 기부의 관계는 U자형 곡선을 보인다고 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U자형 곡선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중산층에 비해서 자신들의 소득에 대비하였을 때 더 높은 수준의 기부행동,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소득에 대비해서 더 높은 비중의 기부를 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뒤이어 발표된 다른 연구들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Jencks, 1987; Schervish & Havens, 1995a; 1995b; Hodgkinson & Weitzman, 1996; Andreoni, 2004; James & Sharpe, 2007). 즉 소득에 대비했을 때, 저소득층의 기부노력의 비중이 절대 고소득층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중산층에 비해서는 더 높다는 것이다.

한편, Hoge와 Yang(1994)의 연구는 미국 내 종교적 기부와 소득 간의 관계에 있어 저소득층일수록 그들 소득의 더 큰 비율을 교회에 기부한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이러한 역함수 관계는 미국 내 기부에 대한 다른 연구(Independent Sector, 2002; McClelland & Brooks, 2004)뿐 아니라 영국(Breeze, 2004)과 네덜란드(Wiepking,

2004)에서의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이렇게 소득 수준과 기부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다소 다른 결과 즉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상황 속에서도 아직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어떤 요인이 그들의 나눔 행동을 유도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Jencks(1987)와 Schervish 및 Havens(1995a)의 연구에서는 높은 수준의 기부는 종교성이 강한 저소득층에 의해 촉발된다고 보고 있으며, Andreoni(2004)는 상대적으로 아직 소득이 적은 젊은 연령층의 경우 미래에 그들의 소득이 향상될 것을 기대하기에 아직까지는 그들의 소득에 대비해 더 많은 비율을 기부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고 본다. 이에 대해 Wiepking(2007)은 저소득층의 높은 종교성이나 연령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기부를 고려할 만한 상황에 대한 규범적 기준(giving standard)이 소득층에 관계없이 동일하기에 같은 상황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기부 노력이 큰 것으로 계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저소득층의 나눔 행동에 관해 관심을 둔다. 특히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최저 생계비 200% 이하의 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나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며 관련된 사회복지적인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저소득층을 다양한 변인에 따라 세분화하여 어떤 변인이 그들의 물질 기부와 시간 기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러한 탐색을 통해서 현재 한국 사회 저소득층의 나눔 행동의 정도와 양상을 규명하고 향후 이들의 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대다수의 사회복지 연구 및 정책에서 저소득층은 국가의 복지 정책과 서비스의 수혜자로서 바라보는 관점이 많은데, 본 연구에서는 자선적 Civic Engagement의 주체로서 저소득층을 새롭게 조명해 보고자 한다. 한국사회 저소득층의 나눔에 대한 새로운 조명은 보다 균형 잡힌 사회를 향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연대와 결속의 관계를 공고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나눔 관련 이론적 배경

1) 나눔에 대한 기존 연구

① 나눔을 설명하는 이론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

특정 인구 집단인 저소득층의 나눔 행동을 설명하는 특별한 이론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보편적인 시각에서 시민의 나눔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을 크게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적 관점으로 나누어 정리해 본다.

가. 경제학적 관점

가-1. 공공재(Public Goods) 모형

경제학의 대표적인 이론인 공공재 모형에서 나눔의 행동은 순수한 이타주의자(Pure Altruist)의 행동으로 설명된다(Duncan, 1999 Handy & Katz, 2007). 이 시각에서 나눔의 목적은 나눔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으로서 공공재(Public Goods)의 공급을 제고시키면서 사회에 수혜를 가능한 한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이 실행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공공재(Public Goods) 모형에서 나눔의 행동은 공공의 선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순수한 이타성에 기반해서 실행된다는 설명으로 정리될 수 있다.

가-2. 소비(Consumption) 모형

소비 모형에서 나눔은 나눔의 행동에 의해서 얻어지는 “Warm Glow”와 같은 사적인 편익에 의해서 동기화되는 것으로 설명된다(Andreoni, 1990). 즉 이 모형에 의하면, 나눔을 행하는 개인은 나눔을 사회를 위해서 제공하면서 사적인 편익인

'Warm Glow' 혹은 자신의 경력에서의 다양성 강화 혹은 인류를 위한 애정의 표시 등을 가질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동기 요인에 위해서 나눔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모형에서는 나눔을 행하는 이들은 순수하지 않은 이타주의자(Impure Altruist)로 여긴다.

가.-3. 항상소득 가설

항상소득 가설은 Friedman(1957)이 제창한 이론으로, 각 소비자가 매 시점 벌어들이는 소득은 변동할 수 있으나, 소비는 생애 소득(life-time income)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다(Friedman, 1957; 지은정, 2007에서 재인용). 나눔은 이러한 일정한 소비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이론을 통해 기부 행동을 하는 경제주체의 인구학적인 특성과 재정적인 특성을 고려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김유나, 2002). 핵심적 논의는 자신의 향후 재정 상황에 대해 낙관적일수록 나눔과 관련된 지표가 증가할 것이란 것이다. Drolinger(1995)의 연구와 Drolinger 및 Johnson(1995)의 연구는 이 가설을 이용하여 나눔 행동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가-4. 비용 편익 모형

비용 편익 모형은 경제주체가 자신에게 주어진 한정된 비용을 자신의 편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동을 설명할 때 사용된다. 그는 자신이 기대하는 편익을 자신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비용과 비교하여 행동을 한다. 이 모형을 사회적 관계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가치의 교환에 초점을 두면 나눔 행동에 적용해 설명할 수 있다(Andreasen & Kotler, 2008). 즉 나눔 행동을 행하는 편익이 비용에 비해서 더 높을 경우, 경제주체는 그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나. 사회학적 관점

나-1. 친사회적 행동 이론

Dovidio(1984)는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 의해

가치 있다고 평가되는 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김유나, 2002에서 재인용). Eisenberg(1986)의 연구에서는 이를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원조 행위라고 규정한다. 김유나(2002)의 연구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을 행동의 동기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으로 이해한다. 친사회적 행동 이론에서는 개인의 친사회적 행동 성향은 나눔 행동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지닐 수 있다고 본다. 즉 친사회적 행동성향이 높을수록 기부나 자원봉사와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2.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은 개인이 자신과 접촉하는 사람들과 사물의 의미에 근거하여 현실을 구성한다는 사회심리학적 이론이다(Manis & Meltzer, 1978; Reynolds et al. 2003에서 재인용). 인간은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자신의 원 가족에서부터 점차 사회 전반의 일반적인 타인에게로 확산시킴으로써 사회 전반의 가치, 규범, 지식, 태도 등을 습득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실체를 형성하고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 이론은 앞서 살펴본 친사회적 행동 이론과 연계될 수 있기도 하다(Burnett & Wood, 1988). 즉 인간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이 속한 사회의 규범을 수용하고 친사회적 행동으로 규정된 역할을 학습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이론을 적용할 때, 개인이 기부 또는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동기 혹은 행동은 상호작용을 통한 가치 및 규범 혹은 태도의 수용에 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이론은 Wiepking(2007)의 저소득층의 나눔 행동에 대한 연구와 연결시킬 수도 있는데, 저소득층의 기부 행위를 설명하는 근거로 제시된 '기부를 고려할 만한 상황에 대한 규범적 기준(giving standard)'이 어떻게 작용되는 것인지를 설명해 준다.

나-3. 사회학습이론

사회학습이론은 Bandura(1977)에 의해 제창된 이론으로 인간의 모든 심리적 기능은 개인과 환경적 요인의 지속적 상호작용의 관점에 근거해서 접근할 때 파악되

고 설명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해서, 이 이론에서는 인간의 친사회적 행동이란 것이 외적 강화 없이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여 학습하는 능동적인 방법을 통해 획득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시각에 근거해서 자녀에게 부모의 기부 및 자원봉사 행동이 미치는 영향력 혹은 주변의 중요한 타인에 의해서 행해지는 나눔 행동에 대한 파급효과를 설명하기도 한다.

다. 심리학적 관점

다-1. 자기 확장 이론

자기 확장 이론은 개인이 성장과 발달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스키마에 통합시킨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론이다(Allport, 1937). Allport(1937)는 자기 확장이란 것은 개인의 심리적 성숙의 일부분인 것으로 보았는데, 이러한 확장은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와 욕구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시기인 후기 청년기가 되어서야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Belk(1988)의 연구는 자기 확장이 다른 사람들로만 한정되지 않고 가족, 집단, 국가, 하위문화, 그리고 개인이 동일시 할 수 있는 조직까지도 포괄되고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의 설명에 기초할 때, 기부와 자원봉사를 포함한 자선적 Civic Engagement는 확장된 자아라 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사회에까지 공익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행동, 즉 자아의 확장에 근거한 행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

② 나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관한 선행 연구

가. 인구사회학적 변수

가-1. 가구소득

소득수준은 거의 모든 연구에서 나눔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이다. 그러나 저소득층 내의 소득수준의 차이에 따른 차별화된 행동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특정 소득계층이 아닌 보편적인 소득군을 대상으로 하여 소득수준의 영향력을 고찰한 연구를 정리하고자 한다. Havens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소득수준과 기부 간에 유의미한 정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한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소득의 증가가 필연적으로 기부 규모의 증대로 이어지는 뚜렷한 선형적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음을 보고하기도 한다(Hodgkinson & Weitzman, 1996; McClelland & Brooks, 2004; Schervish & Havens, 1995a). 또한,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에서 기부 행동, 특히 그 중에서도 기부 노력(Philanthropic Effort)이 가장 높게 나타남을 보고하는 연구결과, 즉 U자 형태의 관련성을 보고하는 연구결과도 있으며(Hodgkinson & Weitzman, 1996; Schervish & Havens, 1995a; James & Sharpe, 2007), 높은 소득수준을 갖는 경우 기부의 경향성이 감소하는 형태 즉, 기울기가 부적인 방향으로 하향 직선 형태를 갖는다고 밝힌 연구도 있다(Wiepking, 2004; Wilhelm et al., 2008).

소득과 자원봉사 간의 관계를 고찰한 선행 연구의 결과 역시 일관적이지 않다. 소득은 자원봉사 참여와 정적인 관계가 보고되기도 하고, 부적인 관계 혹은 유의한 관계가 없다고 보고되고 있다. 주영길(1987)과 홍승혜(1995)의 연구에 의하면, 자원봉사자의 80%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중산층으로 지각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소득과 자원봉사 간의 정적인 관계를 제시한다. 반면, Freeman (1997)은 두 변인 간의 부적인 관계가 존재함을 밝히며, 기회비용은 소득에 따라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소득이 높아질수록 사회를 위한 봉사를 위해 투여되는 노력은 감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Kang(2007)은 두 변인 간의 관계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의 나눔 행동이라는 것에 소득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하는데, 보고자 하는데, 이렇게 제한된 인구에 초점을 두는 방식의 검증은 그 필요성이 크다 할 수 있다.

가-2. 종교성

종교 활동과 나눔 행동의 관련성을 논할 때, 일반적으로는 종교적 배경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기도 하나 최근에는 종교보다도 종교와 관련된 실제적인 활동을 반영하는 개념인 '종교성'에 초점을 두고 나눔 행동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데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종교 기관들은 직접적으로 사회복지관련 활동을 전개해 왔을 뿐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의 하나로 각 종교조직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을 통해 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하면서 중요한 자원 제공처로 기능해 오고 있다(강철희 외, 2009). 일반적으로 종교 조직은 자원봉사, 현금 기부, 그리고 지역사회 원조 등 여러 가지 친사회적 행동을 장려한다. 또 역사적으로 볼 때, 거의 모든 주요 종교는 구성원의 사회 참여 및 공익을 위한 구성원의 나눔의 책임을 강조하고 나눔의 실천을 동기화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사회복지활동을 수행해 왔다(Cnaan et al., 1999; Wuthnow & Hodgkinson, 1990; 강철희 외, 2009에서 재인용). 따라서 종교 활동은 나눔 행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외의 많은 선행 연구에 의하면, 종교를 가진 시민의 경우 그렇지 않은 시민에 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눔 행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Independent Sector, 1994; 2002; 볼런티어21, 1999; 2002; 2005; 2008 등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05). 또한 많은 선행 연구에서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 즉 종교성과 기부 간에 정적인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ekkers, 2003; Bekkers & Schuyt, 2005; Brown & Ferris, 2007; Feldman, 2007; Van Slyke & Brooks, 2005). 그러나 Lyons & Passey(200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종교 활동의 참여 정도 즉 종교성과 기부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성이 없거나 오히려 부적인 관계성을 가진다고 보고하며, Marx(2000)의 연구에서도 종교 활동에의 참여와 기부 간의 관계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기도 한다. Wiepking(2007)의 연구를 비롯한 일부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의 나눔 행동, 구체적으로는 기부를 설명하기 위해 종교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검증해 보는데, 본 연구에서도 종교성을 저소득층의 나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예측 변인으로 설정하여 그 영향력을 탐색해 보고자 하는데, 저소득층에서의 종교적인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의 의미는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가-3. 성별

기존의 관련 연구에서는 성별과 나눔 행동 간의 다양한 관계가 존재함을 보고한다. 친사회적 행동의 차원에서 전반적인 나눔 행동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난다(Andreoni et al., 2003; Belfield & Beney, 2000; Van Slyke & Brooks, 2005). 그러나 기부의 경우 절대적인 규모는 남성이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다(Andreoni et al., 2003; Bekkers, 2004; Jackson & Latane, 1981; Lyons & Passey, 2005). 또한 남성의 기부가 여성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밝힌 연구도 있다(Chang, 2005; Marx 2000; Okunade, 1996). 한편 Jencks(1987)의 연구에서는 기부와 관련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고하기도 한다. 국내 연구들에서도 그 결과가 상이했는데, 남성들의 기부 규모가 여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된 연구도 있는 반면(황창순 & 강철희, 2002), 기부 참여율은 여성이 높지만 기부 규모는 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는 연구도 있다(황창순, 2001).

자원봉사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Freeman(1997)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자원봉사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히는데, 이러한 결과는 국내의 선행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한국여성개발원, 1995; 홍승혜, 1995; 홍은진, 2006; 강철희 외, 2009에서 재인용).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자원봉사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고하기도 한다(박태규, 2004).

다양한 결과가 제시되는 선행 연구의 결과에 주목하며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나눔 행동에서의 차이가 저소득층의 경우에도 나타나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하는데, 이렇게 저소득층에 한정해서 성별의 영향력을 살피는 것의 의미는 크다고 생각된다.

가-4. 연령

나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 가운데 연령은 가장 일반적으로 다루어지는 변인 가운데 하나이다. 연령과 기부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는 연구자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연령과 기부의 관계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맥락에 의해서 그 관계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강철희, 1998). 어떤 연구에 의하면, 연령이 기부와 정적인 관련성을 지님을 확인할 수 있다(Putnam, 2000; Van Slyke & Brooks, 2005). 이러한 연구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경제적으로 안정되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인 기부를 하는 것으로 보고한다. 다른 일부 연구에서는 그 관계가 비선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기도 하는데, 일정 연령까지는 연령과 함께 기부가 증가되다가 일정 연령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힌다(Andreoni, 2001; Hodgskinson & Weitzman, 1996). 한편 이렇게 상이한 결과들에 주목해서 연령과 기부의 뚜렷한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는 연구도 있다(Rooney, Steinberg, & Schervish, 2001).

자원봉사에 있어서도 일관된 결과가 제시되지는 않고 있다. 조휘일(1991)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타적 행위와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며 자원봉사에의 참여도 증가한다고 보고한다. 홍은진(2006)은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로 진입하는 시기의 참여율은 감소하고 중년기에 이르러 가장 높은 비율의 참여를 보인다고 보고하기도 한다. Freeman(1997)은 연령과 자원봉사 간의 관계가 비선형적 관계를 보이며 일정 연령 이후에는 참여가 감소하는 관계를 갖는다고 보고한다. 강철희(2003)와 박태규(2004)의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자원봉사의 참여 및 참여수준에서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과 나눔 행동의 관련성에 대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그 실체가 어떠한지를 실증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하는데, 저소득층에 한정해서 연령이 자원봉사는 기부에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지를 살피는 것은 관련 지식의 확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가-5. 교육수준

나눔과 관련된 교육의 효과 역시 다양하다. 일부 선행 연구에서는 교육수준과 기부 사이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ekkers, 2004; Brown & Ferris, 2007; Wilhelm et al., 2008). 그러나 다른 일부 연구들에서는 교육수준과

기부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다(Marx, 2000; Regnerus, Smith, Sikkink, 1998). 한편 자원봉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교육이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고하는 연구가 과거에는 많았으나(McPherson & Rotolo, 1996; Sundeen & Raskoff, 1994), 이러한 결과는 지속적으로 일관적이지는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과 나눔 행동의 관련성에 대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그 실체가 어떠한지를 실증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하는데, 저소득층에 한정된 교육수준의 영향력에 대한 검증은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가-6. 가구크기

나눔 행동에 대해 가구의 크기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기존 연구 간 상이한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구의 크기는 그 가구 내의 자녀의 수로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많은 연구에서 가구 내 자녀 수는 나눔 행동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uten et al., 1992; Auten & Rudney, 1990; Banks & Tanner, 1999; Carroll et al., 2006; Hoge & Yang, 1994; Jencks, 1987). Yen(2002)의 연구와 Hrung(2004)의 연구에서는 가구의 크기가 종교적인 기부에는 정적인 영향력을 가지나, 자선적인 기부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고한다. Brown과 Ferris(2007), Brooks(2005)의 연구에서는 종교적 기부에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자선적 기부에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보고한다. 가구의 크기가 나눔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다수 제시되고 있다(Barrett, 1991; Brooks, 2002; Duncan, 1999; Feldman,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크기와 나눔 행동의 관련성에 대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그 실체가 어떠한지를 실증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하는데, 이러한 시각에서의 검증은 새로운 지식축적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가-7. 건강상태

나눔 행동과 건강상태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많지는 않다. 현재까

지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더 많은 나눔 행동, 특히 자원봉사행동을 하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Bekkers, 2006; Bekkers & De Graaf, 2006). 한국사회 저소득층의 경우, 나눔행동을 실천하는데 있어 이들의 건강상태가 어떠한 영향력을 지니는지를 검증해 보는 것은 지식의 축적차원 이외에도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8. 행복감

개인의 나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행복감은 대표적인 내적 동기로 파악된다. 경제학에서는 행복감과 관련해서 'Warm Glow'의 시각에서 설명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Andreoni, 1989). 즉 나눔의 결과 가질 수 있는 따뜻하고 긍정적인 느낌을 위해 나눔 행동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나눔 행동은 개인의 마음을 편하고 따뜻하게 한다는 것인데, 최근에는 나눔과 행복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Harbaugh et al., 2007). Batson과 Shaw(1991)은 타인을 돕는 행동이 '공감적 기쁨(Empathic Joy)'이라는 긍정적 심리 상태를 갖게 함을 보고하면서, 바로 이러한 공감적 기쁨을 위해서 나눔의 행동이 실천된다고 설명한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저소득층의 경우, 나눔의 원인으로 과연 행복의 정도가 어떠한 영향력을 지니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하는데, 저소득층이라는 인구대상층에 제한하여 이러한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관련 지식의 확장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9. 고용여부

일을 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 간 나눔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제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자가 비취업자에 비해서 더 많이 나눔 행동을 한다는 연구가 제시되고 있다(Chang, 2005; Eschholz & Van Slyke, 2002; Feldman, 2007). 그러나 Schervish와 Havens(1997)의 연구에서는 은퇴한 개인이 현직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기부를 한다고 보고를 한다. 즉 기부의 규모 측면에서 은퇴자들의 영향력이 크다는 보고를 하는데, 종속변수의 설정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현상이라고 여겨진다. 즉 자원봉사를 종속변수로 할지, 기부예의 일반적 참여로 한정할지, 혹은 기부규모로 한정할지 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 Feldstein과 Taylor(1976)의 연구에서는 취업자와 비취업자 간 나눔 행동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고한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에 한정해서 그들의 고용상태가 나눔에 어떠한 영향력을 지니는 지를 검증해 보고자 하는데, 이러한 시각 역시 새로운 지식의 축적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가-1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유무는 이전의 나눔 행동 관련 연구에서 간헐적으로 고려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이다. 그 이유는 혼인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이웃과 사회에 대한 관점이 더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서 더 많이 나눔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보고 되고 있다(Auten et al., 1992; Auten & Rudney, 1990; Barrett, 1991; Brooks, 2005; Eschholz & Van Slyke, 2002; Feldman, 2007; Jencks, 1987; Regnerus et al., 1998; Rooney et al., 2005; Wilhelm et al., 2008). 그러나 두 변인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연구도 많다(Bryant et al., 2003; Carroll et al., 2006; Clotfelter, 1980; Hodgkinson & Weitzman, 1996). Rooney와 그의 동료의 연구(2004)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개인이 없는 개인에 비해 더 많이 기부에 참여하나 기부 금액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도 보고한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에 한정해서 그들의 배우자 유무의 상태가 나눔에 어떠한 영향력을 지니는 지를 검증해 보고자 하는데, 이러한 시각 역시 새로운 지식의 축적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가-11. 가구형태

기존의 연구에서는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등의 가구형태가 나눔의 행동에 대해 갖는 영향력에 대해 실증적인 검증을 행하진 않았다. 그 이유는 이러한 가구형태가 갖는 의미가 일반 시민의 가구에서는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구성에서 이러한 가구의 형태가 보다 큰 규모를 차지할 수 있

기 때문에, 이러한 가구 구성 형태의 영향력을 일반가구와 대비해서 살펴보는 것은 새로운 지식의 축적차원에서 다소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12. 거주지역

거주지역과 나눔 행동의 관계와 관련해서 이전의 선행 연구에서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크기나 도시화의 수준을 주요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다. 몇몇 연구에서 거주지역의 크기는 나눔 행동과 부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Bekkers, 2006; Putnam, 2000). 반면 Regnerus와 그의 동료의 연구(1998)에서는 보다 큰 규모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기부를 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더 다양한 기부 대상 즉 사회문제 등에 노출되거나 이와 관련된 참여를 더 빈번하게 요청받을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Andreoni와 Scholz(1998)의 연구에서도 도심에 거주할수록 기부 금액이 늘어남을 보고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 한정해서 그들의 거주지역에 따라 나눔 행동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하는데, 이러한 시각 역시 새로운 지식의 축적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나. 심리사회적 요인

나-1. 신뢰

신뢰와 관련해서는 이를 어떠한 개념적 측면에서 정의했는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다. 신뢰를 다양한 사회 구성체에 대한 지지의 측면에서 정의하는 연구(Sargeant & Lee, 2004)도 있고, 전반적인 사회적 신뢰의 측면에서 정의하는 연구(Bekkers, 2003; Brooks, 2005)도 있다. 다양한 사회 구성체를 대상으로 한 신뢰와 관련해서, Sargeant 와 Lee(2004)는 자신이 기부하고자 하는 조직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해당 조직과의 관계에 대한 헌신을 촉발하고 이는 궁극적으로는 기부의 지속과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한다. 전반적인 사회적 신뢰 측면에서 신뢰를 개념화한 Bekkers(2003)는 신뢰와 기부 간의 관계에서 신뢰가 기

부의 독립변수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보고하며, Brooks(2005) 역시 유사한 결론, 즉 종교적 기부와 세속적 기부 모두에서 사회에 대한 신뢰가 기부 행동에 정적인 방향에서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보고한다.

Uslaner(1998; 2002)는 신뢰와 Civic Engagement 간에는 단순한 일방적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 순환적 쌍방향적 인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강철희(2007)와 강철희 외(2009)는 우리 사회와 사회를 구성하는 타인에 대해 신뢰가 높은 사람들은 신뢰가 낮은 사람들에 비해 기부와 자원봉사를 위해 더 많이 하며, 동시에 이러한 형태의 신뢰는 기부와 자원봉사 등에 의해서 더욱 견고하게 형성되고 강화되어지는 쌍방향적 관계를 지닐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한편 Bekkers(2004)와 Brown 과 Ferris(2007)는 사회적 자본의 한 요소인 사회에 대한 신뢰가 자원봉사에도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신뢰와 나눔 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검토한 결과, 기본적으로 신뢰는 나눔 행동에 매우 중요한 변수일 수 있으나, 신뢰를 어떻게 개념화하는가에 따라서 그 관계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의 주요 기관들에 대한 신뢰의 수준으로 신뢰를 개념화하고, 저소득층의 경우 이러한 신뢰가 나눔 행동에 대해 지니는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서울시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실증적 검증은 저소득층이 사회에 갖는 신뢰가 나눔 행동에 대해서도 어떤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연구질문 및 연구모형

1) 저소득층 시민의 나눔 행동에 대한 연구 질문

선행 연구를 통하여 개인의 나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변인을 탐색해 보았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변인이 서울에 거주하는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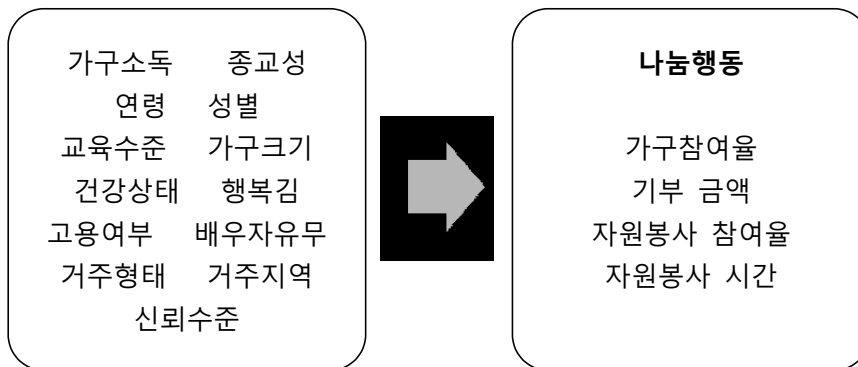
을 가진 계층 즉 저소득층의 나눔 행동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연구관심에서 본 연구는 다음의 그림 1에서 정리하는 바와 같은 연구모형을 구축해 보았고, 연구 모형 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하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연구질문 1. 모형에 포함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할 때, 저소득층 시민의 가구소득은 나눔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질문 2. 모형에 포함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할 때, 저소득층 시민의 종교성은 나눔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질문 3. 모형에 포함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할 때, 저소득층 시민의 연령은 나눔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질문 4. 모형에 포함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할 때, 저소득층 시민의 성별에 따라 나눔 행동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질문 5. 모형에 포함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할 때, 저소득층 시민의 교육수준은 나눔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질문 6. 모형에 포함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할 때, 저소득층 시민의 가구크기가 나눔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질문 7. 모형에 포함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할 때, 저소득층 시민의 건강상태는 나눔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질문 8. 모형에 포함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할 때, 저소득층 시민의 행복감은 나눔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질문 9. 모형에 포함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할 때, 저소득층 시민의 고용여부에 따라 나눔 행동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질문 10. 모형에 포함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할 때, 저소득층 시민의 배우자 유무에 따라 나눔 행동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질문 11. 모형에 포함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할 때, 저소득층 시민의 거주형태에 따라 나눔 행동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질문 12. 모형에 포함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할 때, 저소득층 시민의 거주지역에 따라 나눔 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질문 13. 모형에 포함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할 때, 저소득층 시민의 사회에 대한 신뢰수준은 나눔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모형



[그림 1] 연구 모형

4. 연구방법

1) 변수의 구성과 측정

① 종속변수의 구성과 측정

가. 기부 관련 종속변수 : 기부 참여율과 기부 금액

기부 참여율은 지난 한 해 동안 현금기부, 현물기부 등의 물질적 기부를 한 경험 이 있는지를 이분형 응답(있다 또는 없다)을 통해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기

부는 현금기부와 현물기부를 합친 물질적 기부(강철희, 2007)로 규정해서 파악한다. 기부 금액은 지난 한 해 동안 기여한 총 기부 금액을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물품을 기부한 경우에는 이를 현금 가치로 환산하여 측정하도록 하였다.

기부 금액의 경우, ① 종교단체를 통한 사회복지기관이나 불우이웃돕기 현금(단, 종교적 현금 및 보시 등은 제외함), ② 자선단체(재해긴급구조 및 불우이웃돕기, 사회복지 기관, 모금구조단체 등)을 위한 기부를 비롯하여 ③ 해외 구호를 위한 기부, ④ 교육기관, ⑤ 의료기관, ⑥ 문화예술단체, ⑦ 환경 및 동물보호단체를 위한 기부, ⑧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 ⑨ 직계가족을 제외한 친척, 친구 및 가까운 이웃 등 지인을 위한 기부, ⑩ 알지 못하는 길가의 부랑인, 노숙인 등을 위한 기부, ⑪ 정치적 목적(선거, 정치단체, 정치인 등)을 위한 기부, ⑫ 기타 기부로 나누어서 그 규모를 측정하였는데, 총 기부 금액은 이들 문항을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나. 자원봉사 관련 종속변수 : 자원봉사 참여율과 자원봉사 시간

자원봉사 참여율은 지난 한 해 동안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지를 이분형 응답(있다 또는 없다)을 통해 측정하였다. 자원봉사 시간의 파악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다양한 자원봉사 대상에 대한 총 참여횟수와 1회 평균 봉사활동 시간을 측정하였는데, 바로 이 두 변수를 곱하여 총 자원봉사시간을 측정하였다.

자원봉사 시간의 경우, ① 종교단체를 통해 사회복지기관이나 불우이웃을 돕는 활동(단, 종교단체를 위한 봉사활동은 제외), ② 종교단체를 위한 봉사활동, ③ 자선단체를 위한 자원봉사, ④ 해외구호를 위한 자원봉사, ⑤ 교육기관, ⑥ 의료기관, ⑦ 문화예술단체, ⑧ 환경 및 동물보호단체를 위한 자원봉사, ⑨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⑩ 직계가족을 제외한 친척, 친구 및 가까운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 ⑪ 알지 못하는 길가의 부랑인, 노숙인 등을 위한 자원봉사, ⑫ 정치적 목적(선거, 정치단체, 정치인 등)을 위한 자원봉사, ⑬ 기타 자원봉사가 그 하위 분야이다.

② 독립 변수의 구성과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예측 변인 즉 독립변수는 다음에서 보고되는 바와 같은 구성과 측정 방식을 갖는다. 먼저 가구소득의 경우, 월평균 총 가구소득을 의미하는데 이는 연속형 변수의 형태로 측정하였다. 분석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이라 할 지라도 차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자연로그를 취해 사용하였다. 종교성은 종교 단체의 활동이나 모임에서의 적극성으로 구성되는데, 다음과 같은 5점 리커트 척도의 단일 문항(①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② 대체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③ 보통 수준으로 활동하는 편이다, ④ 별로 활동하지 않는다, ⑤ 전혀 활동하지 않는다)을 통해 측정하였다. 분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연령의 경우 19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하고 그 이상인 연령층을 5세 간격으로 쪼개어 16개의 연령 범주로 구성해서 측정한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성별은 명목 척도로 질의된 문항을 남성은 0, 여성은 1의 더미변수로 재코딩하여 측정하였다. 교육수준은 최종 학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범주형 문항에 대해서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의 3수준으로 재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이어서 가구크기는 가구원 수로 구성되는데, 이는 본 문항 그대로 5개의 보기(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이상)로 측정되었다. 건강상태는 평소 자신의 건강 상태를 묻는 5점 리커트 척도의 단일 문항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분석과정에서의 해석의 일관성을 위해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행복감은 생활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느낌을 1에서 10까지의 정도(① 매우 불행하다 ~ ⑩ 매우 행복하다)로 구성해서 측정하는데, 이렇게 측정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고용여부는 이분형 문항을 미취업자는 0, 취업자는 1의 더미변수로 재코딩하여 사용하였다. 배우자 유무도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0, 있는 경우를 1로 재코딩하여 측정하였다. 가구형태는 원래 ① 일반가구, ② 노인가구, ③ 장애인가구로 구성되었는데 이를 일반가구를 기준으로 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를 더미변수로 만들어 측정하였다. 거주지역의 경우에는 권역)으로 나누어진 문항으로 구성되는데, 즉 ① 도심권(중구, 종로구, 용산구), ② 동북권(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

구), ③서북권(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④ 동남권(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⑤ 서남권(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등으로 구성되는데, 분석에서는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예상되는 동남권 지역(강남지역)만 1로 하고 나머지 지역은 0으로 재코딩하여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신뢰와 관련해서, 신뢰를 다양한 사회 구성체에 대한 긍정적 이해로 개념화하는 방식(Sargeant & Lee, 2004)을 따라 이러한 방향에서 총 16개 사회 구성체에 대한 문항(①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② 시민단체, ③ 문화예술단체, ④ 자선단체, ⑤ 교육기관, ⑥ 의료기관, ⑦ 종교기관, ⑧ 노동조합, ⑨ 정당, ⑩ 이익단체 및 경제인단체, ⑪ 대기업, ⑫ 중소기업, ⑬ 중앙정부, ⑭ 지방정부, ⑮ 사법기관, ⑯ 언론기관)으로 나누어 5점 리커트 척도(① 매우 신뢰한다, ② 어느 정도 신뢰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을 통해 신뢰가 측정되는데, 본 연구는 이 중에서 나눔에 특히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성체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자선단체, 종교기관, 정당, 대기업, 중앙정부, 언론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만을 포함시켜 각각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였다. 신뢰척도는 분석의 용이성과 일관성을 위해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2) 분석자료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2010년에 서울시복지재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2010 서울시 복지패널 부가조사'의 가구용 데이터와 가구원용 데이터이다. 즉 본 연구는 두 데이터를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이 조사는 기본적으로는 2009년에 실시된 '서울시 복지패널조사 서울시 복지패널조사는 2008년 11월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25개 구의 일반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가구와 해당가구의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층화집락추출법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였다.'에서 응답한 3,665가구 중 2009년 기준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가구 및 해당 가구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에 더해서 각 지역별로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새로운 대상자를 포괄해서 2010년 1월 8일부터 2월 2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본 자료를 위한 관찰

방식은 인터뷰인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컴퓨터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CAPI :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방식이 활용되었다.

본 연구의 최종분석 즉 다변인분석을 위해 사용된 유효 표본은 2030명이었다. 원 데이터의 2212명 중, 20세 미만인 157명을 제외하고 서울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4명을 제외했으며 연 가구소득 0원으로 입력되어 자연로그 값을 계산할 수 없는 21명이 제외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된 자료의 속성을 간략히 보면, 여성(56.59%)의 비율이 남성(43.41%)보다 많았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은 약 13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PASW Statistics 18.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Stata SE 10.0을 사용하여 Probit 분석과 Tobit 분석을 실행하였다. 우선, 저소득층의 나눔 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및 현황의 파악, 그리고 각 변수의 속성에 대한 파악을 위해 기술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기부 참여율 및 자원봉사 참여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탐색을 위해 Probit 분석을 실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부 금액 및 자원봉사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탐색을 위해서 Tobit 분석을 실시하였다.

5. 연구결과

1) 각 변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 결과

① 종속변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 결과

<표 II-1> 종속변수 및 관련변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 결과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평균(M)	표준편차(S.D)
기부 참여율 (N=2055)	참여	213	10.4	-	-
	비참여	1842	89.6		
자원봉사 참여율 (N=2055)	참여	122	5.9	-	-
	비참여	1933	94.1		
*기부 정기성 (N=213)	정기적	62	29.1	-	-
	비정기적	151	70.9		
*자원봉사 정기성 (N=122)	정기적	70	57.4	-	-
	비정기적	52	42.6		
기부 금액 (N=2055)	-	-	-	1.9869	16.9966
자원봉사 시간 (N=2055)	-	-	-	7.0832	90.0831
*기부 노력 (N=630)	-	-	-	0.0023	0.0247

종속변수 및 관련변수(기부 및 자원봉사의 정기성과 기부노력)에 대한 기술적 분석의 결과는 <표 II-1>에서 정리되는 바와 같다. 먼저 기부 참여율의 경우 전체 2055명 중에서 213명(10.4%)이 지난 한 해 동안 기부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를 행한 경험이 있는 저소득층 시민들 중 얼마나 정기적으로 기부에 참여하고 있을까? 위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부 경험이 있는 저소득층 시민 가운데서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는 개인은 62명으로 기부를 행하는 저소득층 시민 중

의 29.1%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연간 총 기부 금액의 평균은 약 2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준편차가 약 17만원인데, 이는 기부에 참여하지 않는 89.6%를 고려할 때 기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의 기부규모는 작지 않음을 시사해 준다. 한편 기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시민의 기부 노력(Philanthropic Efforts) 기부 노력은 소득 대비 기부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월평균 소득을 통해 산출한 연간 개인의 총 소득을 연간 총 기부 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측정하였음을 밝힌다. 수준을 살펴보면, 조사 대상 가운데 월평균 소득을 응답한 630명만을 고려했을 때 기부 노력은 약 2.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대한 결측치가 많아 쉽게 일반화할 수는 없긴 하나, 저소득층 시민 중 적극적으로 기부활동을 전개하는 이들의 영향으로 기부노력이 약 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원봉사 참여율의 경우 전체 2055명 중에서 122명(5.9%)이 지난 한해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소득층 시민의 자원봉사에의 참여는 기부참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의 정기성을 살펴보면, 지난 2009년 한해 동안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개인 가운데에서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행한 저소득층 시민은 70명으로 자원봉사 참여자의 57.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사람은 기부 경험이 있는 사람에 비해 그 양적인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질적인 측면인 정기성의 측면에서는 기부의 정기성이 29.1%인 것에 비해 2배에 가까운 정기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자원봉사 시간의 평균은 약 7.1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 금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표준편차가 약 90.1시간으로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는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94.1%를 고려할 때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의 자원봉사활동의 적극성 즉 자원봉사에 임하는 시간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② 독립 변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 결과

예측 변인 즉 독립변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의 결과는 <표 II-2>에서 정리되는

바와 같다. 먼저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평균은 약 133만원이고 표준편차는 약 7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의 최대값은 41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저생계비 200% 이하에 속하면서 가구원 수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종교성의 경우, 전혀 활동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58.7%에 이르고 별로 활동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18.5% 정도로서 대체적으로는 종교적 적극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70세 이상의 노인층이 27.5%로 가장 많고 60대(23.1%), 50대(14.9%)의 순인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 시민의 연령 구성에서 대체로 연령대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별의 경우, 여성(56.6%)이 남성(43.4%)보다는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 수준의 경우, 중졸 이하(45.5%), 고졸(30.7%), 대학재학 이상(23.7%)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시민의 교육수준과 비교할 때 대체적으로 저소득층 시민의 교육 수준은 더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을 포함한 전체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2009년 서울복지패널 조사의 경우 중졸 이하(23.8%), 고졸(32.0%), 대학재학 이상(44.2%)로 나타났다.

<표 II-2> 독립 변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 결과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평균(M)	표준편차(S.D)
가구소득 (N=2034)	-	-	-	133.1132	75.9425
종교성 (N=2055)	전혀 활동 안 함	1207	58.7	-	-
	별로 활동 안 함	381	18.5		
	보통 수준	207	10.1		
	대체로 적극적	163	7.9		
	매우 적극적	1933	94.1		
연령 (N=2055)	20대	161	7.8	-	-
	30대	282	13.7		
	40대	267	13		
	50대	306	14.9		
	60대	474	23.1		
	70세 이상	565	27.5		
성별 (N=2055)	남성	892	43.4	-	-
	여성	1163	56.6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평균(M)	표준편차(S.D)
교육수준 (N=2055)	중졸 이하	936	45.5	-	-
	고졸	631	30.7		
	대학재학 이상	488	23.7		
가구크기 (N=2055)	1명	271	13.2	-	-
	2명	685	33.3		
	3명	477	23.2		
	4명	404	19.7		
	5명 이상	218	10.6		
건강상태 (N=2055)	아주 좋지 않음	206	10	-	-
	건강하지 않은 편	560	27.3		
	보통 수준	481	23.4		
	건강한 편	646	31.4		
	매우 건강함	162	7.9		
행복감 (N=2055)	-	-	-	6.1377	1.6963
고용여부 (N=2055)	취업자	661	32.2	-	-
	미취업자	1394	67.8		
배우자유무 (N=2055)	있음	1287	62.6	-	-
	없음	768	37.4		
가구형태 (N=2055)	일반가구	870	42.3	-	-
	노인가구	906	44.1		
	장애인가구	279	13.6		
거주지역 (N=2051)	동남권	242	11.8	-	-
	도심권	219	10.7		
	동북권	804	39.2		
	서북권	201	9.8		
	서남권	585	28.5		
신뢰 수준 (N=2055)	사회복지단체	-	-	3.38	0.814
	자선단체			3.43	0.796
	종교기관			3.3	0.847
	중앙정부			2.97	0.864
	정당			2.55	0.855
	대기업			2.93	0.872
	언론기관			2.94	0.822

가구원 수는 2인 가구(33.3%), 3인 가구(23.2%), 4인 가구(19.7%)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경우도 13.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와 관련해서는,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1.4%로 가장 높고, 건강하지 않은 편(27.3%), 보통 수준(23.4%)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감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중간 수준보다 다소 더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즉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약 6.14점의 평균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용여부를 살펴보면, 취업한 경우는 전체의 32.2%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를 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37.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의 경우에는 노인가구(44.1%)와 일반가구(42.3%)가 대다수를 차지했고, 장애인가구도 13.6%를 차지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과 관련해서는 본 연구에서 기준범주로 삼고 있는 동남권(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에 거주하는 시민은 전체의 11.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8개 구를 포함하고 있는 동북권(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이 39.1%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이어서 7개 구를 포함하고 있는 서남권(28.5%;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의 비율이 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자선단체, 종교기관, 중앙정부, 정당, 대기업, 언론기관 등에 대한 서울시 저소득층의 신뢰 수준은 대체로 중간점수인 3점을 기준으로 나뉘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선단체에 대한 신뢰 수준의 평균은 3.4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3.38), 종교기관(3.30)이 중간점수인 3점보다 높게 나타나는 반면, 정당(2.55), 중앙정부(2.97), 대기업(2.93), 언론기관(2.94)에 대한 신뢰 수준은 중간점수인 3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특히 정당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위에서 제시된 기관들에 대한 신뢰수준과 더불어 시민단체, 교육 및 의료기관, 문화예술단체, 노조, 이익단체, 지방정부, 중소기업, 사법기관 등의 모든 조사대상 사회구성체에 대한 신뢰 수준은 5점 리커트 척도에서 전체 평균이 3.06, 표준편차는 .56 정도로 대체적으로는 중간 정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부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요인에 대한 Probit 분석 결과

서울시 저소득층 즉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가구에 속한 개인 2030명의 기부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Probit 분석의 결과는 <표 II-3>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다.

<표 II-3> 서울시 저소득층 시민의 기부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Probit 분석 결과

기부 참여율	Coef.	Std. Err.	z	P> z
사회복지 단체에 대한 신뢰	0.0190647	0.0575465	0.33	0.74
자선단체에 대한 신뢰	0.3056716	0.0633132	4.83	0
종교기관에 대한 신뢰	-0.0488591	0.0600035	-0.81	0.415
정당에 대한 신뢰	-0.2162769	0.0616768	-3.51	0
대기업에 대한 신뢰	0.0371944	0.0675812	0.55	0.582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	0.1095803	0.071564	1.53	0.126
언론기관에 대한 신뢰	0.0466539	0.0709843	0.66	0.511
가구소득(로그)	0.2510319	0.1068988	2.35	0.019
종교성	0.2364579	0.0338605	6.98	0
연령	0.0265255	0.0197971	1.34	0.18
성별	0.2670661	0.0908633	2.94	0.003
교육수준 - 고졸	0.3660982	0.1145374	3.2	0.001
교육수준 - 대학재학 이상	0.6217867	0.1348767	4.61	0
가구크기	-0.0446395	0.0524178	-0.85	0.394
건강상태	0.0120087	0.049068	0.24	0.807
행복감	0.0514836	0.0272285	1.89	0.059
고용여부	0.2484403	0.0964081	2.58	0.01
배우자유무	-0.0226299	0.0985625	-0.23	0.818
가구형태? 노인가구	0.0851567	0.1127314	0.76	0.45
가구형태? 장애인가구	0.135332	0.147516	0.92	0.359
거주지역? 동남권	0.004831	0.1286545	0.04	0.97

먼저 사회 각 분야의 여러 구성체에 대한 신뢰의 영향력과 관련해서, 자선단체와

정당에 대한 신뢰가 저소득층의 기부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선단체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기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경향이 있고, 정당에 대한 신뢰 수준은 낮을수록 기부에 참여할 확률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선단체에 대해서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갖는 저소득층 시민의 나눔에의 참여가 더 적극적이고, 정치권에 대해서 더 낮은 수준의 믿음을 갖는 저소득층 시민의 나눔에의 참여가 더 적극적인 양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양상은 한국시민 및 서울시민의 일반적 모습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강철희, 2010).

신뢰 이외의 독립 변수 가운데에서는 가구소득, 종교성, 성별(여성), 교육수준, 행복감, 고용여부가 기부에 참여에 모두 정적인 방향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의 경우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부참여의 참여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종교성의 경우에도 종교 단체에 대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수록 기부참여의 참여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별의 경우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에 비해 고졸인 인구 집단이, 또 중졸 이하에 비해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을 갖는 저소득층 시민이 기부 참여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감은 90% 신뢰수준에서 정적인 방향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경우에 기부 참여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취업한 경우에 미취업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 비해 기부참여의 참여가 더 적극적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부참여라는 행동과 관련해서 서울시 저소득층의 경우에 있어서도 일반 시민의 기부참여 양상과 별다른 차이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즉 기본적으로 기부참여의 비중은 일반시민의 비중과 비해서 미약한 규모이나, 기부 참여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신뢰의 정도가 영향을 미치고, 가구소득, 종교성, 성별(여성), 교육수준, 행복감, 고용여부 등의 변수가 정적인 방향에서 영향을 미치는 등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3) 기부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Tobit 분석 결과

다음의 <표 II-4>의 정리는 2009년 한해 동안 저소득층 시민이 기부한 총 기부 금액, 즉 종교적 기부를 제외한 사회 일반에 대한 기부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해 보기 위한 Tobit 분석의 결과이다.

<표 II-4> 서울시 저소득층 시민의 기부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Tobit 분석 결과

기부 금액	Coef.	Std. Err.	t	P> t
사회복지 단체에 대한 신뢰	-1.352813	3.467624	-0.39	0.696
자선단체에 대한 신뢰	16.86987	3.93067	4.29	0.000
종교기관에 대한 신뢰	1.36341	3.660005	0.37	0.710
정당에 대한 신뢰	-11.64722	3.791098	-3.07	0.002
대기업에 대한 신뢰	-.0553395	4.097346	-0.01	0.989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	7.139295	4.36382	1.64	0.102
언론기관에 대한 신뢰	.249519	4.334492	0.06	0.954
가구소득(로그)	7.078363	6.43009	1.10	0.271
종교성	12.5536	2.117072	5.93	0.000
연령	1.830297	1.216634	1.50	0.133
성별	14.83482	5.573303	2.66	0.008
교육수준 - 고졸	25.67988	7.082566	3.63	0.000
교육수준 - 대학재학 이상	37.45607	8.383387	4.47	0.000
가구크기	-2.632096	3.153381	-0.83	0.404
건강상태	.5626412	3.01061	0.19	0.852
행복감	4.067111	1.674232	2.43	0.015
고용여부	16.05298	5.9118	2.72	0.007
배우자유무	2.569433	6.08513	0.42	0.673
가구형태 노인가구	-3.48476	6.91908	-0.50	0.615
가구형태 장애인가구	-1.896349	9.158382	-0.21	0.836
거주지역 동남권	-4.262649	7.958231	-0.54	0.592

먼저 사회의 각 조직에 대한 신뢰 수준을 보면 기부 참여 수준에 대한 Probit 분

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선단체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규모의 기부를 하는 것으로 그리고 정당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규모의 기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 변수 이외의 독립변수 가운데에서는 종교성, 성별, 교육수준, 행복감, 고용 여부가 기부의 규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시민 중 종교 단체의 활동이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활동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하고,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하며, 고졸 또는 대학재학 이상인 저소득층 시민이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개인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시민 중 자신의 생활에 대해 긍정적이고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경우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하고,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 시민이 취업을 하지 못한 저소득층 시민에 비해 더 많은 기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Probit 분석 결과

서울시 저소득층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Probit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II-5>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다.

<표 II-5> 서울시 저소득층 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Probit 분석 결과

자원봉사 참여율	Coef.	Std. Err.	z	P> z
사회복지 단체에 대한 신뢰	.0219477	.0714307	0.31	0.759
자선단체에 대한 신뢰	.2800162	.0786281	3.56	0.000
종교기관에 대한 신뢰	.1393318	.0734258	1.90	0.058
정당에 대한 신뢰	-.0488428	.0773887	-0.63	0.528
대기업에 대한 신뢰	-.1713976	.0836977	-2.05	0.041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	.1115035	.0867199	1.29	0.199
언론기관에 대한 신뢰	-.0740383	.0883221	-0.84	0.402

자원봉사 참여율	Coef.	Std. Err.	z	P> z
가구소득(로그)	.2898762	.1340005	2.16	0.031
종교성	.3116078	.0387648	8.04	0.000
연령	.0177443	.0232781	0.76	0.446
성별	.2048572	.1124326	1.82	0.068
교육수준 - 고졸	.2898134	.1369528	2.12	0.034
교육수준 - 대학재학 이상	.1661516	.1664582	1.00	0.318
가구크기	-.007558	.0646636	-0.12	0.907
건강상태	.1478911	.0609634	2.43	0.015
행복감	-.04273	.0321842	-1.33	0.184
고용여부	-.1881508	.121902	-1.54	0.123
배우자유무	-.1835299	.1160556	-1.58	0.114
가구형태 노인가구	-.0193673	.1379496	-0.14	0.888
가구형태 장애인가구	-.0310103	.1837599	-0.17	0.866
거주지역 동남권	-.0435437	.1561008	-0.28	0.780

먼저 사회에 대한 신뢰 수준이 자원봉사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사회의 핵심적 구성체자들 중 자선단체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그리고 종교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업에 대한 신뢰의 경우, 이와는 반대로 신뢰가 낮을수록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독립변수 가운데에서는 가구소득, 종교성, 성별, 교육수준(중졸 대비 고졸의 경우), 건강상태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확률에 정적인 방향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의 경우 정적인 방향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시 저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원봉사에의 참여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성의 경우에도 종교 단체의 종교활동에 대한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수록 자원봉사에의 참여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자원봉사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서는 중졸 이하에 비해 고졸인 저소득층 시민의 자원봉사에의 참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으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더 건강하다고 여길수록 더 적극적인 자원봉사참여활동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원봉사참여라는 행동과 관련해서 서울시 저소득층의 경우에 있어서도 일반 시민의 자원봉사참여 양상과 별다른 차이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기본적으로 자원봉사 참여의 비중은 일반시민의 비중에 비해서 다소 미약한 규모이긴 하나, 자원봉사 참여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신뢰의 정도가 영향을 미치고, 가구소득, 종교성, 성별(여성), 교육수준, 행복감, 고용여부 등의 변수가 정적인 방향에서 영향을 미치는 등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기부예의 참여를 설명하는 변수들이 거의 일관적으로 자원봉사에의 참여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자원봉사 참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토빗 분석 결과

다음의 <표 II-6>은 2009년 한해 동안 사회의 핵심 구성체라 할 수 있는 기관들에 서울시 저소득층 시민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참여한 총 자원봉사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파악해 보기 위한 Tobit 분석의 결과이다.

<표 II-6> 서울시 저소득층 시민의 자원봉사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Tobit 분석 결과

자원봉사 시간	Coef.	Std. Err.	t	P> t
사회복지 단체에 대한 신뢰	32.39421	32.32963	1.00	0.316
자선단체에 대한 신뢰	81.26881	35.46529	2.29	0.022
종교기관에 대한 신뢰	23.02345	32.53739	0.71	0.479
정당에 대한 신뢰	-7.031406	35.02676	-0.20	0.841
대기업에 대한 신뢰	-89.769	38.36975	-2.34	0.019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	14.49618	39.11173	0.37	0.711
언론기관에 대한 신뢰	.2062382	40.09843	0.01	0.996
가구소득(로그)	112.7423	59.68043	1.89	0.059
종교성	132.0861	19.34788	6.83	0.000

자원봉사 시간	Coef.	Std. Err.	t	P> t
연령	7.498102	10.32658	0.73	0.468
성별	54.93344	50.65734	1.08	0.278
교육수준 - 고졸	100.0433	61.69383	1.62	0.105
교육수준 - 대학재학 이상	41.49611	74.78885	0.55	0.579
가구크기	-8.150909	28.69273	-0.28	0.776
건강상태	49.16543	27.52347	1.79	0.074
행복감	-5.004956	14.428	-0.35	0.729
고용여부	-92.24716	55.71424	-1.66	0.098
배우자유무	-99.54384	52.20575	-1.91	0.057
가구형태 노인가구	-6.880482	62.0704	-0.11	0.912
가구형태 장애인가구	-28.6834	83.49077	-0.34	0.731
거주지역 동남권	-9.834408	70.15789	-0.14	0.889

먼저 사회에 대한 서울시 저소득층 시민의 신뢰와 관련해서는 위에서의 분석 내용으로 같이 자선단체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시간의 자원봉사활동을 갖는 양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업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시간 동안 자원봉사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원봉사에의 참여에 대한 신뢰의 영향력과 마찬가지로 결과가 자원봉사 시간에서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변수 이외의 독립 변인 가운데에서는 가구소득과 종교성 및 건강상태 등의 독립변수가 서울시 저소득층 시민의 자원봉사 시간의 규모에 정적인 방향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자원봉사활동에 사용하는 경향성이 있고, 종교 단체의 활동이나 모임에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수록 더 많은 시간을 자원봉사활동에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서 건강이 좋다고 인식할수록 서울시 저소득층 시민은 더 많은 시간을 자원봉사활동에 할애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여부 및 배우자유무 등의 변수는 marginal한 수준에서 부적인 방향에서 자원봉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을 하고 있는 서울시

저소득층 시민에 비해 미취업자가 더 많은 시간을 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가 없는 저소득층 시민보다는 배우자가 존재하는 저소득층 시민이 더 적은 규모의 자원봉사를 행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간단히 정리해서, 취업과 배우자는 저소득층 시민의 사회를 위한 시간적 기여에 장애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7> 서울시 저소득층 시민의 기부 참여율, 기부 금액, 자원봉사 참여율, 자원봉사 시간에 대한 Probit 및 Tobit 분석 결과의 총 정리표

변수	기부 참여율	기부 금액	자원봉사참여율	자원봉사 시간
사회복지 단체에 대한 신뢰				
자선단체에 대한 신뢰	+(***)	+(***)	+(***)	+(**)
종교기관에 대한 신뢰			+(*)	
정당에 대한 신뢰	-(***)	-(***)		
대기업에 대한 신뢰			-(**)	-(**)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				
언론기관에 대한 신뢰				
가구소득(로그)	+(**)		+(**)	+(*)
종교성	+(***)	+(***)	+(***)	+(***)
연령				
성별	+(***)	+(***)	+(*)	
교육수준 고졸	+(***)	+(***)	+(**)	
교육수준 대학재학 이상	+(***)	+(***)		
가구크기				
건강상태			+(**)	+(*)
행복감	+(*)	+(**)		
고용여부	+(**)	+(***)		-(*)
배우자유무				-(*)
가구형태 노인가구				
가구형태 장애인가구				
거주지역 동남권				

* p=.10, ** p=.05, *** p=.01

<표 II-7>에서 정리되는 바와 같이, 제시한 여러 변수들 중 일관적으로 영향력을 갖는 변수가 있다. 이는 신뢰 변수와 종교성 변수이다. 먼저 신뢰 중에서는 자선단체에 대한 신뢰가 저소득층 시민의 나눔 행동, 즉 기부와 자원봉사 모두에 정적인 방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용된 네 가지 종속변수 모두에 대해서 일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성 역시, 즉 종교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갖는 저소득층 시민의 경우, 기부와 자원봉사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나눔 행동에 정적인 방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수 가운데서, 세 변수는 세 유형의 나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소득, 성, 교육수준은 나눔 행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먼저 가구소득의 경우에는 기부규모만을 제외하고 기부참여, 자원봉사참여, 자원봉사시간 등에 일관적으로 정적인 방향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의 경우에도, 자원봉사의 시간의 경우만을 제외한 모든 종속변수에서, 즉 기부참여, 기부규모, 자원봉사참여 등에 대해서 여성이 일관적으로 남성보다 더 적극적인 경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관련해서도, 고등학교의 학력을 갖는 이들의 경우, 그 이하의 학력을 갖는 경우에 비교해서 자원봉사 시간만을 제외한 모든 종속변수에서 일관적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경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부행동과 자원봉사 행동으로 구분되는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정리해 보면, 신뢰와 관련해서 정당에 대한 신뢰는 기부 행동과 부적인 관계를 갖고, 기업에 대한 신뢰는 자원봉사 행동과 부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수준 중에서 대학교 이상의 학력 역시 기부행동과 정적인 방향에서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쉽게 예측할 수 있듯이, 건강의 경우에는 자원봉사행동과 부적인 방향에서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서 행복감의 경우, 이는 기부 행동과 정적인 방향에서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용여부 역시 기부 행동과 정적인 방향에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자원봉사시간과는 부적인 방향에서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

심을 갖고 분석해 보았던 지역에 의한 차이는 저소득층 시민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에 초점을 두었다. 즉 과연 경제적 상황이 상대적으로 더 힘든 시민도 나눔의 행동을 행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초점을 두고 이와 관련된 분석을 진행하였다.

비교의 차원에서 볼 때, 분명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저소득층 시민의 나눔 행동은 상대적으로 더 힘든 시민도 나눔의 행동을 행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초점을 두고 이와 관련된 분석을 진행하였다. 비교의 차원에서 볼 때, 분명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저소득층 시민의 나눔 행동은 상대적으로 그 이상의 경제적 상황에 있는 시민에 비해서 더 작을 수도 있다. 이러한 차이는 나눔 행동에 대한 참여의 차이와 기여의 차이에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연간 총 기부 금액의 평균은 약 2만원 정도의 수준이고 표준편차는 약 17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부에 참여하지 않는 89.6%를 고려할 때 기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의 기부규모가 그렇게 작지 않음을 시사해 준다. 즉 만약 기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시민의 기부 노력(Philanthropic Efforts) 수준을 고려하면, 저소득층 시민 중 기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의 기부 노력은 다른 경제계층의 시민보다도 더 높은 수준일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자원봉사 행동과 관련해서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소득층 시민의 자원봉사에의 참여는 기부참여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더 낮은 수준이긴 하나, 이들 가운데에서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행한 저소득층 시민은 70명으로 자원봉사 참여자의 57.4%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저소득층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자원봉사 시간의 평균은 약 7.1시간이고 표준편차가 약 90.1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94.1%를 고려할 때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의 자원봉사활동의 적극성 즉 자원봉사에 임하는 시간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이렇듯 저소득층 시민의 나눔 행동이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반행동과 그렇게 큰 차이를 갖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제시되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변수가 이들 시민의 나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는 매우 흥미로운 수 있고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종교적인 기부 및 종교적인 자원봉사를 제외한 일반적인 기부와 자원봉사에 초점을 맞춰 기부참여, 기부규모(금액), 자원봉사참여, 자원봉사의 규모(시간) 등에 관해서 분석 모형을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제시한 여러 변수들 중 일관적으로 영향력을 갖는 변수는 신뢰 변수와 종교성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에 대한 신뢰, 특히 관심을 갖는 사회 구성체에 대한 신뢰가 저소득층 시민의 나눔 행동을 유발하고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음을 시사해 준다. 아울러서 종교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저소득층의 시민은 나눔의 행동에 보다 익숙하고 적극적인 경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 시민이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상황에 집착하지 않고 이웃과 사회를 돌보게 하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해 준다.

한편 인구사회학적 변수 가운데서, 가구소득, 성, 교육수준은 저소득층 시민의 나눔 행동에서의 차이를 가져오는 주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가구소득이 더 높은 경우, 여성인 경우,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는 경우, 보다 높은 수준의 나눔 실천이 실행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 준다.

마지막으로 기부행동과 자원봉사 행동에 차별적인 영향력을 갖는 변수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탐색되었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건강의 경우에는 자원봉사행동과 부적인 방향에서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었다. 그리고 행복감의 경우, 이는 기부 행동과 정적인 방향에서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었다. 아울러서 고용여부 역시 기부 행동과 정적인 방향에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자원봉사시간과는 부적인 방향에서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시민들에게서 나타나는 일반적 경향성과 유사한 결과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이러한 결과는 일반시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 저소득층 시민의 자원봉사행동의 선택에 대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자신의 삶과 상황에 대한 정서적 인식이 저소득층 시민의 물질적인 나눔에 대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자

신의 고용의 상황이 이웃과 사회를 위한 저소득층의 나눔 방식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다신 한번 확인시켜 준다.

나눔은 사회의 건강함을 유지시키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본 연구는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추동하는 동력이 되는 나눔이 저소득층에게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인 인식에서 보았을 때, 저소득층의 시민은 나눔의 대상이 되지 나눔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의 일반적 인식에 교정이 필요할 수 있음을 제시해 준다. 즉 저소득층 시민의 일부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도 나눔을 굳건히 실천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렇게 건강한 실천을 행하는 저소득층 시민의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행동이 보다 확산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프로그램이나 유인책의 마련을 통해서 보다 더 광범위하게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나눔을 함께 실천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향후의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향후에는 기부 행동과 자원봉사 행동 및 나눔 행동의 동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후속적으로 이뤄져서 저소득층 나눔 행동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폭과 깊이가 넓어지고 심화되어질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강철희. 1998. 후원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일반적 특징과 그들의 후원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5, 1-30.
- 강철희. 2003. 자선적 기부행동 및 자원봉사 참여행동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비영리연구, 2(2), 161-205.
- 강철희. 2007. 기부 및 자원봉사와 신뢰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9(3), 5-32.
- 강철희 · 김미옥. 2007. 부유층의 기부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9(2), 5-38.
- 강철희 · 정상원 · 이지혜. 2009. 종교인구의 사회봉사 참여수준에 관한 연구 : 종교적 요인 및 비종교적 요인의 영향력에 관한 분석. 사회복지정책, 36(1), 5-34.
- 김유나(2002). 기부행동 및 기부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온라인 기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태룡 · 안희정. 2009. 사회자본이 자원봉사에 미친 영향.
- 김태홍 · 김난주 · 권태희. 2007. 한국 자원봉사활동의 결정요인과 경제적 가치평가. 한국인구학, 30(3), 83-105.
- 박태규. 2004. 자원봉사의 경제적 분석. 한국비영리연구, 3(1), 115-143.
- 볼런티어21(1999). 1999 한국인의 자원봉사 의식 및 활동현황.
- 볼런티어21(2002). 2002 한국인의 자원봉사 의식 및 활동현황.
- 볼런티어21(2005). 2005 한국인의 자원봉사 의식 및 활동현황.
- 볼런티어21(2008). 2008 한국인의 자원봉사 의식 및 활동현황.
- 손원익 · 박태규. 2008. 한국의 민간기부에 관한 연구 : 규모, 구조와 특징, 관련 정책방향 : 한국조세연구원.
- 양석승 · 정태신. 2007. 시민참여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이근홍(2001). 노인의 사회참여와 자원봉사. 노인복지연구, 여름호, 7-24.
- 이종은 · 김미옥. 2007. 초등학교 교사의 나눔교육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6(1), 111-164.
- 조휘일. 1991. 한국사회복지분야의 자원봉사 행동과 관련된 개인 및 조직 특성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주영길. 1987. 자원봉사자활성화를 위한 실증적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은정. 2007.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 결정요인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9(3), 147-174.
-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05). 2005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
- 한국여성개발원(1995). 공공분야 및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유희인력 활용에 관한 연구.
- 홍승혜. 1995. 재가복지자원봉사자의 만족과 지속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은진. 2006. 자원봉사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5(1), 33-71.
- 황창순. 2001. 개인기부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2000년 기부조사 데이터를 중심으로. Paper presented at the 한국비영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황창순 · 강철희. 2002. 개인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자선적 기부 노력을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1(2), 33-73.
- Aderman, D. (1972). Elation, Depression, and Help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4, 91-101.
- Allport, G. W. (1937). *Personality :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New York : Henry Holt.
- Andreasen, A., & Kotler, P. (2008). *Strategic marketing for nonprofit organizations* : Pearson/Prentice Hall.

Andreoni, J. (1989). Giving With Impure Altruism : Application to charity and ricardian equivalence.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7, 1447-1458.

Andreoni, J. (1990). Impure Altruism and Donations to Public Goods - A theory of warm glow giving. *Economic Journal*, 100, 464-477.

Andreoni, J. (2004). Economics of philanthropy. In L. A. Gerard-Varet, S. C. Kolm & J. M. Ythier (Eds.), *Handbook of Giving, Reciprocity and Altruism* (pp. 11369-11376). North-Holland : Elsevier.

Andreoni, J., Brown, E., & Rischall, I. (2003). Charitable Giving by Married Couples : Who decides and why does it matter?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38, 111-133.

Andreoni, J., & Scholz, J. K. (1998). An Economic Analysis of Charitable Giving with Interdependent Preferences. *Economic Inquiry*, 36, 410-428.

Apinunmahakul, A., & Devlin, R. A. (2008). Social networks and private philanthrop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2(1-2), 309-328.

Auten, G. E., & Rudney, G. (1990). The variability of individual charitable giving in the US. *Voluntas :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1(2), 80-97.

Auten, G. E., Cilke, J., & Randolph, W. (1992). The Effects of Tax Reform on Charitable Contributions. *National Tax Journal*, 45, 267-290.

Baird, J. (2009, 5 October 2009). Positively Downbeat. *Newsweek*, 26.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Banks, J., & Tanner, S. (1999). Patterns in Household Giving : Evidence from UK Data.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10, 167-178.

Barrett, K. S. (1991). *Panel-Data Estimates of Charitable Giving : A Synthesis*

of Techniques. *National Tax Journal*, 44, 365-381.

Batson, C. D., & Shaw, L. L. (1991). Evidence for Altruism : Towards a Pluralism of Prosocial Motives. *Psychological Inquiry*, 2, 107-122.

Batson, C. D., Chang, J. H., Orr, R., & Rowland, J. (2002). Empathy, attitudes, and action : Can feeling for a member of a stigmatized group motivate one to help the group?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12), 1656-1666.

Bekkers, R. (2003). Trust, Accreditation, and Philanthropy in the Netherland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2, 596-615.

Bekkers, R. (2004). Giving and volunteering in the Netherlands : Sociological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s. Utrecht University, The Netherlands.

Bekkers, R. (2005). Charity Begins at Home : How Socialization Experiences Influence Giving and Volunteering.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for Research on Nonprofit Associations and Voluntary Action.

Bekkers, R. (2006). Traditional and Health Related Philanthropy : The Role of Resources and Personality. *Social Psychology*, 68, 349-366.

Bekkers, R. (2007).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volunteering. *Acta sociologica*, 50(2), 99-114.

Bekkers, R., & De Graaf, N. D. (2006). Unpublished Manuscript.

Bekkers, R., & Wiepking, P. (2010). A Literature Review of Empirical Studies of Philanthropy : Eight Mechanisms That Drive Charitable Giving.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Published online before print September 10, 2010.

Belfield, C. R., & Beney, A. P. (2000). What Determines Alumni Generosity? Evidence for the UK. *Education Economics*, 8, 65-80.

Bjorhovde, P. O. (2002). Teaching Philanthropy to Children : A comparative study of philanthropy curricula. St. Mary's University of Minnesota.

Breeze, B. (2004). Widow's mite or widow's might? The relative giving of rich

and poor in the UK. Paper presented at the the 33rd Annual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for Research on Nonprofit Associations and Voluntary Action.

Brooks, A. C. (2002). Welfare Receipt and Private Charity. *Public Budgeting & Finance*, 22, 101-114.

Brooks, A. C. (2005). Does Social Capital Make You Generous? *Social Science Quarterly*, 86, 1-15.

Brown, E., & Ferris, J. M. (2007). Social Capital and Philanthropy :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individual giving and volunteering.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6, 85-99.

Bryant, W. K., Slaughter, H. J., Kang, H., & Tax, A. (2003). Participating in Philanthropic Activities : Donating money and time. *Journal of Consumer Policy*, 26, 43-73.

Butcher, J. (2010). Volunteering in Developing Countries. In R. Taylor (Ed.), *Third Sector Research* (pp. 91-103). New York : Springer.

Carman, K. G. (2006). Social Influences and the Private Provision of Public Goods : Evidence from charitable contributions in the workplace. Unpublished Discussion Paper. Stanford Institut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Stanford University.

Carroll, J., McCarthy, S., & Newman, C. (2006). An Economic Analysis of Charitable Donations in the Republic of Ireland. *The Economic and Social Review*, 36, 229-249.

Chang, W. C. (2005). Determinants of Donations : Empirical evidence from Taiwan. *Developing Economies*, 43, 217-234.

Clotfelter, C. T. (1980). Tax Incentives and Charitable Giving : Evidence from a Panel of Taxpayer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3(3), 319-340.

Clotfelter, C. T., & Steuerle, C. E. (1981). Charitable contributions. In H.

Aaron & J. Pechman (Eds.), *How taxes affect economic behavior* (pp. 403-437). Washington, D.C. : Brookings Institution.

Cnaan, R. A., Wineburg, R. J., & Boddie, S. C. (1999). *The Newer Deal : Social work and religion in partnership*.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Derin-Güre, P., & Uler, N. (2010). Charitable giving under inequality aversion. *Economics Letters*, 107(2), 208-210.

Diener, E., Helliwell, J. F., & Kahneman, D. (2010).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ell-being*. Oxford ;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Dovidio, J. F. (1984). Helping behavior and altruism : An empirical and conceptual overview.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pp. 361-427). New York : Academic Press.

Drollinger, T. L. (1995). Financial resources of elderly couples and the likelihood of volunteering. Paper presented at the Association for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Education, New Orleans, Louisiana.

Drollinger, T. L., & Johnson, D. P. (1995). Lifecycle, financial and attitudinal characteristics of charitable donors.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Counsel on Consumer Interests, Washington, D.C.

Duncan, B. (1999). Modeling Charitable Contributions of Time and Mone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2, 213-242.

Eisenberg, N. (1986). *Altruistic emotion, cognition, and behavior*.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Eschholz, S. L., & Van Slyke, D. M. (2002). *New evidence about women and philanthropy : Findings from Metro Atlanta*. United Way of Metropolitan Atlanta's Women's Legacy.

Feldman, N. E. (2010). Time is Money : Choosing between Charitable Activities.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2(1), 103.

Feldstein, M., & Taylor, A. (1976). The Income Tax and Charitable Contributions. *Econometrica*, 44, 1201-1222.

Field, T. M., Hernandez-Reif, M., Quintino, O., Schanberg, S., & Kuhn, C. (1998). Elder retired volunteers benefit from giving massage therapy to infants.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17(2), 229.

Freeman, R. B. (1997). Working for Nothing : The Supply of Volunteer Labor. *Journal of Labor Economics*, 15(1), S140-S166.

Gottlieb, D. (2008). *Learning from the Heart*. New York : Sterling.

Handel, G. (1982). *Social Welfare in Western Society*. New York : Random House.

Handel, G. (2009). *Social Welfare in Western Society* (2 ed.) : Transaction Publishers.

Handy, F., & Katz, E. (2008). Time is money, but which to give? A preliminary analysis of volunteering and donating. *Journal of Economic Studies*, 35(4), 323-332.

Harbaugh, W., Mayr, U., & Burghart, D. (2007). Neural responses to taxation and voluntary giving reveal motives for charitable donations. *Science*, 316, 1622-1625.

Havens, J. J., O'Herlihy, M. A., & Schervish, P. G. (2007). *Charitable Giving : How Much, by Whom, to What, and How? The Non-Profit Sector : A Research Handbook*.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Helliwell, J. F., & Putnam, R. D. (2004).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B-Biological Sciences*, 359, 1435-1446.

Hodgkinson, V. A., & Weitzman, M. S. (1996). *Giving and Volunteering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 Independent Sector.

Hoge, D. R., & Yang, F. (1994). Determinants of Religious Giving in American Denominations : Data from two nationwide surveys.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36(2), 123-148.

Hrung, W. B. (2004). After-Life Consumption and Charitable Giving.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63, 731-745.

Independent_Sector. (1994). Giving and Volunteering in the United States : Finding from a national survey, 1994. Washington, D.C. : Independent Sector.

Independent_Sector. (1998). America's Teenage Volunteers : Civic participation begins early in life. Washington, D.C. : Independent Sector.

Independent_Sector. (2002). Giving and Volunteering in the United States, 2001 Survey. Washington, D.C. : Independent Sector.

Jackson, J. M., & Latane, B. (1981). Strength and Number of Solicitors and the Urge toward Altruis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7, 415-422.

James, R. N., & Sharpe, D. L. (2007).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U-Shaped Charitable Giving Profile.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6(2), 218-238.

Jencks, C. (1987). Who gives to what? In W. W. Powell (Ed.), *The Non-profit Sector : A Research Handbook* (pp. 321-339).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Kang, C. (2007). Predictors on Giving and Volunteering in Korea : Analysis by using a Heckman Selection Model.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for Research on Nonprofit Associations and Voluntary Action.

Konow, J. (2010). Mixed feelings : Theories of and evidence on giving.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4, 279-297.

Leonard, T., Croson, R. T. A., & de Oliveira, A. C. M. (2010). Social capital and public goods. *Journal of Socio-Economics*, 39(4), 474-481.

Lyons, M., & Passey, A. (2005). *Giving Australia : Research on Philanthropy*

in Australia. Sydney :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Marx, J. D. (2000). Women and Human Services Giving. *Social Work*, 45, 27-38.

Mattis, J., Grayman, N., Cowie, S.-A., Winston, C., Watson, C., & Jackson, D. (2008). Intersectional Identities and the Politics of Altruistic Care in a Low-Income, Urban Community. *Sex Roles*, 59(5), 418-428.

Mayo, J. W., & Tinsley, C. H. (2009). Warm glow and charitable giving : Why the wealthy do not give more to charity?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0(3), 490-499.

McClelland, R., & Brooks, A. C. (2004). What is the real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charitable giving? *Public finance review*, 32(5), 483.

McGowan, K. (2005). The Pleasure Paradox. *Psychology Today*, 52-55.

McPherson, J. M., & Rotolo, T. (1996). Testing A Dynamic Model of Social Composition : Diversity and change in voluntary group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2), 179-202.

Okunade, A. A. (1996). Graduate School Alumni Donations to Academic Funds : Micro-data Evidence.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55, 213-229.

Owens, M. L., & Smith, R. D. (2005). Congregations in Low-Income Neighborhoods and the Implications for Social Welfare Policy Research.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4(3), 316-339.

Parry, G. (1985). Welfare State and Welfare Society. *Government and Opposition*, 20(3), 287-296.

Pollard, E., & Lee, P. (2003). Child Well-Being :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Social Indicators Research*, 61, 59-78.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 Simon & Schuster.

Regnerus, M. D., Smith, C., & Sikkink, D. (1998). Who Gives to the Poor? The Influence of Religious Tradition and Political Location on the Personal Generosity of Americans toward the Poor.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7(3), 481-493.

Reynolds, L., & Herman-Kinney, N. (2003). *Handbook of symbolic interactionism* : AltaMira Press.

Rooney, P. M., Steinberg, K. S., & Schervish, P. G. (2001). A Methodological Comparison of Giving Surveys : Indiana as a Test Case.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0(3), 551-568.

Rooney, P. M., Steinberg, K. S., & Schervish, P. G. (2004). Methodology Is Destiny : The Effect of Survey Prompts on Reported Levels of Giving and Volunteering.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3, 628-654.

Rotolo, T., Wilson, J., & Hughes, M. E. (2010). Homeownership and Volunteering : An Alternative Approach to Studying Social Inequality and Civic Engagement¹. *Sociological Forum*, 25(3), 570-587.

Sargeant, A., & Lee, S. (2004). Donor Trust and Relationship Commitment in the UK Charity Sector : The Impact on Behavior.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3(2), 185-202.

Schervish, P. G., & Havens, J. J. (1995). Do the Poor Pay More? Is the U-Shaped Curve Correct?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24(1), 79-90.

Schervish, P. G., & Havens, J. J. (1995). Explaining the Curve in the U-shaped Curve. *Voluntas*, 6, 203-225.

Schervish, P. G., & Havens, J. J. (1997). Social Participation and Charitable Giving : A multivariate analysis. *Voluntas*, 8(3), 235-260.

Schervish, P. G., & Havens, J. J. (1998). *Money and Magnanimity* : New

findings on the distribution of income, wealth, and philanthropy. *Nonprofit Management & Leadership*, 8(4), 421-434.

Schervish, P. G., & Havens, J. J. (2001). Wealth and the Commonwealth : New Findings on Wherewithal and Philanthropy.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0(1), 5-25.

Schlegelmilch, B. B. (1997). Responses to different charity appeals : the impact of donor characteristics on the amount of donations.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31(8), 548.

Skocpol, T., & Fiorina, M. P. (1999). *Civic Engagement in American Democracy*. Washington, D.C. : Brookings Institution Press.

Smith, V. H., Kehoe, M. R., & Cremer, M. E. (1995). The private provision of public goods : Altruism and voluntary giving. *Journal of Public Economics*, 58(1), 107-126.

Sundeen, R. A., & Raskoff, S. A. (1994). Volunteering among Teenagers in the United State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23(4), 383-403.

Uslaner, E. M. (1998). Social Capital, Television, and the 'Mean World' : Trust, Optimism, and Civic Participation. *Political Psychology*, 19, 441-467.

Uslaner, E. M. (2002). *The Moral Foundation of Trust*.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Van Slyke, D. M., & Brooks, A. C. (2005). Why Do People Give? New Evidence and Strategies for Nonprofit Managers.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35, 199-222.

Wang, L., & Graddy, E. (2008). Social capital, Volunteering, and Charitable Giving. *Voluntas :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 Nonprofit Organizations*, 19(1), 23.

Weisbrod, B. A. (1977). *The Voluntary Nonprofit Sector : An Economic*

Analysis. Lexington, Mass. : Lexington Books.

Wiepking, P. (2004). Do the poor donate more? The effect of income of philanthropic donations. Paper presented at the the 33rd Annual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for Research on Nonprofit Associations and Voluntary Action.

Wiepking, P. (2007). The Philanthropic Poor : In Search of Explanations for the Relative Generosity of Lower Income Households. *Voluntas :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18(4), 339-358.

Wiepking, P. (2008). *For the Love of Mankind : A Sociological Study on Charitable Giving*. VU University, Amsterdam, the Netherlands.

Wiepking, P. (2010). *The State of Giving Research in Europe : Household Donations to Charitable Organizations in Twelve European Countries*. Amsterdam : Amsterdam University Press.

Wilhelm, M. O., Brown, E., Rooney, P. M., & Steinberg, R. (2008).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generosit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2(10-11), 2146-2156.

Wilson, J. (2000). Volunteering.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215-240.

Wuthnow, R., & Hodgkinson, V. A. (1990). *Faith and Philanthropy in America : Exploring the role of religion in America's voluntary sector*. San Francisco : Jossey-Bass.

Yen, S. T. (2002). An Econometric Analysis of Household Donations in the USA. *Applied Economics Letters*, 9, 837-841.

Ⅲ. 서울시 저소득가구의 빈곤이행의 실태와 특성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교성

1. 들어가며

우리 사회에서 절대적 빈곤가구의 규모는, 압축적인 경제성장의 결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그러나 국가적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빈곤율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사회 불평등 수준도 크게 악화되어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악화된 분배구조는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김교성, 2007 : 144). 동 시기에,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사용 가능한 종단자료의 구축과 활용이 활발해지면서, 빈곤의 진입과 탈피에 관한 다양한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 분석의 결과를 보면, 우리사회의 빈곤역동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인구학적인 특성과 고용상태 등이 빈곤지위의 변화에 주요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김교성·반정호, 2004; 홍경준, 2004; 구인회, 2005; 김교성·노혜진, 2009).

우리나라에서 종단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개인 및 가구에 대한 패널자료에는 한국노동패널, 한국복지패널, 고령화연구패널, 여성가족패널, 청년패널, 국민노후보장패널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오래되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료는 '한국노동패널'인데,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1998년부터 매년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경제활동과 노동시장 이동, 소득과 소비활동, 교육과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해 조사하여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자료는 '한국복지패널'인데, 이는 --앞선 노동패널과 달리-- 읍면지역의 농어촌가구를 대상으로 표집하여 전국적인 대표성을 확보하였고, 경제활동과 사회활동, 소득과 소비, 의료와 주거, 사회보험과 기초생활보장 등의 사회복지에 관한 보다 다양한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조사는 2006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제4차 웨이브 자료

까지 공개되어 있다. 서울시 복지패널은 앞서 구성된 패널자료에 비해 실행 시기와 축적된 자료의 연수측면에서 부족하지만, 특정 광역지역에 관한 심층적인 조사와 종단자료의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성이 부각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이행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향후 서울시 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게 될 연구자들과 선행적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울시 복지패널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 후, 서울시 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 저소득 가구의 빈곤이행 실태와 특성을 분석할 것이다.

2. 서울시 복지패널 자료에 대한 소개

서울시 복지패널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서울 시민의 삶의 질 수준 및 복지에 대한 수요와 복지서비스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복지정책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2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조사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우선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와 가구원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측정하고, 분야별 복지수준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추적 조사하며, 복지 취약계층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수요를 추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또한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서비스의 효과를 측정하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주)한국리서치와 함께 2008년에 제1차 본 조사를 실시하였고, 2009년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부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에 제2차 본 조사를 진행하여 이미 완료하였다. 2011년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부가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2012년부터 다시 격년에 한번씩 진행하는 본 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본 조사의 주요 대상은 서울시 632개 표본 조사구 내 3,665가구와 해당 가구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 7,761명이다. 다만, 해외취업자, 현역군인, 전투·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외국인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사의 모집단은 2008년 1월을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일반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가구와 해당 가구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이다. 그리고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심층표본조사가 실시된 10% 표본 조사구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조사구중 기숙사와 특수사회시설 조사구를 제외한 아파트 및 보통 조사구를 표본 추출틀로 하여, 신뢰수준 95%에서 표본을 선정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층화집락추출로 1차 층화지표인 서울시 내 25개 일반 조사구에서 추출된 조사구를 1차 추출단위로 선정하였고, 2차 추출단위는 추출된 조사구 내의 가구로 선정하였다. 본 조사의 설문지는 크게 가구용과 가구원용으로 구분된다. 우선 가구용 설문지는 가구원의 일반사항, 소득, 소비와 저축, 자산과 부채, 가구의 경제 인식, 최근 가족상황의 변화, 생활여건, 건강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노인부양, 미취학 아동보육, 초·중·고 자녀교육, 장애 및 재활, 복지서비스 수요 등의 총 15개 분야 610개 문항을 가지고 있다. 가구원용 설문지는 경제활동, 사회보험, 직업훈련 경험 및 취득 자격증, 배우자와의 관계, 건강·의료, 정신건강, 문화생활·여가생활·정보화, 사회참여·평생학습·자원봉사·기부활동, 주관적 태도 및 복지정책 관련 의견, 노후생활 등의 총 10개 분야 59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설문 항목의 구성을 볼 때, 서울시 복지패널 조사는 기존의 패널조사에 비해 사회·문화·경제적 지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신건강 분야와 사회참여·평생학습·자원봉사·기부활동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척도들을 집중적으로 보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격년으로 진행되는 본 조사의 중간 연도에 특정 인구집단에 관한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보다 심도 있고 시의 적절한 복지 이슈에 올바르게 접근하기 위한 목적인데, 2009년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전년도 본 조사에 응답한 가구 가운데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된 부가조사의 구체적인 목적은 서울시 저소득가구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고, 소득이전과 자활사업 등의 빈곤정책에 관한 평가를 통해, 서울형 탈빈곤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조사 대상은 저소득층의 1,096가구와 해당 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2,212명이다. 부

가조사에 활용된 설문지는 본 조사와 마찬가지로 가구용과 가구원용으로 구분되며, 빈곤과 저소득이라는 주제에 상응하는 일부 수정·보완된 항목이 포함되었다. 가구용 설문지는 총 17개 분야의 64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조사에 포함된 설문 분야 외에 아동생활 분야와 여성 가구주 관련 분야에 관한 문항이 추가되었다. 가구원용 설문지는 총 13개 분야의 55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조사에 포함된 분야 가운데 노후생활에 관한 설문이 일부 조정되고, 자활 분야와 성장과정, 직업력, 혼인상태 분야의 설문이 추가되었다. 이 추가된 네 분야가 부가조사의 설문이 가지는 주요 특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근로연계복지 정책인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와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빈곤층 혹은 차상위 계층의 특성에 관한 보다 정확한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소득가구 가구주와 가구원의 성장과정, 직업력, 혼인상태 등의 생애주기에 관한 회고적인 질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빈곤의 역동이나 세대간 전승 등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1> 서울시 복지패널 본조사와 부가조사의 설문지 구성

가구용	본조사 (610)	부가조사 (643)	가구원용	본조사 (590)	부가조사 (552)
가구원의 일반사항	(21)	(22)	경제활동	(73)	(88)
소득	(43)	(42)	사회보험	(24)	(24)
소비와 저축	(22)	(22)	직업훈련 경험, 취득자격증	(39)	(48)
자산과 부채	(34)	(33)	배우자와의 관계	(23)	(23)
가구경제 인식	(10)	(10)	건강 의료	(41)	(33)
최근 가족상황의 변화	(24)	(24)	정신건강	(159)	(31)
생활여건	(31)	(11)	문화생활, 여가활동 정보화	(19)	(19)
건강보험	(10)	(10)			
국민기초생활보장	(12)	(11)	사회참여, 평생학습 자원봉사, 기부활동	(110)	(110)
주거	(42)	(52)			
노인부양	(107)	(106)	주관적 태도 복지정책관련 의견	(83)	(94)
미취학 아동보육	(42)	(55)			

가구용	본조사 (610)	부가조사 (643)	가구원용	본조사 (590)	부가조사 (552)
초중고 자녀교육	(59)	(59)	노후생활	(19)	(--)
장애 및 재활	(69)	(62)	자활	(--)	(35)
복지서비스 수요	(84)	(95)	성장과정	(--)	(19)
여성가구주 관련	(--)	(17)	직업력	(--)	(24)
아동생활	(--)	(12)	혼인상태	(--)	(4)

3. 서울시 복지패널을 이용한 빈곤실태와 빈곤이행 분석

1) 분석 목적

본 장에서는 서울시 복지패널의 제1차 본 조사의 일부 자료와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 빈곤가구의 진입과 탈피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조사와 부가조사에 모두 응답한 가구의 규모가 많지 않고, 그 대상이 저소득가구로 제한되어 있으며, 관찰기간도 2년에 불과하여, 분석결과가 가지는 한계는 일부 존재할 수 있다. 분석의 목적은 크게 세가지이다. 첫째, 연도별 빈곤가구와 저소득가구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공·사이전소득의 연도별 빈곤완화효과를 분석한다. 셋째, 빈곤가구와 저소득가구의 빈곤이행에 관한 실태와 규모를 파악하고 그 특성을 규명한다.

2) 연구 방법

① 분석자료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서울시 복지패널의 제1차 본 조사와 부가조사 자료이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서울시 복지패널의 본 조사는 2009년 총 3,665가구를 대상

으로 실시되었으며, 부가조사는 2010년 총 1,096의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부가조사에 선정된 빈곤가구는 본 조사에 응답한 가구 중 2009년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저소득가구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가구의 빈곤진입과 탈출에 관한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므로, 대상 가구가 패널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포함된 주요 분석대상은 2009년과 2010년 두 시점의 상황이 모두 관찰된 1,096 가구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분석의 결과도 서울시의 일반가구가 아닌 유사 빈곤층(near poor) 혹은 차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저소득가구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서울시 복지패널 조사의 소득관련 항목들은 '지난 1년 동안'의 월평균 액수를 묻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실질적인 분석 기간은 2008년과 2009년이다.

② 주요 변수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빈곤가구의 빈곤진입과 탈피 등의 빈곤이행 혹은 빈곤역동에 있으므로, 연구의 종속변수는 개별 가구의 빈곤지위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에 기초한 절대적 빈곤선을 사용하여 가구의 빈곤여부를 판단하였다.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이 저소득가구로 한정되다 보니 중위소득 40~60%의 상대적 빈곤선이 가지는 의미는 그리 크지 않고, 보다 정확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최저생계비를 활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2008년과 2009년의 공식적인 최저생계비 기준은 아래의 <표 III-2>와 같다. 분석에 활용된 가구의 소득은 지난 1년 동안 세금을 제외한 가구의 월평균 총 소득이며, 여기에는 근로소득, 자산소득(금융소득과 부동산 소득 포함), 공·사이전소득, 기타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다.

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성, 연령, 학력, 취업여부 등이다. 가구주 개인의 특성이 가구의 특성을 대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성(gender)을 기준으로 남성 가구주 가구(이하 남성가구)와 여성 가구주 가구로 구분된다. 연령은 65세를 기준으로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로 통합·구성하였으며, 학력은 중학교 이하와 고

등학교 이상으로 재범주화하였다. 가구주의 취업여부는 가구의 '근로소득 유무' 변수를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는 서울시 복지패널 본 조사 자료의 --개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모든 항목의 조사 시점이 2009년 3월로 고정되어 있어, 가구의 소득관련 항목에 대한 조사 시점과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에 포함된 근로소득이란 “근로를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을 말하며, 직장 또는 일자리에서 받은 임금이나 자영업자 또는 고용주의 소득 등이 포함”되므로, 가구주의 고용지위를 측정하는 변수로 사용될 수 있으며, 실제 가구주의 취업여부와 거의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선택은 이미 김교성(2010 : 222)의 연구에서 활용된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과정에서 서울시의 구를 지역적 분포에 따라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개별 권역의 빈곤율을 산정·비교하였다. 구분된 5개 권역은 도심권(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북권(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북권(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남권(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동남권(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이다.

<표 III-2> 연도별 최저생계비

단위 : 만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08년	46.30	78.43	102.60	126.58	148.78	171.21
2009년	49.08	83.57	108.11	132.66	157.20	181.74

주 : 7인 가구부터 가구원 1인 증가 시 24.54만원 증가

③ 분석방법

본 연구는 연도별 빈곤가구와, 빈곤진입 혹은 탈출을 경험하는 가구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적 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공·사소득이전의 빈곤완화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개별 소득원 유형별 빈곤율을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3) 분석결과

① 연도별 빈곤실태와 가구 특성

서울시 복지패널 본 조사의 전체 자료에 기초한 2008년 서울시 가구의 절대적 빈곤율은 8.5%이다. 또한 중위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측정한 상대적 빈곤율은 15.92%에 이른다. 이러한 수치는 다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서울시 복지패널의 부가조사 자료(2009년)와 그와 동일한 대상으로 표본을 제한한 본 조사 자료(2008년)에 기초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대상의 절대적 빈곤율은 크게 상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8년의 절대적 빈곤율은 34.5%에 이르며, 2009년에는 이보다 조금 더 상승한 37.7%를 보이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 저소득가구의 빈곤 실태는, 절대적 빈곤율을 기준으로 할 때, 조금 더 악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III-3> 각 연도의 권역별 빈곤율

단위 : 명, %

	2008년			2009년		
	빈곤가구	빈곤율	전체가구	빈곤가구	빈곤율	전체가구
도심권	43	(34.4)	125	51	(41.1)	124
동북권	153	(36.2)	423	165	(39.0)	423
서북권	38	(34.2)	111	45	(40.5)	111
동남권	33	(26.6)	124	42	(33.6)	125
서남권	111	(35.5)	313	110	(35.5)	310
경기도						3
전체	378	(34.5)	1,096	413	(37.7)	1,096

이러한 빈곤율의 권역별 차이를 보면, 2008년에는 동북권과 서남권의 빈곤율이 동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2009년에는 동북권의 높은 빈곤

율은 지속되고 있으며, 도심권과 서북권의 빈곤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동남권의 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고 있어, 소위 강남, 서초, 송파로 지칭되는 강남지역과 타 지역 간 높은 소득 격차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다만 이 권역의 빈곤율도 다소 상승하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

서울시 빈곤가구의 연도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III-4>와 같다. 우선 2008년을 기준으로 할 때, 여성가구의 빈곤율이 남성가구의 그것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가구의 빈곤율도 비노인가구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학교 이하 학력을 보이는 가구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미취업 가구의 빈곤율도 46.2%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빈곤층과 유사 빈곤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 대상의 여성(33.9), 노인(57.7), 저학력(47.9), 미취업(62.0) 가구주 비중이 일반가구 가구주의 그것에 비해 높은 것이 사실이다(<부표 1>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변수의 범주가운데 여성, 노인, 저학력, 미취업 가구에서 빈곤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소위 취약계층에서 보이는 전통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서울시 빈곤가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2009년의 분석결과에서 동일하게 관찰된다. 오히려 여성, 노인, 저학력, 미취업 빈곤가구의 비중이 증가되어, 서울시 취약가구의 빈곤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III-4> 연도별 빈곤가구의 특성

단위 : 명, %

	2008년				2009년			
	저소득가구		빈곤가구		저소득가구		빈곤가구	
전체	718	(65.5)	378	(34.5)	683	(62.3)	413	(37.7)
남성	510	(70.3)	215	(29.7)	497	(69.4)	219	(30.6)
여성	208	(56.1)	163	(43.9)	186	(48.9)	194	(51.1)
비노인	363	(78.2)	101	(21.8)	336	(74.8)	113	(25.2)
노인	355	(56.2)	277	(43.8)	347	(53.6)	300	(46.4)

	2008년				2009년			
	저소득가구		빈곤가구		저소득가구		빈곤가구	
중학교 이하	284	(54.1)	241	(45.9)	269	(51.1)	257	(48.9)
고등학교 이상	434	(76.0)	137	(24.0)	414	(72.6)	156	(27.4)
취업	353	(84.7)	64	(15.3)	336	(84.0)	64	(16.0)
미취업	365	(53.8)	314	(46.2)	347	(49.9)	349	(50.1)

② 이전소득의 빈곤완화효과

본 절에서는 일차소득에 기초한 빈곤율과 소득이전이 발생한 이후 소득에 기초한 빈곤율에 대한 비교를 통해, 공·사이전소득의 빈곤완화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아래 <표 III-5>의 분석결과를 보면, 2008년과 2009년 일차소득에 기초한 서울시 저소득가구의 절대적 빈곤율은 각각 56.8%와 59.5%에 이른다. 그러나 소득이전 후 최종 빈곤율은 각각 34.5%와 37.7%로 감소하여, 약 39.3%와 36.6%의 빈곤완화효과를 보이고 있다.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서울시 빈곤가구에서 관찰되는 이전소득의 빈곤완화효과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는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에 일반가구가 제외되어 있고, 빈곤가구와 저소득가구를 중심으로 분석이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공·사이전소득의 효과를 비교해 보면, 두 연도 모두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완화효과가 19.0%와 18.0%로, 사적이전소득의 14.8%와 13.9%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완화효과는 사적이전소득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많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되어 왔다(김교성, 2002; 홍경준, 2002).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상반된 연구 결과가 나오므로 인해, 최소한 서울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면, 최근 강화되고 있는 정부와 서울시 소득보장 제도의 확대 효과가 증명되고 있다. 혹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가족이나 친지간 소득이전의 횟수와 이전액의 규모가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일 수도 있다. 아니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사회적 관계로 표현되는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열악하여, 사적

이전의 소득원 자체가 충분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분석의 결과가 일반가구를 포함한 기존 연구의 그것과 동일한 차원에서 비교되기는 어려우며, 저소득층만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는 본 연구만의 결과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전소득의 빈곤완화효과는 노인가구와 여성가구를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도 유사한 수준과 패턴으로 관찰된다. 다만 2009년 여성가구를 대상으로 한 이전소득의 빈곤완화효과는 33.7%로, 전체가구나 노인가구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며,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완화효과도 사적이전소득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5> 각 연도의 가구유형별 빈곤율과 이전소득의 빈곤완화효과

단위 : %

	전체가구		노인가구		여성가구	
	2008년	2009년	2008년	2009년	2008년	2009년
일차소득	56.8	59.5	72.5	73.6	73.3	77.1
이전 후	34.5	37.7	43.8	46.4	43.9	51.1
사적이전소득 이전 후	48.4	51.2	60.8	62.6	63.1	66.1
공적이전소득 이전 후	46.0	48.8	60.8	62.1	59.6	66.6
이전소득 효과	39.3	36.6	39.6	37.0	40.1	33.7
사적이전소득의 효과	14.8	13.9	16.1	14.9	13.9	14.3
공적이전소득의 효과	19.0	18.0	16.1	15.6	18.7	13.6

주 : 이전소득 효과 = (일차소득 빈곤율 - 이전소득 이전 후 빈곤율) / 일차소득 빈곤율 × 100

③ 빈곤이행의 실태와 가구 특성

본 절에서는 2008년과 2009년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서울시 저소득가구의 빈곤이행 실태와 해당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대상 가구들은 각 연도에 측정된 빈곤지위에 기초하여, 저소득지속과 빈곤진입, 그리고 빈곤탈출과 빈곤지속가구로 구분할 수 있다. 아래의 <표 III-6>를 보면, 2008년에 조사된 718개의 저소득가구 가운데, 약 22.6%인 총 162가구가 2009년에 새롭게 빈곤상

태에 진입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2008년의 빈곤가구로 조사된 378가구 중 약 33.6%인 127가구가 2009년에 빈곤탈출을 경험하였다. 선행연구의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서울시 저소득가구의 빈곤진입과 탈피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상당수의 빈곤가구가 단기간 빈곤상태에 머물면서 빈곤에의 진입과 이탈을 반복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실질적으로 빈곤선 주변에서 이동을 경험하면서, 장기간 빈곤상태에 머무는 반복 빈곤층이거나 항상 빈곤층(혹은 항상 차상위계층) 일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의 공식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그들의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차상위계층까지 포괄할 수 있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최저생계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빈곤가구로 새롭게 진입하는 가구의 높은 비율을 감안할 때,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가구의 사회적 위험을 구조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의 보완도 필요하다(김교성, 2009 : 100-101).

<표 III-6> 빈곤이행 실태

단위 : 명, %

구분	2008년		2009년			전체 비중
	상태	빈도	상태	빈도	비중	
저소득지속 빈곤진입	저소득	718	⇒ 저소득 빈곤	556 162	(77.4) (22.6)	(50.7) (14.8)
빈곤탈출 빈곤지속	빈곤	378	⇒ 저소득 빈곤	127 251	(33.6) (66.4)	(11.6) (22.9)

2008년에 조사된 가구를 저소득가구와 빈곤가구로 구분하고 2009년의 빈곤이행 정도를 파악하여, 해당가구의 빈곤진입과 탈피에 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III-7>과 같다. 우선 저소득가구 중 새롭게 빈곤상태로 진입한 가구의 특성은, 앞서 설명한 빈곤가구의 특성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빈곤에 진입한 가구의 범주별 비중을 보면, 여성, 노인, 저학력, 미취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반대로 남성, 비노인, 고학력, 취업자 가구의 저소득 상태 지속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2008년의 빈곤가구 중

2009년에도 빈곤을 지속하고 있는 가구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결과적으로 여성, 고령, 저학력, 미취업 가구는 새롭게 빈곤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동시에 빈곤 상태를 지속하는 가능성도 높은 전통적 취약 인구집단이다. 한편, 빈곤에서 탈출한 가구주의 특성을 보면, 남성, 비노인, 고등학교 이상, 취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저소득을 지속하는 가구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III-7> 빈곤이행 가구의 특성

단위 : 명, %

2009년	2008년 저소득가구				2008년 빈곤가구			
	저소득지속		빈곤진입		빈곤탈출		빈곤지속	
전체	556	(77.4)	162	(22.6)	127	(33.6)	251	(66.4)
남성	417	(82.6)	88	(17.4)	80	(37.9)	131	(62.1)
여성	139	(65.3)	74	(34.7)	47	(28.1)	120	(71.9)
비노인	292	(83.7)	57	(16.8)	44	(44.0)	56	(56.0)
노인	264	(71.5)	105	(28.5)	83	(29.9)	195	(70.1)
중학교 이하	195	(68.7)	89	(31.3)	74	(30.6)	168	(69.4)
고등학교 이상	361	(83.2)	73	(16.8)	53	(39.0)	83	(61.0)
취업	296	(88.1)	40	(11.9)	40	(62.5)	24	(37.5)
비취업	260	(68.1)	122	(31.9)	87	(27.7)	227	(72.3)

4. 나가며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2008~2009년 서울시 저소득가구의 빈곤진입과 탈출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 저소득가구의 빈곤이행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성, 고령, 저학력, 미취업 등의 전통적인 취약계층의 열악한 빈곤지위와 빈곤탈피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저학력 혹은 미취업 가구주에 대한 인적자본 수준이나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도모하는 전략이 여성이나 노인 가구주에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임금노동과 돌봄노동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여성이나 인적자본 수준이 제한된 노인은 현재와 같은 저임금·불안정 노동시장에서 실제적인 이득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보다 보편적인 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향후 많은 연구자와 학생들이 서울시 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동학에 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기를 기대해 본다. 사실 자료구축의 제한점으로 인해 양적연구를 시도하기 어려운 분야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빈곤의 세대간 이전에 관한 연구인데,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세대간 변화를 관찰할 수 있을 만큼 긴 시간동안 축적된 양적자료가 필요하다. 빈곤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접근과 연구의 결과가 축적되어 있는 서구에서는 빈곤의 세대간 이전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빈곤문화, 개인에 대한 인적 투자, 지역사회의 구조와 환경 등에 초점을 맞추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Corcoran, 1985; Blanden and Gibbons, 2006; Musik and Mare, 2006). 그러나 국내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김위정·김왕배, 2007; 이상은, 2008), 이들 연구도 대상의 성장기 가정형편에 대한 '기억'과 '추정'에 기초하여 이전세대의 빈곤여부와 상태를 분석하고 있어, 자료구성의 엄격성과 정확성 측면에서 일정수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빈곤의 세대간 이전에 관한 국내 연구는 분석의 내용과 대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양적자료 구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절대 편수가 부족하며, 현실적으로 질적연구와 같은 접근 이외의 대안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의 지속적인 자료 축적과 제공을 위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성민 · 유태균. 2009. “자산빈곤이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0(1) : 115-138.
- 고정희. 2009. “공공임대주택가구의 주거이동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2) : 33-60.
- 구인희. 2002.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 이행 :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8 : 82-112.
- _____. 2005. “빈곤의 동태적 분석 : 빈곤지속기간과 그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57(2) : 351-374.
- 김교성. 2007.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 추이(推移)와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9(2) : 143-169.
- 김교성. 2009. “차상위계층의 규모와 특성 및 지위 변화.”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2 : 83-109.
- 김교성. 2010. “서울시 가구 빈곤의 원인에 관한 다층분석.” 『한국사회정책』 17(1) : 215-240.
- 김교성 · 노혜진. 2009. “빈곤 탈피와 지속기간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생존표 분석과 위계적 일반화선형 분석.” 『사회복지정책』 36(3) : 185-212.
- 김교성 · 반정호. 2004. “고용상태와 빈곤경험이 빈곤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8 : 31-54.
- 김위정. 김왕배. 2007. “세대간 빈곤이행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1(6) : 1-36.
- 김은하. 2008. “근로빈곤층의 일자리 특성과 빈곤 지위 -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0(4) : 5-29.
- _____. 2009. “근로빈곤층 여성의 빈곤탈출 결정요인 : 인적자본, 가구특성, 노동

- 시장 지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6(3) : 239-268.
- 서병수. 2007. “한국의 다차원적 빈곤 분석 : 실현능력접근.” 『사회복지정책』 28(4) : 199-232.
- 유태균 · 김경휘. 2006. “자활사업 중도 이탈집단과 참여지속집단의 특성 및 중도 이탈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30 : 39-70.
- 유태균 · 박효진. 2009. “여성가구주 빈곤가구와 남성가구주 빈곤가구 간의 빈곤 탈피 영향요인 차이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5(3) : 29-58.
- 이동영. 2005. “장애인가구의 빈곤탈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한 생명표 분석과 이산시간분석.” 『사회복지정책』 23 : 183-211.
- 이상은. 2008. “한국에서의 빈곤의 세대간 이전.” 『한국사회복지학』 60(2) : 53-76.
- 임세희. 2006. “빈곤탈출의 결정요인 : 경제활동 특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2(2) : 253-277.
- 지은정. 2007.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 결정요인 연구 - 근로빈곤노동시장의 경로제약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9(3) : 147-174.
- 홍경준. 2004.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 빈곤주기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4 : 187-210.
- Blanden, J. and P. Gregg. 2004. “Family Income and Educational Attainment : a Review of Approaches and Evidence for Britain.”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20(2) : 245-263.
- Corcoran, M. 1995. “Rags to Rags : Poverty and Mobility in the United Stat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1 : 237-267.
- Musik, K. and R. D. Mare. 2006. “Recent Trends in the Inheritance of Poverty and Family Structure.” Social Science Research 35(2) : 471-499.
- UNDP. 2000. Human Development Report 2000.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부록 >

<부표 1> 연도별 분석대상의 특성

단위 : 명, %

	2008년				2009년	
	비분석대상		분석대상			
전체	2,569	(100.0)	1,096	(100.0)	1,096	(100.0)
남성	2,023	(78.7)	725	(66.1)	716	(65.3)
여성	546	(21.3)	371	(33.9)	380	(34.7)
일반	2,102	(81.8)	464	(42.3)	449	(41.0)
노인	467	(18.2)	632	(57.7)	647	(59.0)
중학교 이하	435	(16.9)	525	(47.9)	526	(48.0)
고등학교 이상	2,134	(83.1)	571	(52.1)	570	(52.0)
취업	1,738	(67.7)	417	(38.0)	400	(36.5)
미취업	831	(32.3)	679	(62.0)	696	(63.5)